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0690-01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014. 12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

제 출 문

본 보고서를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2.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진

연구책임자 하태욱 (복음신대 대안교육학과 교수)
연구원 이병곤 (복음신대 대안교육학과 특임교수)
박동우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고봉청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차상진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김수환 (소호산촌유학센터 센터장)
양성호 (임실 대리초 교사)
연구보조원 강보라 (복음신대 대안교육학과 석사과정)

본 연구보고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3
II. 농촌유학의 현황 및 문제점	7
1. 농촌유학의 정의	7
2. 농촌유학의 현황	10
가. 일반현황	10
나. 재정지원 현황: 농촌유학지원사업	20
다. 법률적 지원	23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28
가. 운영방법의 보완	28
나. 제도적 개선과제	32
III. 농촌유학 사례분석	35
1.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사례	35
가. 설립동기	35
나. 농촌유학의 도입	35
다. 운영체계	40
라. 농촌유학 성공 요인과 어려움	41
마. 프로그램	44
바. 시사점	47
2. 소호마을 산촌유학 운영사례	49
가. 설립 동기	49
나. 농촌유학의 도입	51
다. 운영체계	52
라. 프로그램	60
마. 시사점	64
3. 영국 숲학교의 사례와 시사점	65
가. 숲학교의 역사	65
나. 숲학교 운동의 의의와 원리	67
4. 사례분석을 통해 본 농촌유학의 운영원리	69

목차

IV. 농촌유학 운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77
1. 농촌유학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77
가. 농촌유학의 실천과 환경 변화	77
나. 일본 산촌유학 사례: 시행착오와 재조정	77
다. 농촌유학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79
라. 모니터링 및 관리체제의 필요성	80
2.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한 고려와 준비	81
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한 기본전제	81
나. 농촌유학 실행의 준비단계	86
다. 농촌유학시설 설립의 과정	91
3.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농촌유학의 가이드라인 탐색	96
가. 시설설치기준	96
나. 종사자 기준	100
4. 농촌유학 운영 가이드라인(안)	107
가. 농촌유학의 기준	107
나. 농촌유학센터 운영	114
다. 농촌유학 교육프로그램	139
5. 안전관리 매뉴얼	165
가. 안전관리 매뉴얼의 기본 원칙	165
나. 생활 안전 관리	174
다. 활동 및 여행 안전관리	201
라. 시설 안전관리	216
마. 지자체 점검 및 관리	226
V.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29
1. 농촌유학의 제도적 근거 마련	229
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시사점	229
나.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과정	234
2. 타 사업·정책과의 연계 방안	238

목차

3. 농촌유학의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추진방안	240
가. 공간과 시설	242
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	255
다. 행정 운영	264
라. 재정운영	272
마. 평가	273
바. 소통과 협력	275
VI. 요약 및 결론	281
1. 요약	281
2. 결론 및 제언	287
VII. 참고문헌	291
VIII. 부록	295
1. 각종 서식 예제	295
가. 농촌유학센터 등록 및 퇴소 관련 서식	295
나. 농촌유학센터 운영관리 서식	311
다. 농촌유학센터 운영계획, 교육계획안 및 생활기록부	345
2. 지방자치단체 농촌유학 지원조례 내역	363
3. 안전 유관기관 정보 및 안전점검표	375
가. 안전 관리 관련 기관 정보	375
나. 안전관리 종합점검 자가 진단표	377
다. 농촌유학 안전관리 주간 점검표	382

표목차

표 1 국내 농촌유학 시설 목록	11
표 2 농촌유학 시설 설립연도	13
표 3 지역별 농촌유학 분표	14
표 4 농촌유학의 유형	15
표 5 유학비(월)	16
표 6 생활공간 면적	17
표 7 2014년 지역별 유학생 수	17
표 8 2014년 시설 별 유학생 규모	18
표 9 직원의 수(상근)	19
표 10 학생수 대비 상근 활동가의 비	19
표 11 직원의 수(비상근)	20
표 12 농촌유학지원사업 연도별 현황	21
표 13 2014년 지원사업 선정 농촌유학시설	22
표 15 시·도별 농산어촌유학 지원조례 지원 내용	26
표 16 대리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 (2008~2014학년도)	36
표 17 대리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 변화 추이 (2008~2014년도)	36
표 18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건립과정	37
표 19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개요	37
표 20 유학생 모집방법	40
표 21 유학센터 재정확보	41
표 22 유학센터 재정 지출범위(2014년 기준)	41
표 23 농촌유학협력학교	42
표 24 대리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45
표 25 연계 및 협력 기관	45
표 26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연간 프로그램	47
표 27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비전	48
표 28 소호마을 현황	50
표 29 마을 인적자원 현황	50
표 30 소호산촌유학센터 활동가 현황(2014년 10월 현재)	54
표 31 소호산촌유학센터 농가 현황	54



표 32	소호산촌유학센터 유학생 학년별 구분	55
표 33	소호산촌유학센터 유학생 현황(2014년 10월 현재)	55
표 34	소호산촌유학센터와 마을과의 협력	56
표 35	소호산촌유학센터 산촌유학 홍보 및 유학생 모집 방법	57
표 36	소호산촌유학센터 재정 확보	59
표 37	소호산촌유학센터 재정 지출범위(2014년 상반기 기준)	60
표 38	소호산촌유학센터 목표별 프로그램 계획	61
표 39	소호산촌유학센터 연간프로그램 계획	62
표 40	소호산촌유학센터 주간일정표	64
표 41	농촌유학 운영계획 전 검토사항	86
표 42	농촌유학 비전 실현 전략	87
표 43	농촌유학 추진구조	88
표 44	농촌유학실행의 준비단계	89
표 45	정관구성사항	90
표 46	농촌유학 온라인 홍보처 목록	91
표 47	농촌유학시설 설립과정	92
표 48	농촌유학 설립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94
표 49	학생관리 항목(각종 양식)	116
표 50	종사자 자격기준	118
표 5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119
표 52	활동가 평가서 양식	120
표 53	근로기준법	123
표 54	운영보고서 기재 항목	138
표 55	다섯 영역별 교육사례들	140
표 56	자립프로그램 예	143
표 57	자립프로그램 예시 숲속 아지트 짓기	144
표 58	신체성장 프로그램 예	146
표 59	신체성장프로그램 예시 마을길 아침산책	147
표 60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	150
표 61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 내 맘대로 창작 일기쓰기	151



표 62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시 우리들의 지적성장을 돕는 대리마을 농촌 유학센터 다모임	152
표 63 자연친화 프로그램 예	155
표 64 자연친화 프로그램 예시 쥐불놀이	156
표 65 공동체 프로그램 예	160
표 66 공동체 프로그램 예시 마을탐방 지도 만들기	161
표 67 듀이 실험학교 초기 2년간의 프로그램(6~7세)	163
표 68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 체계(농촌유학 운영주체)	167
표 69 안전사고 관리보고체계	168
표 70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예시)	171
표 71 화재신고 시 주요내용	182
표 72 화재, 가스, 폭발사고 예방 및 대응 기본장비(예시)	183
표 73 식중독 발생보고 양식	190
표 74 농촌유학 관련 정책적 지원 현황	236

그림목차[❖]

그림 1 농촌유학의 기본 원리	4
그림 2 농촌유학의 협력구조	5
그림 3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찾아가는 맛있는 학교	43
그림 4 소호분교 학생 수 변화 추이 현황과 향후 전망 내역	52
그림 5 농촌유학 교육프로그램의 다섯 영역	141
그림 6 (가)농촌유학중앙지원센터의 역할	237
그림 7 농촌유학중앙지원센터의 협력체제	23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6년 교육격월간지 <민들레>를 통해 처음 소개된 일본의 ‘산촌유학’이 우리나라에 ‘농촌유학’으로 자리 잡은 지 8년, 농촌유학은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단계에 와 있다. 규모의 대소를 구분 않고 집계하자면 이미 25개 내외의 시설들이 농촌 유학을 실시하고 있으며, 준비 중이거나 시작단계에 있는 시설까지 포괄하면 50여 곳에 육박한다. 지역적 분포는 전국에 걸쳐 농촌, 어촌, 산촌을 망라하고 있다. 설립 추이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2011년 이후 최근 3~4년 사이에 생겨난 시설들이다. 일본에서도 산촌유학이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에 들어서 다양한 물리적·환경적 조건들과 맞아떨어지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음을 감안할 때, 농촌유학을 준비 중인 시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추이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유학이 엄청난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증가추세와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농촌유학은 아직 질적·제도적 측면에서 체제를 갖추어 대비하지 못한 상태이다. 농촌유학 시설들은 환경적·운영적·교육적 맥락에서 잘 준비되어 있다기보다는 현실 대응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엄밀한 현실이다. 또한 농촌유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적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의미와 구조보다는 오히려 ‘농촌 살리기’와 같은 부수적 효과에 더 관심을 받아온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수요적인 증가가 질적 수준을 보장하지 못한 채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듯 짧은 부흥기를 지나 가파른 하향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농촌유학은 농촌 살리기와 생태적 삶의 회복, 교육의 대안적 개혁과 공동체성의 확보, 그리고 도(都)-농(農)-민(民)-관(官)-학(學)의 연대라는 다양한 측면에서 가치와 의미가 큰 프로그램이다. 이제 태동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금부터 만들어갈 농촌유학 체제가 앞으로의 발전, 혹은 퇴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운영 형태와 현실을 진단하고 앞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겠다.

첫째,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농촌유학과 관련된 사회적 체계 확립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농촌유학은 아직 맹아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형성과 생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제 25개가 넘는 농촌유학 시설이 만들어지고, 신규 시설들이 준비되고 있으나 농촌유학은 아직 법적인 테두리 바깥에 놓여 있다.

둘째, 농촌유학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 이해 당사자 사이의 구조적인 지원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농촌유학 운영자와 도시부모, 지역민과 지역학교, 지방과 도시의 지자체와 교육청, 농촌 부처와 교육 부처의 다각적 협력이 필요하다. 재정지원이 단순히 개별 시설의 운영비로 쓰이는 구조보다는 장기적인 운영시스템의 확보를 위한 기초 다지기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의 향방이 정해지는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셋째, 농촌유학의 질적 우수성을 담보하기 위해 합당한 교육내용이 채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농촌유학을 진행해온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유무형적 자산을 모두 바쳐서 운영해왔다. 그러나 농촌유학을 농촌유학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농촌유학에는 농촌유학을 위한 내용이 필요하다. 농촌의 조건과 그 장점을 살리는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교사의 양성과 훈련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이런 필수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시스템도 농촌유학의 현실에 맞는 형태로 개발되어야 한다.

정리하면, 농촌유학의 질적 성장과 운영체제 구축을 담보하기 위해 형식적 구조의 구성, 교육내용 구축, 그리고 제도적 뒷받침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시설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며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는 해법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이 요구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이 판가름 날 것이라 판단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 마련과 제도 확립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로 농촌유학의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한편 풀뿌리 농촌교육 프로젝트인 농촌유학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갖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농촌유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때 어디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농촌유학이 발전해오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부딪히고 있는 유형·무형의 어려움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둘째로 농촌유학의 성공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발전 방향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농촌유학의 모델 사례를 발굴하여 그 내용적 가치를 드러냄으로써 농촌유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한다. 또한 이 사례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 요인들을 짚어봄으로서 지속가능성과 확산가능성을 찾도록 한다.

셋째로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할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농촌유학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용적·형식적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물론 농촌유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성의 확보로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농촌유학만의 차별성을 가지는 구성과 교육 프로그램으로서의 안정성은 어떤 최소 기준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향 속에서 가이드라인을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도 지적한 바, 지금까지 농촌유학은 자생적 풀뿌리 교육운동이자 농촌운동으로서 싹을 틔우고 자라왔다. 이제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에서의 실험을 받아 안을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농촌유학에 대한 공적 지원이 주로 확산과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이제부터는 질적 향상과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로 정책적 방향이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촌유학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세 가지 기본 원리로 본 연구는 교육성, 투명성, 공공성을 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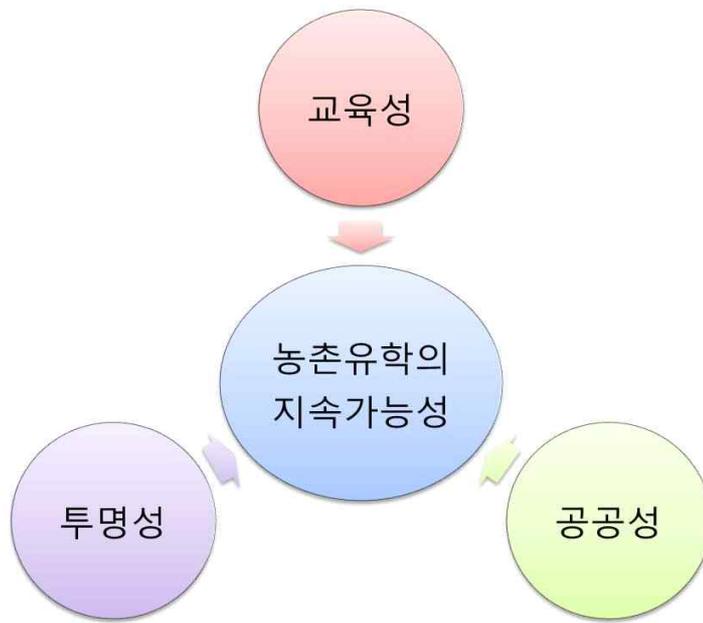


그림 1 농촌유학의 기본 원리

우선 농촌유학이 교육 프로젝트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성이 중요하다. 물론 농촌유학이 농촌지역에 가져다 줄 여러 가지 가능성과 부수적 효과들이 있다. 하지만 농촌유학의 주된 이용자인 도시 부모들의 경우 이런 부수적인 효과를 위해 자녀를 농촌으로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도시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농촌유학이 교육적 책무성을 다한다는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탁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사정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유학생들을 모집할 수는 있겠지만 농촌유학이 교육적인 기능을 주된 가치로 가지는 교육 프로젝트인 한, 그 원리의 중심에는 교육성을 우선적으로 둘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농촌유학은 투명성을 가져야 한다. 농촌유학은 그 운영주체가 개인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개인 사업으로 볼 수 없는, 지역사회의 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내재적으로 존재한다. 농촌유학 자체가 마을과 관계 맺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성격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농촌유학은 운영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다기 보다는 중층적 단위의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형성하여야만 성공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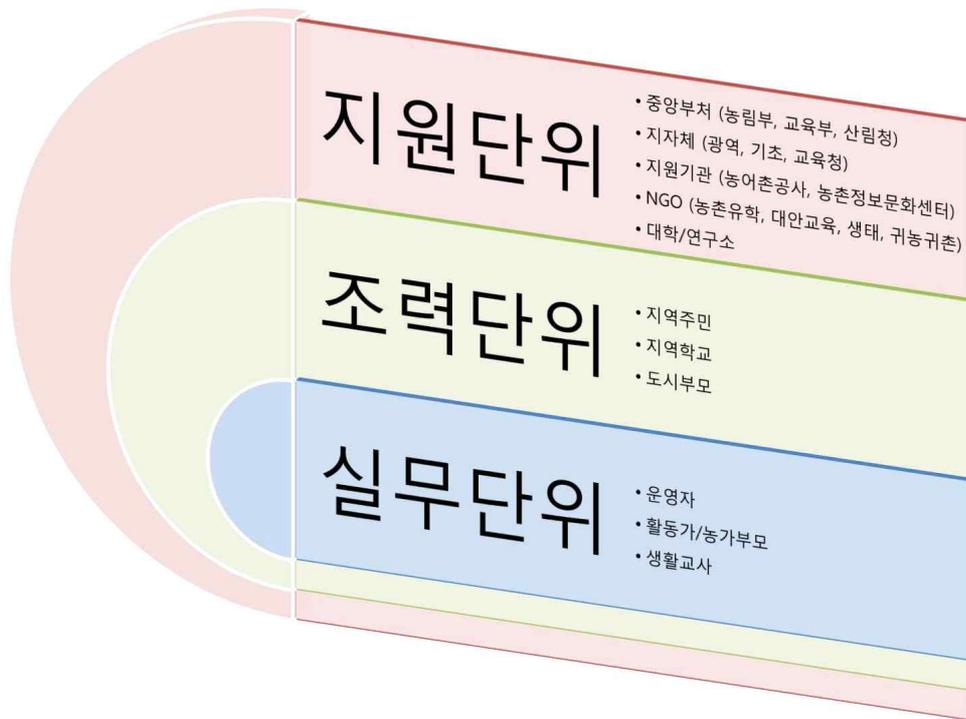


그림 2 농촌유학의 협력구조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우 투명한 운영을 전제로 민주적인 참여와 의사결정구조를 통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학에 필요한 중요한 원리는 공공성이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이유와 연관해서 농촌유학은 미래의 구성원들을 키우는 교육 프로젝트인 동시에 농촌마을을 살림으로서 도농교류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 살리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이 공적 자금을 통해 농촌유학을 지원하는 까닭 역시 여기에 있다. 특정 개인이나 소수의 사적 집단이 아닌 공적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의 프로젝트로서 공공성이 확보될 때 농촌유학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 본 연구는 대안교육과 농촌유학 전문연구자인 복음신학대학 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하태욱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같은 학과의 이병곤 특임교수,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의 연구원 4명과 현장전문가 2명으로 연구진을 구성했다. 참여한 연구진은 다음과 같다.

책임연구원	하태욱	복음신대 대안교육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이병곤	복음신대 대안교육학과 특임교수
공동연구원	박동우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고봉청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차상진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원
공동연구원	김수환	소호산촌유학센터 센터장
공동연구원	양성호	대리초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원	강보라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연구조교

연구의 방법으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농촌유학에 대한 입체적인 연구가 가능하도록 시도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농촌유학 관련 자료들은 물론이고 이와 비슷한 국내의 유사사례들을 살펴보는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 및 제도적 뒷받침에 대한 시사점들을 발견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현장 탐방과 면담을 병행했다. 현장 탐방은 8월~9월에 걸쳐 집중적으로 시행했으며, 관련자 면담은 현장 방문, 인터뷰, 전화 인터뷰, 이메일 등을 통한 자료 요청 등의 경로를 통해 농촌유학의 현실적 상황과 이상, 고민과 어려움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장전문가 출신의 연구원 2명은 자신들의 현장 실천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피고 설명해내도록 하였다. 또한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회나 전문가 워크숍, 그리고 중간보고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하여 반영하고자 하였다. 최종 연구보고서 출간 후에는 이 결과를 현장들과 함께 나누어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물론 이 연구에도 한계는 있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려다보니 특정 모델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현실적 제한성 때문에 주로 센터형과 마을형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 최소한의 점검 기준을 설정하려고 시도한 만큼 농가형이나 가족형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기준 설정에 참조가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



Ⅱ. 농촌유학의 현황 및 문제점

1. 농촌유학의 정의

농촌유학이란 무엇인가? 일본의 산촌유학이 도입되어 한국에서 시도된 이래 농촌유학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었다. 초기에는 일본의 용어 그대로 ‘산촌유학’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산촌’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일반적인 시골을 의미기보다는 ‘산 속에 있는 산간 마을’을 지칭한다. 따라서 보다 한국적 맥락에 맞는 용어로서 ‘농촌유학’, ‘농어촌유학’, 혹은 ‘농산어촌유학’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했다.

정의적인 측면에서 ‘농(어산)촌 유학’의 의미는 어떠한가?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표한 「농어촌유학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에 따르면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서 생활하는 교육적, 지역적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이후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마련한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시행 2012.12.7.)에서는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후 제정된 타 지자체들의 정의 역시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경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농촌유학은 공통적인 의미와 가치를 공유한다.

첫째로는 도시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측면이다. 물론 행정적 구분으로서의 도시와 농어촌의 구분이 반드시 경제적이나 문화적으로서 도시와 농어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촌유학이 대상으로 삼는 ‘도시아이들’은 문화적인 의미가 강하다. 즉, ‘도시’로 상징되는 인공적이고 인위적인 환경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농어촌’이라는 공간이 있다. 자연(Nature) 속에서 인간의 본성(Nature)대로 있는 그대로 자연(Nature)스러운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농어촌’이다. 또한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각각의 절기가 만들어 낸 세시풍습이라는 문화적 전통을 경험하는 공간으로서의 ‘농어촌’이다. 이 자연속의 자연적인 공간을 통해 아이들은 성장할 수 있다.

셋째로 농촌유학은 중·장기간의 경험을 전제로 한다.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

류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도농교류법)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로 추진되는 기존의 도농교류체험학습, 휴양마을체험 프로그램, 자연체험, 녹색관광, 생태관광 등이 대체로 단기적이고 일회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 농촌유학은 초·중·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이하 농촌)의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생활하면서 지역과 마을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넷째로 농촌유학은 대안교육적 특징도 공유한다. 농촌유학은 생태교육에 대한 철학과 교육관을 가진 활동가나 해당 지역 거주자인 농가부모¹⁾들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6개월 이상 머물면서 단순 경험 수준의 자연체험이 아닌 그 지역의 자연과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생태 감수성, 함께 생활하는 학생들 및 지역주민들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성, 농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행사들과 계절의 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 등을 통해 도시생활 및 교육에서는 배울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기존 근대교육의 도시적, 산업적, 일률적, 지식적, 비실용적, 대량 생산적, 사익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개별화, 특성화, 자율화, 지역화, 공공화를 지향하는 대안교육의 지향점에서 보면 농촌유학은 이러한 지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다.

다섯째로 그 대안교육적 특징에도 불구하고 농촌유학은 지역학교를 다닌다는 측면이 중요하다. 지역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일 뿐 만아니라 그 마을의 중심이며 마을을 유지시켜주는 매개체이다. 마을의 학교는 마을공동체의 광장이자 집단적 행사가 이루어지는 축제의 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마을의 새로운 세대가 길러지는 재생산의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 학교의 폐교는 단순히 하나의 학교가 없어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농촌유학을 통해 학생 수를 유지하고 마을에서 학교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마을 살리기에 있어 중요한 변수다. 또 한편으로 유학생들이 지역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도농교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도시의 문화와 농촌의 문화가 만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류의 장으로서 지역학교가 기능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유학에 대한 마을의 참여도 가치를 가진다. 단순히 특정 인사에 의해 진행되는

1) 농가부모는 농촌에서 자신의 주거지를 이용하여 농촌유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로써 특히 아이들의 보살핌의 역할을 중요하게 보아 시골부모 혹은 농가부모라는 표현을 쓴다. (「농어촌유학 사례연구 및 매뉴얼 개발 연구. 2009.10. 한국농어촌공사 참조) 본 연구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농가부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포함한 농촌유학과 관련된 모든 용어는 바로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개인 사업으로서의 농촌유학이 아니라 학교를 통해 마을의 아이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게 되는 관계망의 형성으로서 농촌유학은 마을과 관계를 맺는다.

우리나라의 농촌유학 시작의 바탕이 된 일본 산촌유학의 기본 교육 체계는 지역 공교육과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유학 역시 지역에 있는 공교육 학교로 전·입학한 유학생들의 유입을 통해 폐교위기의 지역 학교를 살려내는 기회를 가진다. 이는 입시위주, 경쟁위주의 교육으로부터 벗어나 자연과 다양성을 경험 할 수 있는 전원형 대안교육 수요를 농산어촌 지역의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귀농·귀촌 인들의 인구유입통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감소되는 농어촌인구 문제와 지역 활성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이런 농촌유학의 특징을 염두에 두면서 본 연구는 농촌유학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농촌지역에서의 생활 및 지역학교와 시골살이의 경험을 통해 농촌마을의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농촌유학에서 사용되는 중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센터형:** 개인 또는 법인이 농촌유학을 위해 유학센터를 설립하여 유학생들의 숙식과 생활 및 교육을 돌보는 시설 및 기관의 운영형태를 말한다.
- **농가형:** 개인이 자신의 주거지를 이용하여 가족운영의 형태로 소규모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 **복합형:** 센터형과 농가형의 결합 형태로 센터와 농가의 역할을 나누어 운영한다. 센터가 저녁식사와 교육을 담당하고 농가가 숙박과 아침식사를 담당하는 경우, 또는 한 달에 기간을 나눠 센터 생활과 농가 생활을 교대로 하는 경우가 있다.
- **마을형:** 복합형에서 발전된 것으로 단순히 센터운영자와 농가 간의 계약관계로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사업의 일환으로서 마을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발전된 운영형태를 말한다.
- **가족형:** 지역학교나 지자체, 혹은 마을이 유학생 가족을 위한 임시숙소를 지어 임대함으로써 농촌유학의 수요를 확보하는 형태를 말한다. 부모 중 한 쪽이나 둘 다가 함께 농촌으로 와서 생활한다.

- **농촌유학 활동가:** 농촌유학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여기에는 운영자, 행정담당자, 생활교사, 농가부모, 사회복지사, 조리사, 강사, 마을 인적자원 등 전임과 비전임이 모두 포함된다.
- **농촌유학 운영자:**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농가형의 경우 개인이, 가족형의 경우 학교가, 그 외의 경우는 법인 등이 임명한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운영자는 활동가에 포함되나 생활교사에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농촌유학 생활교사:** 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과 교육을 담당하는 전임 활동가를 의미한다.
- **농가부모:** 농가에서 아이들의 생활을 돌보는 사람을 의미한다. 농가형에서는 농가부모가 운영자이면서 생활교사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2. 농촌유학의 현황

가. 일반현황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젊은 층의 도시이동과 노령화의 가속이라는 현실을 겪고 있는 농촌은 자연스럽게 폐교가 생기고 학교가 없어진 마을 주민은 또 다시 마을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에 농촌유학이 갖는 다층적이며, 순기능적인 역할은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 볼 때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6년 처음 소개된 일본의 ‘산촌유학’이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것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촌정보문화센터(2011)에 의하면 2006년 초기 도입시기에서 2010년도 까지 농촌유학 시설 수는 매년 약 1.5배의 양적 성장을 해왔다.²⁾ 현재까지 농촌유학을 실행하거나 실행준비 단계에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³⁾

2) 국내외 농산어촌유학 실태 및 발전방향 조사(2011), 농촌정보문화센터, p16.

3) 현황조사는 「2014년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신청단체별 사업계획서(2014),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를 기본 자료로 하여 농촌유학협의회 자료와 전화인터뷰를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설립연도는 농촌유학 사업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Ⅱ. 농촌유학의 현황 및 문제점

지역		유학시설명		유형	조직형태 (법인격)	설립일자
시도	시군					
강원	춘천	별빛 산골교육센터		복합형	사회적협동조합	2007
	횡성	사재산 공동체학교		센터형	농어업법인	2013
	양구	배꼽 산촌유학센터		센터형	사회적협동조합	2011
	양양	꿈꾸는학교		센터형	비영리법인	2012
	양양	고마리작은학교		센터형	비영리 민간단체	2010
경기	가평	더불어 숲		농가형	운영주체의 법인성 없음	2014
충북	청주	거북이학교		센터형	농업법인	2014
	제천	희망나무숲 산촌유학센터		센터형	협동조합	2011
	괴산	만선당		농가형	개인	2011
	단양	한드미유학센터		센터형	영농조합법인	2007
충남	공주	도령서당		센터형	개인	2012
전북	정읍	정읍	자연학교	농가형	영농조합법인 (정읍농촌유학 협의회영농조합)	2013
		농촌유학	산적소굴	농가형		
		협의회	고모샘네	농가형		
	김제	고산 산촌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민간단체 (농촌살림연구소)	2010
		학성강당 선비학교 농촌유학		센터형	비영리법인 (학성강학연구회)	2014
		완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법인 [(사)열린마을 청소년 문화연구회]
안덕마을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영농조합법인 (안덕파워 영농법인)	2012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장수	철딱서니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민간단체 (도농문화교육 연구소)	2007
	임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민간단체 (대리마을농촌 유학센터)	2013
		불재맘 인재학당		센터형	임의단체	2010
		덕치초 유학센터		가족형	덕치초등학교	2011
		성수중 유학센터		가족형	성수중학교	2012
		지사초 유학센터		가족형	지사초등학교	2013
고창	온몸농촌유학		센터형	협동조합 (온몸농촌유학 협동조합)	2013	
전남	완도	울스약창조학교		센터형	협동조합	2007
	곡성	참살이농촌유학		센터형	비영리민간단체	2011
	강진	옴천면 개산마을 외		농가형	개인농가	2013
경북	경주	도리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법인 사회문화나눔협회	2008
	군위	간디 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민간단체	2007
	영양	우리손 농촌유학센터		복합형	민법상 법인	2011
	영덕	숲속자연독서체험 학교		센터형	임의단체	2012
	예천	시골살리아이들		복합형	비영리민간단체 사업단	2007
	예천	아침연꽃 산촌유학센터		센터형	비영리민간단체	2012
	봉화	청량산 풍경원		농가형	임의단체	2013
경남	함양	함양 농촌유학 협의회	햇살네 양파네 봄바람네	농가 결합형	협동조합	2014



	고성	무지돌이자연학교	센타형	무지돌마을법인 (농촌체험마을)	2008
	고성	고성촌스러운 유학센터	센터형	영농조합법인 (곤충농장,생태학교)	2011
	밀양	들꽃학교	복합형	비영리민간단체	2009
울산	울주	(사)아이누리소호산 촌유학센터	복합형	비영리법인	2010
제주	제주	제주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제주농촌유학 센터협동조합	2013
	서귀포	어멍아방 농촌유학센터	센터형	어멍아방농촌 유학협동조합	2013

표 1 국내 농촌유학 시설 목록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시설들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농촌유학 시설 지역분포, 설립년도 및 기관형태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시설 수	7	2	1	4	7	6	11	6	44

표 2 농촌유학 시설 설립연도

2006년 일본의 산촌유학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이래 2007년도부터 농촌유학이 시작되었다. 이후 약 2~3년간의 정착기를 거치면서 그 한국적 가능성이 일정부분 증명되고 농림부처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적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2010년대 들어서는 빠른 속도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 농촌유학 분포를 살펴보면 2014년 농촌유학협의회에 등록되거나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농촌유학 시설은 44개소⁴⁾이다. 전국적인 분포현황을 보면 강원도(5개소), 경기(1개소), 충북(4개소), 충남(1개소), 전북(14개소), 전남(3

4) 40개의 등록시설 중 정읍농촌유학협의회와 함양농촌유학협의회는 농가결합형으로 각각 3개 농가형 시설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개별 시설로 파악하면 44개 시설로 볼 수 있다.

개소), 경북(7개소), 경남(6개소), 울산(1개소), 제주(2개소)로 파악되었다. 14개의 농촌유학 시설이 위치한 전북에 가장 많은 유학시설이 있었고, 경기와 충남 그리고 울산은 유학시설이 각각 1개소씩으로 파악되었다. 전북이 다른 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농촌유학 시설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농촌유학지원조례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에 대해서는 농촌유학 지원 사례 현황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합계
시설 수	1	5	1	4	14	3	7	6	1	2	44

표 3 지역별 농촌유학 분표

아직까지 농촌유학을 설립하거나 운영하기 위한 특별한 절차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유학 시설들은 개인적 운영에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다양한 조직형태를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현재 운영조직의 형태(법인격)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가 9개소로 가장 많았고 협동조합이 8개소로 그 뒤를 따랐다. 기타에는 개인이 3개소, 임의단체 3개소, 마을법인 1개소, 민법상법인 1개소, 운영주체의 법인성이 없는 곳 1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조직형태가 다양한 것은 농촌유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탓에 시설들이 자체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거나 허가받기 쉬운 법인격을 선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은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민주성과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촌유학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2012년 말 제정된 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농촌유학의 가치를 살려 실현하기에 매우 적합한 바탕을 가진다.

농촌유학의 유형은 실행주체의 목표나 가치관과 같은 무형적인 자원과 시설, 인력 등의 유형적 자원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014년 9월 현



재 센터형이 26개소(59%)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최근에 가족형이 새로운 유형으로 나타났다.

<농촌유학의 유형>

유형	농가형	센터형	농가결합형	복합형	가족형
시설수	4	26	6	5	3

표 4 농촌유학의 유형

농촌유학 사례연구 및 매뉴얼 개발 연구(2009)⁵⁾는 각각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농가형은 ‘시골부모’라 불리는 농촌지역의 민가에서 ‘팜스테이’를 하며, 해당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형태의 모델로 2~6명의 농촌유학생을 받아 진행한다. 이는 유학생들이 농촌에서의 삶에 대해 온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농가부모와의 밀착관계와 감성적 교감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농가결합형은 같은 지역의 농가들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농촌유학을 진행하는 형태로 기본적인 진행 방식은 ‘농가형’과 비슷하지만 1개 농가 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들을 여러 농가들이 결합하여 보완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장점으로는 유학생들이 여러 농가를 체험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경험을 갖게 된다는 점이 있으나 농가들의 결합을 효과적으로 만들어낼 리더십과 역량이 동반되지 않으면 매우 형식적인 연대가 되기 쉽다. 센터형은 다수의 농촌유학생들이 독립적인 체험교육공간에서 농촌유학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형태이다. 센터의 시설 및 활동가에 따라 10인 이상의 유학생을 수용한다. 전문적인 시설과 체계적인 환경 그리고 농촌유학에만 전념하는 활동가들로 인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복합형은 농촌유학생들이 ‘센터’와 ‘농가’를 번갈아가며 생활 하는 형태로 센터형과 농가결합형의 혼합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유학생들이 한 달 중 일정 기간은 센터에서 생활하고 일정 기간은 농가에서 생활하는 형태이다. 농가의 부담을 덜고 센터형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유지하면서 직접적인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을형과 가족형은 새롭게 시도되는 농촌유학의 형태이다. 마을형은 센터형이 가지기 쉬운 지역과의 유리현상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것으로 복합형의 발전적 형태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센터와 농가가 물리적으로 결합하여 교육과

5) 농촌유학 사례연구 및 매뉴얼 개발 연구(2009), 한국농어촌공사, pp46-59.

숙박을 역할 분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농촌유학의 운영자로서 센터 구성원과 농가부모로 참여하는 체제이다. 가족형은 농촌유학의 가능성을 발견한 광역/기초 지자체들이 학교와 협력모델로서 새롭게 시도하는 형태다. 지자체가 학교 내 혹은 학교 밖에 유학숙소를 지어 농촌유학을 희망하는 가족들에게 임대하도록 제공한다. 가족형은 새로운 시도로서 그 가치와 한계를 논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측면이 크다. 다만 농촌유학에 대한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나 유학비용의 차원에서 볼 때 많은 이점이 있으나 한편으로 이것이 단순히 학생유치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농촌유학으로서의 가치를 담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다.

2) 유학비

유학비는 총 44개 시설 중 36개 시설의 자료를 데이터화 하였다.⁶⁾

금액	40만원	50만원	55만원	60만원	65만원	70만원	75만원	80만원	100만원
시설수	2	4	1	13	2	7	3	3	1

표 5 유학비(월)

농촌유학 유학비는 처음 입학할 때 부담하는 입학비용과 매월 또는 분기별로 부담하는 유학비로 구분할 수 있다. 초기 입학비용은 없는 곳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하였고 매월 부담하는 유학비도 시설별로 시설여건이나 비용발생구조에 따라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했다.

월 유학비 평균 금액은 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한국의 중위 소득 4,608만원을 기준으로 보아도 17%에 달하는 높은 비율이다. 물론 농촌유학의 경우 기타 사교육비가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서민층 가정에서 매월 납부하기에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따라서 농촌유학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통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요청된다.

6) 유학비는 총 44개 시설 중 36개 시설의 자료를 데이터화 하였다. 단기캠프를 위주로 하는 예비 실행지 3곳과 2015년 개소예정인 1곳, 조사를 거부한 시설 1곳은 포함하지 않았다. 가족형 3곳도 유학비가 따로 없이 숙소 사용료만 부담하는 형태여서 다른 시설들과의 수평적인 비교가 어려워 제외하였다.



3) 생활공간면적

시설면적(㎡)	100㎡이하	100-200㎡미만	200-300㎡미만	300-400㎡미만	400㎡이상
시설 수	3	20	4	2	8

표 6 생활공간 면적

농촌유학 시설의 생활공간 면적은 100-200㎡이 20곳 (54%)으로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1,000㎡이상 되는 생활공간을 가진 시설도 4곳이 조사되었다.⁷⁾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사무실, 식당 및 집단 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다. 하지만 농촌유학시설은 시설이나 생활공간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각 시설별 상황과 여건에 맞추어 생활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숙소의 방 하나에서 생활하는 학생의 숫자도 막연히 좁지 않은 수준에서 임의적으로 입소시키는 등 문제의 소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운영 가이드라인을 통한 기준 확립이 요청된다.

4) 유학생 수 및 활동가 현황

2014년 총 44개 농촌유학 시설 중 유학생 수가 파악이 되지 않은 1개 시설을 제외한 43개 시설에서 10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유학생이 있는 곳은 32개 시설로 파악된다. 그리고 장기 유학생이 없는 11개 시설은 캠프나 체험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지역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울산	제주	합계
시설 수	1	5	1	4	14	3	7	6	1	2	44
학생 수	0	60	12	49	72	18	31	2	19	4	267

표 7 2014년 지역별 유학생 수

‘농촌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자료⁸⁾에 의하면 농어촌

7) 학생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 면적은 44개 시설 중에서 가족형 3곳과 확인이 되지 않은 4곳을 제외한 37개 시설을 분석하였다

8) 양병찬(2013). ‘농촌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농촌유학 장기유학생이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10월 현재 267명으로 조사되었다. 양병찬(2013)의 자료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본 연구가 2014년 실행중인 농촌유학 시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그 시설들의 2012년과 2013년 유학생 수를 조사하였기 때문이다.

유학생은 2010년 302명, 2011년 353명, 2012년 464명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시설 수가 가장 많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지원도 가장 적극적인 전북이 유학생 수 역시 72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시설 수에 비해 유학생 수가 60명으로 상당히 높았다. 이는 양양군을 비롯 강원도의 지자체들이 초창기부터 농촌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기 때문으로 보인다. 충북의 경우는 세 번째로 유학생 숫자가 많지만 이는 전적으로 한 시설에 의존한 것이기에 이를 지자체 차원의 노력으로 논의할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농촌유학의 발전은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유학생 규모는 수용가능한 시설의 규모나 모집 방안 등 변수가 많은 항목이어서 일괄적으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 다만 유학생의 숫자가 너무 적으면 운영에 적절한 수입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고 숫자가 수용시설보다 너무 많으면 유학생들의 생활 및 돌봄과 교육의 질이 확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농촌유학시설 별로 각자의 환경에 적합한 정원을 설정하고 그 근거의 타당성을 모니터링에서 점검함으로써 개별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학생 수	0명	1-5명 미만	5-10명 미만	10-20명 미만	20-30명 미만	30명 이상
시설 수	11	15	6	8	2	1

표 8 2014년 시설 별 유학생 규모

유학생 규모로 보자면 아직 유학생 모집을 안 하거나 모집이 되지 않은 농촌유학 시설 수가 11곳이다. 15개소로 가장 많은 농촌유학시설들이 1~5명의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장들 모두가 물리적으로 작은 규모인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용 가능한 유학생 숫자에 비해 여러모로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홍보와 모집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농촌유학시설들의 활동가 고용 형태를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누어보았을 때 상근인력은 1명에서 16명, 비상근 인력은 0명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조



사되었다. 상근인력이 2명인 유학센터들이 13곳으로 가장 많은 비율(31%)을 나타내고 있다.

상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상
시설 수	3개	13개	8개	5개	4개	1개	4개

표 9 직원의 수(상근)

시설마다 유학생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상근 활동가 숫자를 수평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학생 수 대비 상근 활동가의 비율을 통해 유학생을 돌보는 상근활동가들의 숫자를 살펴보았다.⁹⁾

상근활동가	1:1	1:2	1:3	1:4	1:5	1:6	1:6
: 학생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시설 수	6개	7개	7개	5개	1개	1개	3개

표 10 학생 수 대비 상근 활동가의 비

상근 활동가 1명당 학생 수를 평균으로 나타내면 2.87명으로 활동가 한 명이 약 3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셈이다. 상근직원 1명당 학생이 1명~2명 미만이 7개, 또한 2명~3명 미만인 시설이 7개 시설로 가장 많았다. 상근직원 1명당 학생이 1명 미만인 곳도 6개 시설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10인 미만에 상근직원이 1명,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은 상근직원이 2명, 아동 30명 이상일 경우 상근직원이 3명(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농촌유학의 경우 상근 활동가 한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매우 양호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시간동안 프로그램 참가를 주목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상근직원과 ‘생활과 돌봄의 공간’으로서 농촌유학시설들의 상근활동가 사이에는 분명한 역할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만 농촌유학센터 운영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1:6이상의 경우 돌봄에 공백이 생긴다는 분석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농촌유학 시설들은 이 점에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9) 전체 조사대상인 44개의 시설 중에서 2014년 9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유학생이 없는 농촌유학시설 11개소와 장기유학생은 있으나 가족운영의 농촌유학센터로 상근직원이 없는 2개소, 조사를 거부한 1개소를 제외한 30개 시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농촌유학의 경우 아직까지 활동가와 운영자, 생활교사, 행정직원 등에 대한 역할구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 또한, 낮은 활동가:유학생 비율이 교육적인 고려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현재 5명 미만의 장기유학생이 있는 시설이 47%에 불과하다는, 부족한 학생모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문제는 운영자나 행정직원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유학생을 돌보는데 관여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생활교사의 역량과 전문성 여부에 따라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기에 더욱 세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비상근	0명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이상
시설 수	20	7	2	3	2	3	1

표 11 직원의 수(비상근)

비상근 인력에 관한 조사에서 유학센터의 50%정도는 비상근 직원을 두고 있지 않았지만 방학 중에 열리는 농촌체험 캠프와 같은 단기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임시고용인들을 두고 있는 시설들도 4곳으로 집계되었다. 응답 결과, 비상근 인력의 경우 마을 주민들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형태라고 했다.

나. 재정지원 현황: 농촌유학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도시 학생들의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 및 인성 함양
-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농촌 소규모 학교 활성화 및 농촌 지역 교육공동체 형성

2) 근거 법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농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2012년부터 농식품부 「농촌유학지원사업」에 시·도비 매칭
 - '14년 : (울산)10백만원 - 지방비의 50%, (경북)20백만원 - 지방비의 30%

3)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사업량		3	5	7	16	16
사업비	계	99,000	200,000	160,000	640,000	640,000
	국고보조	99,000	200,000	160,000	320,000	320,000
	지방비	-	-	-	320,000	320,000
시설당 평균 지원금액		33,000	40,000	22,857	40,000	40,000

표 12 농촌유학지원사업 연도별 현황

지역		2014년 지원사업 선정 농촌유학 시설
울산	울주	소호산촌유학센터
강원	춘천	별빛산골교육센터
	양구	배꼽산촌유학센터
	횡성	사재산농촌유학공동체학교
	양양	꿈꾸는학교
충북	단양	한드미농촌유학센터
전북	임실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정읍	정읍농촌유학협의회 (자연학교, 산적소굴, 고모샘네)
	장수	철딱서니학교
	완주	열린마을농촌유학센터
전남	완도	울스약창조학교
경북	예천	시골살리아이들

	예천	아침연꽃농촌유학센터
	군위	간디유학센터
경남	함양	함양농촌유학협의회 (햇살네, 양파네, 봄바람네)
제주	제주	제주농촌유학센터

표 13 2014년 지원사업 선정 농촌유학시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촌유학에 지원되는 금액은 2012년 160백만 원에서 2013년 358백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2014년 320백만 원으로 조금 하락하여 년 평균 280백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이를 수혜 시설 숫자로 평균내면 24백만 원을 상회하는 금액이다.

최근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유학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전라북도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 더해 도비를 통한 특화 프로그램 비를 지원한다. 이는 아래와 같다.

<p>■ 농촌유학 협력학교 특화 프로그램비 지원(전라북도)</p> <p>□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4. 5 ~ 12월 ○ 사업비 : 100백만원(도비) / 학교당 10백만원 ○ 사업대상 : 농촌유학 협력 10개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 4월 현재 농촌유학생이 3명 이상인 학교 <p>□ 추진 방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학교 동참과 인근 학교로 확산을 유도하여 유학생 유치 활성화 ○ 시군을 통해 학교로 지원함으로써 시군의 관심과 참여 유도 ○ 학교 구성원 교체 시에도 지속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체계 구축 ○ 학교, 유학시설, 마을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진행 유도 							
시군	학교명	유학생수	연계 농촌유학시설	시군	학교명	유학생수	연계 농촌유학시설
정읍	수곡초	9	산적소굴	장수	동화분교	9	철딱서니학교



	칠보중	9	자연학교 고모샘네	입실	대리초	12	대리마을
	능교초	5	산촌유학맘터		덕치초	10	덕치초센터
김제	성덕초	6	학성강당		관촌중	5	대리마을
완주	동상초	7	열린마을		성수중	3	성수중센터

○ 사업내용 : 농촌 학교와 농촌유학시설이 공동으로 지역학생들과 함께 하는 방과후 및 특성화·체험프로그램 운영

○ 운영주체 : 농촌유학 협력학교, 농촌유학시설 공동 운영

출처: 전라북도 교육법무과 [2014 농촌유학사업 추진계획]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늘어났음에도 농촌유학시설에서 느끼는 재정적 어려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시설별 유학생 수나 운영주체의 재정적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각 시설별로 매년 유학생 수를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같은 해에도 방학기간 등 시기별로 유학생 수가 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도 없는 반면 고정비는 일정하게 지출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운영주체의 재정적 상황도 어떤 시설은 농촌유학이 유일한 사업인 곳이 있고 또 다른 시설은 마을사업의 일부이거나 농촌유학시설 자체에서 캠프나 체험사업을 병행하는 곳도 있다.

이처럼 현재 농촌유학은 시설별 각기 다른 상황들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 느끼는 곳이 많다. 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검증이 된 농촌유학시설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겠고 전라북도와 같이 지원센터, 농촌유학 홈페이지구축, 농촌유학 숙소건립 등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겠다.

다. 법률적 지원

1) 농촌교육 관련 입법 배경과 농촌유학

아직은 농촌유학과 관련된 입법이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농촌의 교육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법안들은 다양하게 제출되고 있으며 농촌유학과의 일정정도 관련성을 갖고 미약하나마 직간접적으로 농촌유학의 지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법안이 어떤 입법 배경을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2012년 이낙연 의원이 제출한 ‘농어촌 교육발전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농어촌학교의 학생 수 감소, 학교 간 통폐합 증가, 다양한 교육의 선택기회 부족 등으로 도시학교와 교육격차가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여건은 주민들의 이농을 부추기고,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의 이주를 저해하기도 한다. 이에 보다 적극적으로 농어촌 교육을 지원해 농어촌학교가 도시의 학교와 견줄 수 있는 교육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나아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소 면단위 1개교를 유지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장관에게 농어촌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계획을 설립하게 하고 시도교육감에게 시행계획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 여기에 농촌유학이 결합된다면 이 법률안은 무조건적인 농촌학교 유지를 넘어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2012년 신성범 의원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업에 대한 부담감, 학교폭력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추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 학생들의 농어촌유학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어촌유학에 대한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농어촌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이 우수한 학교를 별도로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농어촌학교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함양의 아토피 치료학교 지정이나 산청의 축구부 신설을 통한 축구유학생 증가 사례처럼 농촌학교가 각자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도시학생들의 역유학이 가능하리라는 취지다. 이 입법취지와 농촌유학이라는 제도가 맞물릴 때 실현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2012년 정진후 의원의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는 농어촌 지역 학생 수를 감소시키고 도시 지역의 학생 수를 증가시켜 도시지역의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도·농교육 모두를 열악하게 만드는 악순환 구조를 생



성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 법안은 농어촌학교에 대한 자율학교 지정, 기숙사 시설 설치, 방과후 활동 구축 및 학습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만들어 놓았다.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농촌유학과 만난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 2013년 김춘진 의원의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학령아동 감소와 농어촌 인구의 고령화 및 도심의 공동화 현상에 따라 생기는 작은 학교를 소규모 공동체학교로 지정하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 하려는 것이다. 소규모 공동체학교는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함께 통학구역 또는 학군을 넘어 학생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촌유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 이러한 입법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들은 2014년 12월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이전 회기에 발의되었던 유사법안들도 모두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통폐합이라는 기초를 세우고 있는 교육부가 별다른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신문, 2014.11.07.) 또한 위의 법률안들은 직간접적으로 농촌유학과 연결고리들을 갖고 있지만 농촌유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거나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농촌유학과 관련된 지원정책 마련과 이에 대한 지원법률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농촌유학 관련 지원 조례 현황 분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은 지자체의 지원조례로부터 온다. 농촌유학과 관련된 조례제정은 2012년 12월 전라북도가 최초로 「농산어촌유학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원센터(280-3388)와 홈페이지 구축(jbyes.go.kr), 학생과 학부모 농촌유학 숙소 건립 등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제주('13.7), 경북('13.11), 강원도('14.4)가 연이어 농촌유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들의 조례 내용은 농촌유학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설 지원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이것

을 축으로 내·외적으로 농촌유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구상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농촌유학센터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설립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4곳의 지자체들은 협의회 또는 위원회의 형태로 위원장(의장) 1명을 포함하여 총15명 이내의 위원들을 구성원으로 두고 있다. 지원인력 세부 자격요건은 지자체 별로 다르지만 관과 민에서 선발한 농촌유학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분	지원대상사업	협의회 구성
전라북도	<p style="text-align: center;">지원대상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 협의회 구성</p> <p>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행정부 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2. 도 교육감 추천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 위원회의 설치</p> <p>(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4.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어촌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경상북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p>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 협의회 구성</p> <p>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강원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사업 	<p style="text-align: center;">- 협의회 구성</p> <p>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p>

	<p>-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p>	<p>서 도지사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강원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어촌유학활동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	---

표 15 시·도별 농산어촌유학 지원조례 지원 내용

3. 문제점 및 개선과제

가. 운영방법의 보완

농촌유학은 유학생들의 돌봄에서 출발한다. 도시에서 살던 아이들이 농촌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 부모님을 대신하여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발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대부분의 유학센터들은 어린 유학생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유학센터들이 내·외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아동의 돌봄 및 교육, 교사의 채용 등 운영방법들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시기이다.

1) 생활교사의 채용과 교육

농촌유학이 다른 체험활동과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자연 속에서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데 있다. 그렇기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이를 담당할 (생활)교사의 역할은 아이들의 돌봄에서 교육적 가치의 전달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유학센터들은 주변의 소개 등으로 교사들을 충원하고 있다. 알음알음식의 채용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한 불협화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개인적인 인맥에 기대



다보니 인력풀의 한계나 전문성의 문제를 벗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많은 활동가들은 채용에서부터 연수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렇기에 아이들은 생활교사의 역량에 따라 상이한 교육적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촌유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생활교사들은 온종일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유학생들의 등교시간에는 농사나 지역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므로 일과 쉼의 구분이 모호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낮은 급여와 미비한 복지제도로 인하여 이직률 또한 높다. 유학생들이 귀가하는 주말이나 방학에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유학생들이 있다.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상처받지 않도록 돌봐주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생활교사의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번 있는 휴일을 보내지 못하고 재충전의 기회 또한 쉽게 가지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보니 활동가는 에너지와 기운 관리도 중요하게 느낀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전문성에 한계를 느끼거나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교육학 서적이거나 심리학책들을 들여다보거나 주위 선배교사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보다 근본적으로 농촌유학 생활교사로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크다.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수많은 농촌유학센터 활동가들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신규 활동가들의 발굴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개별 시설로 파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하지만 농촌유학시설의 특성상 생활교사를 연수 보낼 프로그램을 개별 실행지에서 만드는 것도 어렵고 그러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개별 농촌유학 실행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전문화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당장은 자체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여는 프로그램에 생활교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시설들도 있다. 부족함을 강하게 느끼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으로 교원연수를 갈음하게 된다.

그렇기에 신규 농촌유학 교사들의 선발 및 교육, 현재 활동 중인 활동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지방 정부차원의 지원과 협조가 절실히 요구된다.

개별 시설들의 교사채용과 연수에 관한 지원을 확대하거나 중앙 차원의 워크숍 또는 연수회 형태의 과정을 거쳐 농촌유학의 현장에 파견될 활동가들의 기본 소양교육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 생활지도 방안 등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농촌유학 시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학센터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학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농촌유학 시설들을 만들도록 정부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2) 유학생 모집과 홍보

대부분의 농촌유학센터들은 입소문을 통해 신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물론 생협이나 귀농단체, 대안교육기관과 같은 곳에 홍보를 하기도 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전북의 경우 관에서 홍보를 도와주기도 한다. 방학을 이용해서 다양한 형태로 캠프를 열고, 이를 경험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유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농촌유학 시설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한 알림이나 농촌유학을 경험한 부모님들의 입소문에 의해 그 인원이 충당되고 있다. 단순한 형태의 홍보 전략으로 인하여 많은 유학센터들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농촌유학센터에서 설명회 등의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파급력이 크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도 이러한 홍보방법을 통해 유학생 숫자가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으며 온라인 홍보와 같은 방법은 홍보수단 자체를 불안정하게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방송에 노출된 시설들과 그렇지 못한 시설들 간의 유학생 유치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다보니 일부 유학센터는 시설과 인력 등의 이유로 입학을 원하는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경험을 겪기도 하였다. 농촌유학이 TV 등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농촌유학의 모습들이 미화되거나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확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대중매체에 노출빈도가 높은 유학시설들과 그렇지 못한 곳들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따라서 지원의 초점을 재정지원에서 보다 정책적 지원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다.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농촌유학을 필요한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도시지역의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유학비를 지원하는 또한 지자체 및 교육청들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농촌유학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적정 프로그램 개발

전국의 농촌유학 시설들은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방과 후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모은 것에 불과하다. 도시의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농촌유학이라는 틀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반성을 현장에서도 많이 느낀다. 따라서 농촌유학다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크다. 특히 시골살이와 맞닿는 절기와 세시풍속에 따른 농촌생활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 개발과 확산이 요청된다. 농촌유학이라는 특화된 주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다. 농촌유학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아이들이 꾸준히 참여할 수 있는 농촌 체험 활동을 개발하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인증해주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들이 결과물을 만들어 냄으로써 교육적 성취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촌유학에서의 프로그램 구성 및 개발과 관련한 사항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기로 하자.

4) 재정적 지원

농촌유학 시설들의 유학비용은 월 약40만에서 약10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책정되고 있으나 대부분 평균적 60~70만 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개인이 농촌유학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현재로서는 센터형으로 전환하거나 농가들이 연합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처음부터 센터형을 시작하거나 농가들을 묶어내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소규모 농가형 농촌유학은 그 나름대로 장려될 수 있는 재정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센터형에 비해 농가형들은 시설이나 안전과 관련하여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협의회나 중앙지원단 같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농가형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센터형은 센터형대로 유학비가 전체 운영비용의 대부분을 충당하다보니 유학비용은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될 수밖에 없어 학부모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

다. 농촌유학과 함께 동반되는 유기농이나 친환경 이미지를 지키고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식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중에 식자재 구입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도 어려움 중 하나다. 가장 큰 어려움은 난방비 지출이다. 유학생 숫자와 관계없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난방이 필수적인데 많은 시설들이 효율적인 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지출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맞는 시설 및 재정 지원도 필요하다.

나. 제도적 개선과제

1) 지방자치단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료들과 자체 집계를 통해 살펴보면 전국의 농촌유학 실행지는 44 곳, 유학생 수는 30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렇듯 각 지역에서 농촌유학 시설들이 늘어나고 지자체들이 농촌유학의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례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2012년 12월,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농촌유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다음 연도인 2013년 제주도와 경상북도가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도에는 강원도가 농촌유학 지원조례를 설립하였다. 특별히 전라북도는 활발한 지원을 통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살리기의 순기능을 실천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서울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농촌유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숙소를 건립하는 등 적극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리하여 중앙부처로부터 국비를 확보하였고 농촌지역의 폐교 위기 학교들을 정상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들의 농촌유학 지원 조례들은 유학생 수를 감안했을 때 지원의 시기와 폭이 늦어지고 있다. 농촌유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귀촌인 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지자체들의 발 빠른 대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앞서 지적한대로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농촌유학을 선택했을 때 학생모집이나 선호도, 교사양성 및 재교육, 시설 설비 및 교체 등에 있어 훨씬 좋은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례 제정에 뒤 이어 이를 구체화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실천을 요청한다.

2) 중앙정부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 위 계층, 한 부모 자녀, 조손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농촌유학을 희망하게 될 경우 이들을 위해 유학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아이들이 농촌유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고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며 그 지역의 인재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시기이다. 아이들에게는 농촌유학 장소가 제2의 고향이 되고 생활교사들은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지역의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보는 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촌공동체에 도움이 된다.

또한 건전한 농촌유학 활동가를 양성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에 대한 이론교육과 유학시설의 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내용 등을 숙지한 활동가가 시설에서 아이들을 만나는 것은 농촌유학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현재 개별 시설에서 필요한 농촌유학 전문성 강화 교육도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없이는 기대하기 어렵다. 전국에 여러 시설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시점이다.

특히 농촌유학은 그 특성상 교육과 농촌이라는 두 개의 전혀 다른 사안을 열쇄말로 우리사회가 처한 다양한 문제들을 동시에 풀어내는 복합 솔루션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지원이 대부분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진행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교육부처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또 다른 숙제가 된다. 지역에서 농촌유학을 통해 학교를 살리고 교육을 살리는 역할을 했음을 설득하고 협력관계에 나서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농촌유학이 더 현실성있고 발전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Ⅲ. 농촌유학 사례분석

1.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운영사례

가. 설립동기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마을은 매년 거듭되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마을의 활력을 잃게 되어 마을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지역학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12월1일부터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의 목표는 첫째, 혁신학교(대리초, 관촌중)와 연계한 농촌유학센터 운영을 통해 도시민의 교육요구를 수용함으로써 도농교류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 둘째,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을 창출하고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고 넷째, 지역학교를 활성화하며, 다섯째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대리초등학교는 신평면 소재로 1면 2개교에 속한다. 2009년 입학생 0명 재학생 17명까지 감소하면서 1면 1교를 유지하려는 정부의 학교통폐합 정책에 맞춰 자연스럽게 통폐합 대상이 되었다. 2009년 대리초에 부임한 최호영 교장은 학교통폐합을 막고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좀처럼 학생 수는 증가하지 않았고, 학교는 자연스럽게 폐교절차에 들어가는 듯했다. 그러던 2009년 11월 임실지역으로 귀촌을 결심한 교사 3명과 학교장, 마을대표, 학부모는 학교를 활성화하기로 합의하고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나. 농촌유학의 도입

2009년은 작은 학교 통폐합이 활발하게 이뤄지던 시기였던 만큼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하였다. 당시 전북 완주군 양화분교와 강원도 양양군 공수전분교의 사례를 접한 대리초등학교는 농촌유학을 적극 도입하기로 하고 양양 공수전분교와 함께 농촌유학을 하고 있는 철딱서니학교를 직접 찾아가 벤치마킹을 한다.

이후 대리초등학교는 2010년 6학급을 목표로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유학을 도입하고 마을과 협조를 이루어냈다. 학교는 다양한 방과 후 활동과 저

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은 학생들이 전입할 수 있도록 마을 부모와 마을 빈집을 협조한다. 그리하여 대리초등학교는 2010년 3학급에서 6학급으로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학교규모를 갖추고 폐교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신입생수	6	0	11	11	9	14	13
전입생수	3	28	22	17	26	12	8
전출생수	4	3	13	10	4	3	4
유예	0	0	0	1	0	0	1
졸업생수	11	4	9	11	14	12	15
증감학생수	-6	+21	+11	+6	+17	+5	+8
재학생수	33	17	57	74	89	90	95

표 16 대리초등학교 학생 수 변화 추이(2008~2014학년도)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1학년	0	13	15	11	16	13
2학년	2	5	15	15	13	14
3학년	3	9	10	16	21	15
4학년	4	10	13	13	14	19
5학년	4	11	10	17	12	19
6학년	4	9	11	14	14	15
계	17	57	74	86	90	95

표 17 대리초등학교 학년별 학생 수 변화 추이(2008~2014년도)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를 추진하기 위해 마을을 중심으로 유학센터 건립추진 위원회가 구성된다. 마을 이장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대리초 교장과, 교사가 추진위원회에 합류하여 사업추진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임원회의와 임시총회를 거쳐 임실군과 실무협의를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건립을 추진하게 된다. 건립추진과정에서 마을과 학교 지자체가 긴밀한 협력을 이루었으며, 임실교육청이 협의에 참여함으로써 민·관·학이 농촌유학운영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고 전국 최초의 모델인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를 건립하게 된다.

년월일	추진내용	회의내용	회의장소
2010.09.11	대리마을임원 회의	•대리마을산촌유학센터건립 최초제안	대리마을회관
2010.09.25	대리마을임시 총회	•대리마을산촌유학센터건립 추진결의	대리마을회관
2010.10.04	대리마을임원 회의	•대리마을산촌유학센터건립 추진위원회구성	대리마을회관
2010.10.29	임실군간담회	•임실군수 간담회, 유학센터건립추진설명	군청회의실
2010.11.15	도교육감면담	•임실교육특구제안(부군수,임실교육장)	교육감실
2010.11.16	신평면간담회	•유학센터건립 추진설명(면장,군의원)	면장실
2010.12.22	임실군	•유학센터사업확정(본예산2억)	
2011.05.06	기공식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기공식	대리214-16
2011.08.26	준공식	•농촌유학센터 준공식, 센터장임명장수여	대리214-16
2012.02.21	대리마을임원 회의	•농촌유학센터 말목회 보전등기의 건	대리마을회관

표 18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건립과정

현재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전북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97-1번지에 위치한다. 유학센터는 2009년 12월1일 개소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 건물은 2010년 대리마을과 대리초등학교, 그리고 임실군이 삼자 협력하여 건립하였다. 2014년 10월 현재 17명의 유학생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p>□센터건립 : 대리마을토지, 군비2억</p> <p>□센터연혁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12월 1일 개소 • 2011년 8월19일 건축물 등록(교육용연구시설) <p>.대지면적 : 530m²(소유자 : 대리말목회영농조합법인)</p> <p>.건축면적 : 120.42m²(소유자 : 대리말목회영농조합법인)</p>
--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전북임실군신평면대리로197-1 수용인원: 9명 (유학생 8명, 생활교사 1명) 운영인력 : 5명 준공 : 2011.8.19 시설 : 생활실3, 화장실2, 거실1, 주방, 마당, 텃밭

□운영인력현황

순	소속	직책	성명	성별	비고	자격증유무
1	유학 센터	센터장	양성주	여	운영전담	사회복지사,조리사
2		사무장	임성훈	남	사무전담	중등교사
3		생활교사	김숙희	여	생활전담	독서지도
4		시설관리	양기준	남	시설관리	대형면허
5		청소관리	강정례	여	식자재,청소관리	무
6	대리초	교육기부	양성호	남	학습·생활지도	초등교사
7	지사초	교육기부	구홍모	남	회계관리	초등교사

□유학생현황

2014 유학생 현황						합계(명)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	1	1	5	5	4	17

순	구분	성명	현재학년	성별	지역	유학기간
1	현재	염00	중2	여	서울	2012.01.01 ~ 현재
2	현재	박00	6	남	서울	2012.08.20 ~ 현재
3	현재	이00	6	남	서울	2013.02.14 ~ 현재
4	현재	이00	중1	남	울산	2013.02.27 ~ 현재
5	현재	김00	5	여	경기	2013.05.13 ~ 현재

6	현재	김00	6	남	경기	2013.05.13 ~ 현재
7	현재	박00	2	남	서울	2013.08.27 ~ 현재
8	현재	박00	5	남	경기	2013.08.30 ~ 현재
9	현재	신00	5	남	서울	2013.08.30 ~ 현재
10	현재	김000	중1	여	경기	2013.12.10 ~ 현재
11	현재	이00	5	남	경기	2014.02.17 ~ 현재
12	현재	정00	3	남	서울	2014.03.03 ~ 현재
13	현재	조00	5	남	전남	2014.03.03 ~ 현재
14	현재	안00	6	남	서울	2014.03.03 ~ 현재
15	현재	김00	중3	남	경기	2014.03.04 ~ 현재
16	현재	이00	6	남	울산	2014.03.05 ~ 현재
17	현재	백00	4	남	경기	2014.04.17 ~ 현재
18		윤00	6	여	서울	2009.12.24 ~ 2010.05.09
19		윤00	고1	남	서울	2009.12.24 ~ 2010.08.29
20		구00	6	남	서울	2009.12.24 ~ 2013.02.08
21		구00	중3	남	서울	2009.12.24 ~ 2013.02.08
22		임00	5	남	서울	2009.12.24 ~ 2014.02.28
23		김00	고1	남	서울	2010.03.02 ~ 2010.07.03
24		이00	고1	여	서울	2010.03.02 ~ 2010.10.24
25		좌00	고1	남	제주	2010.03.02 ~ 2010.10.24
26		김00	중2	남	서울	2010.03.22 ~ 2013.02.08
27		김00	중3	여	서울	2010.03.22 ~ 2013.02.08
28		이00	중2	여	서울	2010.07.05 ~ 2011.03.01
29		이00	중1	남	전북	2010.08.26 ~ 2011.08.30
30		이00	중3	여	전북	2010.08.26 ~ 2011.08.30
31		정00	중2	여	서울	2010.08.26 ~ 2013.02.08
32		안00	6	여	서울	2011.09.21 ~ 2014.02.28
33		전00	3	남	서울	2012.01.01 ~ 2012.02.28
34		전00	중2	남	서울	2012.01.01 ~ 2012.02.28
35		전00	고1	남	서울	2012.01.01 ~ 2012.02.28
36		이00	고1	여	전북	2012.01.01 ~ 2012.02.28
37		우00	중1	여	경기	2012.02.01 ~ 2013.02.08
38		김000	6	여	전북	2012.02.01 ~ 2013.02.08
39		이00	중3	남	전북	2012.02.01 ~ 2013.02.08

40		류00	중3	남	전북	2012.02.01 ~ 2013.02.08
41		이00	5	여	전북	2012.03.20 ~ 2013.02.08
42		이00	중3	남	경기	2012.04.05~2014.08.30

표 19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개요

다. 운영체계

1) 유학생 모집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의 유학생 모집은 대리초등학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8월과 1월에 이루어진다. 선발기준은 6개월 이상 센터에 입소를 원하는 학생, 아토피나 천식 같은 환경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학생, 타시도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유학생 정원은 20명이며 유학센터와 학교의 협의 아래 정원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다.

방법	내용	대상	인원	시간	장소
홍보지배포	홍보자료 제작 배포	학부모, 교사	1000명	연중	유학센터
설명회	유학센터 설명회	방문자	100명	연4회	대리초
	농촌학교 설명회	학부모,교직원	500명	연2회	전주교대
누리집	교육문화연구회 도담도담	공개	.	연중	유학센터
워크숍	전라북도 혁신학교워크숍	교사	500명	연2회	전북교육청

표 20 유학생 모집방법

2) 유학센터 재정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금을 유학센터 재정으로 활용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유학생 1인 40만원의 생활비로 운영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50만원으로 생활비를 인상하였다. 2012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유학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4년까지 지원금을 받고 있다.

구분	2010년	2011	2012	2013	2014
유학생수(평균)	14명	12명	14명	20명	17명
유학센터인력	2명	2명	6명	6명	5명
수익자부담합계	52,000,000	48,000,000	56,000,000	80,000,000	85,000,000
지원금	0	0	30,000,000	38,000,000	50,000,000
합계	52,000,000	48,000,000	86,000,000	118,000,000	135,000,000

표 21 유학센터 재정확보

※수익자부담 합계는 유학생 수의 변동, 반환금, 겨울방학 생활비 미지급을 제외하였음

인건비	식비	난방비	보험료·공과금	차량	프로그램	잡비	합계
48%	18%	10%	6%	5%	10%	3%	100 %

표 22 유학센터 재정 지출범위(2014년 기준)

라. 농촌유학 성공 요인과 어려움

1) 학교와의 협력

2010년 시작된 전라북도 혁신학교 운영은 농촌유학을 펼치기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대리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임실교육청과 임실군은 혁신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임실 교육특구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 대리초와 관촌중학교가 동시에 전라북도 1기 혁신학교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 이는 초·중 연계형 혁신학교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게 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리초등학교와 관촌중학교는 농촌유학의 필요성을 상호 인지하고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협력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결과 유학생의 증가도 이루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자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되고, 학교의 학생 수가 증가하여 유학생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농촌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교의 협력이며 농촌유학센터와 학교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점에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장과 학교장이 상호 업무협력을 맺어 농촌유학이 지속가능하도록 상호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는 단순한 협력을 넘어 학교장이 바뀌어도 농촌유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동시

에 농촌유학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모델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와 대리초의 모델은 전라북도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 전북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전라북도는 2014년 현재 10개의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유학 협력학교는 학교장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 특화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로 지원되기에 예산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학교 역시 농촌유학에 대한 책임감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면에서도 매우 좋은 사례이다. 이러한 지원으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유학생과 도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고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협력학교	
대리초등학교	관촌중학교
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87 6학급, 병설유치원 초등74명, 병설유치원11명 2010년 전라북도 혁신학교로 선정	전북 임실군 관촌면 사선10길 23 6학급 중등128명 2010년 전라북도 혁신학교로 선정

표 23 농촌유학협력학교

2) 귀촌한 교사들

농촌유학의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의 협조이고, 학교의 협조에서 핵심은 교사이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이점에서 강점을 가진다. 대리초 활성화를 위해 학교장이 앞장서고 교사들이 뒷받침을 하였다. 그 뒷받침을 한 교사들 3명은 2010년 대리초에 부임하면서 임실로 귀촌해 살고 있다. 지역에 살면서 교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우선 학교장과 교사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역에 살기 때문에 학교와 농촌유학에 더욱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 농촌유학을 실행하자고 주장한 이도 바로 이 3명의 교사였다. 그 이후로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교육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의 오늘은 이들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3) 재정적 어려움

농촌유학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여건이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설립초기부터 2013년까지 학부모로부터 유학비용을 월 40만원씩 받아왔으나 2014년에는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른 농촌유학 실행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귀촌 교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사연구회(정식명칭은 ‘교육문화연구회 도담도담’이다.

<http://cafe.daum.net/jbimsil>)의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 물론 여기에 학교나 교육청의 협조도 한몫을 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여건은 안정되지 못했다. 자구책을 세우기 위해 유학센터 센터장을 포함 생활교사 3명은 유학생이 학교에 등교해 있는 시간을 활용해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이 활동에 참여시켜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이루었다.

센터 직원과 지역 주민들이 협력했던 경제활동의 내용은 방과 후 시간에 학교를 방문하여 제과제빵 수업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맛있는 학교’ 프로그램이었다. 이를 통해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센터 운영비의 확보가 불안정한 구조에서도 유학센터를 운영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림 3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중심이 되어 설립한 찾아가는 맛있는 학교

4) 실행상의 난점과 과제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가 생겨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학교와 마을의 협력, 그리고 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

첫째는 농촌유학생에 대한 주변의 편견이다. 해외유학은 부러워하면서 농촌

유학에는 편견을 가진다. 아이나 부모 중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촌까지 왔을 거라는 편견이 그것이다. 이런 의식의 바탕에는 농촌이 가지는 패배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존재한다. 여기에 더해 대리 지역 아이들이 아닌 타 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역차별 논란이 생기면서 농촌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직도 존재한다.

둘째로 학교장과 교사의 근무 연한이 있어 전보 이동이 발생하는 점이다. 내년에는 대리초 교장의 정년퇴임이 있고, 근무가 만기된 교사가 학교를 떠나야 한다. 이렇게 되면 흐름이 끊기거나 소통이 되지 않아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만들어 놓았으나 그래도 학교장이나 농촌유학을 이해하는 교사의 근무지 이동은 아쉽기만 하다.

셋째 장기 농촌유학생에 대한 고민이다. 농촌유학이 6개월부터 1년에서 2년, 3년씩 장기화 되고 있다. 이는 농촌학교의 장점도 있지만 대입 제도 가운데 농어촌특별전형이 있어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유학생 부모와 유학센터 사이의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학생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성장하는 변화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현재까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넷째 경제적인 안정이다. 유학비와 지원 사업에 의지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농촌유학은 지속성을 가지기 어렵다. 더구나 농촌유학에 대한 기대 수준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물가상승까지 겹쳐 농촌유학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를 이루기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유학생 수의 불안정성, 방학 기간에는 유학비가 들어오지 않아 주기적으로 불안정해지는 재정상황 등은 유학센터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조에 놓이도록 만들고 있다.

마. 프로그램

1)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대리초등학교는 2011년 전라북도 1기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학교 교육과정에 상당한 변화를 이루었다. 대리초등학교는 지역사회 협력을 중심 정책으로 삼아 느리더라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 슬로스쿨(SLOW SCHOOL)을 주제로 운영하고 있다. 대리초등학교는 특히 대리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방과후 활동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마을의 역사와 자연 환경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또한 대리초등학교는 농촌유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저녁 돌봄교실과 주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는 유학센터 운영예산에서 지출해야 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간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유학센터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 전라북도 혁신학교 지정
 -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7천만원 지원
- 교육과학기술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학교 선정
 - 2011년 ~ 12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1억원)
 - 2011년 ~ 12년 전라북도교육지원청 지원(6천만원)
 - 농촌유학생, 마을학생 돌봄교실 운영(방과후, 야간, 주말)
 - 마을주민 일자리 확대
- 자립활동
 - 지역농산물 활용을 위한 ‘양성유통’ 회사설립(유학센터장)
 - ‘찾아가는맛있는학교’ 회사설립(유학센터장,지역주민,학부모 4명)

표 24 대리초등학교 프로그램 운영현황

2) 지역 연계 프로그램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농촌지역이 낙후되었다고 인식되는 것과 달리 지역에는 상당히 우수한 전문가와 기관들이 많이 있다. 지역의 다양한 기관들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학센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을 통해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지역	기관명	기관성격	연계.협력 사업내용	협력내용
관내	한국수자원공사	공기업	섬진강 육영사업	예산지원
	예원예술대학교	학술기관	방과후수업,바우처사업	인력지원

	필봉농악보존회	예술단체	풍물,창극,연극,벽화	인력지원
	오궁리미술촌	예술단체	미술,방과후수업 인력지원	인력지원
	관촌청소년수련관	공공기관	방과후	시설지원
	임실치즈마을	민간단체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임실문화원	비영리단체	전통교육,활쏘기	프로그램 지원
관 외	전북도립미술관	공공기관	미술교육,전시회,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
	국립전주박물관	공공기관	역사교육,전시회,교사연수	프로그램 지원
	전주교대초등교육연구소	학술기관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인력지원
	(사)생태건축문화연구회	비영리단체	방과후수업,교사연수	프로그램, 인력지원

표 25 연계 및 협력 기관

3) 유학센터 자체 프로그램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학교와 지역을 연계한 프로그램 외에 자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것의 핵심은 자연과 생태이다. 자연 속에서 생태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절의 변화에 맞춰 텃밭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며 흙벽돌로 지어진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도시에서 누렸던 소비적인 습관을 버리고 불편함을 슬기롭게 해결하며 생활한다. 여기에 자기주도적 학습과 자치활동, 글쓰기를 통합한 동아리활동 운영은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고 있다.

시기	내용	형태
1~2월	•동아리활동(다모임,시공부)	주말운영
	•장승만들기 및 목공예	주말운영
	•대리마을 노인정방문	년1회
3~4월	•지역문화답사	월1회
	•동아리활동(다모임,시공부)	주말운영
	•장승만들기 및 목공예	주말운영
5~6월	•섬진강 탐사	월1회
	•행복한직업학교강연회	년1회
	•동아리활동(다모임,시공부)	주말운영
	•장승만들기 및 목공예	주말운영
7~8월	•가족캠프(1박2일)	학교지원
	•장승만들기 및 목공예	주말운영
	•여름방학캠프(2박3일)	집중운영
	•동아리활동(다모임,시공부)	주말운영
	•장승공원조성(2박3일)	집중운영
9~10월	•동아리활동(다모임,시공부)	주말운영
11~12월	•사랑의 연탄나눔	학교지원
	•동아리활동(다모임,시공부)	주말운영
	•겨울방학캠프	집중운영

표 26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연간 프로그램

바. 시사점

1) 마을과 학교와 함께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가 6년째 운영되어 오는 동안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뒤따랐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고비도 겪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유학센터를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마을과 학교의 도움과 협력에서 나왔다. 농촌유학이 마을과 학교를 따로 두고 운영된다는 일은 적어도 대리 마을의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농촌유학의 기반이 마을이고 아이들은 학교를 통해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마을과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되고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우리나라 농촌유학의 한 가지 전형을 만들어낸 셈이다.

2) 지역인재 준비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는 농촌의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인재를 키운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시행 중이다. 농촌유학의 시작이 학교와 마을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면, 그 끝은 농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향후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를 중심으로 교육귀촌지원센터와 농촌유학원을 설립하여 임실을 농촌유학특구로 조성하려 하며, 농촌유학원을 중심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실현할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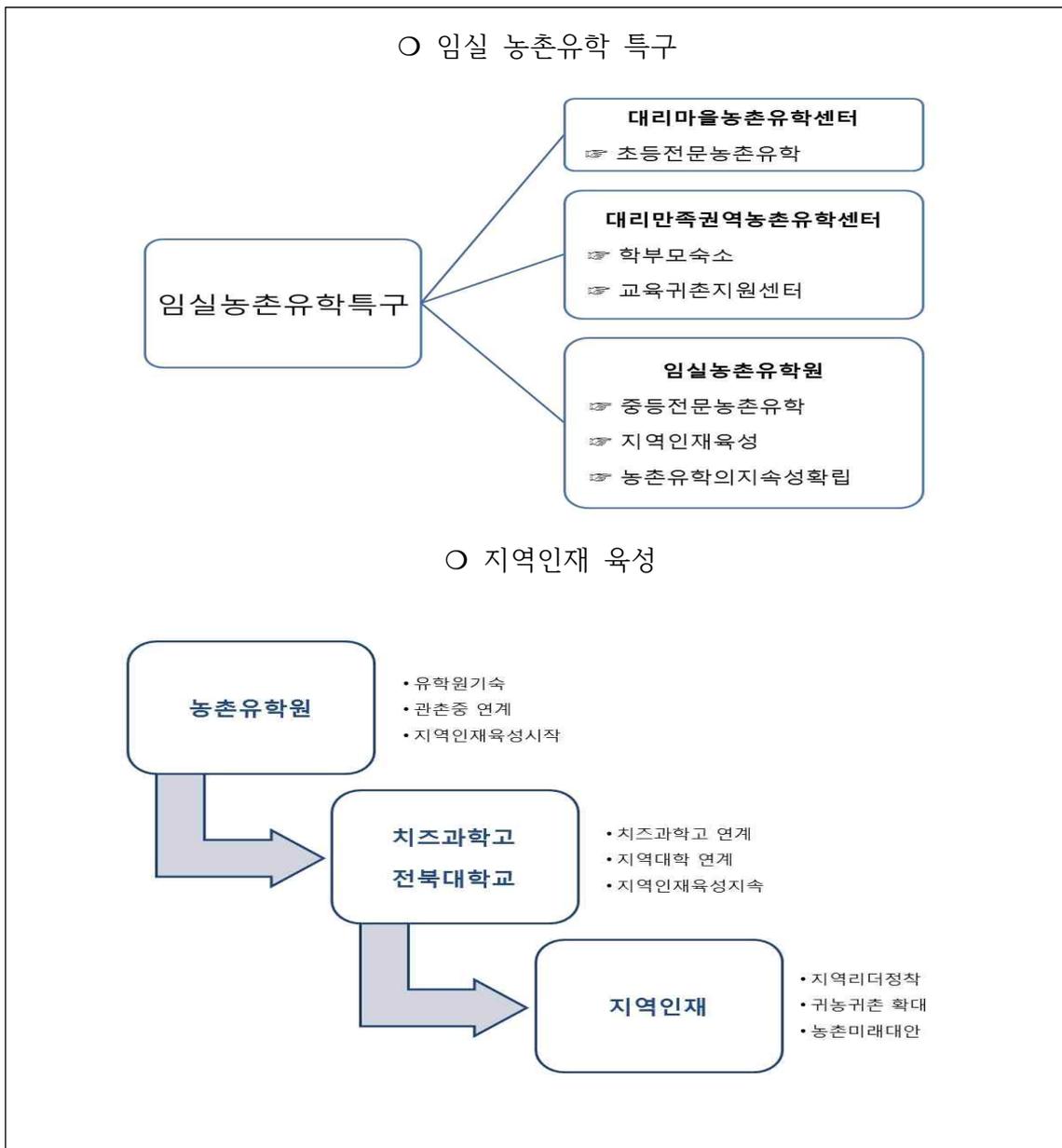


표 27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비전

2. 소호마을 산촌유학 운영사례

가. 설립 동기

울산 울주군 상북면 소호마을은 줄어드는 학생 수로 인해 해마다 소호분교 폐교 논의가 나오게 되었다. 소호분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해왔으나 더 이상 아이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폐교를 막을 길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마을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을을 살려 농촌 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였다. 또한 마을 밖에서는 무한 경쟁 교육 구조에서 지쳐가는 도시 아이들에게 행복한 시골 생활을 통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갔다. 소호마을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과제, ‘시골 작은학교(마을) 살리기’라는 지역적 과제와 ‘도시 아이 살리기’라는 교육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촌유학을 주목하게 되었다. 농촌유학은 도시 부모들이 당장 귀촌하지 않아도 아이들에게 자연이라는 선물과 시골의 작은 마을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게 할 현실적인 방안이었다. 또한 마을에서도 학생이 줄어들기만 하는 소호분교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를 계기로 자녀를 둔 귀촌 가정들을 유도하여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겠다고 보았다. 이에 소호마을에서는 활동가, 농가부모, 지자체, 교육청, 학교,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활성화의 모델인 ‘마을공동체형 농촌유학’을 만들고자 (사)아이누리 산촌유학센터를 설립하게 되었다.

마을 기본현황

- . 가 구 수 : 150호(농가: 75 호, 비농가: 75 호)
- . 인 구 수 : 306 명 (남: 126 명, 여: 170 명) * 유아 8명, 초중고생 63명
- . 경 지 : 밭 11.7ha, 논 26.9ha
- . 주 요 산 물 : 배추, 감자, 사과, 산채, 소

단체 현황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명 칭	회원 수	주요활동내용
부녀회	30	- 마을봉사활동 및 공동자금조성사업
마을대동회	마을주민	- 마을발전협력단체, 마을 봉사 - 대동총회
소호절임배추 작목반	22	- 공동 육묘 및 재배 기술 공동 연구 - 절임 배추 판매
소호사과 협동조합	7	- 재배 기술 공동 연구 - 생산 협력 및 공동 판매
소호아동센터	19	- 소호마을 아동 보육
소호산촌유학센터	18	- 농촌유학생 돌봄 및 교육 - 착한캠핑장 운영
(주)소호리고현산 영농법인		- 도시민 녹색농촌 체험 활동

표 28 소호마을 현황

이름(부락)	활동 분야	이름(부락)	활동 분야
송영재(와리)	목공예, 도자기공예	정성공(당리)	배드민턴
김숙자(태종)	퀼트	우명희(와리)	어린이책 활동가
유영순(와리)	야생차	임형우(와리)	숲체험, 전 태권도 관장
손성호(대리)	밴드 기타리스트	여태종(와리)	패러글라이딩
이선영(와리)	전 환경연합 활동가, 먹거리 교육	이수양(와리)	현 초등교사, 산악자전거
백무산(대곡)	시인	류재근(대리)	영어회화
김정화(대리)	전 생협 이사장	현은선(태종)	스텔라미술관 화가
이복순(와리)	어린이책 활동가	서민정(와리)	영어
이정자(당리)	집단심리치료	박현옥(대리)	현 초등교사
전인애(와리)	현 초등교사	김진영(당리)	미디어교육
손명진(당리)	미디어교육	강나영(태종)	미술
심형숙(당리)	중국어회화	이명화(태종)	환경교육, 미술
염정배(와리)	축구	이덕진(대리)	현 초등교사, 야구
유수남(대곡)	한옥 짓기	박영화(대리)	뜨개질

표 29 마을 인적자원 현황

소호분교는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에 위치한 작은 학교이다. 소호분교를 가기 위해서는 상북면 궁근정리를 지나 경북 경주 산내면을 거쳐 큰 고개를 넘어야만 다다를 수 있는 산골에 위치해 있다. 소호분교 주변은 고현산, 백운산, 문복산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고현산으로부터 흘러내린 시냇물이 학교를 휘감아 도는 아름다운 청정지역이다. 학교 운동장 가운데는 수령 400년의 거대한 느티나무가 있어 학생들의 쉼터가 되고 체육관이 되기도 한다.

1923년 사설강습소로 처음 개소한 이래 한 때 학생 수가 100명이 넘기도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어 2008년 22명에서 2009년 15명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였고, 2010년에는 1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었다. 당시만 해도 해마다 통폐합을 위한 폐교 설문지가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곤 했다. 그런데 2010년 농촌유학생 전입과 농촌유학 활동의 직접적 효과로 귀촌 가정이 들어오면서 전교생이 16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2012학년도에는 마을 아이 17명(농촌유학 확산에 따른 귀촌 정착아동 13명)과 농촌유학생 17명으로 전교생이 34명에 이르렀고, 올해 2014학년도에는 전교생이 44명으로 급증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소호마을 토박이라 할 주민들의 자녀가 0명이 되었다. 이로써 소호분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은 2010년 이래 귀촌한 가정의 아이들 28명과 농촌유학생 16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교육청에서도 소호분교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2013학년도 10월에 교실 4칸을 신축하였다. 2014학년도에는 수 십년 만에 복식학급이 해소되고 전 학년 6학급이 개설되어 소호분교생들의 교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기에 이른다.

나. 농촌유학의 도입

2006년, 대안교육연대, 민들레 출판사 등이 일본의 산촌유학을 학습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이 새로운 흐름을 한국에 소개하였다. 이어 2007년에는 (사)생명익숲가꾸기 국민운동과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의 핵심 사업으로 귀농운동본부, 작은학교교육연대 등과 함께 농촌유학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에서 시범운영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김수환 소호산촌유학센터장이 함께 했다. 그리고 2008년, 소호마을에서 소호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다.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선 마을의 아이들을 돌볼 필요가

학기별 유형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고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토박이 아동	9	9	4	4	4	4	1	1	0	0	0	0	※2014년부터 취학 대상 토박이 아동이 없음
귀촌 가정 아동	1	4	8	10	11	13	15	23	28	28	30	35	※귀촌 가정을 유도하기 위한 소호분교 교육 환경 개선 및 공동 주택 등의 대책 필요
산촌 유학 아동	3	3	2	6	16	17	11	14	10	16	20	20	※유학생의 기본적인 생활은 농가에서 하고 각 농가에는 유학생을 2~3명씩 배정함
소호 분교 전교생 수	13	16	14	20	31	34	27	38	38	44	50	55	※한 학급당 10명~12명 정도로 60명 규모의 아름다운 마을 학교 전망

그림 4 소호분교 학생 수 변화 추이 현황과 향후 전망 내역

있었다. 2009년에는 김수환 산촌유학지원센터 대표와 소호분교 교사들, 주민들, 귀촌농가 등이 십 수차례에 걸쳐 소호마을 산촌유학 준비모임을 갖게 된다. 그리고 2010년 드디어 세 명의 도시 아이들이 소호마을에 살러 오게 되면서 소호마을 산촌유학이 시작된다.

2008년 5월, 영남알프스 지역에 농촌유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밀양산동 지역아동센터를 개소한데 이어 소호마을에서 건물을 임대받아 “소호지역 아동센터” 운영을 시작하였고 2008년 7월, 마을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비캠프를 거쳐 2010년, 1기 농촌유학생 3명 입소. 귀촌가정 자녀 4명 소호분교로 전학하여 소호마을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2012년 4월, 울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선정(12명)된 후 2012년 5월, 마을법인 이사회에서 농촌유학 운영을 마을사업에 포함하기로 의결하였고 2012년 7월, 소호리고헌산 영농법인 ‘소호마을산촌유학생활관’ 건립하였다. 또한 2010년~2014년, 귀촌가정 21가구 입주하여 마을형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다.

다. 운영체계

○ 센터명 : 소호산촌유학센터

○ 주소 :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로 305

○ 전화번호 : 052) 264-0824, 264-0826

○ 이메일 : forestus@hanmail.net

○ 홈페이지 : cafe.daum.net/soho-sanchon

○ 형태 : 개인/1가구 2가구이상 센터 복합형(센터+농가)

○ 운영조직명 : (사)아이누리 소호산촌유학센터

대지면적	120평	연면적	60평
건축년도	1998년	가용 방수	6개
욕실 수	4개	공동 공간	15평
농사여부	텃밭: 200평 논: 500평	마당	50평
층수	2층	건축형태	<input type="checkbox"/> 한옥 <input checked="" type="checkbox"/> 콘크리트 <input type="checkbox"/> 기타
이면도로		소유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임대 <input type="checkbox"/> 개인소유 <input type="checkbox"/> 마을(단체) 소유
교통편	학교와의 거리	1 km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차량 / 5분	
	병원과의 거리	1 km /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보 <input type="checkbox"/> 차량 / 5분	
	시외버스터미널	14 km /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 20 분	
	고속도로 IC명, 거리	15 km / <input type="checkbox"/> 도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차량 / 20 분	

○ 보건안전시설 현황

- 센터시설 및 학생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 유학생 상해보험 화재보험
- 안전사고 대비 사회적인 시스템

구분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	기타
보건소	소호보건소	김현숙	052)264-4269	
병원	연양보람병원		052)255-7114	
파출소	상북파출소	이연걸	052)262-0113	
사회단체	(사)아이누리	허달호		
학교	소호분교	오수홍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소호마을산촌유학센터는 농가와 센터가 복합된 마을형 농촌유학이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소호마을산촌유학 운영협의회에서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마을, 학교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농촌유학 활동은 (사)아이누리 소호산촌유학센터의 사무국 회의, 농가부모회의, 유학생자치회의, 유학생 학부모회, 소호분교와 유학센터 간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아이누리 소호산촌유학센터에서 담당한다.

○ 활동가 현황 : 6명(센터장, 상근자 3명, 프로그램교사 2명)

순	지위/역할	성명	성별	비고
1	센터장	김수환	남	귀촌 16년
2	사무국장	김정화	여	귀촌 5년
3	재정/생활	김미진	여	귀촌 11년
4	대외협력	하경화	여	영남알프스 농촌유학 지원
5	밴드 전담	손성호	남	밴드기타리스트
6	품물 담당	정영순	여	국악교육

표 30 소호산촌유학센터 활동가 현황(2014년 10월 현재)

○ 농가 현황 : 6농가

순서	농가이름	부락	농가부모	배정유학생 수	농가 활동 기간
1	왕이모네	와리	유선옥	3	1년 2개월
2	산이네	와리	유영순	5	4년 6개월
3	달코미네	대리	김정화	4	3년 2개월
4	호미네	대리	김미진	2	3년 8개월
5	바위네	와리	이선영	2	신규
6	고무줄네	당리	선명진	2	신규

표 31 소호산촌유학센터 농가 현황

○ 유학생 현황 : 18명(2014년 10월 현재)

유학생 학년별 구분							합계(명)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3	1	3	3	0	6	2	18

표 32 소호산촌유학센터 유학생 학년별 구분

순서	성별	학년(나이)	성명	소속 지역	체류기간(년/월)
1	남	1(8)	서00	수원(뉴욕)	신규
2	남	1(8)	박00	기장	6개월
3	남	1(8)	최00	울산	신규
4	여	2(9)	한00	울산	1년 8개월
5	남	3(10)	서00	부산	1년 2개월
6	남	3(10)	한00	울산	신규
7	여	3(10)	허00	울산	신규
8	여	4(11)	석00	경기 광주	6개월
9	남	4(11)	박00	부산	신규
10	남	4(11)	서00	부산	신규
11	여	6(13)	김00	울산	2년 8개월
12	남	6(13)	김00	대구	2년 2개월
13	남	6(13)	윤00	부산	1년 8개월
14	남	6(13)	서00	부산	1년 2개월
15	남	6(13)	장00	경기 고양	신규
16	여	6(13)	박00	경기 고양	신규
17	여	중1(14)	김00	울산	2년 8개월
18	남	중2(15)	신00	대구	3년 2개월

표 33 소호산촌유학센터 유학생 현황(2014년 10월 현재)

○ 협력 네트워크

농촌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교와의 협력이다. 농촌유학의 도입기에는 학교 측에서 농촌유학생의 유동성을 우려하여 농촌유학에 대해 소극적일 때도 있었다. 그러나 농촌유학의 활성화로 소호분교생이 점차 증가하자 학교에서도 작은 학교 활성화를 방안으로 농촌유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유학센터와 소호분교가 공동으로 방과 후 또는 교육과정 내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농촌유학에 있어 마을과의 협력 관계는 학교와의 협력만큼이나 중요하다. 마을 어르신들, 마을의 학부모들, 마을 아이들과 유학생 및 유학센터의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즉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기 때문이다. 마을과의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해 왔는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명칭	시기	참가자수	마을과의 연계 내용
산촌유학 한마당	2012년	농촌유학 가족 및 마을 주민 150여명	농촌유학 활동을 마무리 짓고 마을공동체에서 농촌유학을 함께하자는 취지의 축제의 장
옛날사진전	2010년	마을 주민 및 손님 200여명	아이들이 마을 집 방문, 옛날사진 가을운동회 때 전시
산촌유학 예비캠프	여름/겨울	회 당 15명	캠프프로그램에 마을주민이 마을소개와 전통 놀이 진행, 농사체험 강사 역할, 농가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
소호마을 예비사회적기업	2012년	12명	산촌유학팀/체험마을팀/마을농장팀/마을식당팀
소호지역아동센터	2008년 개소~	전담3명, 자원봉사10명	보건가족부 지원 (사)아이누리 소속
체험휴양마을의 체험캠프 공동 운영	2012년	20명	농림부 지정 녹색농촌체험마을
소호산촌 협동조합 생산 및 체험활동	2013년	10명	소호야생차 가공, 생산, 판매 야생차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역할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참여	2011~2012년	마을주민	주부중창단, 밴드, 시교실, 어르신과 함께하는 풍물 등에 함께 참여
어버이날 행사	5월	100명	청년회,부녀회와 협력하여 마을잔치로 진행, 밴드 공연
정월대보름 행사	2월	200명	청년회,부녀회와 협력하여 마을잔치로 진행, 풍물 지신 밟기
소호분교 학부모회 정기회의	매월 첫주	21가구	농촌유학 상황 공유, 소호분교 현황 공유
소호마을살이 공부방	9월~11월	25명	소호마을공동체 만들기 강의 및 토론
마을카페 '마실' 운영	연중	마을 주민 전체	마을 엄마들의 카페지기 활동, 각종 문화 행사, 친목 행사 개최, 각종 마을 동아리 활동의 장(봄마실, 손수다, 책임어주는 엄마 모임 등)
할머니 농가	2013년	5농가	농촌유학생들이 한 달에 1주일을 할머니 농가에서 생활

표 34 소호산촌유학센터와 마을과의 협력

소호마을산촌유학센터의 유학생 모집은 소호분교에 전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8월과 2월에 이루어진다. 보통 부모와의 심층 상담 및 맛보기 캠프를 거쳐 유학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정원은 학교 학생 수를 고려하여 학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방법	내용	대상	시간	장소
리플릿배포	홍보자료 제작 배포	학부모, 교사	연중	유학센터
설명회	유학센터 설명회	방문자, 교사, 학부모	연2회	유학센터, 외부
누리집	소호마을산촌유학센터카페	공개	연중	유학센터
신문홍보	울산저널	울산시민	연4회	울산저널

산골살이 단기 캠프	1박 2일 동안의 계절별 산골살이 체험 캠프	학부모	연4회	유학센터, 소호마을
맛보기 캠프	4박5일, 학부모 캠프 실시	학부모	방학 중	유학센터, 소호마을
방학유학	2주, 학부모캠프 실시, 유학생들과 스스로 여행 참여	학부모	방학 중	유학센터, 소호마을

표 35 소호산촌유학센터 산촌유학 홍보 및 유학생 모집 방법

나) 유학센터 운영 원칙

- 센터 운영자, 사무국장, 센터 활동가는 사무국회의를 구성하여 정기회의를 가지며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운영 지침, 생활 지도 지침, 아동 관리, 농가 교육 및 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추진한다.
- 센터는 유학생만이 아닌 지역 아이들을 포함한 마을 전체 아이들을 교육, 지원하는 자세를 지닌다. 또한 센터 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교육 뿐 아니라 마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자세를 지닌다.
- 농어촌 유학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 활동가로서의 마인드는 물론 농어촌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 사람을 활동가로 채용해야 한다. 활동가는 지역 안에서 채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지역 주민을 활동가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을 갖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단 활동가들의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경제적, 정서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센터는 유학생들을 돌보고 교육, 상담하는 데 가장 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유학생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자세이다.
- 농가는 마을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농어촌유학의 철학, 목적, 센터의 운영 방침을 일정 정도 이해하고 함께할 의지가 있으면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르신 농가의 경우는 센터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농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 센터 활동가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농촌유학 진행 상황에 대해 마을과 학교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 센터는 연간 사업 계획에 맞추어 재정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수입과 지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재정의 공개는 실행 주체들의 협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한다.
- 센터는 안전 관리 및 사고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행 주체들에게 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센터 및 농가에서의 생활 원칙, 소통 원칙, 학습에 대한 원칙 등 기본 틀은 실행 주체들의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유학생들과 함께 정하도록 해도 좋다. 그럴 경우 스스로 정한 원칙에 대한 책임감을 높여 자율성을 키울 수 있다.
- 도시부모 모임을 통해 유학생들에 대한 소통은 물론 농촌유학 진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농촌유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아이의 변화에 동반하여 도시부모의 변화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한다.

소호마을산촌유학센터는 수익자 부담(유학비)을 원칙으로 하되 공모사업을 통한 지원금을 유학센터 재정에 활용한다. 연 초 농촌유학 비전워크숍을 통해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수립한다. 그리고 매월 회계처리를 통해 결산 자료를 작성하고 (사)아이누리 이사회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유학생수 (평균)	3명	6명	17명	16명	18명
농촌유학인력	2명	3명	5명	6명	6명
유학비	21,000,000	28,000,000	117,000,000	110,000,000	121,500,000
지원금	0	40,000,000	25,000,000	38,000,000	40,000,000
합계	21,000,000	68,000,000	142,000,000	148,000,000	161,500,000

표 36 소호산촌유학센터 재정 확보

※유학비는 유학생 수의 변동, 반환금, 방학기간 중 유학비를 제외하였음

※농촌유학 인력은 농가 부모를 제외한 인원임

인건비, 농가비용	유학생 생활비	난방비	보험료 ·공과금	차량	교육비	잡비	합계
49%	5%	8%	4.5%	5%	18%	10.5%	100

표 37 소호산촌유학센터 재정 지출범위(2014년 상반기 기준)

라. 프로그램

1)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 풍물 방과 후 프로그램 : 산촌유학센터와 소호분교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이다. 시골마을에서 풍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학생과 마을아이들이 우리의 전통을 이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 소호숲교실 프로그램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유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학교와의 공동프로그램이다. 숲교실 강사는 울산환경교육연구소 강사진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 소호마을은 무엇보다 아름다운 숲이 가장 큰 자랑이다. 그래서 다른 학교와 구분되는 소호분교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숲교실을 실시해보자는 의견이 학교와의 간담회 속에서 제안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향후 워크숍을 실시하여 숲교육에 관한 학부모들의 인식도 높이고 지속적으로 학교 숲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책 읽어주는 엄마 : 매주 수요일 아침마다 마을 엄마 여섯 명이 학교로 간다. 각 학년 마다 한 명의 엄마가 그림책을 읽어준다. 그림책을 읽어줌으로써 아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아이들의 생각과 느낌을 들을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 된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 준 후 유학센터 마을카페에 모여 책 읽어준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음 주에 무슨 책을 읽어주면 좋을지, 아이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서로 공유하는 자리를 갖는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2)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

- 유학생 협동조합 마을카페 운영 : 중등 농촌유학생들이 2014년 2월 마을 카페를 열었다. 한 해 동안 어른들 틈에서 배우고 익혀 만든 야생차를 판 수익금으로 출자금을 만들어 시작한 것이다. 직접 재료와 도구들을 구입하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학기가 시작되자 유학생들은 카페 운영을 힘겨워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마을 엄마들이 카페지기가 되어 도움을 주기로 했다. 결국 마을카페로 발전한 것이다. 이 카페에서 마을의 친구들, 선생님들, 이모들, 아저씨들을 만나며 유학생들은 마을에서 자라가고 있다.
- 스스로 여행 : 유학생 뿐 아니라 마을 아이들과 함께 떠나는 여행 프로그램이다. 스스로 여행은 말 그대로 아이들이 직접 계획하고 스스로 해 보는 여행이다. 첫해는 통영~서울까지, 그 다음엔 남해안을 따라 땅끝마을까지, 올해는 세 번째로 동해안을 따라 스스로 여행을 하였다. 마을 아이들과 유학생들이 함께 여행하며 더 친해지는 기회가 되고 같이 무언가를 해 보는 경험을 갖게 되었다.
- 마을 어른들과의 만남의 날 : 부락마다 경로당이 있는데 매 학기마다 인사를 드리러 간다. 아이들이 손수 만든 부침개를 들고 가기도 하고 떡을 해서 가기도 한다. 또 마을의 학부모들 모임 때 가서 유학생들 소개도 한다. 때로는 유학센터 행사에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짬뽕 공예 등을 배우거나 소호마을의 옛날이야기들을 듣는 자리를 가지기도 한다.

3) 유학센터 프로그램

- 목표별 프로그램 계획

목표 영역(어린 이상)	프로그램 유형	산촌유학센터 프로그램
지혜로운 아이(머리)	독서지도 프로그램	책 읽고 나누기/책 읽어주기
	학습지도 프로그램	저녁 묵학 시간
	농사이해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토요 집중 농사
	산촌생활 프로그램	떨감하고 장작패고 아궁이 불 때기

건강한 아이(몸)	바른 먹거리 프로그램	바른 식생활 교육
	체력단련 프로그램	아침 운동 실천하기
	체력단련 프로그램	마을 밖으로, 세상 속으로 (야영 및 여행 프로그램)
	생활습관 프로그램	기본 생활 습관 익히기
따뜻한 아이(마음)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학생 밴드
	숲체험 프로그램	소호 치유의 숲
	정서순화 프로그램	일기 쓰기, 편지 쓰기
더불어 사는 아이	지역봉사 프로그램	마을 일손 돕기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센터 자치회의
	공동체의식 함양 프로그램	유학생협동조합 마을카페운영

표 38 소호산촌유학센터 목표별 프로그램 계획

○ 연간 프로그램 계획

시기	테마	산촌유학센터	학교
1월	만남	겨울산촌유학맛보기캠프 겨울 프로젝트 수업 진행 겨울 스스로 여행 산촌유학생 모집 눈썰매, 얼음썰매	겨울방학
2월	출발	마을 정월대보름행사 참가(풍물) 4기 수료식, 소호어린이들의 작은음악회 산촌유학생 전학 완료, 농가 배정 소호산촌 일상생활 익히기 1년, 1일 생활계획표 만들기 새 학년 준비하기	개학 졸업식 발표회 수료식 봄방학
3월	관계	시골 학교, 시골 친구와의 만남 5기 입소식 및 환영회	개학 입학식

		소호마을에 인사드리기 봄 농사 준비하기	
4월	봄	고현산 등반 봄 농사 시작(감자 심기, 파종) 봄-학부모만남의 날 산나물 봄나물 캐기	현장학습 중간고사
5월	사랑	효소 담그기,백운산 등반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행사 봄 농사-텃밭, 모내기 준비	스승의날
6월	친구	열매 따먹기(오디, 체리, 앵두 등) 야생차 만들기 다 같이 모내기	기말고사
7월	여름	감자 캐기 여름산촌유학맛보기캠프 물놀이, 야영 여름-학부모 만남의 날	여름방학
8월	놀이	물놀이 방학프로젝트 수업 진행, 스스로여행 배추 파종	여름방학
9월	가을	배추 모종 심기 가을운동회 가을-학부모 만남의 날	개학 가을운동회
10월	감사	배추밭 가꾸기 산열매 줍기(밤, 도토리), 가을걷이 마을 일손 돕기(추수)	중간고사 현장학습
11월	농사	일손돕기(배추) 땀감하기,장작패기 김장 담그기	
12월	겨울	청국장, 메주 만들기 산촌유학 책 만들기 겨울-학부모 만남의 날	기말고사 겨울방학

표 39 소호산촌유학센터 연간프로그램 계획

○ 주간 프로그램 일정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아침	아침 농사, 식사도우미, 아침 운동						
학교 생활	학교생활은 즐겁고 알차게!						
방과 후	학교 방과후 유학생 밴드	학교 방과후 유학생 밴드	학교 방과후 치유의 숲	학교 방과후 풍물	격주: 도시 집으로 다녀오는 날		
					영화 / 인문학	집중농 사	
저녁	씻고 청소하기						
	묵학 시간(일기, 독서, 숙제, 학습) 취침 준비						

표 40 소호산촌유학센터 주간일정표

마. 시사점

1) 마을형 농촌유학으로 마을공동체 복원과 인간성 회복!

‘마을이 아이를 키웁니다’라는 바탕 위에 소호산촌유학센터는 아이들이 마을 공동체 안에서 보고 듣고 직접 몸으로 익힌 살아있는 배움을 밑거름 삼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실험과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과 시도는 마을공동체 재생을 통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는 치열한 경쟁, 개별화된 삶 등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을에서 이웃 간에 관계를 맺고 자연환경과 교감하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적인 관계를 복원한다면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아이들이 자라는데 꼭 필요한 조건이다.

아이들은 마을 안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주머니, 아저씨, 선생님, 또래친구, 자연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의 삶이 연결되어 있고,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알며, 각자가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가는 경험을 갖게 된다. 마을형 농촌유학을 통해 이러한 경험을 가지게 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사회가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 찾아가는데 도움 될 것이라 본다.

2) 마을 전체가 배움터가 되는 ‘마을 학교’

지금 소호마을산촌유학은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 맺음 속에 함께 있다. 우리는 마을 전체를 ‘배움’과 ‘나눔’이라는 키워드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으로 만들려 한다. 공동체적 요구를 채워가고 마을의 누구나 참여하여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마을학교를 세우는 일을 마을사람들과 함께 준비 중에 있다.

마을 학교 만들기가 이루어지면 아이든 어른이든 배움을 강요하지도, 강요받지도 않고, 스스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연스런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마을학교를 통해 아이들은 함께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커가게 될 것이다. 그 안에서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고, 마을은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3. 영국 숲학교의 사례와 시사점

가. 숲학교의 역사

영국의 숲학교(Forest School)는 숲을 포함한 야외에서의 활동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적 경험을 통해 균형적 발달을 이뤄나가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을 두고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 교육방식이다. 하지만 야외활동과 교육을 연계하여 각 단체별로 활약하던 기구들이 통합하여 영국숲학교협회(The Forest School Association)를 결성한 것은 지난 2012년의 일로 영국 사회 역시 그동안 등한시하던 야외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높이며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

영국 숲학교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려는 이유는 사회적 맥락과 교육의 유형이 다르기는 하나 농촌유학에서 참고할 가치와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이 자연, 숲, 야외에서 활동한다는 점의 교육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더 분명히 밝힐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의 야외 활동에 대한 강조는 이미 19세기 중반 러스킨이나 워즈워드 같은 낭만주의 문필가들의 저작물에서 자주 발견된다. 당시 이들이 찬미하던 자연의 숭고함,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 개인적 경험에 대한 존엄성 등의 대상을 떠올려보면 이러한 경향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독일에서 부흥

하던 ‘질풍노도’ 운동의 영향이 영국의 낭만주의와 결합되고, 무엇보다 유럽의 독일어권 지역에서부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던 페스탈로치, 프뢰벨 같은 아동중심주의 교육가들의 실천에 대한 정보가 퍼져나가면서 교육에서 자연이 지니는 가치가 더욱 부각되기도 하였다. 세 번째 영향은 대서양 건너 미국에서 밀려왔으니 소로우, 에머슨 같은 초월주의자들의 사상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들은 산업자본주의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산업산회의 비인간적 구조와 폐해에 반기를 들었으며, 자연 속에서의 영성 회복을 주창함으로써 성찰적 문명로의 전환을 꿈꾸기도 했다.

20세기 초중반에는 사회개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여파에 따른 대도시 빈민 지역 아동에 대한 복지와 교육이 큰 관심사가 되었다. 사회개혁가였던 마가렛 맥밀런(1860~1931) 여사는 런던의 빈민가에서 활동하면서 아동의 위생, 영양, 그리고 충분이 놀 수 있는 공간의 확보와 유치원 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다. 수잔 아이작스(1885~1952) 여사는 듀이와 피아제의 이론에 영향을 받았고, 학습 과정에 야외 활동을 더 많이 부여함으로써 아이들이 학습을 펼쳐갈 때에 가능하면 실생활을 통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그녀는 경험이 많은 정신분석가로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늘려나감으로써 그 의미를 터득’해 나가도록 돕는데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녀의 사상, 실천, 그리고 면밀한 관찰과 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숲학교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1차대전 이후에 일어난 ‘숲기술 친구들(Woodcraft Folk)’ 운동은 군사주의적 조직운영에 가까운 스카우트 운동에 반기를 들고 일어났는데, 자연과 가까운 야외 공간에서 살아가는 기술을 터득하자는 원리를 담고 있었다. 즉 이들은 목공(woodcraft)의 의미를 ‘숲기술’로 폭넓게 확장해서 자연과 인간 사이의 교감을 내밀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영국 초등교육에서 아동중심주의 이념을 폭넓게 받아들여 교육사에 있어 기념비적 역할을 했던 것은 정부가 발표한 플라우덴 보고서(1967)였다.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숲학교에서 도출된 것으로, 그 핵심 내용은 아동들이 그들 스스로 학습하고자 하는 내적 흥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놀이의 가치를 새롭게 인정하고, 야외 활동의 활용 폭을 늘리고, 발견을 통한 학습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동중심주의적 교육관은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수적 입장의 교육세력과 커다란 갈등을 초래했고, 협소한 교과 지식 중심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공립학교의 학습과정에서 자연 친화적인 활동과 내용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아동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지나친 우려 때문에 골목길에 나와서 동네 아이들끼리 어울려 노는 풍경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 혼자서 등교하는 것이 규제됨으로써 독립적 활동 역시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교육과정에서 환경교육이 주변으로 밀려나가던 추세였던 데 반해 교육계 밖에서는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특히 미국인 환경운동가들인 스티브 반 매트레의 <지구교육>과 조셉 코넬의 <나뉘 쓰는 자연>이라는 책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생태개념과 감각 지각적 경험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환경교육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나. 숲학교 운동의 의의와 원리

숲학교 운동은 일반 학부모들이나 교육계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영국 사회에 던지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첫 번째는 과잉보호(cotton wool) 사회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어린이 보호에 철저한 영국에서는 ‘건강과 안전(health and safety)’이라는 이슈와 결합되면 활동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학교에 너무 일찍 와도 안 되기 때문에 아침 8시50분이 되어야 교문이 열리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안전을 돌보는 교사나 보조교사가 없으면 밖에서 놀지도 못한다. 숲학교 운동가들은 안전에 대한 공포를 하나씩 거둬가면서 아이들의 신체활동과 놀이를 확대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식중심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20세기 들어 두 번의 변곡점을 이룬 교육개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1988년에 이뤄진 교육개혁법 제정이다. 이 때에 최초로 국정교육과정이 도입되었고, 국가 수준의 성취도 검사도 도입된다. 즉, 교육개혁의 방향이 지식교육에 더 큰 방점을 두면서 전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주변화되어 있던 생태환경교육이 더욱 괄시를 받는 형편이 되었다. 숲학교 운동가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식교육과 자연을 통한 직접 경

힘을 기반으로 한 자연교육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더욱 강화해나가고 있다.

숲학교연합회는 프로그램 진행을 맡을 전문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개발하였고, 영국직업교육 인증체제인 비텍(BTech) 자격증 과정을 1995년에 개설했다. 2003년에는 웨일즈에서 오픈 칼리지 네트워크 자격증과정도 설치했다. 1백여 년 동안 이어내려온 전통을 자격증 과정으로 구체화시켜서 숲학교 운동을 공식화하고, 이제는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숲학교 운동의 제도화에 대한 기술은 제IV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여기서는 영국숲학교연합회가 내세운 숲학교의 교육원리 6가지로 밝히고 논의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n Cree & Mel McCree, 2012, 33쪽)

6가지 원리

1. 숲학교는 숲이나 자연 삼림 환경 속에서 일회적 방문이 아니라 빈번하게 혹은 정기적으로 수업을 가지는 장기간의 과정을 지칭한다.
2. 숲이나 자연 삼림 환경 속에서 학습자와 자연 세계 사이의 관계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숲학교는 존재하게 된다.
3. 숲학교는 참여자의 통전적(wholistic)인 발달, 인성의 복원력, 자신감, 독립성과 창조적 학습자를 만들어간다.
4. 숲학교는 학습자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도전은 학습자 자신은 물론 주변 환경에도 적절하고 감당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5. 숲학교는 전문적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개발함으로써 그 자격을 인증 받은 숲학교 교사(forest School Practitioners)가 운영해야 한다.
6. 숲학교는 능력 개발과 학습을 위한 공동체를 창출하기 위해 일련의 학습자 중심 과정을 활용한다.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들이 모두 담겨 있다. 숲학교는 단기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실행해야 교육적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을 간명하게 밝히고 있다. 농촌교육 역시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농촌에서 머무를 것을 전제로 한 장기적 활동이다. 숲학교의 존재 의미는 자연과

학습자 사이의 관계를 맺어 가는데 필요한 조력자로서 가치를 가진다. 농촌유학에서는 ‘센터’를 비롯한 여러 곳의 협력 교육기관과 활동가들이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겠다.

세 번째 원리 역시 농촌교육에서도 소중하게 받아들여할 철학이다. 아이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이유는 아토피를 낮게 하고, 행복한 경험을 어린 시절에 만드는 것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은 바로 아이들의 전면적이면서 균형적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이다. 학부모, 유학센터장, 이장, 마을 농부, 지방자치 단체, 해당 지역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관계자, 농촌유학협의회 소속 활동가 등의 관련 단체와 활동가, 교육가들은 무엇보다도 농촌유학생의 전인적 발달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원리는 학습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극복 가능한 적절한 어려움(challenge)을 주어야 한다는 선언이다. 농촌유학에서도 아이들은 큰 결단을 내려야 하고, 도시 문명의 편리함에서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시골생활을 견뎌야 하며, 무엇보다 부모와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야 한다.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힘을 기르는 일, 그런 경험 자체가 교육이라는 입장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리는 숲학교의 이념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론적 측면을 언명하고 있다. 자격증을 가진 숲학교 교사의 채용과 학습자 중심의 과정 운영이 그것이다. 농촌유학에서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현재는 농촌유학협의회 차원에서 활동가 양성 과정을 시행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의 실제까지 겸비한 전문 교육자를 양성하는 과정도 장기적 계획 아래 세워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사례분석을 통해 본 농촌유학의 운영원리

우리는 농촌유학의 우수사례 및 농촌유학과 유사한 교육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입체적 특성을 헤아려보았다.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농촌유학은 그 자체로 어떤 의의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몇 가지 교육원리로 정리해 보았다. 여기에서 밝히는 원리들은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사회적, 국가적으로 취할 수 있는 이득이 무엇인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우리 사회가 왜 다른 형태의

교육방식을 놓아두고 농촌유학이라는 특별한 양식의 교육을 선택할 가치가 있는지를 밝히려 한다. 이러한 원리는 사회조사연구방법이나 직접적 실험을 통해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헌 조사,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추론된 규범적 성격을 지니게 마련이다. 농촌유학에 대한 교육원리 탐색은 현장의 실천가들과 학부모들에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교육실천에 대한 가치와 내적인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준이 될 것이며, 실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향후 농촌유학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더 나아가 제도화와 법제화로의 발전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가) 지속성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이 도시의 가정에서 벗어나 상당한 기간을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경험하는 교육의 한 유형이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공동 숙소가 되었던 농가에 머무는 형태가 되었던, 가족 전체가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족 구성원들과의 분리를 전제로 한다. 가족이 중요시되는 한국적 문화전통 속에서 초등과정의 자녀를 떠나보내는 것은 정서적으로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독립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서구 교육의 전통에서 보자면 대단한 일도 아니다. 더구나 교육적으로 보자면 독립심과 자기주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있는 결정이다.

농촌유학은 ‘농촌’이라는 장소성과 ‘유학’이라는 활동의 내용성이 결합된 교육형태이며, 이러한 교육을 펼쳐나갈 때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농촌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한다. 농촌유학은 농촌에서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포함되므로 학생이 그동안 익숙하게 누려왔던 도시와 가정이라는 공간을 벗어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학습경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의 농촌 체류를 중시하는 이유는 학습자와 농촌이라는 자연환경 사이의 두터운 관계 형성이 농촌유학을 통한 교육의 시발점이자 토대를 이루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자연과 친화되는 시간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나) 전인격적 성장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이 자연 안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농촌유학이 다른 유형의 교육과 가장 다른 특성을 가졌다면 그것은 ‘농촌이라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이뤄지는 교육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의 주요 무대가 자연이라는 사실은 그 안에서 자연 관찰과 발견, 놀잇감의 제작과 활용, 학습재료의 발견, 시와 그림 등 창작 대상의 발견과 같은 다양한 교육행동이 모두 자연 안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자연은 루소가 말했던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비물질적 자연이 가장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공간이다. 자연은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적이지 않은 형태로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 공간이며, 어린이 청소년은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성장의 잠재력을 하나씩 풀어나간다. 현대 한국사회의 경쟁적 교육 환경을 감안할 때 학습자가 농촌이라는 자연환경 안에서 자라게 된다면 인위적 교육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미 루소가 말한 의미에서의 ‘소극적 교육’이 매우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상황과 다름이 없다.

한 인간이 전인격적, 통전적(wholistic)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인간 내면에 있는 협동성, 이타성, 이기심, 공감력과 같은 특성이 외부로 도출되어야 하는데, 자연 안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이러한 특성들이 골고루 발현되고 조화를 이루며 조정된다. 자연은 인간의 본성과 다툼을 일삼지 않으며, 인간 내면의 복잡하게 얽힌 특성들을 중화시켜주는 역할도 떠맡는다. 어린이 청소년 시기에 농촌유학을 통해 자연의 품에 안기는 것 자체가 인간의 전면적 인격 성장에 중요한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교육은 다른 어떤 형태의 교육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는 특성을 지닌다.

다) 마을 공동체

“농촌유학은 ‘마을공동체’가 어린이 청소년 개개인을 함께 키운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농촌유학 시설을 살펴보면 이 같은 사실은 확인된다. 마

에 위치한 유학센터, 학교(분교 포함), 이장, 교육지원청 관계자, 교사, 교장, 마을 어르신, 부녀회, 작목회 등 농촌유학 관련자들 사이에 긴밀한 협조가 없으면 이상적인 농촌유학은 이뤄지지 않는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관점은 이미 오래 전에 나왔지만 현실 속의 마을에서 그러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의 주체를 형성하기란 무척 어려운 과제였다.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은 낯설다. 설령 그런 개념을 익히고 있다 해도 도시민의 거주지 이동 평균 연한은 4.5년이므로 한 지역에서 살면서 공동체라는 느낌이 익어가기 시작할 무렵에는 그 지역을 떠나기 마련이다. 농촌유학은 해당 유학센터가 주변 지역의 주민들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가정이 성립된다면 마을 전체의 자원을 아이들의 교육으로 연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울타리라는 협애한 교육적 경험을 공간을 확장시켜 마을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신의 경험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오랜 세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린 일부 대안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역공동체와 일체감을 가지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반증인데, 농촌유학은 교육사업의 시작 지점부터 마을 내부의 다양한 관심과 의견 수렴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난제를 유연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을공동체와 연관하여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24절기에 따른 계절 교육과 세시 풍속을 교육의 마당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농촌에서 1년을 지내다 보면 농사일에 맞추어 마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입춘과 우수가 있는 달에는 씨앗 고르기, 고추 모종 심기, 거름 뒤집기 같은 농사일을 하는 시기이다. 입추가 지나 처서에 이르면 배추 모종심기를 하거나 가을 채소를 파종한다. 제철 먹을거리 역시 24절기에 따라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다. 하늘의 운행과 계절의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땅의 운영 원리를 농촌에서 생활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익힌다. 서양교육계에서 자주 논의되는 ‘자유주의교육’과 ‘공동체주의교육’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우리나라의 농촌유학을 떠올리는 순간 저절로 해소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라) 놀이와 노작의 가치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놀이와 노작의 가치를 전수한다.”

놀이가 지닌 교육적 가치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에 일일이 살펴보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놀이가 지닌 교육적 가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Gaskins, Haight, and Lancy, 2007 / Whitebread 2012). 연구자들은 아이들의 놀이를 ①신체놀이 ②사물을 가지고 놀기 ③상징놀이 ④연기 혹은 가식 놀이 ⑤규칙이 있는 경기로 분류한다. 이처럼 다양한 아이들의 놀이를 학교 담장 안에서만 해야 하는 대도시의 학생들을 떠올려보라. 놀 수 있는 방법과 대상이 매우 제한된다. 게다가 대도시는 학교와 집 이외의 공적 공간, 즉 차길 옆, 골목길, 공터, 놀이터 주변 같은 곳들이 마음껏 뛰놀기에는 대단히 위험스러운 곳으로 인식된다. 이런 제한점을 모두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의 아이들은 학교-학원-집으로 이어지는 생활 패턴 때문에 신체를 움직여서 놀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놀이 공간의 위험성을 따지기 전에 놀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 도시 아이들이 전자매체를 이용한 놀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도 바로 이러한 공간/시간의 절대 부족 상태에서 그나마 전자오락정도가 그들이 놀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몸을 움직여 놀든, 놀이 기구를 직접 제작해서 놀든, 규칙이 있는 경기를 하든 자유롭고 안전하다. 개천, 언덕, 산자락, 논밭, 오솔길 등에 흙을 파거나 나무집을 짓거나 땅바닥에 게임을 위한 선을 긋거나 할 수 있다.

몸과 손을 움직여서 물건을 만드는 노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썰매나 연 같은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도 재미나는 노작이다. 농가에서 고추 너는 일, 이불을 터는 일, 발작물의 간단한 수확을 돕는 일 등 아이들의 체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노동일들도 널려있다. 노작교육은 노작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주적인 특성을 갖게 하고, 일을 통해 창의적인 생각의 물꼬도 트게 하며, 정신적 자극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인간교육의 튼실한 기초를 가지게 만든다. 노작 과정은 또한 아이들의 사고와 감정, 행위를 통일시킨다. 이런 의미에서 노작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도덕교육인 동시에 생산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난 자유교육이기도 하다(김정환, 강선보, 1998).

마) 학습자중심주의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생활하며 가르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중요성을 놓칠 수 있다. 자연적 배경이 수려한 농촌의 어느 학교에서 자신들이 그 지역의 명문학교를 만들겠다고 기숙학원처럼 아이들을 몰아세우며 스파르타식으로 시험 대비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이런 학교는 농촌유학을 담당하는 곳이라 보기 어렵다. 아동중심성이라는 원리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기른다.’는 교육철학을 표명한 지역에서는 ‘OO의숙’이라고 명명된 스파르타식 입시 중심 교육이 나올 수 없고, 나와서도 안 된다.

자녀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농촌으로 유학 보내는 부모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면 교육 방향이 더 명확해진다. 그 아이들의 부모는 현행 교육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연 안에서 전인교육, 인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유학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 현장에서 아동중심교육이라는 원칙을 지키기란 무척 어렵다. 교사와 전문가들의 노고가 몇 배나 더 들어가야 한다. 아이들의 바람, 포부, 흥미도를 살펴서 농촌 지역에 흠어져 있는 교육자료들을 모아야한다. 이 원칙을 올바르게 지켜야만 농촌유학의 가치가 높아진다. 학부모의 신뢰도가 쌓이고, 올바른 교육을 지켜가려는 교육주체의 태도가 진지할 때 농촌유학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들이 늘어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농촌유학의 지속성, 마을공동체, 전인교육, 놀이와 노작의 가치 등은 모두 학습자중심주의라는 원리와 밀접하게 교호작용을 한다. 이것은 마치 수레바퀴의 중심축과 같아서 중요한 다른 원리들을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학습자중심주의는 공교육이나 일반 대안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근본적인 교육원리이기도 하다. 이 원리는 농촌유학에서도 예외가 아닐뿐더러 더 정확히 논의하자면 다른 어느 교육 유형에서보다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할 원리라고 할 수 있겠다.

바) 감당할 수 있는 도전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원리는 앞서 살펴보았던 숲학교의 교육원리에서 가져온 것이다. 농촌유학

은 학생들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도전을 감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루소는 <에밀> 1부에서 ‘신체적 고통만을 느낄 수 있는 어린 시절은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설파했다. 얼핏 들으면 잔인한 언급 같은데 다시 새겨보면 수궁이 간다. 성장이란 기존의 근육이 파괴되면서 일어나는 것과 같다. 아픔의 감내가 필수불가결하다. 원시 부족사회에서 미성년이 성인식을 치루면서 마침내 한 사회의 어른 세계로 입장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국내의 몇 가지 연구에 따르면 사실 이 문제가 농촌유학에 관심을 두었다가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포기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기실 유소년 시절의 기숙사 생활에 대한 찬반 논란은 오랫동안 이뤄져 왔던 일이고, 이에 대한 연구결과도 엇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때는 아이와 학부모의 ‘실존적 결단’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한 달, 반 년, 일 년씩 점점 간격을 넓히면서 떨어져 지내보고, 기숙사에서 다른 학생들과 공동생활을 해보면서 차근차근 결정하면 될 일이다.

농촌에서의 생활은 도시 출신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시련과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입에 맞지 않는 음식, 낯선 마을 풍속과 문화, 익숙하지 않은 벌레들, 거름냄새, 땀이 나도록 몸을 움직여야 하는 생활, 웬만하면 걸어 다녀야 하는 이동 환경 등이 그런 요인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 자체 커다란 성취인 동시에 성장이다. 시련을 감내하는 해를 거듭할수록 도시에 있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정신적으로 성숙해 있을 것이다. 농촌유학 센터를 십 여 년 가까이 운영해온 전문가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지금까지 농촌유학이 다른 형태의 교육 방식과 근원적으로 차별성을 가지는 지점을 여섯 가지 교육원리로 제시해보았다. 이들은 설령 현실 세계의 농촌유학이 외부적 요인에 따라 흔들릴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할만한 가치 있는 교육임을 입증해주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실천적 틀을 만들어 가기로 하고,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화시켜 보았다.

1.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이 도시의 가정에서 벗어나 상당한 기간을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경험하는 교육의 한 유형이다.
2.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이 자연 안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3. 농촌유학은 ‘마을공동체’가 어린이 청소년 개개인을 함께 키운다.
4.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놀이와 노작의 가치를 전수한다.
5.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생활하며 가르친다.
6.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Ⅳ. 농촌유학 운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1. 농촌유학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가. 농촌유학의 실천과 환경 변화

앞서 농촌유학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바, 한국에서 농촌유학은 확장 경향성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농촌지역의 폐교방지와 인구유입, 농가소득증진, 도농교류촉진 및 도시 교육문제 해결에 대한 복합 솔루션으로서 주목받으면서 장밋빛 전망과 함께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후반에 몇몇 실행지들의 실험으로서 시작된 농촌유학은 최근의 조사에서 30개 이상의 실행지들이 농촌유학을 운영하고 있고 10여개 예비 실행지들이 계절캠프 등을 통해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급격한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촌유학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개별 시설들의 역량에 모든 것을 맡겨왔다. 그러다보니 다양성이라는 말로 긍정적인 판단을 내리기에는 지나치게 개별화된 운영방식들이 출현했고, 실행지 간의 수준차를 도드라지게 하는 현상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농촌유학의 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공적 역할 수행 여부에 관한 객관적인 준거를 갖추기보다는 개별 운영자의 식견에 기대야 하는 한계를 지녔기 때문이다. 더구나 농림축산식품부나 농어촌공사, 산림청 등을 통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이를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운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농촌유학 전반의 질적 수준 담보, 공공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운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한 것이다.

나. 일본 산촌유학 사례: 시행착오와 재조정

표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일본 산촌유학을 들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의 농촌유학은 일본에서 시작된 산촌유학이 한국에 소개

되면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산촌유학의 사례를 잘 들여다보는 것은 한국 농촌유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다. 일본의 산촌유학은 1979년 초등학교 교사출신의 아오키 다카야스 선생이 ‘소다테루카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나가노현 야사카 마을에서 처음 시작한 이래 지난 35년간 엄청난 양적·질적 발전을 해왔다. 그러나 이런 양적·질적 발전이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그 양적 증가로부터 발생했다. 소다테루카이의 산촌유학이 성과를 보이자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산촌유학에 관심을 보이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산촌유학의 실행지들이 우후죽순처럼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확산에 부채질을 한 것은 언론이 산촌유학을 농촌문제의 새로운 해법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이에 탄력 받은 산촌유학은 한때 300개가 넘는 실행지로 늘어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산촌유학을 단순히 지역 살리기의 수단으로만 여기면서 유학생들의 숫자를 재정적으로 결부시켜 접근하는 실행지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증가추세는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농촌유학을 선택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적 내용을 채우기 보다는 부수적인 효과성에 관심을 기울이다보니 정작 본질적인 것에 소홀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산촌유학에 관심을 가진 많은 실행지들이 물리적으로 유학생을 수용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 산촌유학을 할 수 있다는 설부른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숙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유학생들의 쾌적한 환경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다. 농가형의 경우 농가부모들이 자신들의 개인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떨어진 빈 집을 수리해 유학생을 수용하고는 돌봄이 소홀해지는 사례들도 보고되었다.

문제 있는 실행지로부터 상처를 입은 유학생들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 받게 되면서 이런 사례들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었다. 산촌유학을 농촌문제의 복합 솔루션으로 선전하던 언론들은 갑자기 태도를 전환하여 산촌유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부정적인 보도를 쏟아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적으로 산촌유학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면서 거품이 급속도로 빠져나가게 된 것이다. 불과 10여년 안에 실행지의 절반 정도가 학생모집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게 되었다.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가 우리나라 농촌유학에 주는 시사점은 매우 분명하다.



농촌유학은 단순히 농촌마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학생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산촌유학을 처음 시작하고 이 운동을 이끈 단체인 ‘소다테루카이’가 ‘교육을 생각하는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것처럼 농촌유학은 일차적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젝트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개별 시설들이 스스로 어떻게 교육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농촌유학의 생활과 활동을 통해 교육성을 고양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유학을 단순한 농촌체험과 구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내용적·형식적인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다. 농촌유학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요구 증가

농촌유학이 도입 초기를 지나면서 유학생들을 보다 전문적으로 돌보고 성장시켜주기를 요구하는 도시 부모들의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농촌유학에서 교육의 전문성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어서 단순히 개인의 역량에 맡겨둘 문제가 아니다. 특히 농촌유학은 학교교육과 달리 대단히 비형식적인 교육이어서 그것을 실행해내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 비형식적 교육일수록 더 치밀하고 잘 조직된 교육계획과 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유연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농촌유학을 실행하는 활동가들이 대부분 교육과 관계없거나 사적인 교육경험만을 가지고 입문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문성의 문제는 교육의 형식과 내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농촌유학이 확산되고 유학생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최근 몇 차례의 재난사고로 국가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농촌유학 역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면 어디든 공통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농촌유학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 예상치 못하던 사건이나 사고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자 및 활동가들이 평소에 대응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체계와 안내 역시 필요하다.

라. 모니터링 및 관리체제의 필요성

농촌유학이 그 내용적·형식적 전문성을 담보해 나아갈 때 동시에 확보되어야 할 영역은 운영자와 활동가들이 스스로를,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의 눈으로 성찰하는 평가의 영역이다. 평가는 흔히 서열화와 불평등의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기 쉽지만 진정한 평가의 가치는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농촌유학의 운영체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면 거기에 맞는 평가체제를 구성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농촌유학 시설들은 스스로 혹은 외부자의 눈으로 자신들의 실천을 객관화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농촌유학 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평가는 지나치게 세부적이거나 기술적이어서 농촌유학의 자율성과 상상력을 제약하는 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농촌유학은 지역적인 특색과 환경적인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지시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배제하고 다만 농촌유학 실행지들이 큰 틀에서 점검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네 가지 측면에서 농촌유학의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그 명칭이 의미하듯이 가이드라인은 그야말로 큰 틀에서 원활한 운영과 공공성·투명성·교육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려는 시도이다. 농촌유학의 운영에 대한 요소들을 지시적으로 명시화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물론 한 번의 시도로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을 토론의 기초로 삼아 지속적으로 시설의 현실에 맞는 것으로 맞춰나가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농촌유학이 전반적인 질적 제고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한 고려와 준비

가.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한 기본전제

1) 목표 정하기

농촌유학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농촌유학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에서 목표를 바로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농촌유학의 목표를 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는 교육적 측면이고 둘째는 지역적 측면이다.

먼저 교육적 측면에서 농촌유학은 단순히 시설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수용하면서부터 많은 변수와 책임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연을 강조한 나머지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부족해지면 아이들은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학부모의 불만과 지역에서의 질타를 받게 된다. 따라서 명확한 교육목표와 함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교육적 측면에 대한 오해가 큰 나머지 농촌유학의 교육내용이 너무 많이 담기기도 한다. 농촌유학이 너무 교육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좋은 내용을 많이 담게 되면 보기에는 무척 화려할 수 있으나 자칫 과유불급(過猶不及)이 될 수 있다. 농촌유학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너무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러면 시간, 예산, 운영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이는 동시에 유학비용의 상승을 동반하게 되고 학부모의 기대수준이 높아져 잦은 민원이 발생해 운영자의 업무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된다. 이점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지역의 자연·인문적 요소와 학교를 적절히 활용하는 가운데 농촌유학의 특징적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핵심프로그램으로 압축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농촌유학은 지역에 토대를 두기 때문에 지역적 측면을 잘 살려야 한다. 특히 지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합의가 없으면 농촌유학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은 농촌유학의 운동장이자 교과서다. 지역의 자연·인문적 환경을 농촌유학에 적용시키는 것은 농촌유학의

목표를 세우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촌유학의 목표를 정하는데 교육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이 반영된다면 다음의 다섯가지 원리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농촌유학은 도시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뒤에서도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농촌유학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으로서 농촌에서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이라는 공간이 안고있는 자연적, 생태적, 문화적 특성이 유학을 선택한 유학생들과 그 도시부모들에게 유의미한 가치로서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농촌의 자연·인문환경 속에서 도시아이들에게 자립과 공존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유학은 존재한다. 부모를 떠나 유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자립을 요구한다. 특히 핵가족 시대 과보호로 기초생활습관에서부터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스스로 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히 홀로 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역시 동시에 매우 중요한 과제다. 함께 유학하는 유학생들이나 생활교사, 지역주민은 물론 더 나아가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셋째, 농촌유학은 마을, 학교와 협력을 맺어 도시아이들의 신체와 지적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자극을 제공한다. 농촌유학은 도시에서 농촌으로 오는 유학생들에게 마을 및 지역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 다양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농촌아이들에게도 다양한 문화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다. 따라서 농촌유학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넷째, 농촌유학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성을 갖추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앞서도 여러 차례 강조한바 마을과 분리된 농촌유학은 그 존재가치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농촌유학이 지역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다섯째, 농촌유학은 농촌을 이해하고 도농교류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도모한다. 유학생들이 농촌유학의 경험을 토대로 농촌을 이해하고 이후에 농촌을 삶



의 터전으로 삼던 도시로 돌아가건 간에 농촌과 도시를 잇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잡아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길잡이역할, 자립과 공존의 기회제공, 교육적 교류, 마을공동체에 기여, 도농교류의 인재육성이라는 5가지 원리가 농촌유학의 목표에 반영되었을 때 농촌유학은 비로소 농촌유학다운 특성을 가진 교육 프로젝트로서의 존재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농촌유학의 운영원칙 수립

이미 서론에서부터 언급한 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해서는 교육성, 공공성, 투명성의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로 교육성은 농촌유학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젝트로서 교육을 위한 하나의 선택으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지적한 목표 정하기에서 마련된 교육목표를 따라 지역적인 특성이 어우러져 유학생들의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천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으로서 본 연구는 자립, 신체성장, 지적성장, 자연친화, 공동체의 다섯가지 영역을 제안하는데 이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프로그램이 다루는 교육과정 뿐만아니라 교육방법은 물론 운영 역시 교육적이어야 한다. 소통의 방식이나 만남의 질 모두 교육적으로 의미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다음의 공공성 및 투명성과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둘째로 농촌유학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현재 농촌유학과 관련해 지원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인 지자체가 상당수 있다는 것은 농촌유학에 관해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어가고 있다는 증거다. 그럼에도 엄밀히 말해 농촌유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는 마련되어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농촌유학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를 위해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운영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농촌유학은 공공의 이익을 담보하는 사업으로서 가치를 현실화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유학 운영자는 마을과 학교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농촌유학이 지역에서 그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촌유학은 운영 뿐만 아니라 사안이 발생했을 때 책임의 문제에서는 더욱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농촌유학시설뿐만 아니라 마을과 학

교, 지자체 등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유학의 운영에서 공공성은 하나의 농촌유학 시설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로 농촌유학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내 농촌유학에서는 운영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장기적인 방안이 부재하다. 운영역량은 농촌유학운영자와 활동가의 역량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는데 과연 농촌유학운영자와 활동가의 역량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농촌유학운영자의 역량에 대한 객관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 농촌유학 운영자와 활동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최소한의 결격사유는 입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농촌유학의 운영자와 활동가의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이후에는 투명한 운영구조를 구성해야 한다. 운영구조는 조직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운영자의 자율권이나 리더십은 보장하면서도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교사회 등의 구성을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와 운영구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운영규약 등을 통해 명시함으로써 공식화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한다.

3) 운영 전 검토사항

농촌유학의 목표와 운영원칙 운영원리가 정리되었다면 실제 운영하기에 들어야 한다. 그러나 막상 운영을 시작하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그 이유는 농촌유학의 핵심 주체인 학생들과 연관된다. 역설적이긴 한데, 학생들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 농촌유학이 학생들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다음을 보자.

첫째, 아이들 모집이다. 최근 2~3년 사이에 학생 모집이 예년과 달리 쉽지 않다. 적절한 학생수가 유지되어야 의미 있는 교육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새로운 학생이 부족하게 되면 존립 자체가 위협 받는다. 또한 새 학년도나 학기 시작 전에 함께 교육과정을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하고 학기 중에 신입생을 받게 되면 연간 교육계획의 운영이 힘들어진다.

둘째, 입학 학생들의 다양성 편차가 너무 커지는 것도 문제이다. 우선 남·여



의 성비가 차이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고학년 저학년의 학생수 역시 편차가 심하면 자연스런 또래 그룹의 형성, 생활 지도교사 입장에서의 적절한 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셋째, 적정 모집 인원을 충족했다 해도 마을과 학교의 협력 없이는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 실제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으나 농촌유학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은 꽤 심각하다. 그렇다보니 농촌유학을 온 아이들과 부모들이 상처를 받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례도 간헐적으로 목격된다.

넷째, 경제적인 여건이다. 농촌유학 운영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동시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농촌유학 비용이 실행지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부모들의 입장에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다. 농촌유학을 선택할 때 부모들은 비용의 차이를 고려하게 되고 경제적 부담 때문에 유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농촌유학에 대한 불안감을 극복해야 한다. 도시에서 경쟁과 사교육에 적응된 부모들은 자녀의 농촌유학이 과연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불안감을 갖는다. 설령 농촌유학을 보냈다 해도 초등학교 시기만 마무리하고 중학교부터는 도시학교로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섯째, 안전이다. 농촌생활이 도시생활과 달라 환경에 적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농촌유학을 온 아이들에게 체계적으로 농촌환경을 설명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가 필요하다. 사실 농촌도 아이들에게는 상당한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도 도로가 많이 생기고 확장되어 차량이 많이 그리고 빠르게 이동한다. 이로 인해 아이들의 보행이 어려워 유학생이 아닌 농촌 학생들도 거의 대부분 차량으로 통학하고 이동한다. 거기에 직각 경사를 이루는 농수로와 버려진 농약병은 안전에 큰 위험으로 작용한다. 농촌유학의 기본 토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전제로 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교육과 대비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농촌유학 운영에 들어가지 전에 이 여섯 가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운영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

순	검토사항	제안
1	유학생모집과 적정인원 확보	농촌유학 협력학교, 농촌유학 지원센터
2	유학생의 다양성 이해	운영자 역량강화, 전문가 지원, 공간 확보
3	유학생에 대한 편견과 거부감 극복	교사, 공무원 대상 설명회
4	유학비용의 적절성	제도화, 지원사업 확대
5	농촌유학에 대한 불안감 극복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 규명, 학부모교육
6	안전 확보	안전기준 점검, 안전교육 정례화

표 41 농촌유학 운영계획 전 검토사항

나. 농촌유학 실행의 준비단계

1) 전략 마련

농촌유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농촌유학에 대한 편견은 ‘역차별’과 ‘문제 학생’ 그리고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과연 교육적이냐?’는 질문에서 생겨난다. 역차별은 농촌으로 유학을 온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 지역의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데서 두드러진다. 유학생들은 해당 지역 출신 아이들이 아닌데 지자체가 지원을 하면 결과적으로 농촌 출신 아이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들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런 문제 제기는 특히 지역의 학부모나 지역의원들로부터 상당히 많이 제기되어 왔다.

농촌에서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학 오는 학생들을 그 이전 학교생활에서 좋지 않은 문제가 있거나 유사한 일들을 일으킨 다음에 빠져 나온 것 아닌가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로 교사들이 이런 편견을 갖는다. 사실 극히 일부 유학생들은 실제로 도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주의력 결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농촌유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게 과연 교육적이냐는 편견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세대가 많다. 가령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주말 부부 가정, 조기 해외 유학 가정이 증가하는 추



세를 고려한다면 농촌유학만 학생들이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형태인 것은 아니다.

2단계는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농촌유학이 농촌학교와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나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는 상당하다. 우선 도시에서 증가하는 학생, 청소년들의 문제를 볼 때 해결책으로 농촌유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체적, 지적성장의 균형을 이루려면 도시보다 농촌학교가 강점이 있다.

3단계로는 제도정비이다. 아무리 농촌유학이 좋다고 해도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하기 어렵다. 현재의 상황은 농촌유학의 가치에 대해서 관과 민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지원을 체계화할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물론 제도가 민간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음은 예상된다. 제도화는 사회나 국가차원의 합의가 들어있는 만큼 지속성을 유지시켜주고 책임감을 주는 강점이 있다. 특히 농촌유학운영에서 가장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볼 때 올바른 제도화는 오히려 자율성과 다양성을 지속시켜 농촌유학의 비전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단계	전략내용	예시
1단계	편견 없애기	역차별, 문제학생, 부모와의 이별은 비교육적
2단계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 이해 시키기	학교부적응, 신체·지적성장 유리, 건강증진 대학입시강점, 농촌의 미래가능성
3단계	제도화	농촌유학지원조례, 농촌유학육성법, 농촌유학운영자 양성과정 마련

표 42 농촌유학 비전 실현 전략

2) 추진구조 구성

농촌유학 운영자는 농촌유학의 목표와 운영원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개인적 결단이나 희생, 자아실현 차원이 아니라 농촌유학에 뜻을 함께 하는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갖춘 활동가로서 자기 정립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는

운영자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책임을 분담한다는 큰 의미를 담는다.

조직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 농촌유학을 운영할 경우, 주변의 오해는 물론 제도적인 지원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학교가 농촌유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고자 해도 개인 자격의 운영자에게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유학은 비영리법인단체,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기관이나 단체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촌유학은 마을과 학교의 협력이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마을은 농촌유학의 토대이고 학교는 아이들을 포용하는 교육공간이다. 이 중 어느 하나와도 단절되어서는 안 되며, 향후 책임의 문제를 고려해 봐도 협력관계는 중요하다.

단계	세부 사항
1단계 여건 마련	▶ 농촌유학운영 여건 마련 : 공간 확보, 명칭, 조직형태, 정관 구성
2단계 업무 협약	▶ 마을·학교와 업무협약 : 업무협약체결
3단계 유학생 모집	▶ 마을·학교·농촌유학운영자 공동 홍보
4단계 농촌유학운영협의회	▶ 마을대표·학교장·농촌유학운영자·학부모대표로 구성하여 운영

표 43 농촌유학 추진구조

3) 역할분담(지역협력 : 지자체, 교육청의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농촌유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주체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운영자가 마을과 학교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대전제이다. 여기에 더해 다른 역량 있는 주체들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서 해당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지자체는 귀농귀촌의 일환으로 농촌유학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유학을 시도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농촌유학에 적극 참여하지 못했으나 현재 시점에서 교육청의 협조는 핵심적이다. 지자체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농촌유학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지

자체와 교육청은 상호간 합의된 농촌유학지원조례를 통해 유학생의 전·출입, 교육복지, 통학지원 등 필요한 시스템과 지원책을 마련한다. 이 부분에서 국가 차원의 조정과 협력이 요구된다. 농촌유학육성법을 제정하여 농촌유학이 농촌의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지역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힘과 시간을 제공해 농촌을 살리고 농업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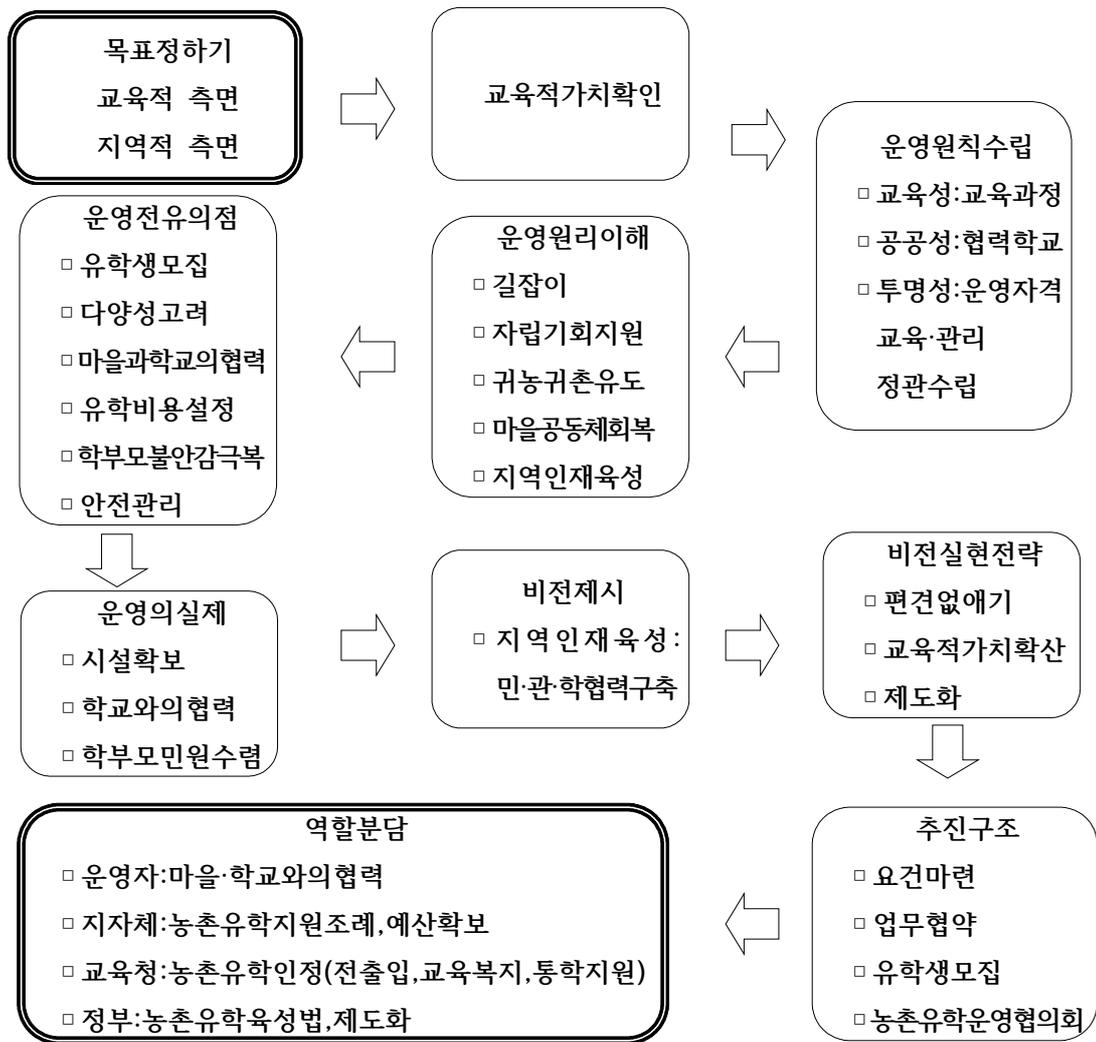


표 44 농촌유학실행의 준비단계

4) 정관수립

정관(定款)은 회사, 비영리 법인, 공익 법인, 각종 협동조합 등의 목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자치법규를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르나, 그 단체의 정체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 정관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지침이 되므로 작성할 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관 작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초안을 만들고, 이사회에서 검토를 한 후 설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정관에 담겨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필수요소	권장요소	자율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칭, 소재지 ▶목적, 사업내용 ▶회원 ▶임원의 종류, 정수 ▶임원의 선임, 해임 ▶총회의 구성, 기능 ▶재산의 구분 ▶수입, 차입, 결산 ▶회계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의 권리, 의무 ▶임원의 선임, 제한 ▶의결정족수 ▶임원의 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의 탈퇴 ▶임원의 임기 ▶총회의결 제적사유 ▶사무부서 ▶보칙

※예시정관은 부록을 참고

표 45 정관구성사항

5) 학생모집

가) 홍보물 제작

홍보물을 제작할 경우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홍보하는가?

둘째 홍보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

셋째 홍보에 사용한 비용은 얼마나 책정할 것인가?

나) 온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에서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인 활동과 피드백으로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이트 구축은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운영 방식이 있으며, 지역이나 조직체의 상황에 맞게 운영한다.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하



여 홍보하는 방법이 활성화 되고 있다. 더불어 농촌유학에 관심 있는 학부모들이 자주 찾는 곳에 학생 모집 안내를 올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래에 참고가 될만한 홍보처 목록을 분류하여 정리했다.

구분	단체명	사이트
농촌유학	(사)전국농촌유학협의회	http://cafe.daum.net/koreafarmschool/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	cafe.daum.net/mogisonagi
	민들레 출판사	http://www.mindle.org/
교육	참교육 학부모회	http://www.hakbumo.or.kr/
	작은학교교육연대	cafe.daum.net/wkrry
	경기혁신교육네트워크	innonet.goe.go.kr
	대안교육연대	http://www.psae.or.kr/
지역	전국귀농운동본부	http://www.refarm.org/
	지역재단	http://www.krdf.or.kr/
	귀농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표 46 농촌유학 온라인 홍보처 목록

다) 오프라인 홍보

- 미디어 홍보
- 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
- 맛보기 캠프

다. 농촌유학시설 설립의 과정

하나의 농촌유학시설을 설립하기 위해 설립자(운영 주체자)는 농산어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돌봄과 교육을 하는 시설로써 유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농촌유학시설을 설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설립과정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촌유학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유사기관의 설립과정을 참조하여 기존의 농촌유학시설 설립과정을 발전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과정」(2007)과 「지역아동센터 시설 설립절차」(2014)를 참조한 농촌유학기관에 대한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다.

농촌유학시설의 설립과정

1단계	지역조사	지역 내 농촌유학의 필요성, 욕구조사, 지역 내 자원 조사, 협력기관 조사
↓		
2단계	초동모임 구성	교육의 지향과 철학 공유, 친목 도모
↓		
3단계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지역 내 관계망 설정
↓		
4단계	농촌유학 장소 선정 및 터전 마련	이사회(운영위원회/협의회) 구성, 설립/운영 컨설팅
↓		
5단계	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준비	지역현실을 감안하여 농촌유학 교육 프로그램의 5영역에 맞춰 균형 잡힌 프로그램 마련 유학생 모집, 부모면담과 생활기록부 작성
↓		
6단계	정관, 규정 확정 (교사 임금, 월 운영비 예산 확정)	운영소위에서 초안을 내고 총회에서 결의
↓		
7단계	물리적 환경 구성	사무실, 조리실, 식당, 화장실, 숙박실, 집단지도실, 야외공간 등과 기본 설비를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시설기준 참조). 청소, 교재 교구, 비품 등의 마련
↓		
8단계	운영지침 및 매뉴얼 숙지	운영지침 및 운영매뉴얼 자료 확인 및 숙지
↓		
9단계	교사 채용 및 연수	인사위원회 구성 및 규모에 따른 인력 확보 교사 연수 방안 마련 및 실천 교사역할분담과 교육계획안 작성
↓		
10단계	창립총회 및 개소	정관 승인, 이사회 추인 개소 잔치

표 47 농촌유학시설 설립과정



우선은 지역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지역을 꼼꼼하게 살펴서 농촌유학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잘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설립단계에 들어가서는 초동모임의 구성이 중요한 단계다. 초동모임의 결속력이나 설립에 대한 의지는 개소 이후에도 운영과 발전을 위한 결속력으로 이어진다.¹⁰⁾ 따라서 설립 초기 단계에 유학센터가 어떠한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을 지향할지에 대해 농촌유학을 준비하는 핵심 구성원들이 함께 기반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에서는 일을 추진할 운영자를 중심으로 농촌유학을 함께 만들어 나갈 구성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앞으로 만들어갈 농촌유학의 모습을 공유해가는 과정으로써 일을 분담하는 과정이다.¹¹⁾ 이를 기반으로 농촌유학시설은 설립을 위해 운영주체, 마을 및 지역, 학교 그리고 지자체(행정기관과 교육청 등)와 운영위원회 혹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농촌유학시설 설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할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과 유리된 채 운영되는 농촌유학시설은 그 가치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농촌유학시설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는다면 설립과정과 운영지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농촌유학시설 운영 설립자는 입지 선정에 있어서 마을 및 지역환경조사(마을 명칭, 유래, 지역자원, 특산물 등), 교육기관조사(학교 포함), 지역인구 현황 파악(가구수, 인구수 등), 생활수준을 파악하여, 농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연 환경과 다양한 농촌 문화를 유학생들이 경험 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지를 선정하고 시설을 설비할 시 지역적 여건과 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해 관할 시군구와 사전 협의를 하고,¹²⁾ 유학생의 안전 및 발달을 고려하여 물리적 공간을 확보¹³⁾ 해야 한다.

다음으로 농촌유학센터의 자치성,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 정관 및 운영방안을 확정한다. 농촌유학시설 운영에 대한 지침, 교사 임금, 월 운영비 예산 확정 등을 작성한 정관 및 운영방안은 설립총회를 통해 인준을 받는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농촌유학시설의 가치와 지향점을 바탕으로 활동

10)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 p.47.

11)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 p.48.

12)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p.22.

13)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시설면적에 대한 설치 기준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 지도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집단 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함(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시설설치기준 세부내용 참조).

가(교사)를 채용 하고 연수 과정을 진행 하면서, 운영 주체자와 활동가(생활교사)들은 농촌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설 규모에 따른 적정 인원의 활동가(생활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 10-29명에 종사자 2명(시설장1, 생활복지사1), 아동 30명 이상에 종사자 4명(시설장1, 영양사1, 생활복지사2), 아동 10명 미만 시 시설장 1명을 두고 있다.¹⁴⁾ 따라서 기숙 생활을 하고 농산어촌의 지역에서 야외 및 체험활동을 많이 하는 농촌유학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가(교사)와 유학생의 적절한 비율이 유지되어야 한다.

시설기준이나 활동가와 관련된 기준은 센터형을 중심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지만 농가형을 육성할 수 있는 기준 역시 고민될 필요가 있다. 농가형 농촌유학이 개별 농가의 가외소득 수단으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선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인력이 확정되면 활동가(교사)의 역할을 분담하고, 유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정서에 맞는 하루 일과를 바탕으로 주간계획, 월간계획, 연간계획을 작성한다.¹⁵⁾ 이때 연간운영계획을 반영하여 농촌유학시설의 교육계획안을 작성한다.

농촌유학시설 설립 확정을 위해 시설설치기준(면적 등) 및 종사자 채용기준(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등 시설 신고 기준¹⁶⁾ 확인 후 시설 설치 신고를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보육시설이 구비해서 갖추어야 할 서류>¹⁷⁾를 참조한 농촌유학센터 설립을 위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다.

<농촌유학센터 설립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 관련서식
-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 (2) 재산목록과 그 수요를 증명하는 서류(임차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3) 시설관련 : ①시설운영일지 ②실내외 시설 안전 점검표 ③실내 청결

14)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p.13.
 15)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 p.54.
 16) 시설설치기준(면적 등) 및 종사자 채용기준(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등) 등 시설 신고 기준으로 (농림축산식품부,2013)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 촉진법) 및 시행 규칙」, (보건복지부,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보건복지부2014) 「보육사업안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17)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 p.69-71.



및 위생점검표: 청소표, 청소 체크리스트

- (4) 재정관련 : ①예산서 및 결산서 ②총계정 원장 및 수입·지출 보조부, 경위서 ③금전 및 물품납부와 그 증빙서류 ④ 통장사본
- (5) 활동가(교사) 인사 관련 : ①시설의 장 및 종사자 인사기록카드 ②채용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③임면 보고서 사본(원본은 구청 제출) ④근로계약서 ⑤보험서류 ⑥연수대장 ⑦연수계획서
- (6) 유학생 관련 : ①생활기록부 ②건강검진기록부 ③유학생관찰기록 ④투약 의뢰서·보고서 ⑤응급처치동의서 ⑥귀가동의서 ⑦유학생 질병 안내문 ⑧ 신입 유학생 적응절차 안내문
- (7) 교육관련 : ①교육 계획안 ②평가서(주간 활동가(교사) 회의록, 월별, 상반기, 하반기)
- (8) 급식관련 : ①식단 ② 식자재관리표(구입일, 냉장고반입일, 유통기한 등 표시)
- (9) 안전관련 : ①안전점검표(시설과 시설 주변 환경) ② 연간안전교육계획서 ③소방훈련보고서·평가서 ④비상대피로 안내도(벽면 게시) ⑤ 비상시 교사업무 분담표(벽면 게시) ⑥구비구급약품 목록
- (10) 일지류 : ①돌봄 일지 ② 부모면담일지
- (11) 관계행정기관과의 문서철 : ①발신 공문철 ②수신 공문철
- (12) 명부류 : ①농촌유학센터 이용신청자 명부 ②이용 유학생 명부
- (13) 규정류 : ①농촌유학센터 종사자의 인사복무에 관한 규정 ②시설운영에 관한 규정
- (14) 대장류 : ①교재교구대장 ②도서대장 ③비품대장 ④활동가(교사) 연수대장 ⑤활동가(교사) 연수계획서
- (15) 비상연락망

● 농촌유학센터에서 갖추어야 할 서류들

- 농촌유학센터 구비 서류

- (1) 정관 규정 : ①농촌유학센터 정관 ②운영규정 ③인사규정 ④급여규정
- (2) 회의록 : ①총회 자료집 및 회의록(사업계획서 포함) ②이사회 회의록

③각종 위원회 회의록 (3) 명부와 주소록 : ① 이사회 명부와 주소록 ② 협의회 명부와 주소록 (4) 홍보문 : ① 농촌유학센터정보 안내문 또는 리플릿 (5) 법인 관련 : ①법인의 정관 ② 공문철 (6) 농촌유학센터 관련 참고자료 목록 (7) 농촌유학센터 운영원칙
--

표 48 농촌유학 설립을 위해 구비해야 할 서류

농촌유학센터 설립을 위해 설립자(운영 주체자)는 해당 농촌유학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정하고 마을,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설립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농촌유학센터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설립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 농촌유학센터 간 교류 증진 및 농촌유학 질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3.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농촌유학의 가이드라인 탐색

이 절에서는 대상과 목적의 측면에서 농촌유학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갖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제도적 기준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농촌유학에 적합할만한 가이드라인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앞서도 언급한 바, 농가형이나 가족형 농촌유학시설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시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유사사례들의 기준을 보면서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는 기준점을 잡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가. 시설설치기준

1) 입지조건

지역아동센터	- 보건 위생 급수 안전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50미터 주위에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 선정 (아동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아동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수요 · 보건 · 위생 · 급수·안전 · 교통 ·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 - 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에 인가 제한 - 위험시설 또한 어린이집 인근에 입지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
	부모협동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친화적 환경: 인근에 텃밭, 도보로 산, 들, 약수터, 공원, 놀이터 같은 나들이 장소에 접근 가능 - 집처럼 편안한 환경: 아이들이 종일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마당과 놀이터, 실내공간 규모, 위생, 안전, 급수 등을 꼼꼼히 분석 - 안전한 환경: 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있는 곳, 간선도로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도 떨어진 곳은 피한다.
농촌유학기준안	필수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한다. - 어린이의 신체적· 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은 피한다. - 안전한 환경: 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있는 곳, 간선도로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도 떨어진 곳은 피한다.
	권장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교로부터 2~4km이내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한다. (일본 소다테루카이는 4km권장) - 자연친화적 환경: 인근에 텃밭, 도보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자연환경이 많을수록 좋다.

2) 시설면적

지역아동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 이상이어야 함. 다만, 집단지도실은 2개실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제2호 바목)
--------	---

아동보육시설		- 영유아 1인당 보육실 면적기준은 2.64㎡ 이상이어야 함.
청소년수련원		- 숙박실은 숙박정원 1인당 2.4㎡ 이상이어야 한다. - 숙박실은 4인실 이상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 숙박실은 채광과 통풍이 양호해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자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농촌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 숙박실은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이 3.3㎡ 이상이어야 한다. - 숙박실은 채광과 통풍이 양호해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교사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권장 요건	- 숙박실은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3) 기본시설

지역아동센터	-사무실 조리실 식당 및 집단지도실
아동보육시설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정원 50인 이상 시설), 급배수 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의 건물구조 및 보육실, 화장실, 놀이기구 등이 영유아의 안전과 이용에 편리하도록 설계·시공되어 있는지 확인
청소년수련원		-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수련의 숲, 특성화 수련활동장, 자치활동실, 강의실, 생활관(숙박실), 야영지, 식당, 위생시설(화장실, 식수원) 지도자실, 상담실, 양호실, 휴게실, 물품보관시설, 방송설비, 비상설비, 기타시설
농촌유학기준안	필수요건	-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식당, 위생시설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세탁실 등), 강의실, 텃밭, 지도자실, 숙박실 (유학생용/생활교사용), 비상설비 - 단, 이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며 농촌유학시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공간이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예: 식당은 식사시간 이외에 실내집회장으로 쓰일 수 있으며, 야외집회장은 체육활동장으로 겸용될 수 있다.)
	권장요건	사무실, 양호실, 휴게실, 물품보관시설, 방송설비, 기타 체험시설

4) 집단급식소 설치조건

지역아동센터		-1회 50명 이상(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 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아동보육시설		-영유아를 위한 음식의 조리공간은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되어 있어야 함.
청소년수련원		- 급식인원 1인당 1㎡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은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생활관 숙박정원의 100분의 30이상의 인원에게 일시에 급식할 수 있어야 한다.
농촌유학기준안	필수요건	- 급식인원 1인당 1㎡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은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권장 요건	-1회 50명 이상(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 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	--

5) 화장실

청소년수련원	- 화장실은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남·녀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아동보육시설	-화장실은 보육실과 동일한 층의 인접한 공간에 설치하며 (층간 설치 지양),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설치(건물외부 설치 불가)				
농촌 유학 기준 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필수 요건</td> <td>- 화장실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권장 요건</td> <td>-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목적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td> </tr> </table>	필수 요건	- 화장실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권장 요건	-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목적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필수 요건	- 화장실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권장 요건	-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목적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종사자 기준

1) 종사자 배치기준

지역아동센터	구분	시설장	영양사	생활복지사
	아동 30명 이상	1명	1명 (아동50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아동 30명 미만 10명이상	1명	-	1명
	아동10인 미만	1명	-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아동보육시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10조(별표2))	원장 (정원기준)	-전 어린이집별 1인	
	보육교사 (현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1세 미만 ⇒ 영아 3인당 1인 • 만1세 이상 만2세 미만 ⇒ 영아 5인당 1인 • 만2세 이상 만3세 미만 ⇒ 영아 7인당 1인 • 만3세 이상 만4세 미만 ⇒ 유아 15인당 1인 • 만4세 이상 미취학 유아 ⇒ 유아 20인당 1인 ※ 유아 40인당 1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함 • 취학아동 ⇒ 20인당 1인 	
농촌 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 유학생 6명당 생활교사 1인	
	권장 요건	- 생활교사들이 야간/주말 근무 후 휴식이 가능하도록 교대 가능한 규모	

2) 자격기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기준을 가진 사람
	생활 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동보육시설	원장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원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보육 교사	-보육교사는 자격기준(시행령 제21조 [별표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함(법 제21조)

			-보육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보육교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함
농촌 유학 기준안	활 동 가	필수 요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일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아래 5)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권장 요건	- 정교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3) 채용방법

지역아동센터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이 원칙(201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시설 등 홈페이지, 소식지 등에 15일 이상 채용 관련된 사항을 공고한 후에 법인 및 시설 내규 등에 의해 채용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관할 경찰서) - 성범죄 조회 결과 통보 전까지 종사자의 지역아동센터 근무 제한
아동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받는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함
부모협동보육시설		- 추천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인사위원회를 구성((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2인, 해당조합 이사 3인)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결정한다.
농촌 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 추천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가 채용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권장 요건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결정한다.



4) 채용시 구비서류

지역아동센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 종사자 자격요건 중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5) 채용신체검사서 : 전염성질환 및 정신적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호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음 6)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 종사자 자격요건 중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7) 성범죄경력조회서 : 채용예정자가 제출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에 조회 	
아동보육시설	<p>-임면권자가 보육교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자격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p> <p>(가) 공통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p>(나) 원장 및 보육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장 및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 국가자격증 발급 예정자는 자격증 취득 후 자격증 사본 구비 	
부모협동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채용 신체검사서 - 자격증 사본 (소지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농촌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p>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종사자 자격요건 중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p> <p>5) 채용신체검사서: 전염성질환 및 정신적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호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음</p> <p>6)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종사자 자격요건 중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p> <p>7) 성범죄경력조회서: 채용예정자가 제출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에 조회</p>
	권장 요건	- 인사기록카드 (근무 동안의 포상과 징계, 휴가, 결근, 지각, 조퇴, 인사변동사항 기록)

5) 결격사유

지역아동센터		<p>-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p> <p>-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p> <p>-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p>
아동보육시설		-일반원칙으로는 교직원 임면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에 채용된 자가 제2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범죄경력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구: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
농촌 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p>-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p> <p>-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p> <p>-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p> <p>-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p>



6) 종사자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

지역아동센터	<p>-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13년 사회복지 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5(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p> <p>< 별표5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13년 기준표) >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r> <th>호봉</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고용직)</th> </tr> <tr> <td>1</td> <td>1,588</td> <td>1,517</td> <td>1,446</td> <td>1,372</td> </tr> </table>		호봉	1급	2급	3급	4급(고용직)	1	1,588	1,517	1,446	1,372
	호봉	1급	2급	3급	4급(고용직)							
1	1,588	1,517	1,446	1,372								
아동보육시설	<p>-국고보조어린이집(정부지원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 책정을 위한 호봉 산정 기준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p> <p>-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호봉인정 근무경력 1년을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확정</p> <p>-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함</p>											
농촌유학기준안	필수요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권장요건	<p>-활동가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5(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p> <p>< 별표5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13년 기준표) > (단위 : 천원)</p> <table border="1"> <tr> <th>호봉</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th> </tr> <tr> <td>1</td> <td>1,588</td> <td>1,517</td> <td>1,446</td> <td>1,372</td> </tr> </table>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588	1,517	1,446	1,372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588	1,517	1,446	1,372								

7) 근무시간

지역아동센터	<p>-이용아동 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기준이므로, 종사자(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상근의무를 준수해야 함</p> <p>-상근시간 : 지역아동센터 필수운영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 근무</p>
아동보육시설	<p>-어린이집 원장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함.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시간(평일 12시간 원칙)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p>

		<p>할 수 있음</p> <p>-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은 평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함</p> <p>※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p>
농촌 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p>- 농촌유학 생활교사는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야 한다.</p>

8) 퇴직금 및 4대보험

		<p>-지역아동센터 종사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p> <p>-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p>
농촌 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p>- 활동가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 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p> <p>- 농촌유학시설은 전임 활동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p>

9) 교사교육

지역아동센터	<p>-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은 의무과정(의무교육·진입교육), 선택 과정(실무교육·센터·자체교육)으로 구분함</p>
아동보육시설	<p>-보육교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써,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과 보육교사가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및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무교육을 말함</p>



		※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3조, 시행규칙 제11조의2[시행일 : 2014.3.1.], 제 20조, 제39조의3
부모협동 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교육 (수습기간): 현장소개, 일과에 따른 교사역할, 근무규정·정관 및 운영인사규정 검토, 운영·교안준비 및 서류·교재·교구관리, 아동정보, 건강·위생·안전·비상대처법, 공동육아 교육론, 평가 및 기록법, 부모상담 및 부모관리, 교사모임 - (사)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현장학교: 기초과정(공동육아 기초, 공동육아 교육이론, 공동육아 교육활동), 교육실제과정(세시풍속, 이야기문화, 생태나들이, 놀이와 노래, 표현놀이, 장애아통합교육, 계획 및 평가 실제), 심화과정(교육이해, 아동이해, 공동육아 교육과정, 저널쓰기), 전문과정(삶과 교육, 참여보육, 교사론, 리더십, 교육학, 로드맵, 부모대담)
농촌 유학 기준안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 운영가이드라인(모니터링) 교육 - 현장교육 (수습기간): 현장소개, 일과에 따른 교사역할, 근무규정·정관 및 운영인사규정 검토
	권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기초교육 (아동관, 교육관, 농촌관) - 농촌유학 교육과정 (교육이론, 교육과정, 교육활동, 교육평가)

4. 농촌유학 운영 가이드라인(안)

가. 농촌유학의 기준

1) 시설기준

입지 조건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한다. - 어린이의 신체적·사회적 안전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설(폐기물처리시설, 유흥업소, 전염병원 등) 인근은 피한다. - 안전한 환경: 문을 열면 바로 차도가 있는 곳, 간선도로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에서도 떨어진 곳은 피한다.
----------	----------	--

	권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학교로부터 2~4km이내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한다. (일본 소다테루카이는 4km권장) - 자연친화적 환경: 인근에 텃밭, 도보로 접근 가능한 다양한 자연 환경이 많을수록 좋다.
시설 면적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실은 아동 1명당 전용면적이 3.3㎡ 이상이어야 한다. - 숙박실은 채광과 통풍이 양호해야 하며 지하실 등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 생활관의 형태를 소규모로 분산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교사용 숙박실을 청소년용 숙박실 근처에 배치하여야 한다. - 숙박실이 있는 층마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샤워장·세면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세탁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면장·샤워장 등을 세탁실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구조 및 면적으로 한 경우에는 세탁실을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권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실은 10인실 이하의 규모로 하여야 한다.
기본 시설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집회장, 야외집회장, 체육활동장, 식당, 위생시설 (화장실, 샤워장, 세면장, 세탁실 등), 강의실, 텃밭, 지도자실, 숙박실(유학생용/생활교사용), 비상설비 - 단, 이는 기능에 따른 분류이며 농촌유학시설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지나치게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나의 공간이 다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예: 식당은 식사시간 이외에 실내집회장으로 쓰일 수 있으며, 야외집회장은 체육활동장으로 겸용될 수 있다.)
	권장 요건	사무실, 양호실, 휴게실, 물품보관시설, 방송설비, 기타 체험시설
급식소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인원 1인당 1㎡ 이상의 면적이어야 하며, 급식인원에 알맞은 조리기구·배식설비·식탁·의자 등의 기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권장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회 50명 이상(종사자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 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함(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화장실	필수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실은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권장 요건	- 수세식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단, 교육적인 목적으로 친환경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

- 입지조건은 접근성, 이동거리, 사회적 안전망, 지역 인프라를 고려하여 정한다. 이때 위치는 도시와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지역주민들과 교류가 가능하고 학교를 도보로 다닐 수 있는 장소가 가장 좋다.
- 시설과 차도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어 안전한 주거 지역으로써의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 농촌유학센터 시설은 유학생들이 기숙하며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집처럼 아늑하고 편안해야하며, 무엇보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이어야 한다.
- 농가형의 경우 농가부모의 생활공간에 유학생용 방을 성별 분리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한 방에는 유학생 3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숙박공간과 더불어 학습공간도 제공되어야 한다.
- 화장실과 세면실은 농가부모와 함께 사용할 수 있으나 가족이나 유학생이 많은 경우 분리를 권장한다.
- 센터형의 경우 신축 시설이 어렵다면 마을 공동 소유의 도농교류센터, 체험관 등을 개보수하여 사용한다.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 시설은 보건·위생·급수·안전 및 교통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학교 및 자연환경에 접근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 시설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숙박실, 세탁실, 학습실, 야외활동공간, 집단지도실 및 활동가 숙소를 각각 갖추되 한 공간이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이고, 아동 1명당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제2호 바목) 이때 화장실은 전용면적에서 제외한다.
- 활동가의 숙소와 사무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 이 외에도 텃밭과 가축, 특별실(목공실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권장한다.
- 농촌유학센터의 주된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기관이나 개인용도 등과 공동 사용해서는 안 된다.
- 1회 50명 이상(활동가 포함)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2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품위생법 제101조)」

- 집단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 영양사 및 조리사를 배치해야한다. (「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 집단급식소의 의무(「식품위생법 제88조, 등)로는 식중독 등 위생관리 철저, 영양사 업무방해 금지 및 위생관리사항 준수 등이 있다.」

2) 활동가 기준

배치 기준	필수 요건	- 유학생 6명당 생활교사 1인의 비율로 한다.
	권장 요건	- 생활교사들이 야간/주말 근무 후 휴식이 가능하도록 교대 가능한 규모로 한다.
자격 기준	필수 요건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권장 요건	- 정교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채용 방법	필수 요건	- 추천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 활동가 채용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채용 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
	권장 요건	-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통한 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결정한다.
채용시 구비 서류	필수 요건	1) 이력서 2) 주민등록등본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4)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종사자 자격요건 중 경력이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5) 채용신체검사서: 전염성질환 및 정신적 질환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동보호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음 6)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종사자 자격요건 중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 필수 제출 7) 성범죄경력조회서: 채용예정자가 제출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설장이 관할 경찰서에 조회



	권장 요건	- 인사기록카드 (근무 동안의 포상과 징계, 휴가, 결근, 지각, 조퇴, 인사변동사항 기록)										
결격 사유	필수 요건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활동가 인건비 지급 최저 기준	필수 요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최저임금										
	권장 요건	-활동가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은 '13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체계(안) 별표5(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 3급 1호봉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 별표5 복지관직원-관리직 봉급지급 기준표('13년 기준표) > (단위 : 천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호봉</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th> </tr> </thead> <tbody> <tr> <td>1</td> <td>1,588</td> <td>1,517</td> <td>1,446</td> <td>1,372</td> </tr> </tbody> </table>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588	1,517	1,446	1,372	
호봉	1급	2급	3급	4급								
1	1,588	1,517	1,446	1,372								
근무 시간	필수 요건	- 농촌유학 생활교사는 근무시간 및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야 하며, 적절한 근로시간과 휴식시간이 구분되어야 한다.										
퇴직금 및 4대 보험	필수 요건	- 활동가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 - 농촌유학시설은 전임 활동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교사 교육	필수 요건	- 안전교육 + 운영가이드라인(모니터링) 교육 - 현장교육 (수습기간): 현장소개, 일과에 따른 교사역할, 근무규정·정관 및 운영인사규정 검토										
	권장 요건	- 농촌유학 기초교육 (아동관, 교육관, 농촌관) - 농촌유학 교육과정 (교육이론, 교육과정, 교육활동, 교육평가)										

- 센터형의 경우 유학센터를 전임으로 담당하는 활동가들만을 기준으로 학생과의 비율이 1: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센터장은 유학센터 업무만을 전임으로 맡는 경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을 참고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운영자의 결격사유로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을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 28장·제40장(제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나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

1.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22조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활동가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결격사유로 본다.
 1.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활동가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및 제71조(벌칙)

- 활동가 채용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서류를 제출받아 지원자의 자격 및 경력 여부,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등을 확인해서 센터의 활동가로 적합한 사람을 선발해야 한다.
 1.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 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해)
 3. 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4. 신체검사서: 전염성질환 및 정신적 질환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채용할 수 없음
 5. 성범죄경력조회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첨부 관할 경찰서에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 20조 참조)
- 활동가 채용 시에는 다음과 사항으로 관리 등록한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2. 인사기록부에 인사기록카드 기록 및 관리
 3. 활동가의 근태관리를 위해 출근부 작성
- 활동가의 복무규정에 대해 원칙들을 합의하고 공유한 후 이를 명문화하여 보관한다. (복무규정 예시)
 1. 복무관리 원칙
 2. 급여
 3. 퇴직금
 4. 사회보험
 5. 복무규정
 6. 휴직과 휴가
- 농촌유학센터는 활동가에 대한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활동가의 권리를 존중함

- 농촌유학센터 활동가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활동가(생활복지사 우선)에 대한 인건비 지급 최저기준을 적용함(권장사항)
- 농촌유학센터 활동가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010년 12월 1일 이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법정퇴직급여의 절반(1년 근무에 대하여 15일분의 평균임금)만 지급할 수 있으나, 2013년 1월 1일 부터는 법정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 농촌유학센터는 활동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퇴직금 적립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농촌유학센터는 활동가를 위한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함(www.4insure.or.kr 참조)
 - 시설장이 고용된 활동가가 아닌 사업주라면 시설장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의 2대 보험에만 가입함
 -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가 사업주인 시설장과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제외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 활동가는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은 부여해야 함.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및 육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나. 농촌유학센터 운영

1) 유학생 관리

가) 유학생 모집

- 최소한 해당 학기 시작 3개월 전부터 진행. (학교가 학급편성, 교사수급 등을 할 수 있도록)



- 도시 부모들에게 충분한 설명으로 불안감 해소
 - 센터 설립취지, 운영목적, 운영철학, 운영주체 소개
 - 센터 시설, 일과, 주요 프로그램 안내
 - 센터 적응과 돌봄에 대한 신뢰
 - 운영일, 운영시간, 유학비, 생활규칙 등 안내
- 학생에 대한 충분한 정보 청취
 - 가정환경, 성격, 특징, 병력, 처방약 등
 - 설문조사 (방문자용, 유학대상자용)
- 유학이 결정된 경우 입소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 전입 및 전학 과정
 - 준비물
 - 부모 방문일
 - 귀가일
 - 연락수단
 - 주의사항
 - 유학비와 부대비용

나) 전입과 전학절차

학생모집이 결정되면 전입신고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학구의 학교로 전학을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는 유학생 부모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유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시킨 후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학구의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거쳐 전학절차가 완료된다. 이때 위장전입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중학교의 경우에는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에서 요구하는 부모 1인과의 사실거주확인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 된다. 이 부분이 농촌유학 제도화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이유 중 하나다.

다) 유학생관리

농촌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생 관리다. 학생 관리는 농촌유학의 5가지 운영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학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이뤄야 한다. 아래 학생관리 항목을 참고로 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구분	권장항목	구분	권장항목
유학센터	입소원서, 동의서, 전입서류	학교	안내장
	학생 자기소개서		알림장
	학부모 의견서		학교교육과정
	유학센터 교육과정		담임교사상담기록부
	용돈기록장		성적표
	상담기록부		상장
	응급처치 동의서		업무협약서
	식단표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설문지		
	학부모 설문지		
	회계장부		
	생활기록부		

표 49 학생관리 항목(각종 양식)

라) 아동권리 보장

- 농촌유학센터는 유학생에 대한 권리교육을 통해 아동의 권리의식을 강화하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농촌유학센터 내에서 권리보호 및 실현에 대한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 아동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아동에 대한 권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권리교육은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행
 -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유학생 자치회’로, 이용 아동이 참여하는 유학생 자치회 활동을 연간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시행함
 - 아동자치회에서 생활수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논의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을 보장하고 지원
- 유학생의 성별, 장애, 인종, 종교, 문화, 언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차별을 두지 않으며, 소수집단을 합리적으로 배려하고 동등한 참



여를 보장하는 방침을 문서화함

- 농촌유학센터는 운영규정, 복무규정 또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문서화해야 하며,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권리침해 시 호소경로 장치, 체벌관련 내용을 포함함
- 아동 권리규정은 유학생 및 보호자에게 문서로 전달하여 아동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함
- 유학센터 내에서 권리침해사실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줌

2) 활동가 관리

이제 막 싹을 틔우고 있는 농촌유학에서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활동가이다. 활동가는 농촌유학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촌유학의 현실은 귀농·귀촌자들을 중심으로 수소문을 통해 활동가를 모집하고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유학 활동가들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소양인 학생들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과 활동가로서의 삶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민 등이 없이 잠시 머물다가는 곳이 된다면 이직률이 높은 현상이 나타난다.

준비된 활동가를 길러내고 채용하는 것은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 장에서는 공동육아와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농촌유학 활동가들의 모집과 교육, 그리고 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가) 활동가 모집

지역아동센터와 부모협동보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고 있다.

<종사자 자격기준>¹⁸⁾

18) 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2014), 보건복지부, p 14.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2007), 여성가족부, p 72.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부모협동보육시설 (교사)	조합의 교육지향에 공감하며, 육아조합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유아교육 관련학을 전공했거나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공동육아협동조합인 경우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실시하는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이수중에 있는 사람(단,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먼저 채용된 사람은 교사자격과정의 이수를 전제로 함)

표 50 종사자 자격기준

2004년 제도화 되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생활복지사 채용 기준을 특정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농촌유학의 경우 귀농·귀촌자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긴 노동시간과 부족한 휴식, 낮은 급여 등으로 농촌유학이 지향하는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조건으로 넣는 것보다 우대조건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마음이나 공동체적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을 채용하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자기평가를 통하여 활동가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동가를 모집해야 하겠다.

농촌유학 활동가를 채용할 때는 몇 가지 공개된 절차와 원칙을 지키도록 한다. 첫째, 추천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인사위원회는 농촌유학 관계자 외 지역공동체 대표 등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대표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셋째, 인사위원회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활동가를 채용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은 농촌유학에 대한 이해 정도와 자질, 긍정적 사고, 학생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삶에 대한 방향과 활동가로서의 삶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평가 등을 중심으로 면접한다. 마지막으로 신규 채용된 활동가는 일정기간 수습기간을 갖도록 한다.

나) 활동가 교육

2006년 처음 소개된 농촌유학에서는 이미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중심으

로 일 년에 한두 번, 단기 연수가 비정기적으로 이뤄져왔다. 활동가의 성장이 같이 생활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활동가 대상 교육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을 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¹⁹⁾

구분	의무과정		선택과정	
	의무교육	진입교육	실무교육	센터 자체교육
목적	종사자 역량강화 도모	신규시설장 기초운영역량 강화	실무교육을 통한 실무역량 향상	개인별 맞춤형 역량강화 도모
대상	시설장 생활복지사	신규시설장	시설장 생활복지사	시설장 생활복지사
교육내용	운영지침 아동관리 시설운영 등	지역아동센터 이해 시설운영 회계 관리 등	사례관리 회계관리 기타 실무교육 등	아동이해 및 권리 프로그램 운영 업무규정교육 등
운영주체	시도지원단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시도지원단	지역아동센터

표 5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지역아동센터 종사자교육은 의무과정(의무교육·진입교육), 선택과정(실무교육·센터 자체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농촌유학은 지역아동센터처럼 체계화된 교육체계를 당장 갖추기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기존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성장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과정에는 농촌유학 가치의 정립, 교육관 구축, 아이들의 발달 과정, 아동심리, 학생들과 소통하는 법,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농촌유학은 센터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도시유학생과 지역과의 연계와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해야 한다.

19) 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2014), 보건복지부, p 89.

다) 활동가 평가

평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겠지만 일반적으로 평가대상의 장점과 가치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유성(2009)²⁰⁾에 의하면 평가는 활동가 자신이 세운 교육목표와 생활목표에 대한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교육의 계속적 개선을 꾀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농촌유학에서 활동가 평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한 획일화된 평가보다는 활동가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한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교사 평가서 양식을 기본으로 농촌유학 활동가 평가서를 재구성하였다.

활동가 평가서 양식

I. 농촌유학 시설에서의 활동가의 역할

1. 농촌유학 시설에서 활동가의 역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2.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잘 안되고 있다면 왜 그런가요?)
3. 하루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어떤 준비를 하나요?
4. 야외활동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준비물과 계획) 야외활동을 가서 학생들과 무엇을 하나요?
5. 유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해 잘 알고 있나요?
6. 교육평가와 계획을 기록하고 있나요? 또 기록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인가요?

II. 유학생들과의 관계

1. 유학생들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
2. 유학생과 내가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 하나요?
3. 유학생들끼리의 분쟁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좀 더 마음에 드는 학생의 편을 든다든가 선입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4. 유학생들 행동을 관찰하고 일지를 작성하고 있나요?

20) 정유성(2009), 대안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p124.



Ⅲ. 활동가 간의 관계

1. 다른 활동가들에 대한 관심이 있나요? 배려하는 마음은?
2. 다른 활동가들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나요?(잘 안되고 있다면 왜 그런가요?)
3.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말하나요?
4. 동료 활동가들과 협력이 잘 되나요? 안된다면 보완할 점은 무엇인가요?

Ⅳ. 기타

1. 유학생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무리함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가요?
2. 그동안 지내면서 힘든 점, 개선되어야 할 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3. 지역주민들과 소통과 협력이 잘 되나요?

표 52 활동가 평가서 양식

라) 활동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

국내외 농산어촌유학 실태 및 발전방향 조사(2011)²¹⁾에 의하면 일본 농촌유학센터 지도원의 임금은 공교육 교사 초임에 비해 70%에 불과하다. 신분도 비정규직이고 인건비를 부담하는 지자체의 경우 예산을 더 줄이고 싶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 전에 잠깐 거쳐 가는 직업으로 생각하거나 교사 시험을 보기 전에 잠시 경력을 쌓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우리나라보다 40년 이상 먼저 시작한 일본의 농촌유학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좋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농촌유학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활동가들의 확보와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유학생들과 소통과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와 같은 잡무가 줄어들어야 하고 혼자서 조용하게 몰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생활의 궁핍에 쫓기지 않을 만큼의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교육 또한 필요하다. 현재의 교육들은 단기성으로 일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 시설에서 충족시킬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야겠다.

21) 국내외 농산어촌유학 실태 및 발전방향 조사(2011), 농촌정보문화센터, p27-28.

- 활동가는 아래의 역할들이 서로 겹치거나 놓쳐지지 않도록 서로 역할배분을 잘 할 수 있어야 한다. (역할 분담표 예시)
 - 1. 유학생들의 돌봄 및 성장
 - 2. 지역과의 소통
 - 3. 운영 및 행정
 - 4. 활동가로서의 자기 성장
 - 5. 휴식과 회복
- 활동가는 아동의 권리보호자로서 권리와 권리보호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아동의 권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권리교육 실행을 위해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도 포함) 교육을 통해 농촌유학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 아동 체벌, 성폭력 등 권리침해 상황을 예방하도록 한다.
-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각 지방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1577-1391(아동학대신고전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콜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 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형법 제301조 및 제301조의2의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 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활동가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 종사자의 근무관련 기본수칙을 수립, 근무 질서 확립, 근무조건 보장을 위해 복무규정을 정해 운영규정에 포함한다. 복무규정은 종사자 채용 시 숙지할 수 있도록 문서화된 것을 제공하여야 한다.
 - 채용 후 즉시 종사자의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작성한 후 1부는 종사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함
 - 종사자로서의 복장, 출퇴근, 업무내용 등의 준수사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관리, 시설 내 시설장-종사자, 종사자 간의 관계에 관한



내용, 직무와 관련된 의무 및 제한 등을 포함함

- 다만, 상위의 효력을 가지는 노동 관련법,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 할 수 없음
- 인사기록카드: 시설정보시스템 인사기록카드를 활용하여 작성 후 인사 관련 서류철과 함께 보관(기본정보, 학력사항, 자격면허, 입사 전 경력 사항, 교육연수, 해외출장, 발령사항 등)
- 인사 관련 서류철: 채용 시 제출받은 서류를 인사 관련 서류철에 별도 보관하고, 이력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종사자로부터 보고받고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함. 특히 건강진단서는 매년 1회(해당년도내) 제출받아 보관

<참고>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표 53 근로기준법

3) 안전관리

농촌유학안전매뉴얼(2014.7)을 숙지하고 비치하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4절 안전관리매뉴얼 참조)

- ① (기본사항) 마을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마을현황, 농촌유학시설 인명부(시설 및 시군 비치용) 등
 - ②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 및 체험활동,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 ③ (안전보호구 등의 설치)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등 보호 장구의 설치, 긴급 대피시설, 소방 및 대피로, 대피 후 피난 집결지 등에 관한 사항
 - ④ (안전점검 계획) 시설물, 체험활동, 식품·위생, 마을 주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점검 분야, 점검시기, 관련기관 등)
 - ⑤ (안전교육 계획) 안전교육 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유학생, 생활교사 및 운영자, 연계 농가 부모 대상)
 - ⑥ (비상시 조치계획)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등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대피시설 등에 관한 사항
- ※ 복수의 시설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경우(농가결합형 및 복합형), 관리계획에 시설 종합 관리계획 및 개별 시설(농가) 관리계획 반영

4) 재정관리

가) 재정관리 원칙

- 농촌유학센터는 재무회계 및 후원금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을 관리한다.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에 의하고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함.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 소속을 구분함

-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 하여야 함
- 예산은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자체 부담금, 이용료로 구성되며, 농촌유학센터와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관리한다.
-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한다.
- 인건비는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나) 예산

① 예산 편성의 원칙

-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고 예산내용을 표기 하여야 하며, 모든 수입금과 지출금은 반드시 예산서에 표기함
- 세입과 세출예산은 건전한 내용으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며, 실행 가능성이 없는 수입을 재원으로 한 지출은 계상하지 않음
-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시설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각각 법인 이사회 의결 및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함. 예산서에는 예산총칙, 세입 세출명세서, 임직원 보수일람표, (법인의 경우)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함
- 시 군 구청장은 제출받은 시설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법인 및 시설의 경우 동시에 법인 및 시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
- 예산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함.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연간예산내용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음. 시설장은 추가경정예산서를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② 예산편성 방법

- 예산의 구조는 다음과 같고, 시설회계 관 항 목의 구분과 설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 별표 3과 4을 참고하였음



- 관 : 기능별, 조직별, 사업목적별 분류
 - 항 : 경상예산별, 사업예산별, 채무상환, 예비비 등
 - 목 : 성질별 및 내용별 구분
- 세입 세출예산은 과목별로 구분하여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작성함

다) 예산집행

① 예산관리의 원칙

- 수입 및 지출 사무관리 주체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며, 해당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의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각각 위임 가능함
-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 수입원과 지출원을 둬. 다만,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음
-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 금융기관 거래통장은(법인 시설 수익사업)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하므로, 시설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통장을 개설함
- 모든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내부기안과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를 한 후 현금 출납부, 총계정원장, 수입 지출보조부에 기록함
- 금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정정할 경우 담당자의 도장을 날인함

② 예산의 전용

-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은 관 항 목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음
 - 다만, 법인 및 시설(소규모 시설은 제외)의 관간 전용 또는 동일 관내의 항간 전용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쳐야 하되,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 관간전용 또는 동일관내의 항간전용시 이사회의결 또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야 함.
- ※ 보조금예산의 경우, 타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따라 보조금 지원 주체가 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법인 및 시설은 이에 따라야 함

- 동일 항내 목간전용은 법인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이 전용 가능함
- ③ 수입 관리
 - 운영비는 계정별 통장을 별도로 구비하여 관리함
 - 정부보조금 통장(운영비와 지자체 급식비 분리 운영), 후원금 통장, 법인 전입금 및 자체 부담금 통장, 이용료 통장, 퇴직금 적립 통장 등)을 별도 구비하고, 법인 후원금 통장을 제외한 모든 통장은 시설명(또는 시설명+시설장명 병기)으로 만들어야함
 -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며,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하여야 함
 - 시설정보시스템에 입금내역을 입력하고 수입결의서를 출력하여 보관함
- ④ 지출 처리
 - ⓐ지출 절차
 - 예산의 지출은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함
 - 예산 집행시 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은 후 집행함
 - 지출결의서를 통해 집행의 결과로 회계처리와 집행금액, 집행일자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시설장에게 결재 받음
 -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로 행하여야 함
 - 다만, 긴급 상황을 대비하여 상용 소액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100만 원 이하의 현금 보관이 가능함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서 지출내역을 입력한 후 지출결의서를 출력하고 지출증빙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보관함
 - 지출은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거래로 행함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 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가맹점)에서는 1원 이상 집행시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지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인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 입금 활용하고, 그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구비

㉞ 인건비 지출

- 급여대장에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기타 후생경비 등을 함께 적고 지출결의도 한 번에 함
 - 급여대장을 작성하면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음
- 인건비는 개인별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근로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 공제액은 예수금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관리하고, 각각 납입시기에 맞춰 해당기관에 납입하여야 함
 - 위의 근로소득세, 주민세 및 사회보험부담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동계산하며, 세금납부는 국세청홈텍스를 이용하여 납부함

㉟ 물품 구입

- 모든 물품구입은 지출품의에 의거 구입토록 하고 영수증(세금계산서)을 필히 받아 첨부함
- 내구연수 1년 이상, 물품가액 10만 원 이상 비품을 구입할 때는 비품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여야 함(소모성 물품은 제외)

㊱ 공공요금 지출

- 공공요금은 집행품의를 생략가능하며, 청구서에 의하여 지출하고 지출결의서에 영수증을 첨부함

㊲ 반납(여입)결의서

-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함
- 이미 수입 또는 지출처리가 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원래 과목에 넣어 처리할 경우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마이너스(-) 처리(수기 장부의 경우 붉은색으로 기록)하여 다시 산입함
- 과오납된 수입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년도 세입으로 반환할 수 있음

⑥ 세입 세출 외 현금

- 농촌유학센터 운영 시 수입금으로 볼 수 없는 현금 발생 시에는(예: 인건비 지급시 종사자 보수에 대한 소득세, 주민세 등 원천징수액,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담금 등 인적공제액과 같이 해당기관 납입 전 현금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등) 일시 보관 현금을 다시 세입예산에 편입할 수 없으므로, 지출원이 임의로 관리하지 말고 세입 세출 외 현금(예수금)으로 관리함
- 세입 세출 외 현금은 일반예산 통장과는 별도 통장을 개설해 관리함
 - 세입 세출 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계약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설 수입에 편입함

라) 결산

① 세입 세출 결산 의무

- 농촌유학센터는 매 회계년도 말에 결산을 의무적으로 실시함
-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가 종료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침
- 시설의 회계별 세입 세출 예산개요를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법인의 경우 동시에 법인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함

② 결산방법

- 결산은 세입 세출을 예산의 과목별로 세분하여 실시함
- 결산금액단위는 10원 미만은 절사함
- 정부보조금 사용 잔액은 연말 결산시 반납조치토록 하며, 기타는 이듬해에 이월 하여 사용함
- 시설보강사업(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정산보고서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 대장 및 완공건물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장비 구입 시는 구입물품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함
- 보고서 작성 시 작성자의 직 성명을 기재하고, 시설장 직인과 실인을 날인하여야 함

③ 결산보고서 작성

- 세입결산서



- 예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함
- 결산은 실제 수입액으로 함
- 세출결산서
 - 예산서의 항목과 동일하게 과목 및 예산액을 작성함
 - 예산을 추가하거나 경정한 경우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함
 - 결산액은 실제 지출된 금액으로 함

5) 운영관리

가) 운영계획수립

① 설립목적 수립

-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각 기관별 특성, 지역특성, 아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촌유학센터의 설립목적 을 정함

② 지역특성 파악

- 농촌유학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조사(인구분포, 아동 현황,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분포 등), 지리적 위치, 주택환경, 생활편의시설, 생활 안전 부분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함

③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 시설규모, 시설예산,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연간 및 세부사업계획서 를 작성함
- 또한 이용아동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후 아동을 위한 학기 중 방학 중 프로그램과 일과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함

<사업계획서 수립시 고려사항>

- 달성 가능해야 함
- 측정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함
- 목적 - 목표 - 세부전략 등이 일관성이 있으며 체계적이어야 함
- 내외부의 철저한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함
- 이용아동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함

㉡ 사업계획 수립 과정

㉠ 사업의 필요성

- 사업대상자(참여자)의 욕구와 문제점, 환경적 특성, 경험적 근거, 관련된 지역 자원에 대해 분석을 통해 필요성을 제시함
- 객관적 수치나 통계자료, 공감할만한 사례소개 등을 활용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제시함

㉡ 목적과 목표

- 목적은 사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목표는 목적이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측정 가능해야 함
- 목표는 하위목표 - 성과목표 - 산출목표 등 다양한 목표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업의 방향에 맞는 체계적인 목표를 세움

※ 농촌유학센터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복지 증진’이라면, 목표는 ‘사례관리 아동 10명 발굴 및 보호’ ‘의료 복지 교육 등 아동전문가 간 상호협력체계 구축’ 등이 될 수 있음

㉢ 프로그램

-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돌봄을 우선으로 하고 아동의 건전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함
- 학교 적응력 향상과 자발성 증진, 가족기능보완 및 강화 등 지지체계를 구축함

㉣ 세부내용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혹은 사업내용으로서 목표와 세부내용이 통일성이 있어야 함
- 사업시기, 사업 횟수 시간, 참여인원, 수행인력 등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함
- 목표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채택하되 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창의적인 것이어야 함

㉤ 예산

- 관, 항, 목 세목의 구분을 재무회계규칙에 근거하여 예산안을 작성해야 함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비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산출근거를 실제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함
- 자원조달계획을 반영하여 작성해야 하며 사업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적정한 비율로 배정되어야 함

①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사업수행과정상의 효율성 관리 등의 평가계획을 작성함
- 목표달성도는 변화율, 횟수나 명수 등 측정가능한 객관적 수치로 나타내야하며 만족도 설문, 인터뷰, 관찰, 변화율 측정 등 측정방법을 제시함
- 사업수행과정상의 효율성 관리 는 수행과정 중에 예상되는 문제점, 그에 대한 대책 등을 고려하여 작성함

② 운영규정

- 농촌유학센터는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2 참조)
 - 농촌유학센터는 시설운영의 근본규칙이라 할 수 있는 ‘운영규정’을 제정해야함
 - ‘운영규정’ 안에는 조직(운영위원회 등) 문서관리 물품관리 자산 및 회계 등과 관련된 규정과 직원채용(자격기준, 구비서류 등) 휴가 승진 퇴사 등과 관련된 인사규정, 근무시간(출퇴근 등) 급여 휴가 복장 업무내용 비밀유지 체벌금지 등과 관련된 복무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함
 - 농촌유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권리를 위한 이용 아동의 비밀보장, 이용 아동 또는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과 고충처리방침과 아동학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절차, 내용, 교육 등을 담은 규정을 마련함
 - 농촌유학센터는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를 위한 고충처리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규정을 마련함

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참조)

① 구성

- 농촌유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함(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킬 것)
- 운영위원회는 시설장 1인을 포함하여 5~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설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 후 위촉(임기는 3년으로 하되, 시설별로 조정)

가능함(임기가 새로 시작하는 위원만 해당, 기존 위촉자는 인정)

② 운영

-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규정한 회의개최 요건에 해당할 경우(재적의원 1/3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 수시회의 개최
-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 위원의 날인을 받아 센터 내에 비치하여 이용 아동, 학부모, 지역주민, 종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개인정보 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음(비공개사유는 공개해야 함)

③ 심의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 시설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 시설종사자 및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
-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등

④ 보고사항(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3항)

- 시설의 회계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 ※ 상기 사항 등을 운영위원회에 사전보고 하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것은 아님

다) 개인정보보호

- 농촌유학센터는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아동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1장 제1조)
- 농촌유학센터는 아동 최초 등록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선택항목(문화체험 시 여행자보험, 사례관리, 홈페이지 활용, 홍보 및 후원연계의 목적 등)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동의서를 받아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1항)
-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인정보보호법」제77조 제4항 제 2호)



- 농촌유학센터는 퇴소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문서를 보존기간에 따라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보관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훼손되지 않도록 문서보관 기준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제2항, 제21조 제3항)
-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2항 제4호)

라) 문서관리

- 농촌유학센터는 시설운영, 아동관리(이용등록 등), 프로그램(연간사업계획서, 프로그램계획서, 프로그램평가서 등), 사례관리, 회계 관리(후원금, 이용료 등) 등 시설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한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한다.
- 농촌유학센터 운영상 필요 문서(운영일지, 공문철, 종사자 인적관련 서류, 아동복지 시설 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 결산서, 총계정 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는 별도의 서류로 구비하여 보관

마) 연간계획 수립

-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1년 단위로 한 해의 사업계획안을 구상하여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매년 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평가하고 사업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연간 사업계획을 토대로 예산집행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해나가면 재정 손실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운영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사업영역만을 구상하였을 때보다 체계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고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을 방지할 수 있다.
- 규모가 작아도 연간 사업계획을 마련해 놓으면 각종 행사와 사업규모, 사업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연간계획표 예시 부록 참조).

바) 교육계획안 작성

- 교육계획안은 연간, 월간, 주간 등 시기별 계획 속에서 교육목표, 교육내용, 활동주제를 정하여 작성한다. 소주제는 일반적 단원 주제보다 범위가

작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농촌유학이 추구하는 교육철학에 기반하고 유학생들의 발달과정에 맞게 목표를 세운다. 계획과 평가의 틀은 개별 활동가들의 재량에 맡기기보다는 공동의 틀을 마련하여 서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획과 평가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공개 및 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 교육 연간계획 작성 시에는 자연, 계절의 특성, 절기에 따른 세시풍속, 농촌유학센터의 행사, 건강과 안전에 대한 예방교육 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야 한다(연간교육계획안 예시 부록 참조).
- 연간계획을 실현하는 방안으로 월간계획이 있다. 농촌유학센터에서는 아이들의 연령과 학년을 구분해서 작성할 수 있다. 연령과 학년의 구분 없이 전체 통합으로 할 경우에는 유학센터의 내부 행사와 외부행사(나들이 등)를 포함하도록 한다. 월간계획에는 경우에 따라 중점적인 활동이나 큰 흐름만 잡아 놓고 세부안을 만들어 구체화 할 수 있다(월간교육계획안 예시 부록 참조).

사)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크 구축

-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것은 농촌유학 시설들의 아이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아이들을 같은 눈으로 바라봄을 의미한다. 더불어 아이들도 나들이를 다니다가 인사하는 이웃들과 만나고 서로 돌봐주는 가운데 성장해간다. 또한 아이들이 부모와 생활교사들이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큰다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세상과 소통하고 공동체성을 키워나갈 것이다. 이는 단지 아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라는 기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지역과 소통은 교육운동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역의 아이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은 좁은 영역에서 진행되는 농촌유학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자,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생활을 교육내용 속으로 끌어들여 그 내용을 확장해나가는 작업이다.
-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와 지자체 보조에 의존하고 있는 농촌유학센터는 지역사회로부터 필요한 자원을 투입 받아 자원을 다양화시키는 지역사회 자원개발이 필요



- 지자체 및 농촌유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 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여 아이들의 성장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 운영
 - 농촌유학센터는 지역차원의 지원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병원, 약국, 성폭력상담소, 아동상담소, 동사무소, 파출소, 시민단체, 생활체육 협회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해 아동의 문제 상황을 총체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함
 - 부모, 교사, 아이들의 삶에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지역사회를 좀 더 건강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
- 지속적인 재원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해 농촌유학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 형성과 투명한 운영을 통한 신뢰 확보는 필수적임
 - ① 지역사회 전문 인력 활용
 - 농촌유학센터는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 조직·운영을 통해 전문 인력이 농촌유학센터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 및 역량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센터 지원망 형성 및 이용아동 개인에 대한 맞춤형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함
 - ② 후원자 개발 및 관리
 - 농촌유학센터 후원자 발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수립함
 - ⓐ 후원활동의 방향
 - 기관 운영의 건전한 기반을 위해서는 다수의 후원자들로 구성함
 - 후원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함
 -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과 윤리적 모금활동을 함
 - ⓑ 후원자 개발
 - 농촌유학센터 프로그램별 관심대상을 파악하여 후원모집을 함
 - 농촌유학센터 이사회, 운영위원, 시민단체, 교육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단체가 후원 체계의 기반이 됨

- 학부모모임, 사업지원기관 등 농촌유학센터 활동에 관심을 가진 지역 내 연합집단 및 기업의 복지재단,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타 후원단체 등이 후원자의 대상이 됨
- ◎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관리의 체계화는 자원봉사자를 농촌유학센터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자원봉사자 활용분야
 - 아동의 상황과 봉사활동의 특성에 따라 일회성과 연속성을 조절할 수 있음

6) 운영보고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농촌유학이 진행되면서 시설의 특성과 장점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아직 농촌유학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불안정한 상태를 보완하고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록이 중요하다. 방안으로는 운영보고서를 제안하며, 1년간의 농촌유학 운영을 운영보고서로 작성하여 모아내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유학의 역사를 기록함으로써 사업 시행 초기의 불안정한 상태를 극복해야 한다. 농촌유학의 교육성, 공공성, 투명성 실현을 위해서도 운영보고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재 항목
1. 유학센터 운영지역 현황(마을명칭, 유래, 지역자원, 가구수, 인구수, 특산물)
2. 유학생 현황, 유학생 소속 학교 현황(학생수, 성별, 학년, 지역구분)
3. 유학생 구성의 변화(과거~현재)
4. 유학센터 교육과정
5. 유학센터 분석자료(회계정리, 설문지, 자체평가, 발전방안)
6. 농촌유학 지원 사업 신청서(공모사업 선정대상만 해당)
7. 농촌유학 지원 사업 정산서(공모사업 선정대상만 해당)
8. 홍보자료(홍보물, 사진자료, 언론보도내용)
9. 업무협약서(마을 또는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은 경우)
10. 제안서(건의서, 요청서)

표 54 운영보고서 기재 항목



다. 농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농촌유학에서는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해야 할까? 농촌유학의 교육프로그램은 농촌에서 행해지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어떻게 다른가? 농촌유학은 사교육 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할 것인가? 농촌유학은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무엇이 달라야 하나?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것은 농촌유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물론 농촌유학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파악하거나 운영하는 것은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농촌유학의 가치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본성’이라고 할 때, 지나친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은 자칫 농촌유학의 핵심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없는 농촌유학을 상상할 수는 없다. 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그저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저절로 자란다’는 것은 방치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을 논의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할 질문 중 하나는 ‘어떤 내용을 가르치지 않으며 왜 그것을 빼놓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또한 의도하지 않았지만 배우게 되는 잠재적 교육과정, 그리고 가르치지 않지만 이미 알려져 있어 그 부적합성을 배우게 되는 영교육과정 (Null Curriculum) 역시 고려의 선상에 있다. (Eisner, 1979)²²⁾

앞서 살펴본 바, 농촌유학은 ‘농촌’이라는 지역성과 ‘유학’이라는 물리적 조건, ‘도시아이’라는 대상, ‘중장기’라는 기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만나 성장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다섯 가지 요소를 반영하여 고려해보면 쉽게 해답이 나올 수 있다. 농촌유학은 ‘도시아이’라는 특정 대상에게 필요한 ‘성장’을 목적성을 갖고 제공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농촌유학에서 ‘농촌’은 단순한 지역적 특성만을 반영하지 않는다. 즉, 도시라는 인공적 공간에 대비되는 자연적 공간으로서의 농촌이 있다. 또한 ‘유학’이라는 조건은 혼자만이 대우받는 개인적 공간으로서의 집을 떠나 스스로 사는 자립적 생활, 그리고 다른 공동체 속에서 낯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의미다. 이는 일회적인 체험이나 단기간의 캠프로는 해결될 수 없다. 적어도 일 년 사계절의 시골살이를 통해야 종합적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촌유학에서는 1년 단위에서 사계절의 변화와 세시풍속을 경험하면서 자연 속에서 머리(智)와 영혼(德)과 육체(體)가 함께 성

22) Eisner, E.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Y: Macmillan.

장하며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이를 교육영역으로 구분해보면 자립, 공동체, 자연친화, 지적성장, 정서성장, 신체성장의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교육영역	교육사례들
자립	텃밭가꾸기, 토요집중농사, 음식만들기, 천연염색, 목공, 바느질, 야영, 산나물채취, 딸감구하기, 장작패기, 아궁이불때기, 바른 식생활교육, 뜨개질, 살림수업, 장난감 만들기, 도예기초, 제과제빵, 옷만들기, 보따리여행 등
신체성장	자연생태체험, 농사체험, 어업체험, 전통(민속)문화체험, 산행, 물놀이, 흙놀이, 아침운동, 맨손 체조, 팔극권, 전통 무예, 택견 등
지적성장	프로젝트 여행, 오두막집짓기, 통나무 징검다리 만들기, 별자리관찰, 동식물관찰, 환경교육, 편지쓰기, 수와 셈, 시쓰기, 여러갈래 글쓰기, 외국어 등
정서성장	풍물배우기, 민요배우기, 악기배우기, 미술표현, 책읽고 나누기, 책읽어주기, 일기쓰기, 놀이창작, 오이미트리 등
자연친화	세시풍속, 절기교육, 생태프로젝트, 풀과 나무 등 알기, 계절별 먹거리알기, 생태화장실, 자연놀이 등
공동체	공동체회의, 공동체놀이, 마을 일손 돕기, 유학생협동조합 마을카페운영, 가족 운동회, 동네활동 등

위의 표는 농촌유학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시도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각각 여섯 영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본 것이다. 물론 이 여섯 영역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파악된다. 이를 도식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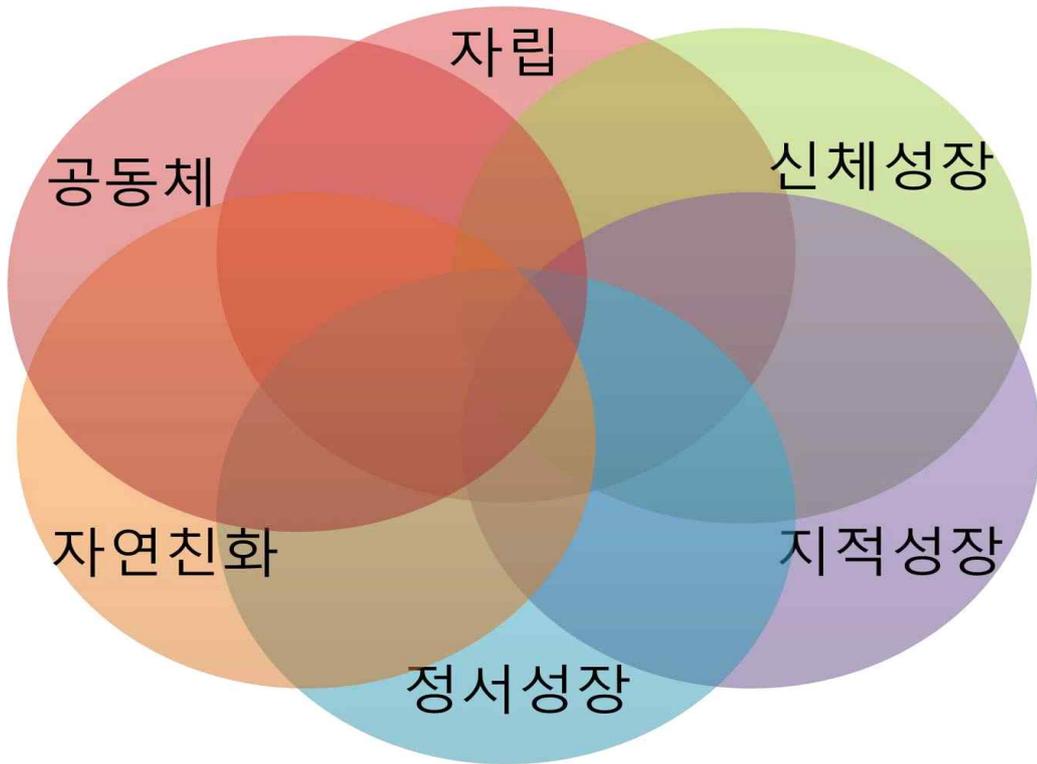


그림 5 농촌유학 교육프로그램의 여섯 영역

즉, 자립과 신체성장, 지적성장, 정서성장, 자연친화, 공동체의 영역이 각각 존재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영역과 겹쳐 존재한다. 교육과정이 단 하나만의 교육목표를 가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텃밭가꾸기 수업과 음식만들기 수업은 스스로의 먹거리를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경험하게 하는 자립 영역이기도 한 동시에 자연 속에서 생태적 순환을 경험하는 자연친화 영역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적 지식을 알려주는 지식성장의 영역이며 로컬푸드나 공동경작 공동요리 등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공동체 영역이기도 하다. 이렇듯 하나의 프로그램은 단 하나의 영역으로 기획되기 보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더 많은 영역의 발달을 놀이와 같은 흥미로운 과정을 통해 자극할 때 농촌유학이 갖는 가치는 더 커진다. 일단 여기서는 이해의 편의상 각 영역을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자립

농촌유학 프로그램은 아동 청소년들이 의식주 생활과 연관된 학습경험을 가

지도록 조직할 것을 권유한다. 20세기 초엽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진보주의 교육이라는 교육사적 흐름에서 볼 때 이러한 교육과정의 도입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진보주의 교육은 생활 세계에서의 경험을 교육과정 안으로 과감히 끌어들이므로써 특히 서구 초등학교의 교실 풍경을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정착시키는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원리의 도입이 10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한국의 교육현장에서 생활 세계를 학습활동 영역으로 끌어들이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제한이 따른다. 이와 대조적으로 농촌 지역에서 유학하는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자유롭게 활동할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텃밭 가꾸기, 바느질, 목공과 같은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다.

진보주의 교육을 주창한 존 듀이는 추상적 교과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삶의 통합적 경험, 배움과 삶의 연결성을 갖는 활동 중심의 경험이 교육과정으로 결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듀이는 그가 직접 설립하여 운영했던 실험학교에서 다양한 교과활동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는 중심축으로서 사회적인 공동 삶이 이뤄지는 ‘집과 같은 학교(school-house)’라는 개념을 구상했다.

농촌유학 담당자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더욱 이상적인 가치를 지향하도록 묶어주는 교육적 힘이 특정한 교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 듀이의 생각(Dewey, 1938)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는 아동 청소년이 집과 그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 식물, 동물, 자연환경,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의 특성과 생산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와 관련된 실과수업을 받음으로써 기능적 실용성을 넘어서서 지성적 습관과 사회적 안목을 터득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논지를 면밀히 고찰하면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상적 활동이 사실은 매우 교육적인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무를 깎거나 다듬어서 물건을 제작하는 일, 논이나 밭에서 고단하게 작업을 해보는 일, 손을 놀려서 옷감을 짜거나 식재료를 다듬는 일 등은 단순히 경험을 쌓거나 넓혀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아동 청소년의 지성적 습관을 기르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농촌유학의 특성상 집과 부모의 보호로부터 떠나 농촌유학을 하는 것 자체가 자립적 인간으로서의 첫 도전이다. 먹고 자고 싸고 씻고 기초



적 욕구의 충족에서부터 홀로 스스로 해내야하는 과제가 주어지는 것이다. ‘화장실에서 휴지로 뒤처리하는 법부터 가르쳐야 한다’는 어느 농촌유학 담당자의 한탄은 현실이다. 물티슈와 비데, 그리고 부모의 과잉보호에 익숙해져서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현대의 아이들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배움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정리하고, 청소하고, 규칙적인 생활의 습관을 기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자면 의식주와 관련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해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바로 자립의 교육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원리를 이해한다면 농촌유학 담당자들은 학교나 센터가 자리한 환경적 조건에 걸맞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산살림, 갯살림, 들살림을 적절하게 배합하거나 계절별로 활동 가능한 항목을 추려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게 과업을 정해주는 것도 좋고, 연령별로 모둠을 만들어서 도전적인 과제를 주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것도 권장할만하다.

교육적 의미에서 자립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제2장 2절에서 언급된 ‘노작교육’의 원리와의 일맥상통한다. 또한 자립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들은 대안교육을 중심으로 이미 국내에서 실시되고 발표된 양질의 실천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다. 농촌유학 학교나 센터, 그리고 농가에서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도입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성과를 보아가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프로그램으로 성장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자립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²³⁾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요
텃밭 가꾸기	직접 우리가 먹거리를 책임져보고,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농사경험을 갖는다.
살림 프로젝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모둠별) 구상해서 직접 만들어 사용함으로써 배움이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 (예:음식 만들기, 청소도구함 만들기, 바느질하기 등)
대나무 낚시하기	대나무를 이용하여 동네 저수지나 하천에서 물고기를 직접 잡아봄
걸레 릴레이	아이들을 여러 줄로 세우고 걸레를 나눠준 다음 방 끝까지

23)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pp41-47.

경주하기	걸레로 밀면서 순서대로 빨리 왕복하여 끝나는 시합을 진행하고 방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기르
수공예	배움이 삶이 되는 기본 과정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이며, 손놀림이 갖는 교육적 효과(집중력, 사고력, 표현력, 성취감, 창의성 등)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숲 속 아지트 짓기	숲속의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아지트를 함께 지어보고, 캠프와 야영을 통해 자연 속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야영	자연 속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 만들어 보고, 자기를 스스로 지키고 살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시간

표 56 자립프로그램 예

<자립 프로그램 예시 안>²⁴⁾

■ 숲 속 아지트 짓기

<목표영역> 더불어 살며 ∩ 자립 프로젝트

<활동목표>

숲속의 나뭇가지를 활용하여 움집을 함께 지어보고, 캠프와 야영을 통해 자연 속에서의 역동적인 신체활동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음

<프로그램 특성>

자연 속에 충분히 노출되는 활동으로 집에서 가까운 마을뒷산이나 숲에서도 특별한 재료 없이도 놀이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농산어촌지역의 장점을 보여줌
모듬을 나눠 진행함으로써 협동심과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함
직접 움집을 지워보고, 야영을 해봄으로써 의식주와 관련하여 스스로 해내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음

<체험요소> 감상 관찰조사 학습 놀이 창작 생활 교류 수련

<체험기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운영시간> 아침 방과 후 저녁 야간 주말

<진행순서와 응용tip>

숲으로 이동하기→ 모듬나누기→ 통나무, 잔가지, 넝쿨, 꽃 등의 식물재료 주워오기

24)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54 참조.

(빠대설치돕기, 재료설명하기)→ 아지트 만들기(4~5일)→ 아지트 안에서 낮잠 자기
 숲속 아지트를 만들 장소는 숲속이거나 넓은 마당 등의 공간을 사전에 마련해둬
 날씨와 계절에 따라서 야영을 통해 1박 2일 캠프로 진행하고, 통나무 건너기 등의
 게임과 연계할 수 있음

표 57 자립프로그램 예시 숲속 아지트 짓기

2) 신체 성장

농촌유학에서 신체의 성장과 관련된 부분은 노작교육이나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도시에서 지내야 하는 학생들에 비해 농촌 지역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직접 재배하여 먹는 식재료 등을 고려해 본다면 특별히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건강한 신체를 형성할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하지만 농촌에서 유학하는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의 성장은 교육자의 의식적 점검, 노력, 그리고 배려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아동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 훈련을 통해 몸의 성장을 돕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몸을 움직임으로써 이뤄지는 효과는 ① 활력 있는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고, ②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감각을 발달시키며, ③ 신체를 이용한 창조적 활동하도록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이다.

신체 활동을 통해 누리는 또 다른 혜택은 학생들이 가진 스트레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해소한다는 점이다. 도시의 과밀 학급과 경쟁 체제 속에서 일상을 견뎌야 하는 학생들은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과 우울증, 공격성 등의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더 나아가 자살 시도까지 이뤄진다.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이 OECD 국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적절한 신체 활동을 허락하지 않는 학문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과 지나친 시험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때문이다.

최근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 64.5%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심각한 우울증, 두려움, 신경과민에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도 각각 22%가 넘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가운데 무려 51.6%가 ‘살아 있지 않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 학생들 가운데 5일 이상 운동을 한다는 학생은 불과 14.5%인 반면

33.7%는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한국건강증진재단, 2014).

위와 비슷한 몇몇 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면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은 ‘학업성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란 항목이 응답율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역시 자신의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데 따른 심리 상태로 해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결과를 보면 “한 인간의 머리, 마음, 손은 조화롭게 발달해야 하며, 그 답은 자연 속에 있다”고 말한 페스탈로치의 신조를 다시 떠올리게 되며, “마음과 육체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체 활동을 매개로 하여 교육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서양의 심신일원 교육 원리를 재확인하게 된다.

놀이를 통해 오감으로 자연을 느끼고, 땀감을 구하여 밥 짓기도 해보는 것은 모두 농촌 유학 시설에서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활동이다. 여기에 더하여 정규 교과 시간이나 방과 후 활동 시간에 요가, 댄스, 다양한 스포츠를 함께 곁들여 준다면 균형 잡힌 신체적 성장에 더 큰 도움이 된다.

신체 성장에 관련된 놀이 역시 전래 민속놀이나 공동체 놀이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국내에 소개된 자료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농촌유학 시설의 규모와 위치, 학생들의 구성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체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²⁵⁾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요
몸 익히기	몸을 움직이며 자기 몸을 알고, 몸과 사물 또는 몸과 자연사이의 작용을 익힘 (예: 몸짓놀이, 맨손체조, 구기활동 등)
춤·무예	흥을 돋우고, 몸의 기운을 고르게 하며, 몸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단련 (예: 탈춤, 택견, 전통 무예 등)
김장텃밭 가꾸기 (농산물 수확, 파종, 재배)	김장의 주재료인 배추와 무를 심은 배추텃밭을 직접 가꾸고 수확한 재료로 겨울철 김장하기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심고, 가꾸고, 수확해보면서 노동의 의미를 온 몸으로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

25)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pp41-47.



전통놀이	씨름·그네타기·강강술래·제기차기·공기놀이·널뛰기·줄넘기·대말타기·자치기·비사치기·숨바꼭질·바람개비놀이·썰매타기·팽이치기·연날리기기 등으로 농경세시와 세시풍속의 변화와 전해 내려온 놀이로써 함께 어울리고 신체를 사용하면서 운동감각이나 균형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음
새벽길 산책하기	새벽에 동네나 테마로를 따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간단한 맨손체조를 겸함으로써 건강을 단련함
대나무뗏목 타기 (익스트림스포츠 배우기)	대나무를 활용하여 만든 뗏목을 만들어보고, 물위에 뗏목을 띄어 물놀이를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헤엄치기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함
들녘 자전거 하이킹	일정한 코스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마을과 지역을 익히면서 체력을 단련하는 프로그램

표 58 신체성장 프로그램 예

<신체성장 프로그램 예시>²⁶⁾

■ 마을길 아침산책

<목표영역> 건강한 아이	▷ 몸과 마음수련프로그램
<활동목표>	
새벽에 마을 안길이나 테마로를 따라 아침산책을 하면서 간단한 맨손체조를 겸함으로써 건강을 단련함	
<프로그램 특성>	
늦잠을 자는 도시 아이들의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있어 아침체조 활동으로 필수적임	
인도요가, 택견 등의 검증된 지도방법이나 전문가가 필요한 체육활동이 대부분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으로 아이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함	
<체험요소> ■감상 □관찰조사 □학습 □놀이 □창작 ■생활 □교류 ■수련	
<체험기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운영시간> ■아침 □방과 후 □저녁 □야간 □주말	
<진행순서와 응용tip>	

26)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56 참조.

주변 뒷산이나 산책로로 걷기→ 가벼운 체조하기(등 마주대고 하늘보기,
안마방마기로 등 두드려주기, 요가동작 따라 하기)
매일 한 가지씩 스트레칭의 방법을 알려주거나, 다른 산책로를 걷게 하면서 변화를
줌으로써 산책활동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함

표 59 신체성장프로그램 예시 마을길 아침산책

3) 지적 성장

일반 교육체제에서는 아동 청소년들의 지적인 성장을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그렇지만 다중지능을 연구해온 하워드 가드너(1943~)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의 지능은 언어, 논리·수학, 신체운동, 음악, 공간, 자연, 자기성장, 대인지능과 같이 8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 도구를 아직 학교에서 상용화 할 수 없을뿐더러, 각각의 영역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 속도와 차이도 대단히 크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들의 올바른 지적 성장을 도와주려는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의 다중 지능이 원활하게 발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자극을 적절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

언어지능은 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며,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기본적 글쓰기를 익혀서 학문적 교과 학습을 무리 없이 해나갈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해 줌으로써 길러진다. 농촌유학 학생들은 소집단으로 편성되어 있고,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학생과 지역주민 사이에 친밀한 접촉이 가능하기에 언어의 구사와 소통 능력을 깊이 있게 갖춘다. 비고츠키(1896~1934)는 아동의 언어 습득과 적용이 모든 공부의 바탕을 이루며, 이 때문에 언어 습득과 이를 통한 지식 형성에 있어 공동체의 도움과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논리·수학적 지능 역시 수에 대한 개념을 배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자연 속에 널려 있는 나뭇잎, 돌, 열매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로 영국 버크셔에 소재한 콤스초등학교(Coombes Primary) 같은 경우 지난 40년 동안 언어, 수학, 과학, 체육 수업 등 거의 모든 교과목을 학교 운동장과 주변의 숲, 구릉지에서 진행하는 ‘교실 밖 수업’ 프로그램을 창조적으로 진행해 왔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가을철에 교내에서 수확한 사과를 강당 바닥에



깎아 놓고 동 학년 전체 활동을 통해 수학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학교 조리실에서 직접 사과를 가공하여 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과학 공부를 실행한다. 이와 관련된 수업 방식과 자료는 『콤스의 접근(The Coombes Approach)』(2012)이라는 책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가드너가 언급했던 나머지 6개 영역, 즉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등은 별도의 추가 설명이 필요 없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아도 농촌유학과 쉽게 연계될 것이다. 음악지능의 경우 감상교육은 가능하겠으나 악기를 다루거나 가창력 지도, 작곡 능력 배양 같은 부분은 유학 센터별로 전문가의 지원이나 경제적 지원 여부에 따라 형편을 달리할 것이다.

연구팀이 방문했던 전북 임실군 대리초등학교의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에서는 담당교사가 아이들에게 한국 현대시 암송과 개인 다이어리 쓰기를 집중해서 지도해 오고 있었다. 담당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생들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시라면 외우기 힘든 긴 시라도 끝김이 없이 암송가능하고, 최대 60수 이상의 시를 암송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다”고 했다. 다이어리는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의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하며, 아이들에게 보물 1호나 다름이 없었다. 다이어리 안에는 글, 그림, 만화, 종이접어 붙이기, 잡지나 기사 오려 붙이기 등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관심사를 담아두는 것이 가능하다. 연구팀들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의 다이어리는 모두 손때가 묻었으며, 아이들의 모든 생활기록이 그곳에 담긴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매년 작성되는 몇 권의 다이어리를 모아둔다면 각 개인에게는 매우 소중한 성장기록이 될 것이 확실해보였다.

이 두 가지 활동은 학생들의 지적 성장에 풍부한 바탕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암송과 기록이 습관 형성으로까지 이르게 하려면 정규 수업시간은 물론 방과 후의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확인과 격려는 물론 학생들의 실행을 지켜보고 독려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적 성장은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서도 달성될 수 있다. 수 년 전부터 전북 정읍 산적소굴유학센터가 실시해온 ‘원두막 짓기’ 수업을 예로 들어본다. 초등학생 중심으로 원두막을 하나 짓는다는 일은 도전적인 과업이다. 아이들은 원두막이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구조물이 들어설 자리를 측량하고 계산을 해야 하며, 필요한 목재를 확보하는 방안, 못을 비롯한 재료와 공구들의 조

달, 빛이 드는 각도와 위치 계산, 무거운 재료를 원두막 2층으로 날라야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고, 모둠 토론을 거치고, 숫자를 계산하며, 신체를 움직여서 작업을 해야 한다. 필요한 재료들의 특성과 쓰임새, 공급 방법, 결합 방식 등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스스로 깨우친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논의를 하고, 해결책을 내놓으며 필요한 역할을 분담한다. 의사소통과 리더십, 책임감, 자신감 같은 자기성찰지능과 대인지능이 이 모든 과정에 스며들어 있다. 프로젝트 수업 하나가 일종의 통합수업이고, 아이들은 구체적인 과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스스로 대견스러워 하면서 한 단계 성장을 이뤄간다. 지적, 신체적 성장이 프로젝트의 추진과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지적성장과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²⁷⁾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요
오두막집짓기	오두막집짓기를 통해 집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의미 탐구, 집짓기를 위한 수리 과학적 지식 탐구, 더불어 집짓기 활동을 통한 관계력 향상
우리말과 글	말과 글로 소통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재창조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의 일치를 이루고자 함 (예: 우리말과 글의 꼴 익히기, 시 읽고 쓰기, 말놀이 등)
수와 셈	‘수학은 재미없고 어렵고 따분한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수학의 의미와 쓰임을 알며 생활(요리, 시장놀이, 집짓기, 농사짓기 등)속에서 수학의 원리를 알고자 함
사물놀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인 장단을 익히는 시간으로 소리 장단과 사물, 풍물 장단을 익히면서 흥을 자유롭게 표현 하고 몸과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
‘콩’ 연구 프로젝트	‘콩’을 텃밭에서 재배하면서 콩의 성장과정, 생김새를 관찰해볼 수 있으며, 수확한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과학적 지식 탐구를 경험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미술이나 글쓰기 표현으로 연계가능)

27)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pp41-47.



마을 주변 동물 흔적 찾기	마을 주변 자연 속에 있는 곤충이나 야생동물의 똥, 발자국 등과 매년 마을에 찾아오는 동물(새, 개구리 등)을 찾아보고 관찰해 봄
농생활기구 난타 배우기	다듬이, 솔뚜껑, 향아리 등 농산어촌에서 사용하는 생활도구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난타를 배워보며 정해진 가락을 창작하여 함께 연주해봄
습식수채화	종이와 물의 관계를 이해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을 접해보면서 자신의 색깔을 발견해가며 예술적 감수성을 마음껏 발휘하고 표현하는 시간

표 60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시 1>²⁸⁾

■ 내 맘대로 창작 일기쓰기

<목표영역> 지혜로운 아이 ▷ 학습지도프로젝트

<활동목표>

부모님께 하루 동안 있었던 일과에 대해 이야기하는 편지글, 시로 표현하기, 주제가 있는 일기 쓰기, 그림일기쓰기 등 다양한 일기쓰기를 지도함으로써 자아성찰이나 생각을 정리하는 글쓰기 습관을 가지게 함

<프로그램 특성>

기존의 일상을 기록하는 중심의 일기쓰기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자유로운 형식의 일기쓰기를 장려함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일기쓰기 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상담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심리변화를 파악 할 수 있게 함

<체험요소> 감상 관찰조사 학습 놀이 창작 생활 교류 수련

<체험기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

<운영시간> 아침 방과 후 저녁 야간 주말

<진행순서와 응용tip>

함께 모여 일기쓰기→ 주제 정하기(예: 등갯길에서 만난 친구, 부모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책 읽고 소감쓰기 등)→ 일기낭독하기

28)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p53 참조.

하루 또는 일주일에 대해 이야기 나누거나 소통회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가능
노란 우체통을 사전에 만들어 놓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것을
노란 우체통을 만들어 쪽지를 넣어 전달해줄 수 있도록 함

표 61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 내 맘대로 창작 일기쓰기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시 2>²⁹⁾

“아이들의 지적성장을 돕는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다모임”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는 2013년 11월부터 다모임(다이어리공부모임)을 시작하였다.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는 5년 동안의 농촌유학운영을 통해 과연 어떤 프로그램이 농촌유학에 적합한지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왔다.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아이들의 농촌유학 생활을 직접 기록하게 하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농촌유학의 경험을 마음에 새기게 하기 위해 시를 외우게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다이어리 공부모임이다. 줄여서 말하면 ‘센터다모임’이다.

다모임은 다이어리에 유학생생활, 유학센터일정, 학교생활, 학교일정 및 각종 알림내용 기록, 시 작성, 신문자료, 학습자료 등을 수록하는 활동이다. 또한 다모임 시간을 이용해 자신이 쓴 시를 외우고 낭송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과 사람에 대한 가치를 찾도록 한다.

<다모임에서 다이어리 쓰기의 효과>

1. 글쓰기 향상
2. 기록하고 정리하는 습관 형성
3. 계획하고 실천하는 태도 형성
4. 자기 주도적 학습 가능
5. 학부모 민원 해소(아이의 다이어리에 아이의 모든 생활이 기록됨으로서 학부모의 불안감 해소)

<다모임에서 시외우기의 효과>

1. 암기력 향상
2. 언어력 향상
3. 감수성 향상
4. 문장 적용력 향상

29) 대리마을농촌유학센터 ‘다모임’ 프로그램 예시

5. 옥설이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아이들이 시외우기에 흥미를 가지면서 옥설이 대폭 사라졌다. 예를 들어 ‘이 씨밭농아’하고 싶을 때 ‘이 진달래꽃 같은 농아’라고 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유래했다. 또는 ‘이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 같은 농아’라고 한다.)
6. 자신감 향상(유학센터 아이들 중에 우리나라 명시(김소월, 정지용, 윤동주, 박목월, 유치환 등)를 200수, 100수, 50수 연송하는 아이들이 많다. 가장 하기 싫어하는 아이도 기본 20수는 연송한다. 이게 유학센터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학교나 집에 가면 20수만 외워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다. 아이들이 시를 많이 외우는 것에도 자신감이 생겼지만 자신의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표 62 지적성장 프로그램 예시 우리들의 지적성장을 돕는 대리마을 농촌유학센터 다모임

4) 자연 친화

농촌유학의 최대 장점은 도시생활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자연의 변화와 흐름을 온몸으로 경험한다는 점이다. 또렷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마을의 풍속과 자연 풍경이 바뀌고, 냇물과 들판, 산자락에서 이뤄지는 놀이의 도구나 패턴도 변화한다. 특히 농촌 지역은 24절기의 변화에 맞춰 쉼과 노동, 그리고 세시풍속이 명징하게, 연속적으로 바뀌어간다. 이런 모든 자연 변화와 절기의 흐름이 교육적 계기와 요소로 쓰인다.

발도르프 교육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1919년에 행한 강연 「삶의 리듬과 리듬적 반복」에서 “삶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리듬을 지닌다. 그 리듬은 다시금 일상적인 계획에서, 일상적인 것에서도 드러난다. (중략) 그래서 어린이를 교육하고 수업하려면 삶의 전반적인 흐름과 관계해야 하며, 리듬적인 반복을 주시할 수 있으면 좋다. 그러므로 어린이들과 행하는 것들을 찾아 기록하고, 매년 그것과 유사한 것들을 다시금 화제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다(슈타이

너, <발도르프 교육 방법론적 고찰> 140~141쪽).

이러한 슈타이너의 사상에 따라 전 세계의 발도르프 학교에서는 하늘의 기운, 별자리의 뒤바뀜에 맞추어 수업의 내용과 교수 시기가 정해지고, 절기의 변화와 계기에 맞춰 학교 축제와 행사가 연간 계획표 상에 배치된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절기교육’은 제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꽃피는 학교’에서도 이뤄진다. 대안학교인 꽃피는 학교 측에서는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하늘의 흐름을 아는 아이. 바람의 자유로움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하늘의 밝은 빛처럼 우리 안에서도 밝은 빛이 가득하기를 바라고, 그 가득한 기운으로 개인과 사회를 모두 밝힐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 교육”이 절기교육의 참된 의미라 밝히고 있다(2013년 대전 교육청 직무연수 자료집 <대안교육: 만남과 소통> 73쪽). 절기교육의 목적을 다소 포괄적이고 상징적으로 밝히고 있기는 하나 이런 교육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들 학교에서는 24절기의 변화를 교육과정과 학사일정에 반영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에 맞춰 4학기제를 실시하며, 매년 춘분, 하지, 추분, 동지에 즈음하여 학교 축제를 개최한다.

절기 교육과 함께 궤를 맞춰 진행되는 농사 프로그램 역시 자연 친화적인 프로그램의 중요한 주제다. 단순히 농사의 기술 시전이나 일회적 체험이 아니라 사계절에 맞춘 먹거리의 생태적 순환을 선형적으로 체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생태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씨를 뿌려 싹이 나서 농사지어 수확하고 이를 음식으로 취식하여 몸을 살리는 생태적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농사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먹거리 교육이다.

또한 지역의 자연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도 여기에 연결되어야 한다. 농촌, 어촌, 산촌이라는 지역적 특성, 산이나 강, 바다를 끼고 있는 자연적 특성, 지역의 자연자원과 특산물 등을 앞서 언급한 절기 및 농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활 속에 녹아나도록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형태의 교육과 견주어 볼 때 농촌유학의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자연 친화 교육이란 사실을 농촌유학 담당자들은 잊지 않아야 하며, 이와 같은 장점이 학사력과 교육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힘써야 할 것이다. 하루, 한 달, 일 년이라는 규칙적 시간을 배

경으로 하여 반복되는 자연의 리듬에 아이들의 생체 리듬과 욕구를 맞추어가도록 한다면 훨씬 바람직한 전인교육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자연친화와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³⁰⁾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요
동물농장 돌보기	소꼴베기, 토끼풀 뜯기 등의 동물에게 먹이 주는 일을 동물별로 담당제를 두어 동물이름도 지어주고 각자 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함
감자 삼굿구이	봄에 씨감자를 심고 가꾼 감자를 수확하여 농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전통방식으로 삶아먹는 삼굿구이를 체험하면서, 전통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요리법을 익힐 수 있음
우리 지역 산나물 약방장수놀이	생활하고 있는 마을 및 지역의 야생에서 볼 수 있는 산나물을 알고 수집하여 우리 몸에 좋은 먹거리를 이해하는 프로그램으로 소쿠리에 각자 산나물을 채취하여 말려보고 약방봉투에 담아보는 프로그램
물길지도 그리기	물길의 생태주소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가까운 지역의 자연환경에 관심과 열의를 갖게 함
쥐불놀이	전래의 환경과 절기를 고려한 농경문화의 과학적인 놀이로서 민속 문화의 재미와 유익함을 이해할 수 있음
절기에 따른 농촌의 낮과 밤 비교하기	절기에 따라 낮과 밤의 변화를 더욱 잘 알 수 있는 농촌에서 해와 달이 뜨고 지는 모습과 시간을 관찰하면서 자연탐구와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음(기록, 그림그리기, 지구과학탐구, 이야기지어내기 등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한 학기 프로젝트 수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내 나무와 사진 찍기	주변의 산이나 언덕 등 가볍게 트레킹을 할 수 있는 산이나 숲을 정하여 내 나무를 정하고 이름표를 달아주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계절별로 나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함께 사진을 찍어보게 함

표 63 자연친화 프로그램 예

³⁰⁾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pp41-47.

<자연친화 프로그램 예시>³¹⁾

프로그램 예	쥐불놀이
목적	전래의 환경과 절기를 고려한 놀이로 연초에 논둑 밭둑에 말라붙은 풀과 함께 해충의 알을 태워 죽임으로서 한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거름을 만들어 풍작을 기약했던 조산들의 지혜를 엿보고 농경문화의 과학적인 놀이로서 민속문화의 재미와 유익함을 이해한다.
시기	겨울(연초, 첫 쥐날(上子日) 또는 정월 대보름 전날
장소	들녘, 논이나 밭
소요시간	1시간 이상
내용	<p>-쥐불놀이는 농촌에서 논밭 두렁 등의 마른 풀에 불을 놓아 모두 태우는 풍습으로, 논두렁 태우기라고도 한다. 이는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쥐를 잡고 들판의 마른 풀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을 비롯한 모든 잡충(雜蟲)을 태워 없앨 뿐만 아니라 타고 남은 재가 다음 농사에 거름이 되어 곡식의 새싹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한 소망이 담겨 있다. 이는 정월 대보름 전날 불을 놓으면 모든 잡귀를 쫓고 액을 달아나게 하여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잘 지낼 수 있다고 믿는 민속신앙이었다.</p> <p>-예전에는 쥐불놀이에 썩방망이를 사용하였지만 최근에는 대게 바람구멍이 송송 뚫린 빈 깡통을 사용한다. 깡통 안에 오래 탈 수 있는 장작개비 등 불쏘시개를 넣고 허공에다 빙빙 돌리며 논다. 저마다 불을 붙여 들고 빙빙 돌리면 불꽃이 원을 그리며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그러다가 ‘망월이야!’를 외치며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불을 붙이는 것이다.</p> <p>-일제히 불을 놓는데 이것을 쥐불이라고 한다. 자우룩하나 연기와 함께 불이 사방에서 일어나 온 들판이 장관을 이루는데, 이 쥐불의 크기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 또는 그 마을의 길흉을 점치는 풍습이 있었다. 따라서 마을마다 서로 다투어가며 불을 크고 세게 하려고 애썼다.</p>

31)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2009), 농어촌유학 사례연구 및 매뉴얼 개발연구, 한국농어촌공사, p168.



<p>순서</p>	<p>빈 깡통 사방에는 구멍을 뚫고 깡통 양쪽에 철사를 길게 매단다. 깡통 속에는 오래 탈 수 있는 나무 조각이나 솔방울을 넣는다. 깡통안의 불쏘시개(나무조각 등)에 불을 붙여 불씨를 확인한다. 허공에다 철근을 잡고 빙글빙글 한참 돌리면 불꽃이 원을 그린다. 그러다가 “쥐불이야” 또는 “망월이야” 라고 외치며 논두렁, 밭두렁에다 던져 불을 놓는다. 더 많은 곳에 쥐불을 놓은 사람이 이긴다.</p>
<p>준비물</p>	<p>깡통, 불이 잘 탈 수 있는 불쏘시개(장작개비나 솔방울 등), 긴 철사, 성냥</p>
<p>주의사항</p>	<p>-쥐불놀이를 위해 깡통을 불에 붙이고 돌릴 때 매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간격을 두어 주변사람에게 불씨가 날라 가지 않도록 하고, 잡은 끈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쥐불놀이는 화재 위험이 크므로 화기가 있는 장소를 피하고 충분히 안전장비와 시설을 갖춘 곳에서 해야 한다.</p>
<p>기타</p>	<p>-황해도 지방에서는 이 놀이를 할 때 마을 소년들이 독을 경계로 두 패로 나뉘어, 한편에서 불을 놓으면 다른 한편에서는 불을 꺼나가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긴 쪽 마을의 쥐가 지는 쪽 마을로 몽땅 쫓겨 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쥐불놀이에서 이겨야 그 마을 농작물이 해를 입지 않아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p>

표 64 자연친화 프로그램 예시 쥐불놀이

5) 공동체

농촌유학은 핵가족 시대 과도한 보호와 과도한 기대를 동시에 받는 한 집안의 자녀로부터 떨어져서 새로운 공동체적 환경으로 들어가 비슷한 또래들과의 공동체 생활을 경험하게 한다. 심성보(2008)는 현대의 교육이 과도한 경쟁주의적 정책으로 극단적 유아독존적 삶의 양식을 유포하여 공동체적 삶의 양식을 해체하는데 일조했다고 비판한다. 입시위주의 교육현실과 개인주의의 잘못된 침투가 빚어낸 대표적인 현상이 ‘왕따’라는 것이다.³²⁾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열망은 새롭게 피어난다.

인간은 본래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이고, 자연 생태계의 일원인 동시에 자기

32) 심성보 (2008). 민주화 이후의 공동체 교육. 살림터.

생활의 주인이다. 인간의 삶이란 사회적으로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협동하고, 자연과 고생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고자하는 주체적 삶을 의미한다. 이것이 인간의 참모습이다. 시민운동은 시민 주권의 확립, 공동체의 실현, 자연과의 공존이 인간성 회복의 핵심적 내용이며, 유일한 활로임을 자각하고, 이것을 구체적인 사회현장과 생활현장에서 실천해야한다.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창립기념문. 1990년 3월 18일)

생명의 질서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다양하고, 상호 관계에 의해 유지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순환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수많은 경험과 시행착오들을 통해 몸으로 터득하게 하는 것, 이를 위한 의사소통이나 갈등 해결, 수평적 구조와 관계 맺기 등을 배우는 것은 21세기를 살아나가기에 매우 중요한 교육이다.

또 한편으로 공동체 생활을 넘어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배우는 교육 역시 중요하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공동체는 “씨족이나 친족집단 같은 혈연 씨족공동체, 마을이나 이웃집단 같은 지연 촌락공동체, 예배결사나 동지적 결합 또는 친구집단과 같은 정신적 결사공동체”를 이른다. 농촌으로 유학을 간 아동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유학센터나 학교가 위치한 마을은 씨족 공동체의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하고, 삶의 주요 무대가 마을이므로 동시에 촌락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유학생들은 학교나 센터에서 ‘결사공동체’의 특성도 경험한다. 이 같은 생활의 배경은 유학 초기의 적응 시기에 상당히 도전적인 심리적 환경을 형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중층적 의미의 공동체는 유학생들에게 새로운 성장의 자극제로 기능한다.

다시 존 듀이로 돌아가 논의하자면, 그가 생각했던 교육적 환경이란 “어떤 학생이 그것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것들”이었다. 그러니까 마을, 학교, 자연 같은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학생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모든 것이 환경이다. 어떤 학생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없던 관심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의 정서와 생각을 공유하게 되었다면 그것 역시 사회적 차원에서 훌륭한 환경을 구성하는 것이다.

농촌유학생들은 농촌이라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그 사회의 목적을 내면화 하고, 그곳에서 필요한 기능을 익히며, 그 지역의 정서적 틀에 흠뻑 젖어든다.

그런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가 학생들을 교육시킨다. 듀이에 따르면 학교는 “공동체적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지적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풍부한 의미로 가득한 환경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듀이, 1916, 22~27쪽).

이와 관련하여 울산에 소재한 소호산촌유학센터의 프로젝트 수업 “마을지도 그리기”는 농촌유학 분야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좋은 사례이다. 첫 단계로 학생들은 커다란 걸개그림 크기의 종이 위에 마을지도를 그려 넣는다. 두 번째 단계로 아이들이 직접 마을을 둘러보면서 자연 환경, 공동 작업장, 마을회관, 시냇물, 분지와 산줄기 등을 답사하면서 취재한 내용들을 그려 넣거나 지도 옆 여백에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각자 빼곡하게 적어 넣는다. 이를테면 마을 산자락에 있는 바위에 얽힌 전설 같은 내용을 수집해서 정리해 놓는 것이다.

이처럼 아이들이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채록한 인문 지리학적 기록은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조사하여 한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든 공동의 성과인 동시에 공동체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접근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교육적 계기로 작용한다.



마을지도 그리기의 예

공동체와 관련된 프로그램 목록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가능하다.³³⁾

33)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pp41-47.

프로그램 예	프로그램 개요
우리 마을 Green 지도 만들기	마을 내 실개천, 논과 밭, 산림 등을 탐방하며 발견한 동식물을 표시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봄
공동체영화 만들기	사진이나 영상기기를 활용하여 산촌유학의 일상생활을 촬영하여 영화로 기록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워보며, 나아가 마을이야기와 주민들의 삶을 담아보는 공동체영화예술활동의 취미를 가질 수 있게 함
마을 보물지도 그리기	마을의 집, 논과 밭, 길, 동물, 사람 등 인상적인 것들을 각자 지도에 자유롭게 표현하여 지도로 만들어보면서 마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르신에 대한 예절을 함께 배움
실내 게임	실뜨기 등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전래놀이를 통해 서로 협동하고 공동체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함
너랑 나랑 소통회의 하기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 자기의사를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며,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할 기본 예의와 규칙을 자발적으로 정해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심어주도록 함
마을벽화 그리기	마을에 빈집이나 경관이 훼손된 담장이나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려보고, 마을을 예쁘게 꾸미는 보사활동을 해봄
재래시장 장보기 도우미	마을 내 이웃농가와 결연을 맺어 시장에 장을 보러나가는 일을 도우면서 지역 내 재래시장을 함께 견학해 볼 수 있음
내 마음 담은 부침개 돌리기	지역이나 마을, 농가의 주민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직접 키운 농산물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마을주민과 마음으로 교류하며 공동체생활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표 65 공동체 프로그램 예



<공동체 프로그램 예시>³⁴⁾

프로그램명	마을 탐방 지도 만들기
목적	1. 마을에는 집, 논, 밭, 건물, 마을 숲, 담장, 개울, 다리 등 다양한 구성요소가 있다. 자신의 생활공간을 지도로 만드는 과정은 지식뿐만 아니라 공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마을 지도 만들기를 통해 공간의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장소	마을전체
내용	1. 종이위에 가위표를 하고 동서남북에서 들리는 소리를 기호화 하여 표시한다. 2. 나중에 자신이 표시한 종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며 함께 완성된 소리 지도를 만든다.
순서	1. 지도를 제작하기에 앞서 지도에 어느 지역, 어떤 항목이 들어갈 지를 계획한다. 2. 지도에 포함될 주요 요소들과 내용을 조사한다. 3. 조사 내용을 표, 그래프, 사진, 그림 등을 이용해 정리한다. 4. 일반적으로 마을이 무엇처럼 보이는지 생각을 해본다. - 집과 건물의 재료로 무엇이 사용되었으며 형태는 어떠한가? - 울타리 재료로는 무엇이 사용되었는가? -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가? 이러한 구분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 주요 마을길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 산책로는 어디에 있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지? 5. 마을의 전체적인 조감도를 그린다. 이미 지도가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없다면 직접 걸어 다니면서 대략적인 윤곽을 그린다. 주요 길과 집, 건물, 논, 밭, 다리, 울타리 등 상징적인 요소들을 표시한다. 6. 조감도 위에 사전에 조사하여 정리한 내용들을 배치해 본다. 7. 마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구성요소들을 포함하여 특징, 색깔들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한다. 8. 지도를 완성한 후 다 같이 마을의 특징과 요소들, 구조 등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 하고 토론한다. - 지도는 방위에 맞게 제작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주요 요소들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는가? - 지도는 마을의 구조나 시설물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하고 있는가? - 지도 제작 과정에서 발견된 마을과 마을 주변의 환경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본다.
준비물	필기도구, 도화지, 판지박스, 포장지, 기타 재활용 재료, 하드보드, 식물도감, 행정구역도, 색연필 등
주의사항	넓은 길로 다닌다. 이동 중 장난을 금지한다.
기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마을의 구획을 나누고 각자 역할 분담하여 구획별로 지도를 만들어 나중에 지도를 모아 합심하여 마을전체 지도를 완성할 수도 있다. 2. 이 활동은 '마을 신문 만들기' 활동과 '마을 안내책자 만들기' 활동에 연결 될 수 있다.

표 66 공동체 프로그램 예시 마을탐방 지도 만들기

6) 농촌유학 학습프로그램 개발의 의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농촌유학은 그동안 대안교육의 마당에서 풍부하게 실천되고 다듬어진 교육프로그램들을 재창조하고 응용하여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육과정으로 정착시킬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특히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입지 조건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다섯 가지 요소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고 있다. 관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풍부한 의미를 가진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현장에서 개발하는가 하는 점이다.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유학 외부의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일정한 정도는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는 개별 시설의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이 흥미를 유지하면서 자발성을 가지고 생산적인 학습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는 핵심 교육프로그램으로 심화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동의 지속적인 학습경험과 공동체 안에서 민주주의 체득을 강조했던 존 듀이의 실험학교(1896~1930)에서 이미 110여 년 전에 자립, 공동체, 지적 신체적 성장을 염두에 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7년간 운영했었다는 점이다. 메이휴와 에드워즈가 기록한 듀이 실험학교의 일과를 간략히 재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오인택 외, 2006, 138쪽, 재인용 발췌).

34)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2009).농어촌유학 사례연구 및 매뉴얼 개발연구.한국농어촌공사.p183.



교 과	주별 시간
미술관 등 탐방활동	1.5
전체 회의	20분
목공 작업	1.5
재봉	1.5
요리	1.5
체육	1시간 20분
음악	1
표현활동, 미술, 조형	2.5
과학	2
역사-이야기, 대화	2.5
총계	15시간40분

표 67 듀이 실험학교 초기 2년간의 프로그램(6~7세)

110년 전에 이미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시도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획기적인 사건이다. 듀이가 이 기관을 ‘실험학교’라고 이름 붙인 충분한 근거가 위의 표로 뒷받침 된다 하겠다. 듀이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이 작업과 참여에 몰입하도록 시간 배분을 충분히 하였고, 의식주 활동으로 분류되는 일에 공동으로 작업하도록 수업을 배치했다. 담임교사가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기초적인 읽기, 쓰기 활동을 지도하도록 주당 8시간 정도를 배정한 것은 위의 표와 같은 실험을 2~3년 한 뒤였다고 전해진다. 위의 표를 보면 듀이가 학생들의 사회적 삶과 직접적 참여 경험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가를 유추할 수 있다.

농촌유학에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편성, 적용은 한국적 맥락에서 ‘실험학교’를 새로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교육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실험, 한국의 대안학교에서 이뤄진 빼어난 학습 사례, 그리고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농촌유학에서 축적된 경험들을 모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필수 요소를 한 가지 더 언급하고자 한다. 다섯 가지 영역을 아우르는 핵심 과정은 모두 ‘아동의 흥미’와 ‘연속적인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섯 가지 영역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중첩되는 활동도 가능하고, 모든 영역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다 들어간 활동 역시 가능하다. 앞서 제시했던 몇 가지 통합수업이나 프로젝트 수업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모든 학습활동의 중심은 아동의 요구와 흥미, 관심과 참여이다.

농촌유학은 농촌공동체의 회복,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같은 다양한 목적들이 포개지는 상황 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촌유학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고, 그들의 성장과 계발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당위적 사실을 놓치면 곤란하다. 그 핵심적 교육의 가치는 바람직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현으로 담보된다. 프로그램의 유의미성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달성하되 그들의 흥미와 관심을 놓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엄밀히 말해 농촌 공동체가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농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유학생들의 성장과 농촌공동체가 상생과 상장(相長)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농촌유학의 존재가치다.



5. 안전관리 매뉴얼

가. 안전관리 매뉴얼의 기본 원칙

1) 농촌유학 안전관리 개요

가) 농촌유학 개요

- (개념) 도시 아이들(유학생)이 부모 등 가족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
- (유형) 농가형, 센터형, 농가결합형, 복합형
 - (농가형) 유학생이 '시골부모'라 불리는 활동가의 집(농가)에 머물면서 해당 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형태
 - (센터형) 다수의 유학생들이 독립적인 교육 및 숙박 공간(센터)에서 생활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 학교 통학을 하는 형태
 - (농가결합형) 인근 지역의 농가들이 연합하여 농촌유학을 진행하는 형태
 - (복합형) 유학생들이 '센터'와 '농가'에서 번갈아가며 생활하는 형태

나) 농촌유학 안전관리의 필요성

- 아동·청소년 활동 안전관리의 필요성
 - 아동 및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판단 및 위기대처 능력이 낮아, 요보호 대상
 -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사고 비율은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 안전사고로 인해 사회·경제적 직·간접비용 과다 발생 및 불안감 조성
 - 농촌유학 안전관리의 필요성
 - 농촌유학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장기간(6개월 이상) 농촌에서 단체생활을 하므로, 단기간의 체험·수련 활동에 비해 고도의 안전관리 필요
 - 농촌의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농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요구
- * 시설(농가 등 노후한 시설), 생활환경(농기구, 농약, 아궁이 방치 등), 주변 환경(저수지, 산사태·산불 등), 안전관리 인프라(병원·소방서 등 응급기관 접근성 및 방법용 CCTV 미비 등) 측면 등

다) 안전관리의 목적 및 기본방향

- (목적) 유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촌의 생활, 자연, 학교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
- (기본방향) 농촌유학 상시 안전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 및 적용
 - 농촌유학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급하고, 매뉴얼에 따른 상시 안전관리 및 정기 점검 실시

라) 안전관리 매뉴얼의 목적 및 성격

① 목 적

- ◎ 본 매뉴얼은 농촌유학 운영자 및 생활교사들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숙식, 교육, 돌봄, 체험 등을 포함한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제공 또는 운영할 때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에 따른 예방, 조치 및 대응 체계의 구축 방법을 제시하고,
 - 실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② 성 격 : 농촌유학 운영자의 자율이행 유도를 위한 권장 지침

마) 안전관리 매뉴얼 활용

① 활용범위 및 활용시기

- (활용범위) 농촌유학을 운영하거나, 운영을 준비 중인 시설의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사전) 및 운영 모니터링(중간·사후) 기준으로 활용
 - 본 매뉴얼을 운영 가이드라인(기준)으로 활용하되, 농촌유학 운영 유형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적절한 안전관리 기준 적용
- (활용시기) 농촌유학 운영 준비 및 운영 단계, 사고 예방 및 사고 시 대응·사후관리 등 농촌유학 운영 전반

② 활용영역 및 구성

- (1장) 기본 운영원칙 : 안전관리 및 대응체계,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사항 등 기본원칙 종합 안내
- (2장) 생활 안전관리 : 재난 및 화재, 식품·위생, 질병 및 사고, 기타 분야

(교통, (성)학대) 예방 및 사고 대응조치

- (3장) 시설 안전관리 : 생활 시설, 위생·급식 시설, 소방·전기·가스·난방 시설에 대한 설치 및 안전 기준
- (4장) 활동·여행 안전관리 : 실내외 프로그램 활동 및 여행 시 안전수칙 및 사고 대응
- (부록) 안전관리 관련 기관 정보 및 분야별 안전점검표

2) 안전사고 관리 및 대응체계

가) 안전사고 관리조직

구 분	세 부 내 용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유학 안전관리 총괄(안전관리 시행계획 작성) ◦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보급
지자체 농정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 지원 및 정기적 지도·점검 ◦ 안전·위생 예방 홍보 및 교육 실시 ◦ 안전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농촌유학 운영주체 (농촌유학전국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시설물 및 식품위생 등 안전관리 및 정기적 자체 점검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연계, 사고 보고 ◦ 생활교사 등 활동가 및 유학생 대상 안전관리 교육

나) 안전사고 대응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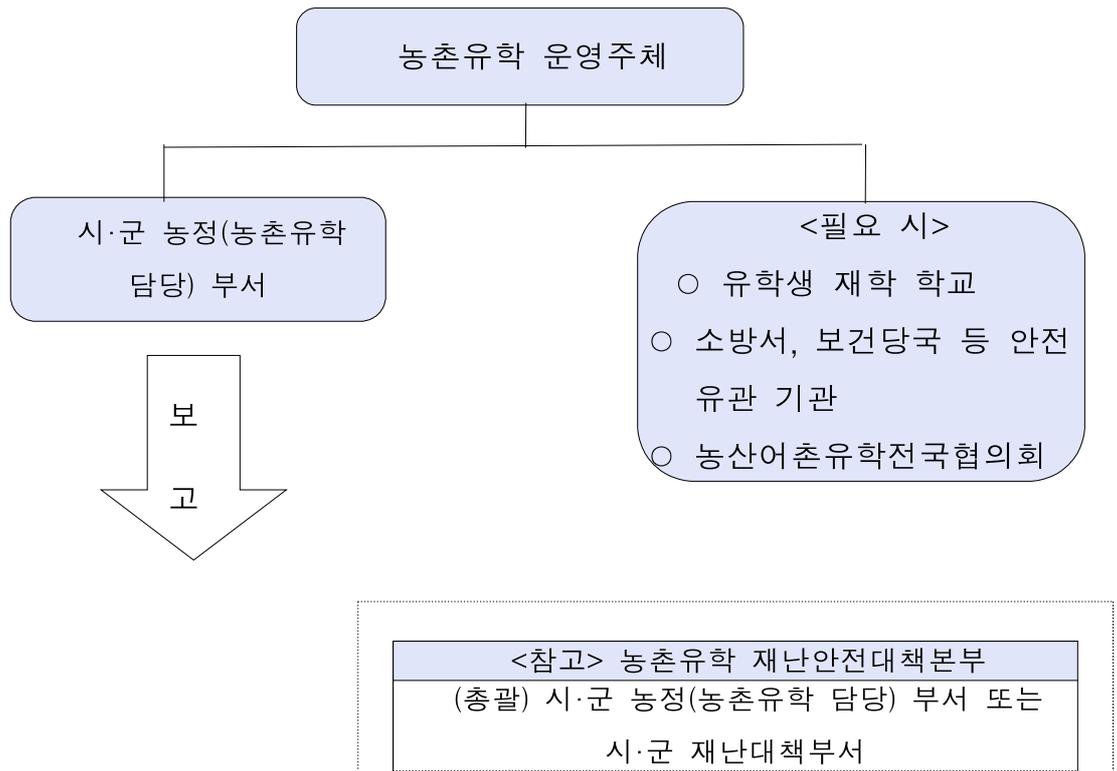
①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 체계(농촌유학 운영주체)

구 분	세 부 내 용
대피가 필요한 경우	<div style="text-align: center;"> <p>최초 발견자는 사고내용 주위 전파</p> <p>↓</p> <p>119 신고 및 대피 유도(지정 대피로를 따라 밖으로 신속 대피)</p> <p>↓</p> <p>피난 집결지에서 인원 파악 및 응급조치</p> <p>↓</p> </div>

	<p>(부상자 발생시) 환자 병원 이송 및 잔류 학생 안전 확보</p> <p>↓</p> <p>시설 안전책임자는 시·군 담당자에게 보고</p> <p>* 폭발, 붕괴, 화재의 빠른 확산 등 급박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후 119 신고</p>
<p>대피가 필요 없는 경우</p>	<p>최초 발견자는 사고내용 주위 전파</p> <p>↓</p> <p>119 신고 및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p> <p>↓</p> <p>환자 병원 이송 및 잔류 학생 안전 확보</p> <p>↓</p> <p>시설 안전책임자는 시·군 담당자, 보건당국 등에게 보고</p>

표 68 안전사고 시 초기 대응 체계(농촌유학 운영주체)

② 안전사고 관리·보고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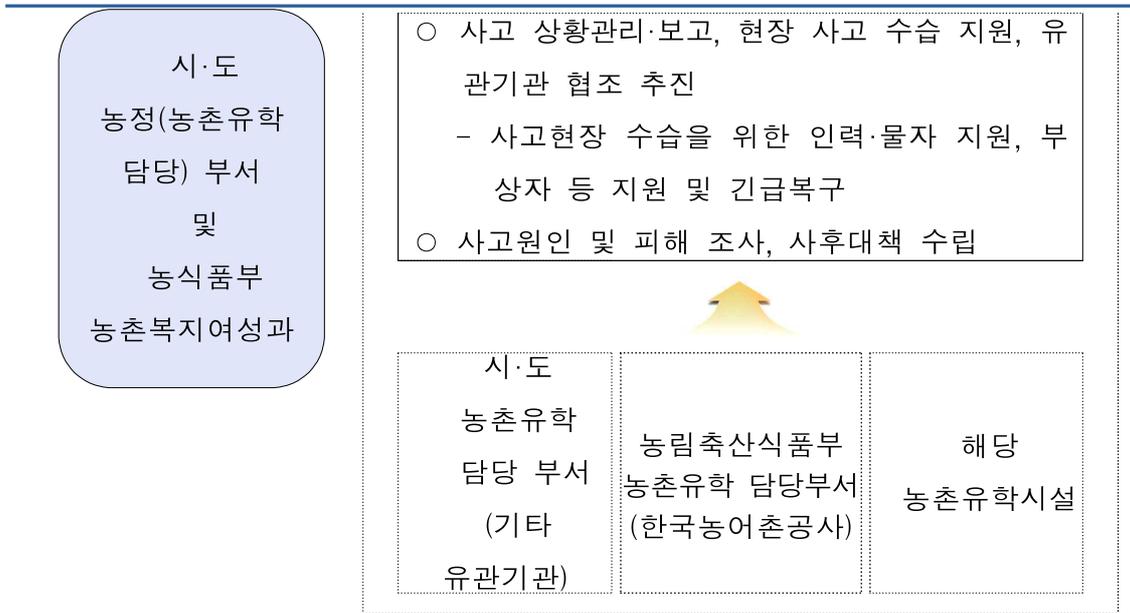


표 69 안전사고 관리보고체계

* 안전사고 발생 시 농촌유학시설 안전책임자는 대응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시·군청, 유관기관에 상황 보고 등 조치, 시·군 담당부서는 보고체계에 따라 시·도 및 농식품부에 신속 보고

3) 안전사고 예방 및 조치

가) 안전사고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① 농촌유학 운영자는 효과적이고 일상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관리 계획을 수립·비치하고, 체계적으로 안전사고를 관리해야 함
- ② 농촌유학 안전사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기본사항) 마을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마을현황, 농촌유학시설 인명부(시설 및 시군 비치용) 등
- ㉡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

및 체험활동, 주변 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 ㉔ (안전보호구 등의 설치) 안전표지판 및 소화기 등 보호 장구의 설치, 긴급 대피시설, 소방 및 대피로, 대피 후 피난 집결지 등에 관한 사항
 - ㉕ (안전점검 계획) 시설물, 체험활동, 식품·위생, 마을 주변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점검 분야, 점검시기, 관련기관 등)
 - ㉖ (안전교육 계획) 안전교육 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유학생, 생활교사 및 운영자, 연계 농가 부모 대상)
 - ㉗ (비상시 조치계획)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등 발생에 대비한 비상 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대피시설 등에 관한 사항
- ※ 복수의 시설이 연계하여 운영하는 형태의 경우(농가결합형 및 복합형), 관리계획에 시설 종합 관리계획 및 개별 시설(농가) 관리계획 반영

- ③ 농촌유학시설 대표는 시설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상시 안전 관리 및 사고 시 보고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식품위생, 시설관리, 체험활동 등 분야별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
- 시설 대표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역할을 겸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 분야 및 분야별 책임자는 농촌유학시설의 상황·여건에 맞도록 지정·운영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예시) >

<p>시설 안전책임자(000) 연락처 :</p>	
<p style="text-align: center;">소방서 119</p> <p style="text-align: center;">병원 · 보건(진료)소</p> <p>▶ 00병원 : _____</p> <p>▶ 00보건소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경찰서 · 파출소</p> <p>▶ 00경찰서 : _____</p> <p>▶ 00파출소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기관</p> <p>▶ 전기안전공사 : _____</p> <p>▶ 가스안전공사 : _____</p> <p>▶ 기타(기관명)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대표 및 분야별 안전책임자</p> <p>▶ 대표(000) : _____</p> <p>▶ 시설분야(000) : _____</p> <p>▶ 식품·위생분야(000) : _____</p> <p>▶ 체험활동 분야(000)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 담당자</p> <p>▶ 연락처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 관계자</p> <p>▶ 연락처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마을 위원장 또는 사무장</p> <p>▶ 연락처 : _____</p>
<p>학부모 연락처</p> <p>▶ (학생 이름) 학부모 : 연락처 _____</p> <p>▶ (학생 이름) 학부모 : 연락처 _____</p>	

표 70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망(예시)

<농촌유학시설 및 시군 비치용 인명부(예시)>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 유학생의 경우 학교 및 학년	비고
대표 생활 교사 (사무장 등 포함)				* 안전책임자
유학생				

* 생활교사 및 유학생 수 등 인원에 맞게 서식 변경하여 작성
 ※ 농촌유학시설 및 시군은 농촌유학시설의 인명부를 비치·관리하여, 재난 및 안전 사고 시 인원 파악 등에 활용
 - 시군은 분기별 1회 조사하여 자료 업데이트, 유학시설은 인원 변경이 있을 때마다 즉시(5일 이내) 명부를 수정하여 시군에 보고

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보험관리

① 보험 가입

- 농촌유학 운영주체는 유학생 및 시설물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은 청소년 수련시설 등 청소년 대상 체험활동에 대한 보상한도 이상의 보험가입 의무화(보상한도 : 사망 시 8천만 원, 부상 시 동법 시행령 별표 2 기준)

- 관련 보험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갱신(권장)

② 보험 가입조건 및 내용(예시)

- 상해보험

항 목	보상내용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농촌유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유학생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보상 (대인) 1인당 2억 원, 1사고당 무한대, (대물) 1사고당 1천만 원.
구내치료비 담보	유학운영주체가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유학운영주체의 책임유무와 상관없이 방문객이나 유학생이 상해를 입은 경우 의료비 보상 1인당 2백만 원, 1사고당 5백만 원.
영업배상 책임보험	유학운영주체가 제공/판매한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방문객이나 유학생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켰을 경우 보상 1인당 3천만 원, 1사고당 1억 원.

- * 래프팅, 활쏘기, 뗏목타기 등 위험한 레포츠 활동을 할 경우 특약에 추가 가입해야함
- * 위의 보상한도액은 청소년수련시설 사례와 농어촌인성학교 안전관리 매뉴얼의 상해보험을 참고하여 권장(안)을 제시한 것으로서, 보상한도액을 참고하되 각 농촌유학현장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변경 가능함

○ 화재보험

항 목	보상한도액
화재담보(건물)	농촌유학현장의 시설물 설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보험사와 협의 후 가입
화재담보(시설)	
화재담보(집기, 비품)	
화재담보(동산)	

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① 농촌유학 안전관리 주요영역별 관리 항목

농촌유학 생활, 체험활동·여행, 시설물 등 주요 영역별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주요내용 숙지 및 활용

※ 2장 생활 안전, 3장 활동 및 여행 안전, 4장 시설 안전 부분 안전관리 수칙 참고

② 단계별 안전관리 원칙

구분		주요내용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및 유형별 관리책임자 지정·운영 - 안전점검 및 교육, 비상연락망 등 대응체계, 대피로·피난 집결지 지정 등 사고 예방 및 사고시 조치를 위한 안전관리 전반 사항 포함
상시 안전관리		. 농촌유학 안전관리계획의 적용 - 소방, 시설물 등 정기 안전점검 및 구급함 등 상비품 구비 - 운영자의 전문안전관리교육(소방안전교육, 식품위생교육, 응급조치 등) 이수 및 내부 안전교육* 실시 * 농가결합형 및 복합형인 경우, 농가부모 대상 안전교육 실시 - 유학생 및 방문객 대상 유의사항 게시 및 안내(상시)
활동 및 운영시 안전 관리	체험 등 활동 단계	.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사전 안전관리 유의사항 필수안내 . 유학별 특성에 적합한 생활 안전수칙 필수 안내 . 운영 시 충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외부활동시 생활교사 등 보호자 동행 필수)
	사고 시	. 안전관리 대응체계 및 초동대처방법(응급조치 및 유관기관 보고 등)에 따라 신속히 대응 - 각종 사고 및 사건 정황을 경찰서(학교) 등에 신고 조치 - 상해사고 시 응급조치, 병원 후송
	사고 후속처리	. 피해자에 대한 위로 인사 등 상황 대처 및 보험 등을 통한 사고 후속처리 . 사고 원인 및 사고처리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나. 생활 안전 관리

1) 재난 및 화재 안전관리

① 자연 재난



㉞ 태풍·호우·홍수

구 분	조치 사항
재해 발생 전	<p>사전 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TV,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변화 정보 지속 체크 · 침수·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은 지정 대피로 및 피난 집결지, 비상연락망 및 연락방법 등을 미리 숙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지정한 피난 집결지가 침수되는 경우를 고려하여, 읍(면)사무소 및 시군구청에 연락하여 피난 가능한 장소도 미리 숙지 · 물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래주머니 등을 준비 · 응급약품, 비상식량 및 식수, 손전등 등 대피시 필요한 물품 준비 <p>사전 점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시설의 하수구와 주변 배수구 점검 · 낡은 창호, 깨진 유리, 손실 우려가 있는 외부 장비·시설 등은 미리 정비 <p>사고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신호등, 고압전선, 낙석 위험이 있는 비탈면 등에의 접근을 피하고, 자동차 운전 자제(운전시 감속 운행) · 대피에 대비하여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대피시 전기차단기를 내림
재해 발생 후	<p>재해 직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시에는 지정 대피로를 따라 피난 집결지에 안전하게 대피하여 대기 ·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는 물에서 멀리 떨어져, 오염된 물과의 접촉 및 유속으로 인한 휩쓸림을 방지 · 지반 약화 등으로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재난발생지역 접근 금지 <p>복귀 및 사후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 후 복귀 시 바로 건물에 들어가지 말고, 안전책임자 등이 붕괴가능성, 가스·전기차단기 내림(off)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들어감 (전기, 가스의 경우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할 것) · 센터 내부 복귀 후 창문을 열어 환기(가스 누출·축적 우려) ·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반드시 오염 여부 조사 후 사용하며,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재료로 사용 금지 · 파손된 상·하수도, 축대, 도로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알림

㉟ 폭염·폭설

구 분	조치 사항
<p style="text-align: center;">폭염</p>	<p style="text-align: center;">폭염 발생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염 기상상황을 매일 주목하고, 열사병 증상 및 병원 연락처 미리 체크 · 정전 및 단수에 대비하여 생수 및 생활용수, 손전등 등 미리 준비
	<p style="text-align: center;">폭염 발생 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폭염주의보</p> <p style="text-align: center;">발령시 : 일 최고기온 33°C, 일 최고 열지수 32°C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창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고 물병 휴대 ·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최소 2시간은 냉방이 가능한 건물에 머무름 · 물은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등은 섭취 자제 ·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 아이들 방치 금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폭염경보</p> <p style="text-align: center;">발령시 : 일 최고 35°C, 일 최고 열지수 41°C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시~오후 4시 사이에는 야외활동 금지 · 준비 없이 물에 들어가거나, 갑작스러운 찬물 샤워 금지(심장마비 위험)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고, 자외선차단제를 발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보호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 몇 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섭취
<p style="text-align: center;">폭설</p>	<p style="text-align: center;">폭설 발생 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매일 체크하고, 아이들의 외출을 자제시킴 · 부득이한 외출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바닥면이 넓은 운동화·등산화 착용 · 붕괴 우려 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고립시를 대비하여 응급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미리 준비 및 비상연락체계 숙지 · 차량 이동 시 출발 전 기상정보와 목적지까지의 우회도로를 미리 파악하고, 월동장비·연료·식음료 등을 사전에 준비 · 야간보행은 매우 위험하므로 조속히 귀가



폭설 발생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지역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 차량 고립 시 되도록 차량 안에서 대기, 휴대전화 등을 통해 재난 문자방송, 교통상황, 행동요령 등을 파악하여 행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득이 차량을 벗어날 시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둔 채 대피 - 차량고장 등 발생 시 즉시 도로관리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연락 - 비상시를 대비하여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 - 인근에 가옥, 휴게소 등이 있으면 아동, 환자를 우선 대피시킴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 유지하고, 몸을 가볍게 움직임 - 차량히터 작동시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둠 - 수시로 차량 주변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상황 주시 • 가능한 한 주변도로 등의 눈을 치우고, 빙판길에는 염화칼슘·모래 등을 뿌려 미끄럼 사고 방지
---------	---

㉔ 지진·낙뢰

구 분	조치 사항
지진 발생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은 지진 발생 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실내 집기류들을 정리하고, 전기·가스·수도를 점검 • 균열, 진동 등 건물 붕괴의 우려가 발견된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 • 지정 대피로 및 피난 집결지, 비상연락망 및 연락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고, 지진에 대비한 훈련 실시 • 실내의 단단한 탁자 밑,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 파악 • 마실 물, 긴급식량, 구급약품 및 정전 대비 손전등 등 준비 및 위치 파악
지진 발생 후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사고 대응 및 대피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동이 진행 중일 때는 질서를 유지하며 위치한 장소에 머무름 • 건물 내부에서는 넘어지기 쉬운 물건을 피해 탁자 밑 등으로 대피하되, 건물 붕괴의 우려가 있을 경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멧,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떨어지거나 넘어질 수 있는 물건을 피해서 진동이 멈출 때를 기다려 침착하게 대피 · 거리에 있을 때 심한 진동이 오면 건물, 가로등, 전선에의 접근 금지 · 부상자 발생 시 즉시 구조 요청하고, 심폐소생술 등 안전조치 실시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복귀 및 사후 조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귀 시 주택의 안전이 의심가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붕괴우려가 있으므로 최초 진단은 멀리 떨어져서 실시 · 전선, 가스관, 수도관 등 주요 관로와 가전제품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파손 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조치후 재사용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전 시 손전등을 사용, 불(양초, 라이터 등)은 누출된 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고 사용 · 지진 발생 후 여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
낙뢰	낙뢰 예상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외활동 시 낙뢰 기상정보 미리 파악 · 건물·자동차 안, 움푹 파인 곳, 동굴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낚싯대, 우산, 농기구(삽, 괭이 등) 등을 이용하는 야외활동은 위험하므로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 · 낙뢰 예상 시에는 우산보다는 우비(비옷)를 준비
	낙뢰가 칠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낮추고 물이 없는 파인 곳, 낮은 곳으로 대피 · 등산 및 키 큰 나무에의 접근 자제 ·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장소로 대피(약 10km이내에 뇌전 발생) · 대피 시에는 다른 사람과 5m 이상 떨어지고, 대피 후 마지막 번개 및 천둥 후 30분 정도까지는 안전한 곳에서 대기

② 인적 재난

㉠ 산불·붕괴

구 분	조치 사항
산불 발생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 발견 시 119, 112, 시·군·구청으로 신고 · 산불은 바람이 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풍향을 고려하여 산불의 진행경로를 벗어나고, 불길에 휩싸이면 침착하게 주의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도로, 바위 뒤 등으



	<p>로 대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낙엽 등을 긁어낸 후 얼굴을 가리고 불길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대기 · 주택가 등으로 확산시 확산 방지를 위해 문과 창문을 닫고 건물 주변에 물을 뿌려주며, 가스·기름통, 장작 등을 제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 밭, 학교 등 공터로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피 - 대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 확인 및 위험상황 전파
<p>건물 붕괴 시</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건물 붕괴의 징조</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바닥이 갈라지거나 함몰될 때 · 벽이나 바닥의 균열소리가 얼음 깨지듯이 날 때 · 개를 비롯한 동물이 갑자기 크게 짖거나 평소와 달리 불안해할 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건물 내부에 있을 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완강기, 밧줄, 손전등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 ·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 대피로를 찾아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 - 부상자는 가능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함께 탈출 후 응급처치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건물 외부에 있을 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추가 붕괴와 가스폭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고, 사고 현장에의 접근 금지 · 붕괴지역 주변 이동 시 위험지역이나 불안정한 물체에서 멀리 떨어지고, 가방·방석·책 등으로 머리 보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border-radius: 15px;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p>잔해에 깔려 있을 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로 구조 요청 ·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가능한 경우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임 ·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삶의 의지를 유지

㉠ 식용수·폭발

구 분	조치 사항
식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의 맛과 냄새, 색깔 등이 평소와 다를 때(수질 오염 의심)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신고 · 수도물에서 냄새가 나는 기간 동안에는 끓여서 음용 · 급수 중단 발령 시에는 다른 통지사항이 있기 전까지 음용, 양치, 식기 세척 및 요리 시 불편하더라도 시중에서 파는 식수를 사용하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사업소에서 각 지역에 제공되는 병물 및 급수차를 통해 지원된 수도물 사용
폭발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폭발 사고 예방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스 누출시에는 문을 열고 환기, 전기 스위치나 화기 사용 금지 ·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밀폐공간은 집진설비를 설치하고, 화기사용 자제 · 과열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사용하지 말고, 항상 안전밸브 등을 확인·점검 · 휴대전화, 노트북 등은 ‘장시간 사용, 고온에서의 사용, 금속물질과 함께 보관, 무리한 압력을 가하는 행위’ 모두 금지 · 휴대용 부탄가스, 헤어스프레이 등의 용기는 반드시 구멍을 뚫어 잔류가스 배출 후 폐기 · 여름철에 가스라이터 등 폭발성 위험물질을 자동차 안에 두지 말 것 · 의심이 되는 폭발물 발견시, 마음대로 분해하지 말고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신고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ue;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text-align: center;"> 폭발 사고 발생 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 폭발에 대비하여 신속히 밖으로 대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스위치와 화기사용 등을 금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가스 중간밸브 등을 잠궈 가스를 차단하고 환기 후 대피 - 가스 누출에 따른 환기 시에 선풍기, 환풍기 등을 사용하면 스파크로 인한 점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말고, 문을 열어 환기 · 폭발사고 시 굉음으로 인한 청각장애 방지를 위해 귀를 막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 연기, 가스에 의한 질식 등에 대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파편이나 낙하물에 주의하면서 대피 · 대피 후 119에 신고하고, 부상자는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응급조치 실시



나) 화재 안전

① 화재 예방

㉠ 화재 예방 조치

○ 기본 장비 구비

- 소화기 비치 및 소화기 위치 상태를 한눈에 보이도록 명시
-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설치를 통한 조기 경보 시스템 확충
- 화재발생시 초기에 자동으로 소화될 수 있도록 스프링클러 설비 도입 (권장)
- 휴대용 산소캔 비치로 화재 대피시 질식사 예방(권장)

○ 기본 생활 안전수칙

- 음식물 조리 시 자리비우지 않기(조리 기구를 켜놓고 잠들거나 외출하지 않기)
-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작동유무 및 소화기 상태 정기적 확인(월 1회)
- 담뱃불은 꼭 끄고, 확인 후에 버림
- 전기기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전기를 차단하고 전문가를 불러 점검을 받음
- 전기코드가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피복이 벗겨진 경우 교체
- 바닥이나 벽으로 연장한 전선은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
- 전기 용량에 맞는 전선을 사용
- 겨울철 전열기 근처에 탈 수 있는 물품 두지 않기
-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구의 코드를 뽑도록 하고 매일 전기기구를 확인
- 비상구 근처 빈 박스, 쓰레기 등 탈 수 있는 물건은 즉시 치움

㉡ 위급상황 상시 대비

- 모든 농촌유학센터는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
- 정기적으로 아이들과 피난 집결지로 대피훈련 실시
- 피난안내도 활용법 및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수시 교육

* 인근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대피안내도 작성, 정기 훈련 및 교육 등 실시 (권장)

-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② 화재 대응

㉗ 대피 및 신고 : “불이야” 외치고, 119 신고, 대피 및 유도

* 화재의 빠른 확산으로 급박한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대피 후, 119 신고

- 최초 발견자는 육성이나 비상벨을 통해 주위에 사고사실을 전파
- 119에 신고하고, 미리 지정해 놓은 대피로를 따라 신속 대피
 - 화재유형에 따라 자체 소화전 및 소화기 등으로 초기진압 하되, 소화 작업 등 초기 조치에 몰두하여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
 - 연기가 날 경우 옷·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
 - 방문을 열기 전 손잡이를 만져보고, 뜨겁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가되,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아 이동
- 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대피

☎ 화재 신고 시 주요 내용

- ① 침착하게 119번을 누르고, 불이 난 것을 알림
- ② 화재의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
 - (예시) 우리 00농촌유학센터에 불이 났어요, 2층 건물이에요.
- ③ 사고위치(주소, 사고 장소, 주요건축물, 불이 난 층수 등)를 정확히 알림
 - (예시) 유학센터의 주소를 말하고, 00초등학교 맞은편이에요.
- ④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고, 가능한 경우 신고위치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신고자 전화번호 등)를 같이 남김
- ⑤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 제공
 - (예시) 무엇이 타고 있는지, 거주자 및 부상자 현황 등

표 71 화재신고 시 주요내용

㉘ 사고 후 수습

- 대피 완료 후 피난 집결지 등에서 인원 점검 및 부상자 파악
- 부상자 발생 시 119 신고, 응급조치 및 병원이송
- 대응체계에 따라 시·군 및 유관기관에 사고내용을 보고하고, 학교, 학부모 등 비상연락망에 따라 사고 사실 통보

* 보고는 사고 발생 1시간 이내 구두보고, 5시간 이내 육하원칙에 따른 서면보고

-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보험 등을 통한 사고 수습

화재.가스.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본 장비(예시)

<p>◆ 소화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말소화기 관리 및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압식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를 확인 (빨간 부분은 과압력, 녹색 부분이 적정 압력) - 소화기의 압력 게이지와 호스 접합부분 점검 - 한두 달에 한 번씩 분말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진소화기를 거꾸로 뒤집어 놓았다가 제자리에 둬 - 소화기 받침대를 사용 (녹이 생기는 것을 방지) - 8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권장) - 가압식 소화기(압력계가 없는 소화기) 사용 자제 ○ 투척용소화기 비치(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척용 소화기의 커버를 벗기고 화재가 난 곳을 향해 투척 (가급적 불이 난 곳의 바닥 또는 벽을 향해 던짐) 	  
<p>◆ (옥내)소화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신기 스위치를 누르고 옥내소화전함 문을 열어 노즐(물을 뿌리는 부분)과 호스를 꺼냄(옥내소화전에 있는 호스가 길기 때문에 한 사람은 호스의 접힌 부분을 펴주도록 함) - 소화전함 개폐밸브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주며 노즐을 화재 방향으로 향하게 하여 물을 뿌림 - 진화를 마쳤을 경우, 개폐밸브를 잠금 	
<p>◆ 단독경보용화재감지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의 작동 원리 및 점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 감지기로서 발화가 되어 연기가 발생하면 작동을 하는 구조 - 연기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나 흡연 장소는 피하여 설치 - 건전지에 의해 작동되므로, 건전지가 떨어지지 않았는지 주의 	

	
<p>◆ 가스누출 차단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밸브자동차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을 설정해놓으면 자동으로 중간밸브를 잠가 가스를 차단시킴 ○ 가스누출검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한도의 가스 농도를 검출하고, 사고 방지를 위해 자동적으로 경보기가 작동 	 
<p>◆ 전기 누전 차단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및 대형화재 예방 기능 ○ 누전 예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격용량의 전선사용 - 낡은 전선 교체 - 문어발식 코드 사용금지 - 평상시 불필요한 전원은 끄기 - 사용하지 않는 전원코드는 뽑아두기 	
<p>◆ 기타 장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유도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구(피난 구) 방향으로의 대피 유도를 위해 통로 및 비상구 등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대용 비상조명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등으로 인한 대피 및 유도 시 정전 등에 대비하여 통로 및 각 실에 설치

<p>○ 스프링클러(스프링클러 헤드)</p>  <p>- 화재지 자동으로 물을 분사하여 소화</p>	<p>○ 휴대용 산소캔</p>  <p>- 화재 대피 시 질식사 예방을 위해 비치</p>
---	---

표 72 화재, 가스, 폭발사고 예방 및 대응 기본 장비(예시)

2) 식품·위생 안전관리

가) 식품·위생 사고의 예방

① 식재료 위생관리

㉠ 식재료의 구입

- 표시사항, 유통기한, 원산지, 중량, 포장상태, 이물혼입, 제품 온도, 신선도 유지 여부 등을 확인.검수
 - 검수 시에는 청결한 복장, 손 세척.소독, 일회용 위생장갑 착용
 - 검수 끝난 식재료는 곧바로 전처리 또는 냉장.냉동 보관(외부포장 제거 후 제조실, 냉장.냉동고 반입)
- 검수기준에 부적합한 식재료는 자체 규정에 따라 반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그 조치내용을 기록.관리

㉡ 식재료의 보관 및 저장

- 보관 장소는 청결.건조하고 오염원에 노출되지 않은 보관실(냉장고, 온장고, 식품창고 등)에서 보관
 - 직사광선을 피하고, 유통기한이 보이도록 진열하며, 보관 진열장은 바닥에서 60cm 이상 띄워 설치
 - 냉장(0~5℃).냉동(-18℃ 이하) 온도 유지 및 해동제품의 재 냉동 금지
-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구분하여 보관(날 음식/익힌 음식, 생선/육류/과일.채소)

<보관 방법에 따른 최대 저장기간>

□ 냉장보관

식품	최적보관 온도	최대 저장기간	비고
선어	1~2℃	20일	느슨하게 포장된 상태
조개, 오징어	1~2℃	5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상태
같은 고기	3℃	2일	느슨하게 포장된 상태
절단 고기	3℃	6일	"
닭고기	2℃	7일	"
계란	4℃	3주	"
잎채소류	7℃	7일	씻지 않은 상태

□ 냉동보관 식품의 최대 저장기간

기름 있는 푸른 생선 등	3개월	돼지고기	4~8개월
기타 생선	6개월	돼지고기(같은 것)	1~3개월
쇠고기	6개월	생닭, 생오리	12개월
쇠고기(같은 것)	3~4개월	절단된 가금류	4개월

② 작업 위생관리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조리용 기구·용기의 위생 관리 철저

* 오염된 식자재, 조리용 기구·용기 및 조리사의 손 등을 통해 오염되지 않은 식품으로 유해 오염물이 옮겨지는 것

- 식기의 남아있는 음식찌꺼기 및 세척제를 깨끗이 제거하고, 세척(열탕 소독 포함) 후 충분히 건조시켜 보관고에 저장(먼지, 유해곤충 등의 접촉 방지)

- 칼과 도마는 재료에 따라 구분(생선용, 야채용 등)하여 사용

- 고무장갑은 용도에 따라 조리용, 세정용, 청소용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

○ 검수가 완료된 식재료는 즉시 적절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전처리 실시

- 전처리는 바닥에서 60cm 이상에서 실시하며, 싱크대에서 식재료 세척. 처리시 식재료가 바뀔 때마다 싱크대 세척·소독

* 식재료 처리 순서는 채소류 → 육류 → 어류 → 가금류(닭, 오리, 돼지 등 가축) 순



③ 조리 및 배식

가열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을 가열할 때에는 중심의 온도가 85℃에서 1분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완전히 익힘. - 반찬 수가 많은 경우 첫 번째 반찬 만든 시간을 기준으로 배식시간 고려 - 나물 데침 등 가열 후 조리(양념, 무침)하는 경우는 최대한 늦게 조리 - 육류와 채소 혼합 볶음이나 조림 시 육류를 먼저 조리
해동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해동은 식품의 온도가 5℃ 이하로 유지되는 냉장고나 21℃ 이하로 흐르는 충분한 양의 물에 담가 실시, 전자레인지에 의해 해동한 식품은 즉시 조리
냉각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각이 필요한 음식의 경우 57℃ 이상의 음식은 2시간 이내에 21℃로 냉각, 21℃의 음식은 4시간 이내에 5℃로 냉각
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요리에 직접 손을 대지 않으며 집게나 일회용 위생장갑을 사용 · 병조림, 통조림, 건어물, 가공식품 등은 제조일자를 잘 확인한 후 사용 · 겨울 야채의 세척에 주의하고,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는 어패류의 조리를 제한 · 조리된 음식과 식품은 조리되기 이전의 재료와의 접촉 금지 · 가금류, 식육은 내부 가열온도와 시간을 설정하여 골고루 가열·조리(온도계 등 준비)
배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한 음식을 배식하기 위하여 식기는 반드시 소독한 것을 사용하고, 음식을 식기에 담을 때 집게·국자 등을 사용, 식기 안쪽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함 · 뜨거운 음식은 뜨겁게, 차가운 음식은 차갑게 보관하여 제공

④ 조리사 등 위생관리

- (건강관리) 조리사 등은 매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확인하여 조리 참여 가능 여부 결정
- * 조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소화기계 전염병 환자 및 보균자(제1종 전염병), 결핵환자, 피부병 및 화농성 질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복장 위생) 조리사는 복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음식에 섞이지 않도록 적절한 복장을 구비

머리	· 매일 감고, 긴 머리는 묶기
모자	· 귀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착용하고, 망사모자는 피함
화장 장신구	· 지나친 화장과 향수, 인조속눈썹 등의 부착물 사용 금지 ·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신구 착용 금지
마스크	· 코까지 덮기
상의	· 흰색이나 옅은 색상의 면소재로 목둘레나 소매단이 늘어지지 않는 것 · 매일 세척 후 건조하여 착용하고, 외출복과 구분하여 보관 관리
토시	· 매일 세척 후 건조 착용
하의	· 몸에 여유가 있는 복장으로 매일 세척 후 건조하여 착용, 외출복과 구분하여 보관 관리
신발	· 신고 벗기 편리하고 미끄럽지 않은 모양과 재질 선택 · 외부용 신발과 구분 착용
앞치마	· 세척·소독 후 건조하여 착용하고, 착용 중 청결 유지 ·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 세척용으로 구분 사용

○ (손 위생) 재료 취급, 기구·설비 사용, 음식물 접촉 전/후 및 손이 비위생적인 곳에 접촉한 경우 항상 손을 깨끗이 씻어 세균·바이러스의 전파 방지

- 조리사의 손에 상처가 생기면 황색포도상구균의 오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생관리 책임자에게 보고

			
거품내기	깍지 끼고 비비기	손바닥, 손등 문지르기	손가락 돌려 닦기
			
손톱으로 문지르기	흐르는 물로 헹구기	종이타월로 물기 닦기	종이타월로 수도꼭지 잡기



가)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① 식중독 발생 시 초기 대응

㉠ 환자 등에 대한 조치

- 설사 증세가 있는 사람은 탈수 방지를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
- 증상이 심한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지시를 따름
- 노약자나 영·유아의 경우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옆으로 눕혀 보살핌
- 의사의 진단 없이 함부로 지사제 등 복용 금지
- 같이 식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

㉡ 집단 급식소에 대한 조사 및 조치

-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 환자 파악, 현장조사, 가검물 및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

* 보존식과 현장을 임의로 폐기·훼손하는 경우 과태로 부과 대상

- 의심되는 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동일 급식소에서 음식 제공 금지

㉢ 의사 등의 역할

- 식중독 환자 진료 시 의심되는 음식물 섭취 장소와 시간을 확인하고, 보건소에 신고
- 환자의 혈액이나 배설물을 채취하여 채취일자, 환자성명, 채취자 등을 표시하고, 보건소에 인계할 때까지 변질·오염되지 않게 보관

② 식중독 사후관리 및 보고

- 농촌유학시설 운영자 및 의사에게 식중독 발생 의심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식중독 역학조사 실시
- 보건소의 역학조사 후 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살균·소독 실시,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균 검출 여부에 따라 행정조치(시·군·구), 사고 대응체계에 따라 보고

식중독 발생보고 양식							
식중독 발생보고							
보고 기관명		보고 일자		보고자		기관 전화번호	
① 최초발생일				② 최초 신고일			
③ 발생장소 명				④ 소재지			
⑤ 발생시설구분				⑥ 위탁급식소명			
⑦ 환자수				⑧ 사망자 수			
⑨ 총 섭취인원				⑩ 추정 원인식품			
⑪ 발생상황 및 경위				⑫ 조치사항			
「식품위생법」 제 86조 제 2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 93조 제2항에 따라 보고 한다.							

표 73 식중독 발생보고 양식

3) 질병 및 사고 안전관리

① 질병 관리

㉠ 일상에서의 질환 관리

○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일지 작성

- 개인별 건강상태 파악 및 상시 관리, 특이질환 유무 사전 인지 등

○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처와 이동방법 숙지

- 보건지소, 상급 의료기관

㉡ 계절별 주요 질병 관리

○ 봄철 주요 질환 : 알레르기 결막염*

* 비감염성 결막염으로 전염성이 없음

- (원인) 꽃가루, 공기 중 미세먼지, 황사, 매연 등의 유해물질, 집먼지 진드기

- (증상) 눈꺼풀 가려움 및 눈 주위 부풀어 오름, 결막 충혈, 화끈거림 및 통증, 눈물흘림, 투명한 점액성 눈곱

- (예방) 꽃가루·황사 등이 심한 날은 외출 자제, 외출 후 손·발 깨끗이 씻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눈을 비비거나 만지지 말 것, 가습기·물 섭취 등을 통해 수분 유지



- (대처) 차가운 수건으로 눈 주위를 찜질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 손으로 비비거나 소금물 등으로 소독하지 말 것

<참고> 바이러스성 결막염(전염성○, 여름철 주로 발병)

- ① 유행성각결막염
 - (증상) 눈곱 과다, 분비물, 이물감, 가려움, 눈부심, 충혈, 귀 뒤 림프절 부어오름 및 통증, 오한·미열·근육통 등 감기증상, 심하면 결막 표면에 노란막이나 실 모양의 각막염 발생
 - 증상이 3~4주간 지속, 증상 시작 후 2주 정도까지는 전염력 지속
 - ② 급성출혈성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 (증상) 유행성각결막염과 증상 유사하나, 보다 급성으로 진행하며 심각한 결막의 충혈 증상 동반
 - 증상이 4~7일로 짧게 지속되나, 증상 전 잠복기 동안 전염력이 강해 주의 필요
- ⇒ 반드시 병원 진료(조치가 늦으면 시력 저하 등 후유증 위험), 냉찜질, 전염 예방을 위해 수건, 비누, 베개 등을 따로 사용하고, 안약도 따로 사용

○ 여름철 주요 질환 : 식중독

※ ‘Ⅱ. 식품·위생 안전관리’ 부분 참조

- (원인)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장염비브리오 등)
- (증상) 지속적인 설사와 복통, 심각할 경우 고열과 오한을 동반
- (예방) 신선한 식품 섭취(가열음식은 충분히 가열), 조리 음식 바로 배식(남은 음식 재배식 금지), 조리실 청결 유지, 손 씻기 등 위생관리 생활화 등
- (대처) 수분을 충분히 섭취(끓인 물, 보리차, 이온음료)해 탈수를 예방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음(의사의 진단 없는 설사약 복용 금지)

* 소변량이 크게 줄 정도로 탈수가 심할 때, 고열과 오한을 동반할 때, 설사에 점액과 피가 섞여 나올 때, 복통·구토 등이 심할 때 등

○ 가을철 주요 질환 :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유행성출혈열 등)

- (원인) 털 진드기 유충(풀에 묻어있거나 설치류에 기생),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흙, 설치류 등에 의한 감염
- (증상) (야외활동 후) 고열, 오한, 심한두통, 발진, 구토, 복통 등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예방) 풀, 들쥐(배설물) 등과의 접촉을 피하고, 발 등에서는 긴 옷 착용, 야외활동 후 귀가시 옷을 세탁하고 즉시 샤워나 목욕, 예방접종 등
- (대처)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 등 심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 곳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료

○ 겨울철 주요 질환 : 독감

- (원인) 인플루엔자(influenza) 바이러스
 - (증상)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구토, 설사, 인후통, 기침, 콧물이 나는 등의 증상(일반감기에 비해 발열, 근육통 등 전신 증상 뚜렷)
 - (예방) 독감 유행 시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방문 자제, 손·발 씻기 등 위생관리, 독감 유행 전(9~11월) 예방접종(권장)
 - (대처)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독감 치료제는 증상 발생 시 48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효과가 있으므로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가까운 진료소에 방문
- * 기침이나 재채기 시 손수건, 휴지, 옷깃 등으로 가리고,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① 신체와 관련된 사고

구 분	조치 사항
머리를 다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을 고정,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머리에는 베개나 담요를 말아 괴어주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비스듬히 눕힘 · 출혈 시 거즈나 붕대 또는 깨끗한 천으로 상처부위 압박 · 구토, 귀나 코에서의 출혈,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을 비비지 못하게 하고, 불빛을 향해 앓도록 하여 이물질을 찾으면 깨끗한 물로 씻어냄 · 깨끗한 솜, 면봉, 수건 등을 적셔 이물질 제거 · 눈에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에는 즉시 흐르는 물로 계속 씻어주고, 화학물질에 따라 치료가 다르므로 바로 응급진료를 받도록 함



<p>코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채기를 유도하거나 한쪽 코를 막고 세계 풀어봄 · 몇 차례 더 시도해보고, 나오지 않을 때에는 병원 방문 - 핀셋 등으로 제거를 시도하다가 더 밀어 넣는 일이 없도록 주의
<p>코피가 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앉은 자세에서 머리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 피가 기도로 넘어가지 않게 하고, 양쪽 콧등을 손가락으로 눌러 5분 동안 지혈 · 목 주위의 옷은 느슨하게 하고, 코를 풀지 않도록 함 ·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를 코 위에 대어 혈관을 수축시킴 · 코피가 멈추지 않으면 거즈로 콧구멍을 막되 거즈의 끝이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계속 멈추지 않을 때에는 병원(이비인후과) 방문
<p>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 밝은 빛의 손전등을 귀에 비춰 벌레가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 · 물이나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면봉으로 물기와 먼지 제거 · 핀셋으로 무리하게 이물질 제거를 시도하지 말고 병원 방문
<p>목에 음식 등 이물질이 걸려 숨이 막힐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뒤에 서서 한쪽 주먹을 쥐고, 주먹 쥔 손의 엄지손가락 쪽을 아동의 배꼽 바로 윗부분에 댄 후, 다른 손으로 주먹 쥔 손을 감싸 쥐어 아동의 복부를 등 쪽으로 빠르게 밀어 올려 부드럽게 압박 · 반복해서 압박하여 배출된 이물질을 확인한 후 병원 방문
<p>발목을 뺨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목을 약간 높게 올려 휴식을 취하고, 뺨 부위를 찬 물이나 물수건으로 20~30분 간 냉찜질 · 심한 경우 발목에 딱딱한 것을 받쳐주고, 압박붕대로 감아준 뒤 냉찜질 지속, 병원 방문 · 2일 이상 운동 자제
<p>뼈가 부러진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안심시키고, 직접적 위험이 없는 상황이라면 환자를 이동시키거나 골절 부위를 건드리지 말 것 · 부러진 뼈를 무리하게 맞추려 하지 말고 부러진 상태 그대로 병원에 이송하되, 가능하면 부목을 대어 다친 곳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 다리 골절 시 아동을 부드럽게 눕히고, 무릎과 발목을 받쳐준 후 다친 다리에 부목을 대어 고정 · 쇄골 골절 시 아동을 부드럽게 앉히고, 다친 쪽의 팔을 가슴부위에 걸친 후 다른 손으로 다친 쪽 팔을 받치도록 하여 팔 걸대, 붕대로 고정 · 목뼈나 등뼈를 다친 경우 업지 말고 들것으로 이동 · 척추에 손상을 입거나 뼈가 보이는 경우, 손상 이하 부위의 팔다리가 차갑거나 새파래지는 경우는 급한 상태이므로 서둘러 119에 도움 요청 · 구급대원 및 의사에게 부러진 뼈가 돌출 후 다시 안으로 들어간 경우 등 골절 상황에 대해 설명

이가 부러지거나 빠졌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아가 부러진 경우, 치아조각을 찾아 병원 방문 · 빠진 치아는 차가운 우유나 식염수에 보관, 없을 경우 가볍게 흐르는 물에 씻고, 이물질은 문질러 제거하지 말 것
베이거나 찢어져 출혈이 심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처에 거즈를 덮고, 손으로 5분 이상 압박하여 지혈(상처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 · 붕대 등을 이용한 응급조치가 가능하면 지혈 후 응급조치를 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녹슨 못 등에 의한 파상풍 등 감염 우려)
일사병· 열사병에 걸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이나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빨리 서늘한 곳으로 이동 · 옷을 느슨하게 하여 열을 발산시키고, 머리를 차게 유지 · 차가운 소금물이나 중조수를 마시게 함 · 열이 심할 때는 발가벗겨 물이나 알코올로 몸을 닦아 빨리 체온을 내리게 하고, 즉시 병원으로 이송
갑자기 의식을 잃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듯하게 눕히고 자극을 주었을 때 반응을 보이면 환자를 옆으로 편안하게 눕힘 · 물, 음료수는 먹이지 않고, 119에 도움요청 후 상태 지속 관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킨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 예방을 위해 머리를 포함한 몸통을 옆으로 돌려주고, 환자에게 손상을 줄 수 있는 주변 물건을 정리 · 물, 음료수 등은 먹이지 말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줌 · 119에 도움 요청, 경련 후 입술이 파래지거나 숨을 쉬는지 지속 관찰
물놀이 사고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큰 소리로 주위에 사고 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 ·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튜브·로프·긴 막대기 등 잡고 나올 수 있는 것을 던져 구출 · 구출 시 구급대원이 오기 전까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실시 <p>※ 'IV. 활동 및 여행 안전' 목차의 물놀이·수상활동 부분 참조</p>

② 동·식물 및 곤충 관련된 사고

구 분	조치 사항
애완동물 에게 물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흐르는 물로 물린 상처부위를 씻고 소독약을 바름 · 상처가 가벼워도 반드시 물린 날 안에 병원 진료(광견병 등 우려)
뱀에게 물린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시 119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음 - 독사의 경우 물린 자리에 2개의 이빨 자국이 남고, 물린 주변이 붉어지면서 부음(구토, 호흡곤란, 급격한 시력감퇴 증상 동반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를 안심시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편안하게 눕힘 · 물린 부위에서 심장 쪽에 가까운 부위를 손가락 하나 들어갈 정도의 세기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방지 · 얼음찜질 금지(합병증 유발 가능)
벌이나 벌레에 쏘였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침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밀어서 제거(핀셋 등 사용 금지) · 찬물 찜질을 하고, 통증과 부기가 하루 이상 지속되면 병원 진료
가시가 박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와 따뜻한 물로 가시 주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한 집게로 가시를 잡아당겨 빼낸 후 상처에서 피를 짜내고 소독후 반창고 부착

③ 가스, 감전, 화상과 관련된 사고

구 분	조치 사항
가스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가스밸브 잠금, 창문을 열어 환기 · 119 신고, 아동의 옷을 느슨하게 하여 편안하게 눕힌 후 상태 관찰
감전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전된 아동을 직접 만지지 말고, 119에 도움 요청 · 사고자 주변 전선 또는 전원스위치를 차단하고, 전기차단이 어려우면 고무장갑·장화 등을 착용한 후 부도체(옷, 나뭇가지 등)를 이용하여 사고자를 기기·전선에서 분리 · 전기로부터 분리 후 숨을 쉬는지 확인하고, 숨을 쉬지 않으면 즉시 인공호흡 실시 ·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아동의 몸을 담요 등으로 덮어 따뜻하고 편안하게 눕힘
화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한 화상시 옷을 억지로 벗기지 말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 이송 -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 없는 거즈로 감싸 상처부위 오염 방지 · 깨끗한 찬물을 뿌리고 가위 등을 이용하여 옷을 잘라냄 · 의사의 처방 없는 연고, 오일, 된장·소주 등 민간치료는 상처를 악화시키므로 금지

4) 기타 안전관리

가) 교통 안전관리

① 교통사고의 예방

㉠ 도보 이동시 안전관리

- 농촌유학시설 운영자는 아동 및 생활교사를 대상으로 등·하굣길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권장)
- 버스 등 이용 시 버스정류소까지 성인 인솔자가 도보로 인솔
- 인도, 가로등 확보 및 건널목 신호등 유무를 확인하고, 교통안전지도 실시
 - 인도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마주 오는 차를 바라보고 반드시 한 줄로 서서 갓길로 이동
 -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호등이 없는 경우 차를 먼저 양보하고 건넌
- 급하게 서두르거나 다른 친구들과 경주하며 뛰어가지 않도록 지도
- 체구가 작은 아이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밝은 색의 옷을 입히고, 긴 끈이 달린 옷이나 장신구, 벗겨지기 쉬운 슬리퍼나 굽 높은 신발은 신지 않도록 함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함

㉡ 자전거 이용 시 안전관리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탑승 전 점검사항 점검
 - 의상은 자전거 체인에 끼지 않은 것으로 하고, 신발은 가급적 운동화 착용
 - 자전거에 경음기를 부착하고, 야간 자전거 이용을 위해 전조등, 야광등 확인
 - 야간에는 자전거 타는 것을 자제하고, 이용을 허락할 시에는 밝은 색 또는 야광색 의상을 입도록 지도
 -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보호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
-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교육
 - 자전거를 타기 전 반드시 안전 보호 장구 착용
 - 양손은 핸들을 꼭 잡고 양 발을 페달에 놓고, 안장에 앉아 상반신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꿈치를 굽혀 타도록 함



- 자전거를 탈 때에는 교통안전 표지와 교통신호에 따라야 하며, 시야가 좋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이용
- 주·정차 차량 주변을 통과할 때에는 열리는 자동차 문에 주의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도록 함
- ㉔ 인라인 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이용 시 안전관리
 - 생활교사는 아동들이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헬멧, 무릎·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바퀴가 고장 나지 않았는지 확인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의 제2항, 제24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의해 인라인 스케이트 등을 탈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 인라인 스케이트는 발에 잘 맞는 것으로 구입하고, 킥보드는 발판에 올라섰을 때 손잡이가 가슴보다 높지 않은 것을 선택
 - 찾길은 인라인 등을 벗어 들고 건너며, 생활교사는 위험지역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이용을 금지시킴(운동장 등 안전한 곳에서 이용)
 - 계단 오름, 묘기를 부리거나 내리막길을 과속, 손에 물건을 들거나 트럭·자전거 등을 따라가며 타는 행동 등 금지
- ㉕ 통학버스,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 시 안전수칙
 - 차가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 하도록 하고, 아동의 승·하차가 완료될 때까지 상황을 확인(하차 시 차 주위 상황을 확인한 후 하차)
 - 승·하차 시 차 문에 옷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 안에 탑승하면 안전벨트 착용
 - 버스 등을 기다릴 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며, 미리 차도에 내려서지 않도록 지도
- ②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신속하게 부상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
 -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현장을 보존하고, 119와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
 -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구급대원이 오기 전 응급조치 실시(매뉴얼의 각종 사고 대응요령 부분 등 참고)

나) (성)학대·폭력 등 안전관리

① 실종 사고의 예방·관리

○ 아동실종 예방을 위한 일상 관리 및 교육 실시

- 아동의 하교시간 등 방과 후 일정, 외부 활동 시의 이동경로 등을 항상 파악
- 아동이 예정시간보다 늦을 시에는 학교, 아동 휴대폰 등으로 연락을 취해 이동경로 및 늦어지는 사유 등을 확인
- 아동 대상 실종·유괴 예방교육 실시

* 아동실종 예방관리에 대한 상세정보는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02-777-0182)에 문의

○ 아동 실종사고 발생 시에는 침착하게 가까운 파출소 등에 신고

- 평소 자주 가는 곳, 이동해 온 경로,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안내데스크·미아보호소 방문, 친한 친구 집 전화 등을 통해 아이의 소재 파악

* 어린 아이일수록 장롱, 침대 및 등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다가 잠이 드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집안도 샅샅이 찾아볼 것

- 그래도 찾지 못하는 경우, 기다리지 말고 최대한 빨리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국번 없이 182)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파출소에 신고

② (성)학대·폭력 및 예방·관리

㉠ 아동학대의 유형

구분	개념	구체적 행위(예시)
신체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우발적인 사고를 포함한 모든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를 손·발이나 벨트 등 도구로 때리는 행위 · 떠밀고 움켜잡는 행위, 팔 다리를 비트는 행위 · 뜨거운 물이나 물체, 담뱃불 등으로 화상을 입히는 행위
정서학대	아동에게 언어·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는 행위 · 다른 아동과 부정적으로 비교하거나, 아동이 보는 앞에서 싸움을 하는 행위 · 여러 사람 앞이나, SNS 등을 통한 폭언 등 · 강제로 일정한 장소로 데려가거나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감금) 하는 행위



방 임	<p>고의적·반복적으로 아동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에 방치 · 학교에 무단결근하여도 고의적으로 방치하거나, 숙제·준비물 등을 챙겨주지 않음 · 예방접종이나 필요한 의료조치를 소홀히 함 · 아동과 대화를 하지 않는 등의 정서적 방임
성 학 대	<p>성인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 아동과 성인 사이의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모두 포함하며, 힘이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놀이를 통해 착각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기도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 등 힘을 이용하여 강제적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강간) ·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성희롱) · 성욕 만족을 위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성추행) · 포르노비디오를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 아동 매춘 또는 아동 매매 행위,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 아동학대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동보호전문기관(<http://korea1391.org/> / 02-558-1391)에 문의

㉞ 아동학대의 예방

구 분	세부 내용
생 활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소 공간 및 화장실 등은 성별에 따라 분리하고, 아동과 함께 숙박하는 상근 생활교사 배치 · 평소 아동 간, 아동과 생활교사 및 운영자 간 신뢰 관계 형성 · 마을 안전지도를 작성하고, 안전지역을 이탈하여 인적이 드문 위험한 곳에 가지 않도록 지도 · 운영자 및 생활교사는 (성)학대 관련 교육 등을 통해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
예 방 교 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학대의 개념 및 유형 등을 정확히 알도록 교육하여 무의식적인 학대 예방 ·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도록 사전 고지 · (성)학대로 의심되는 상황을 경험 또는 목격하였을 경우의 대처방법을 미리 알려 심각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
관 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및 활동 중 아동의 태도·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여 (성)학대의 징후를 감지하고 사전에 예방

㉔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학대 사고인지 시 즉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 성 학대의 경우 피해 사실이나 피해자 신원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비밀 유지
- 부상자 발생 시 응급조치하고, 119에 신고하여 보건소 등 의료기관으로 이송
 - 성 학대로 응급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112, 119 등을 통해 입은 옷 차림 그대로 씻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가까운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또는 전담의료기관(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안내)으로 이송(사진촬영 및 증거물품 확보하여 종이봉투에 보관)
- 운영자(또는 시설 안전책임자)는 사건의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학교, 경찰서 등에 신고 조치
 - 피해·가해 내용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
 - 아동학대 신고전화 : 1577-1391 / 129
 - 학교 폭력 신고·상담 : 국번 없이 117
 - 성 학대의 경우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1899-3075)를 통해 신고, 상담, 의료 등 각종 피해자 지원

☎ 아동학대 신고 시 주요 내용

- ① (학대 의심내용) 의심 증거, 발견시 정황, 상처, 학대 지속성
- ② (피해아동 정보)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의 특징, 피해아동의 현재 상태 등
- ③ (학대행위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직업, 학대행위자 특징,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
- ④ (신고자 정보)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참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14.1.28. 공포, ’14.9.29. 시행 예정)

<제 · 개정 주요 내용>

- (특례법) 가해자 처벌 강화, 신고의무자 의무불이행 과태료 강화, 피해아동 보호명령 신설,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번호인 · 진술조력인 도입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관련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금지, 국가·지자체의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지원, 피해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외 ‘의심이 있을 경우’에도 신고의무, 미신고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상향



다. 활동 및 여행 안전관리

1) 활동 시 안전관리

가) 야외 활동 안전관리

① 물놀이·수상 활동

㉠ 안전수칙

○ 일반적인 안전수칙(수상활동 시 공통)

- 기상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고, 태풍·호우 주의보·경보, 소나기, 천둥·번개가 칠 때 등은 수상활동 금지
- 물놀이는 식사 후 한 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며, 보호자 없이 아동 혼자 물놀이 금지
- 물에 들어가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후 심장에서 먼 곳부터 물을 적시며 들어감
- 위험요소가 없는 얇은 물에서 하며,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
- 아동의 체력·능력에 맞게 수영하며, 몸이 추우면 물 밖으로 나와 몸을 따뜻하게 유지

○ 수상레저 활동 시

- 레저 장비를 점검하고, 비상연락·조난신호 장비 준비
- 야간 레저 활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할 경우 전등, 나침반, 통신기기, 야간 조난신호장비 등의 야간운행 장비를 필수적으로 갖출 것
- 원거리 활동(해안에서 약 10해리/19km 이상 나갈 경우)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인터넷(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http://wrms.kcg.go.kr>) 혹은 팩스로 신고 후 실시(수상레저안전법 제19조1항 참고)
- 수상레저 활동 금지 구역에서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

○ 갯벌 활동 시

- 갯벌에 혼자 들어가거나 맨발로 들어가서는 안 되며, 발에 맞는 장화 착용
- 출입을 위한 진입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진입로 이용, 갯골이 있을 경우 갯골을 넘어가지 않음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갑자기 안개가 낀 경우 즉시 갯벌을 나와야 하며, 발이 빠진 경우에는 반대 방향으로 기어 나오되, 위급한 경우 119에 도움 요청
- 하천·계곡물을 건널 때
 - 물을 건너기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건너지 않고 육로 선택
 - 물살이 완만한 장소를 선택, 나뭇가지로 깊이를 재면서 바닥을 끌듯이 이동
 - 물살이 강할 경우, 건너편 하류 쪽으로 밧줄 설치 후 밧줄을 잡고 한 명씩 이동
- ㉠ 사고 시 대처방법
- 익수자 발견 시
 - 큰 소리로 주위에 상황 알림, 인명구조원이 있는 경우 인명구조원에게 즉시 알리고, 없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
 - 익수자를 구하기 위해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주변에 인명구조 장비(장대 줄, 튜브, 구명조끼 등)나 잡고 의지할 수 있는 물건을 던져서 구출
 - 수영에 능한 사람(다양한 영법과 10분 이상 수영이 가능한 자)이 종합적 상황을 고려한 후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익수자의 배후로 헤엄쳐가 구조
- 익수자 구조 시
 - 환자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즉시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 실시
 - 척추나 등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널빤지 같은 것으로 환자의 몸 고정
 - 젖은 옷은 응급처치를 계속 하면서 벗긴 후, 마른 의복으로 갈아입히거나 모포로 환자를 감쌌
 - 호흡이나 맥박이 정상이더라도 반드시 병원으로 옮겨서 의사 진료
- 자신이 물에 빠진 경우
 - 흐르는 물에 빠진 경우 몸을 둥글게 오므린 상태에서 구두와 걸옷을 벗고, 물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며 대각선 방향으로 헤엄쳐 나옴
 - 물놀이 중 다리에 쥐가 난 경우에는 몸을 둥글게 오므리고 숨을 들이마셔 물속에 얼굴을 넣은 후 쥐가 난 엄지발가락을 양손으로 힘껏 잡아당기면서 근육이 풀릴 때까지 주물러줌



- 물에 빠져 고립되었을 경우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하고, 양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몸을 웅크리며 많이 움직이지 않음(의지할 수 있는 물건을 최대한 이용)

② 산행 활동

㉠ 안전수칙

- 등산 전 참가자들의 건강을 체크, 일행 중 가장 약한 사람 기준으로 등산 계획

* 평소 혈압이 높거나 낮은 사람, 심장·폐 기능이 낮은 사람, 체력이 현저히 약한 사람은 참여 자제

- 긴 산행을 위해 짧은 거리를 반복해서 걷는 등 사전 연습 철저
- 등산 시 선두는 너무 빠르게 걷지 않고, 전체 대열 중간 중간에 생활교사 배치
- 뒤처지는 아이, 부상자 등을 돌볼 교사를 배치하고, 구급상자, 호출장비·차량, 우천 시를 대비한 우의, 휴대전화(예비 전지 포함) 등 준비
- 산행 중 아이들 간 안전거리 및 질서를 유지하고, 개별 행동 금지
- 해 지기 1~2시간 전에 등산을 마치며, 등산 중 충분하고 규칙적인 휴식을 취하고 음식은 조금씩 자주 섭취
- 등산 중 집중호우 발생 시 즉시 하산사거나 급히 높은 지대로 피신해야 하며, 물살이 센 계곡과 나무로 만들어진 다리는 건너지 말아야 함
- 대열을 이탈하여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지나쳐 온 위치까지 되돌아가서 다시 위치 확인
- 발에 물집이 생기면 물집 위에 압력을 가하거나 터트리지 않도록 하며, 발목과 무릎의 통증이 있는 경우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하산

㉡ 사고 시 대처방법

- 사고 즉시 119, 경찰구조대,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에 구조 요청
-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림(등산코스마다 500m 간격으로 설치된 다목적 표지판 주지)
- 부상자 발생 시 구조요원 도착 시까지 환자의 체온 유지, 심리 안정, 의식 유지를 위해 노력

③ 농촌 체험 활동

㉞ 안전수칙

곤충· 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들의 활동이 왕성한 계절에 산행을 할 때에는 화장품 자제 (단, 자외선 차단제(선크림)는 향기가 없으므로 사용해도 된다.) · 간식으로 준비하는 과일은 사과, 포도와 같은 향과 당분이 강한 과일보다는 담백한 오이 같은 것이 좋음 · 동물이나 곤충들이 싫어하는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소매, 양말을 착용 · 보행 중에는 벌집 등을 건드리지 않도록 유의 · 뱀(독사)에 물리지 않게 조심하고 길 이외의 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 자제
알레 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식품 성분·첨가물 등을 주지하고, 모르는 풀이나 열매 등을 함부로 먹지 않음
피부 보호 및 발열 성 질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하우스, 밭 등에서 체험활동을 할 때 덥다고 아이들에게 반팔 옷을 입히는 것보다는 얇은 긴팔 옷과 긴바지를 입히는 것이 좋음 · 보습제와 자외선 차단제를 틈틈이 발라주고, 모자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황사와 자외선으로부터 보호 · 질환이 유행하는 지역의 관목 숲이나 유행지역에 가는 것을 자제하고, 야외활동 후 귀가 시에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않음
안구 질환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챙이 있는 모자나 안경을 쓰고, 밤 등 날카로운 열매를 딸 때에는, 고글 등 눈 보호 장구를 착용 · 눈에 뭔가 들어갔다고 생각되면 비비지 말고 깨끗한 식염수나 물로 씻어 내 안전하게 제거 · 안과질환이 의심되면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

㉟ 사고 시 대처방법

- 활동 중 갑자기 벌이 몸 주위를 맴돌면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움직이지 말 것(등산용 지팡이나 수건을 휘두르면 오히려 벌의 공격 유발)
 - 벌에 쏘인 경우 플라스틱 카드 등으로 벌침을 신속히 제거하고, 암모니아수나 얼음찜질(심한 두통, 구토, 쇼크 등 전신증상 있는 경우 즉시 병원 이송)
 - 동행자 없이 혼자 활동하다가 벌에 쏘이는 경우 시력과 의식이 흐려지기 전에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
 - 뱀에 물린 경우 응급처치 후 119에 연락하여 후송조치
- ※ ‘제2장 생활 안전 관리’ 중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방법 참조



④ 겨울 놀이 활동 안전 수칙

- 활동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여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스케이트나 눈썰매의 날이 제대로 세워졌는지와 사이즈가 적당한지를 확인
- 스케이트, 스키, 눈썰매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보호 장비(방한장갑, 헬멧, 보호 장구) 착용
- 놀이기구 탈 때는 다른 아이들과 같은 방향으로 타고, 서로 밀거나 당기지 않도록 지도
- 반드시 생활교사가 동행

나) 공구 체험 활동 안전관리

① 학습 용구 사용 시

- (학습용구) 학습 중 사용되는 날이 있는 물건이나 뾰족한 용구들로 칼, 가위, 스테플러, 뾰족한 연필, 컴퍼스 등

사고 예방 안전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학습용구의 적절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위로 연필을 깎지 않도록 함 - 한꺼번에 많은 종이를 칼로 자르지 않도록 함 · 연령에 맞는 안전장치가 있는 칼과 가위 등을 사용하도록 함 · 칼이나 가위 등 날이 있는 용구는 녹이 손 것을 사용하지 않음 · 용구 사용 중에는 절대 장난을 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교육을 함 · 용구를 다 사용한 후에는 칼이나 가위 등의 날카로운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정리하여 제자리에 넣도록 함
사고대 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침착하게 부상자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응급조치함 · 사고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함 · 부상정도가 심하거나 구급을 요하는 경우, 교사가 병원에 동행함 · 동행한 교사는 치료 상황을 센터에 알리며, 센터는 부모에게 사고 상황과 경위를 알림

② 공작 용구 사용 시

- (공작 용구) 목공, 미술 활동을 하는 중 사용되는 물건으로 조각칼, 송곳, 망치, 톱, 못, 접착제 등

<p>사고 예방 안전 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공작용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반드시 사전에 익히도록 함 · 공작 중에 다른 친구와 잡담을 하거나 작업에 방해를 하지 않음 · 못, 톱 등 날카로운 물체를 들고 뛰어다니지 않으며, 날카롭거나 뾰족한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함 · 아무리 작은 재료(못 등)나 공구라도 입에 물거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음 · 칼이 나아가는 방향이 몸에서 바깥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손은 칼이 지나가는 부분에 놓지 않도록 함 · 글루건을 사용할 때에는 노즐이 손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달구어진 접착액은 온도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맨손으로 만지지 않음 · 니퍼, 펜치, 가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장난치지 않도록 하며 물건이 물리는 부위에 손의 일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함 · 만들기 등(목공작업은 제외)을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 장갑을 착용하도록 함 · 전기톱, 전기드릴, 전기글루건과 같이 전기를 이용한 공구가 필요한 활동은 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며,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도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하도록 함 · 인화물질은 불이 붙지 않도록 조심 · 긴 재료는 주위를 살펴서 안전하게 운반 · 바닥에 떨어진 어떤 액체라도 즉시 깨끗이 제거 · 공구와 기구는 사용 후에 반드시 제자리에 놓음 · 공작 중 발생한 파편과 폐기물은 정해진 통에 분리수거 · 교사의 허락 없이는 공구, 기구, 재료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교사가 지정해 준 것만 사용하도록 함 · 공구, 기구의 이상과 모든 사고를 즉시 교사에게 보고
<p>목공 작업시 안전 수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공작업을 할 때는 기계와 연장에 장갑이 끼어 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장갑을 착용하지 않음 · 긴 머리 혹은 흘러내리는 끈 등은 반드시 뒤로 단정하게 묶음 · 조각도나 끌을 사용할 경우에는 손은 항상 칼 뒤에 있도록 함 · 칼은 들고 다니지 않으며 안 쓰는 동안에는 제자리에 둠 · 망치는 자기 손 힘에 따라 막대를 잡는 위치를 조절 · 파상풍 위험이 있는 녹슨 못은 사용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포질을 한 후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변을 청소하고 가루로 장난하지 않음 · 보호구(마스크, 보호안경)가 필요한 작업에는 반드시 착용 · 작은 소재를 가공할 때는 반드시 보조공구를 사용 · 탁상 드릴이나 루터로 작업할 때 반드시 안전대(지그)를 사용 · 전동 공구나 타카의 스위치 부분에는 사용할 때 말고는 손가락을 올려놓지 않음 · 전동 공구나 타카 등은 항상 날을 밑으로 향하게 함 · 타카 사용 시 손가락은 타카 핀의 반경을 벗어나 있어야 함 · 루터나 트리머 혹은 직소기의 경우에는 작업 후에 전동 공구가 멈춘 후 소재물이나 공구를 꺼냄 (전동드릴 제외). · 모든 공구는 사용 후에 곧바로 제자리에 정리 정돈
<p>사고대 처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건에 찔리거나 베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러운 것이 묻었을 경우 깨끗한 물로 씻음 · 소독된 거즈를 상처에 감쌘 · 출혈이 심한 경우 거즈를 출혈 부위에 두텁게 대고 직접 누르고 붕대로 감아 지혈. 이 때 출혈 부위는 심장보다 높게 함 · 깊은 상처 혹은 녹슨 못 등으로 상처를 입은 경우 파상풍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진료를 받으며 필요시 예방접종을 함 ○ 접착제나 이물질이 눈에 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절대 눈을 비벼서는 안 되며 이물질이 눈으로 확인이 될 경우 식염수나 깨끗한 물로 씻음 · 이러한 방법으로도 눈에 이물감이 느껴진다면 눈꺼풀을 뒤집어 부드러운 면봉으로 이물질을 닦아 냄 · 눈에 순간접착제와 같은 화학물질이 튀었을 경우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최소 15분 이상 씻어낸 후 안과 진료를 받음 ○ 화상을 입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상 부위에 더 이상의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찬물로 식혀줌 · 물집이 생긴 경우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를 소독된 거즈로 덮어 공기와 직접 닿지 않도록 하여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함

③ 봉재 및 세탁 용구 사용 시

○ (봉재·세탁 용구) 옷감을 이용하여 옷 등을 만들거나 염색, 다림질 등을 할 때 사용되는 바늘과 같은 뾰족한 용구와 전열기구들, 염색 재료 등

사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늘은 잠깐이라도 쓰지 않을 때는 바늘꽂이에 꽂아둠 · 재봉틀을 사용할 때는 기계가 작동하는 동안 다른 곳을 보지 않음 · 천연 염색에서는 안전한 곳에서 재료를 끓이고 매염제가 눈이나 입에 들어가지 않도록 함 · 다리미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자리를 뜨지 않음. 반드시 다리미 전원을 끈 후 다른 곳으로 이동 · 다리미판은 벽면에 맞대어 설치하고 다리미 선이 이동 동선에 있지 않는지 확인 · 천과 다리미 온도를 체크하고 충분히 사용법을 익힌 후 사용
사고 대처법	<p>※ 나. 공작용구 사고대처법 참고</p>

④ 조리 도구 사용 시

○ (조리 도구) 요리 중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조리 기구, 화기 등

조리 도구	사용법
부엌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칼날이 무뎠으면 힘을 주게 되어 다칠 염려가 있으므로 갈아서 사용 · 사용 후에는 열탕 소독을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칼집에 보관 · 다음 사용 시 손잡이 쪽을 잡을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하여 보관 · 칼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 · 재료를 썰 때는 재료를 잡고 있는 손이 칼의 뒤쪽에 놓여 베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칼날은 아래쪽을 향하게 함 · 절대 칼을 들고 장난치지 않음
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사과·생강 등을 갈아서 즙을 내는 강판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이 강판의 날에 베일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사기 제품은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했을 때 깨지거나 금이 가기



사기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쉬우므로 안전하게 취급하고 보관 · 설거지를 할 때 가능한 한 다른 용기들보다 먼저 함 · 금이 가거나 깨진 용기는 손이나 입을 벨 수 있으므로 버림
주걱, 국자 뒤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며 되도록 긴 것을 사용하여 뜨거운 것에 데지 않도록 함
가스 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상 중간 밸브 점검을 실시하여 가스의 누출을 사전에 예방 · 사용 후에는 중간 밸브와 스위치를 잠그고 가스누설 자동차단 장치를 설치 · 휴대용 가스 사용 시 가스통을 정확히 설치하고 구멍을 뚫어 가스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 버림
전자 레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코드를 빼놓음 · 음식을 데우거나 가열 할 때 전자레인지 전용 그릇을 사용 · 각 음식마다 적당한 용도와 시간을 확인한 후 사용
압력 밥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열된 솥의 압(김)이 다 빠진 후에 뚜껑을 열거나 옮김 · 가열 시 압이 새지 않도록 뚜껑이나 밸브가 잘 닫혀 있는 지 확인 · 전기밥솥은 증기로 인한 화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사 중일 때는 접근하지 않음
음식물 쓰레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물 쓰레기는 관할구에서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 ·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하고 뚜껑 있는 쓰레기통에 관리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쓰레기통을 즉시 비움 · 폐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모아서 폐식용유 수거함에 모았다가 폐식용유 관리업자가 수거해 가도록 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방바닥에는 왁스칠을 하지 않음 · 물기가 있을 때는 즉시 제거 · 칼, 가위, 강판, 열려있는 깡통 등 다칠 우려가 있는 도구는 주의하여 보관 · 싱크대 문을 여닫을 때 손가락이 문에 끼지 않도록 주의 · 뜨거워진 요리 기구를 들고 장난치지 않고 뜨거운 것은 항상 주의 · 조리방법에 맞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 · 조리방법과 안전수칙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

〈 조리방법에 따른 안전수칙 〉

조리방법		안전수칙
끓이기 삶기	끓는 물에 식품이 익을 때까지 가열하는 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이 끓어 넘치거나 음식이 타지 않도록 불 조절을 함 · 뜨거운 국이나 물이 담겨 있는 냄비를 만질 때에는 마른 행주나 장갑을 이용
데치기	끓는 물에서 단시간 삶는 조리법	
찌기	찜통을 이용하여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가지고 있는 잠열로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 기구의 뚜껑을 열 때 가열된 수증기에 데지 않도록 주의
튀김	밀가루, 계란과 같은 튀김 옷을 입혀 고온의 기름에 넣어 익히는 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이 튀지 않도록 프라이팬을 충분히 달군 뒤 사용 · 고온인 상태의 기름이 지속적으로 가열 될 경우 불이 붙을 수 있으므로 불 조절에 주의 · 기름에 불이 붙을 경우 먼저 가스레인지의 스위치를 내리고, 배추 등의 잎이 넓은 채소를 넣어 불을 끄(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지 말 것)
볶음	뜨겁게 달군 냄비의 열과 소량의 기름의 열로써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냄비에 물기가 있으면 튀 염려가 있으므로 물기를 제거 · 프라이팬은 가장자리가 열전도율이 낮은 재질로 처리한 것을 사용
구이	철판이나 석쇠 등에 식품을 얹어 복사열이나 전도열을 이용하는 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에 달궈진 철판이나 석쇠에 데지 않도록 주의
부침	밀가루 반죽으로 얇게 부침 옷을 입혀 소량의 기름의 열로 식품을 가열하는 조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의 기름을 넣어 기름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주의



2) 여행 시 안전관리

가) 일반적인 여행 안전점검

① 장소 선정 시

- 거리, 소요시간, 수용인원, 경제성(활동경비 비교)
- 활동시설의 안전성 및 숙박, 식당 등의 위생상태 점검

② 사전현장 답사 시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지 및 경유지 위험 지역을 확인
-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을 확인
- 현장교육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위험요소를 확인

③ 차량 계약 시

- 차량계약 시 종합보험 가입 상황 확인
- 유학생 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번호와 배차된 차량이 일치하는 지 확인
-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생산년도가 최근인 차량으로 계약
- 재생타이어 부착 여부 확인(현행법상 대형버스 뒷바퀴에는 재생타이어 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음)
- 차량 계약 시 안전에 관한 조건 명시 및 이행
- 차량연식, 안전벨트 정상 작동상태 등 차량 안전검사부를 확인
- 버스 운송업체에 운전자 안전의식 제고 강화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치료 및 보상 등 처리방안 명시
-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도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
- 차량마다 현장교육차량 번호 표지 부착
- 시설의 자가 차량 이용 시 차량에 아동 안전장비 구비 및 안전운행

④ 유학생 안전 지도 사항

- 각종 체험활동 운영 중 안전사고 위험성이 예상되는 시설물이나 프로그램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 시행 및 구급약품 준비
- 유원지 시설과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지도 철저
-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비상대피방법 등 사전 안전교육 실시
- 체험학습 장소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킴

- 아동 대상 성교육, 음주, 흡연, 폭력, 금품갈취 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

⑤ 유학생 수송 시 안전관리

- 배차된 차량이 운전자가 적격심사를 받은 운전자인지 확인(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최소 출발 3일 이전에 확인)
- 해당 시설이 속한 경찰서에 운전자 음주측정 실시 요청(최소 1주일 전)
- 여러 대가 출발할 경우 대열운행을 금지하고 동시에 출발하지 않도록 일정 간격을 두고 출발
- 차량별 안전책임 담당교사 임명 및 지도 감독
- 안전벨트 정상 작동 상태 확인
- 차량 탑승 인솔교사는 승차자 전원이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도하며 착용을 확인한 후 차량이 출발함
- 차내에서 춤을 추거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 않도록 지도
- 차창 밖으로 손, 얼굴을 내밀거나 휴지, 음료수병과 같은 물체를 던지지 않도록 지도
- 운전기사 음주 및 졸음운전 방지
-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을 취함
- 다수 차량 이동 시 유관기관에 안전호송(에스코트) 요청
- 차량 하차한 후 활동 전, 활동 후 승차하여 출발 전에 반드시 인원 점검을 실시한 후 인솔책임자의 승인 후에 출발
- 비상 상비약 및 구급약품 준비(내용물과 약품사용 방법을 전면에 부착)
- 멀미하는 학생을 대비하여 위생 봉투를 충분히 준비(멀미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 날 수 있음)

⑥ 현장 지도

- 농촌유학 운영자는 지도교사가 현장에서 지도할 수 있도록 총괄 책임자 지정
- 현장 총괄책임자는 인솔 및 지도교사와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인솔교사는 매 이동 전/후 인원파악 및 안전이동 확인
- 인솔교사는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운



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언을 하고, 차량 탑승 시 학생들의 안전띠 착용 지도

- 담당 유학생들의 동태를 파악하여 유학생관리 및 유학생보호를 철저히 함
- 체험학습지에서 인솔교사(지도교사)의 음주·도박 행위 금지

⑦ 안전사고 발생 시

- 인솔책임자 및 지도교사는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서에 연락하여 구호 요청
- 학부모에게 신속하게 연락하고 여행 총괄 안전책임자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고 경위서 작성
- 보고·연락체계 및 비상연락망에 따라 사고발생 상황과 수습방안을 보고 (안전사고관리·보고체계(p.4) 및 비상연락망(p.6) 참고)
 -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여행지에서 활용 가능한 비상연락망(현지 유관 기관 연락처 등) 추가 작성·숙지

⑧ 보험

- 유학생 및 교사의 여행자 보험을 가입
- 출발 전 보험회사의 연락처 및 보험증서를 반드시 챙김

나) 도보 여행 안전

① 여행 계획 시

- ㉠ 시기와 코스
 - 시기와 계절, 여행코스가 아동들에게 적절한지 점검
 - 여름과 겨울은 도보여행을 되도록 자제
- ㉡ 사전답사
 - 사전 답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긴 구간이라면 2회 정도 답사를 실시
 - 사전 답사 시에는 하루 걸을 수 있는 양, 야영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 용변을 볼 수 있는 곳의 위치, 갈림길, 고개 정상, 숙소, 식사 장소를 고려하면서 답사를 진행
- ㉢ 여행 전 점검사항
 - 여행 전 걷기 연습을 실시. 출발 전 적어도 3~4회 정도 긴 거리를 걷

는 연습을 해야 하며 그 중 한 번쯤은 근교의 산에 가보는 것이 좋음

- 출발 전 걷는 자세, 신발, 옷, 배낭 등을 자신과 맞는지 점검

② 여행 시 의류 점검

㉠ 신발

- 신발은 운동화나 가벼운 등산화가 좋으며, 가볍고 유연한 것을 착용
- 운동화는 발뒤꿈치에 쿠션이 충분하고, 발가락 부위가 잘 접힐 수 있으며, 방수 및 발한이 잘 되는 것이 좋음
- 신발을 고를 때는 저녁에 발이 부은 상태에서 도보 때 신을 양말을 신고 10-15m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며, 폭이 조금 넉넉한 정도가 좋음(오래 걸으면 발이 많이 붓는데 이때 신발이 조이면 통증이 더 심해짐)
- 발목 아래까지 보호해줄 수 있는 형태의 신발이 좋음(발을 헛디딜 경우 부상을 어느 정도는 방지함)
- 물집 예방을 위해 새 신발은 신은 후 30-50km 정도 걸어서 발에 맞춰 두어야 함
- 스니커즈나 조강화 종류는 쉽게 낡아지고, 쿠션이 없어 발 및 무릎관절에 통증을 가져올 수 있음

㉡ 짐

- 짐은 무조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음
- 배낭은 35리터 이상 50리터 이하 사이즈로 준비(걸을 때 배낭이 꼭 차 있으면 움직임이 불편함)
- 짐이 많지 않더라도 35리터 이상 사이즈는 준비, 캐리어는 추천하지 않음
- 장시간 배낭을 메야 하므로 어깨끈과 등 부위에 쿠션이 있는 것이 좋음
- 짐을 쌀 때에는 가벼운 물건을 배낭 아래쪽에 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 놓아야 걷기에 편함
- 짐은 10kg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함

㉢ 옷

- 땀을 잘 배출하고, 물을 잘 흡수하지 않는 소재가 좋음
 - 면 의류는 피하고, 적어도 내의와 티셔츠, 양말 정도는 면소재가 아닌 것으로 준비



- 겉옷 재질로는 고어텍스,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가 좋음
- 울 소재 양말은 충격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집 예방이나 티는 등
에 보조 효과가 있음(물집예방에 가장 좋은 양말은 발가락 양말)

③ 여행 출발 전 안전점검

- ㉠ 길의 안전성 점검
 - 차량 통행량, 갓길 및 한적한 우회도로 유무를 확인
 - 갓길이 없고 굴곡이 심한 길에서의 안전 이동로 확보
- ㉡ 지도사용법 숙지
 - 75,000대1 정도의 지도책을 구입해서 가는 여정을 확인
 - 참가자 전원이 지도를 읽고 활용하는 법을 숙지함
 - 지도의 사본과 비상연락망을 반드시 소지하도록 함
 - 길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하는 법을 반드시 교육
- ㉢ 참가자 건강상태 확인
 - 걷는 데 장애가 되는 질병이나 체력조건, 신체 상태는 반드시 체크
 - 햇빛 알레르기부터 시작해서 인대 파열, 평발, 천식, 간질 등 걷기 힘
들거나 야외에서 응급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질병을 사전에 파악
 - 교사가 판단하기 힘들 때에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출발하도록 함

④ 여행 과정 중 안전점검

- 도보는 진행방향에서 왼쪽 갓길에 붙어서 다가오는 차를 마주보면서 걷
도록 지도
- 차도에서는 갓길에서 걷되, 차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함
- 비가 많이 오거나 도보하기에 날씨가 좋지 않으면 잠시 중단하도록 함
- 야간도보의 경우 함께 움직이는 것인 안점하며, 안전봉과 랜턴 등을 나
누어 들고 책임자의 인솔 하에 함께 걷도록 함

다) 야영 및 수련활동 안전

① 사전답사 및 야영·수련지 안전점검

-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지의 위험요소를 점검
- 이동 경로상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파악

- 교육현장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안전을 점검
 - 민간수련시설장 이용 시 제반 시설물 및 수련용품에 대해 사전에 안전 점검을 요청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 및 보수 요구
 - 사고를 대비하여 수련시설 안전 장비(소화기, 무전기, 구급약 등) 확인
 - 식수 수질검사 의뢰 확인 및 점검
 - 유관기관의 예보·경보발령(산불·황사·안개·폭우, 폭설 등)에 적절히 대처
- ② 사전 예방 교육 및 안전사고 대처
- 농촌유학시설에서의 사전 안전 지도 실시
 - 모든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련활동 책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한 비상연락대책 수립 및 응급환자 발생 시의 행동요령을 숙지
 - 야영, 수련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전 지도 실시
 - 입소생활 안내 교육 시 교육생이 지켜야 할 사항, 상벌 등을 안내
 - 질서 있고 정숙한 실내생활 지도와 위험한 행동하지 않기 지도
 - 역할산행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사항 교육
 -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로 안내 및 소화기 등 사용방법 교육
 - 산불예방 교육 실시

라. 시설 안전관리

1) 생활 시설

가) 시설물에 대한 기본 안전점검

- ① 시설물 사전 안전점검 사항
-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카드 작성
 - 건물 전체의 부동침하(기초지반 침하에 따른 구조물의 불균등 침하) 현상
 - 기둥·보 등 주요 구조체의 균열, 누수, 철근 노출 여부
 - 외벽 및 단장의 전도(무너짐) 위험 부위 여부
 - 외벽 벽돌줄눈의 경사방향의 균열 여부(침하여부)
 - 옥상의 물탱크 등의 과적 여부 및 옥상과 파라펫 및 난간의 균열 발생 여부



- 옥상 드레인(배수구) 주위 막힘 및 방수면의 파손 여부
 - 경량철골조 지붕구조의 변위·변형 상태
 - 사면의 급격한 지하수 용출 여부
 - 배수로 덮개의 고정 확인(고정의 견고 및 탈락 여부)
 - 교통시설의 노후 및 파손 여부
 - 아동 이용 시설물은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사용금지
- ② 시설물 이상 발생 시 대처 요령
- 건물 주변에 지반이 침하된 경우
 - 침하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물 기초부분까지 침하되었을 때는 전문가에게 진단 요청
 - 기둥·보 등 주요 구조부에 균열이 있는 경우
 - 균열발생 부분이 미장면인지 구조체인지 확인하고, 구조체의 균열이 3mm 이상이면 전문가에게 점검 요청
 - 외벽의 전도 위험 및 균열·침하, 물탱크의 과적, 옥상 배수구 주위 막힘 및 방수면의 파손, 기타 누수 및 파손 등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신속·적절하게 조치

나) 실내 생활 시설 안전

구 분	주요내용
바닥	.평평하지 않거나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하며 미끄럽지 않아야 함 .재료분리대, 시스템박스 등은 주변바닥과 동일한 높이로 설치하여야하며, 그 높이차이가 가급적 5mm를 넘지 않도록 함 .
벽	.노출되는 벽 모서리나 기둥 모서리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하며, 벽면에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함 - 예) 시계나 달력을 설치할 때 설치 못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처리
출입문	.문이 부드럽게 열고 닫혀야 하며, 문을 열고 닫을 때 손이 끼거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어체크, 손 보호대 등) 설치 . 출입문이 유리문일 경우에는 12mm이상의 강화유리를 사용
창문	.안쪽에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유리는 강도가 충분한 것(3mm 이상)을 사용

	.2층 이상에 있는 창문에는 창문 외부에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을 설치 - 추락방지시설은 소화활동 및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사람(성인)이 기구 등에 의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지 않고도 신속히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복도	.바닥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야 하며, 피난 시 유도할 수 있는 피난유도표시를 설치
계단	.계단의 표면은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계단 앞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안전하게 마감 .계단의 높이, 좌우 너비, 앞뒤 폭의 권장 사항 - 높이는 15-16cm 이하, 너비는 150cm 이상, 폭은 26cm 이상 .한 쪽이 개방되어 있는 계단의 경우에는 반드시 난간을 설치
냉난방	.냉방을 위한 선풍기는 벽면에 설치하거나, 지면에 놓고 사용할 때는 안전망을 씌워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방지 .난방을 위한 전열기구(난로, 전기장판 등) 사용은 자제하며,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안전 수칙을 숙지한 후 사용
소방	.소방법 기준에 맞는 방염제품으로 내부를 마감 .화재 시 피난을 위한 창문의 크기 및 구조가 적합해야 함 .소화기, 화재경보기, 가스누출경보기 및 차단기 등 소방 안전장비 구비, 대피도 및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등) 부착
환기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함

다) 놀이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설치 공간	.놀이시설 상호 간 360cm 이상을 확보 .놀이시설 주변에 위험시설(경사로, 가스시설 등)이 없어야 하며, 평평한 곳에 설치 .추락 가능성이 있는 놀이시설물 아래와 주변의 공간(안전지대)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이 걸려 넘어지거나 부딪칠 수 있는 방해물이 없도록 함



표면	.놀이시설의 모서리는 둥글게, 이음새는 매끄럽게 처리하며, 볼트와 너트가 돌출되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돌출되지 않도록 함
철봉대 평행봉	.정적 크기, 규격 등을 구분하여 설치하며 연결 부분이 단단하게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고, 충격흡수 조치
녹목 구름사 다리 정글짐	.정글짐의 폭과 높이는 학생들이 무리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 체위 조사를 참고하여 설정하고, 주변에 매트리스를 필히 구비 .지주 부분을 목재로 할 경우 방충처리
골대	.축구, 핸드볼 골대 구조물 등은 색상이 있는 그물로 설치, 충격완화용 고무, 스폰지 등으로 안전 보호대를 설치 .움직이지 않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녹 발생 방지를 위해 방식처리 .그물을 걸기 위한 고리는 뒷부분에 부착하되 학생들이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마감처리
그네	.그네가 움직이는 폭 안에 다른 놀이 시설 설치 금지 .그네가 안전하게 기둥에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연결된 부분이 녹슬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그네 줄의 재질은 섬유로 된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체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체인 구멍이 8mm 이하로 하여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함 .그네 줄과 상단 지지대를 연결하는 S자형 후크는 완전히 아물리게 조여져야 하며, 후크의 틈사이가 10mm 이하면 조여진 것으로 판단 .그네가 정지된 상태에서 지면 간격은 최소한 350mm 정도이어야 하며, 타이어형 좌석일 경우 지면 간격은 최소한 400mm 이상 확보 .좌석의 모서리는 부드럽게 마감 처리하거나 둥글게 처리
시소	.바닥에 닿는 부분에 충격완화장치 설치하되, 이용 시 다리가 끼지 않도록 바닥과 어느 정도 떨어지게 설치
미끄럼틀	.활주판의 경사각은 60°를 넘어서는 안 되고, 평균 40°를 넘지 않도록 함 (일자형 미끄럼틀인 경우 30° 미만이어야 함) .시작 구역과 활주판 구역 사이의 이동부위를 제외한 미끄럼틀의 경사각의 변화가 15° 이상 넘지 않도록 함 .미끄럼 부분 길이가 1,500mm를 넘는 비터널식 미끄럼대 활주판 폭은 700mm 이하 또는 950mm 이상 유지 .미끄럼대에서 내려오는 속도는 마지막 도착하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속도가 제한되어야 함(특히 나선형의 경우 여러 가지 곡선에 의해 속도가 증가하여 옆으로 튕겨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p>.모든 미끄럼틀에는 미끄럼대 꼭대기에 선 자세에서 앉은 자세로 바꾸기에 충분한 플랫폼이 있어야 하며 최소길이는 56cm 이상 확보</p> <p>.플랫폼은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호용 난간이나 보호벽이 플랫폼을 둘러싸고 있도록 설치</p>
농구대	<p>.부착판 및 와셔의 크기는 150×180mm로 하고 지름 10mm의 구멍을 설치</p> <p>.링의 밑면에는 12개의 고리를 동일한 간격으로 부착</p> <p>.용접 부위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매끄럽게 다듬질을 해야 하며, 기둥 부분은 학생들이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마감처리</p>

라) 야외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교통시설	<p>.통학로의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은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있지 않게 관리</p> <p>.어린이보호구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표지판은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p> <p>.차량이 통행하는 교문 및 도로에는 보행로와 차도를 구분</p>
진입로	<p>.소방차, 구급차 등의 진입 공간 확보(차로의 최소폭은 3.25m로 권장)</p>
옹벽, 석축 및 담장	<p>.옹벽, 석축 및 담장 등에 균열이 없어야 하고 지하수 배수를 위해 설치된 배수공이 막히면 안 됨</p> <p>.옹벽 등의 보강재·보호시설의 과도한 변형이 없어야 함</p>
사면	<p>.손상, 결함, 풍화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급격한 지하수 용출이 없어야 함</p> <p>.경사가 급하거나 보호시설이 없어 토사가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면 안됨</p>
배수로	<p>.배수로 덮개의 고정이 견고하고 탈락되지 않아야 함</p> <p>.보행자의 통행로 상에 있는 배수로는 발, 구두굽 등이 쉽게 빠지지 않도록 설치</p>
건축물	<p>.모든 건축물의 내외벽에 균열이 없어야 하며, 옥상 부분에 돌출된 파라펫(parapet) 및 난간의 균열 및 마감재가 떨어지지 않아야 함</p> <p>.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발코니 외부 난간높이는 120cm 이상(건축법 시행령), 계단 난간 높이는 85cm(피난규정), 권장 난간살 간격은 10cm이하(주택건설 기준) 유지</p>



마) 농가 시설 안전

주택유형	주요내용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로 주택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말 것 .목조 건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농가는 소화, 방재 시설 완비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기 비치, 각 공간마다 단독경보용화재경보기 설치(필수), 가스누설 및 전기누전 차단기 설치, 방염벽지 등 방염 처리된 자재 사용(권장) .마당의 자갈, 못, 농기구 등을 정비하여 위험요소 제거 .실내욕실의 미끄럼방지매트와 거실의 출입구 바닥에 미끄럼방지테이프 .보조디딤판 설치(마당-마루-안방문턱 등의 높이 차이 보완) 부착 .건물 내.외에 야간조명 설치
한옥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궁이 주변에는 소화기 등 소화장비를 비치하고, 미끄럼 방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골(농가)부모의 지도 없이 함부로 아궁이 주변에 접근하거나, 불을 떼지 않도록 지도 .재래식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설치 .한옥의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으로 교체(권장)
슬라브형 조립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립식형 건물에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 사용 금지

2) 위생·급식 시설

가) 위생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세면실 샤워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면기는 견고한 재질로 설치(도자기, 유리 재질보다 스텐레스, 강화 플라스틱 등) .세면기 설치 바닥(복도)에 별도의 배수로를 확보하고 배관은 동파방지용 코일 설치 .바닥은 미끄럼방지를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을 갖추 .냉·온수 공급을 위한 시설이 있어야 하며 온수 사용 시 온도조절 장치 설치 .전기 콘센트 보호덮개 등 감전 예방을 위한 설비 설치

화장실	<p>.화장실 안에는 손 씻는 시설과 소독시설, 환기시설 등을 갖추</p> <p>.화장실 바닥은 미끄럽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며 배수가 잘 되는 구조로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p> <p>.화장실 내 전기감전 사고 방지를 위해 콘센트에 보호덮개 설치</p> <p>.재래식 화장실의 경우에는 조리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p> <p>.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청소하며 위생적으로 관리</p>
세탁실 건조실	<p>.세탁물의 청결과 위생을 위해 별도의 세탁실·건조실 설치</p>
상하수도 급수설비	<p>.물탱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과 연 2회 이상 청소 실시</p> <p>.이물질 투입방지 및 안전급수를 위해 뚜껑을 덮고 잠금장치를 하며, '관계자 외 접근금지'의 문구를 표시</p> <p>.지하수 등을 통해 공급하는 먹는 물에 대하여는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수질 검사를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실시</p> <p>.급탕의 경우 학생 및 교사의 화상 사고를 고려하여 용도별로 적정한 급탕 온도를 유지</p>
폐기물	<p>.쓰레기는 그 종류 및 성상에 따라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용기 설치</p> <p>.음식물 쓰레기는 방수재료로 된 밀폐용기에 버리며, 일반쓰레기도 밀폐할 수 있는 뚜껑이 있는 것이 바람직</p>

나) 급식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조리실	<p>.오염원으로부터 차단된 위생적이며 쾌적한 환경에 독립적으로 위치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실과 급식실이 한 공간에 위치할 경우 공간구획을 하고, 급식실 출입 시 조리하는 공간에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화장실, 창고 등 부대시설은 작업장과 분리하여 설치 - 탈피, 세척 등 작업이 이루어지는 전처리 구역과 조리구역은 분리 <p>.온도 및 습도관리를 위해 냉난방 시설 설치</p> <p>.조리장 내에 환기시설 및 손 씻는 시설 설치</p> <p>.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p>



	<p>절한 시설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리 기구는 화재, 폭발 등의 위험성이 없는 제품을 선정 .식자재 보관을 위한 냉장고 혹은 냉동고는 충분한 용량과 온도를 유지(냉장고 5°C이하, 냉동고 -18°C 이하) .바닥은 내구성, 내수성이 있으면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이어야 하며, 바닥의 적당한 위치에 배수구 및 덮개를 설치
식품 보관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용량의 냉장·냉동·상온 창고를 구비하여 적정 온도를 유지 .육류와 야채, 가공식품의 분리 보관이 가능한 공간 구비 .바닥재질은 물청소가 가능한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어야 함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시설 설치 .환기 시설 설치
급식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환기시설 설치 .음식을 나르거나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3) 소방·전기·난방·가스 시설

가) 소방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안전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소방 시설·장비 자체점검(자체 기록 보관 : 2년) .전문기관(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 의한 종합정밀 점검 실시(연 1회 이상)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비상경보설비의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감지기는 벽이나 보(洑)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실내에는 그 용도(교실·합숙소·급식실 등)에 적합한 감지기를 설치
소화 기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화기는 교실에 한 군데 이상, 복도 및 계단에는 보행거리 20m 마다 1개 이상을 설치

옥내 소화전설비 등	<p>.소화기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 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p> <p>.급식실·보일러실 등 발화위험성이 높은 실내에서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도록 함</p> <p>.옥내소화전설비는 각 부분으로부터 방수구까지의 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호스는 각 부분을 유효하게 방수할 수 있도록 설치</p>		
피난설비	<p>.비상대피유도등(비상구 표지판) 전원배선을 전용으로 하고, 비상전원(축전지)은 유도등을 최소 20분간 동작시킬 수 있어야 함</p> <p>.비상구 유도등을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30m 거리에서 문자와 색채를 쉽게 알아볼 수 있어야 함</p> <p>.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며, 아래에서 0.5m 떨어진 지점에서 1럭스(lux)이상으로 하여야 함</p> <p>.복도, 계단, 통로등에 비상용 조명장치(예비전원이 필요)를 설치</p> <p>.층별 피난설비</p>		
	<table border="1"> <tr> <td>지하층</td> <td>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td> </tr> </table>	지하층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지하층	피난사다리, 피난용 트랩	
	<table border="1"> <tr> <td>2,3층</td> <td>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td> </tr> </table>	2,3층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2,3층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table border="1"> <tr> <td>4,5층</td> <td>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td> </tr> </table>	4,5층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4,5층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간이완강기,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방염처리	<p>.방염 실내장식물 대상 : (목재로 된)벽체·바닥·천정, 커튼 및 블라인드, 칸막이(자바라 등), 흡음재, 방음재 등</p> <p>.설치 대상물(시설물)을 방염처리업 등록된 업체에서 방염처리하고 승인필증을 시설물에 부착</p>		

나) 전기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분전반	.기판에 과전류차단기·개폐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붙여 보호판 등에 의하여 조작하기에 안전한 구조로 설치
전기배선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벗겨진 것을 사용하지 않음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 전기기계 기구 단자와의 접속은 접속이 완전하여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함



조명 설비	<p>.소켓은 규격에 맞고 진동·충격 등에 의해 탈락·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함</p> <p>.옥외에 시설하는 전구는 빗방울로 인하여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갓이나 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등 기구 내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함</p> <p>.화장실이나 식당 등 습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수형으로 함</p>
전열 설비 (콘센트)	<p>.바닥에 콘센트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구의 배치, 예상 통로 등을 고려하며, 물기가 많은 장소에 설치하지 않음</p> <p>.한 개의 전용회로에 연결되는 콘센트는 10개 이하로 유지</p> <p>.전기 용량이 30~50A 이상인 기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센트는 전용회로로 구성</p>

다) 가스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가스 저장 시설	<p>.용기 보관실은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용기 보관실 주위에서는 화기취급을 금지함</p> <p>.저장용기는 차양, 부식방지, 전도방지 조치</p> <p>.경계표지는 출입구 등 보기 쉬운 곳에 설치(예 : LPG저장소, 화기엄금 등)</p> <p>.용기 보관실 바닥은 지면보다 5~10cm 높게 하여 빗물 등이 고이지 않도록 함</p>
배관	<p>.건축물 내의 배관은 단독 피트 내에 시공하거나 노출하여 시공</p> <p>.건축물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 조치</p> <p>.배관용 호스와 중간밸브 및 연소기와의 접속부분은 호스밴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p>
가스 기기	<p>.가스온수기나 가스보일러는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환풍기나 환기구를 설치</p> <p>.배기통의 재료는 불연성 재료로 하고, 배기통이 가연성 물질로 된 벽 또는 천장 등을 통과할 때에는 금속 외의 불연성 재료로 단열 조치</p>

라) 난방 시설 안전

구분	주요내용
난방 설비	.난방기구의 표면온도가 60°C 이상인 경우에 학생들의 직접적인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 설치
화목 보일러	.화목보일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바닥 또는 금속 외의 불연 재료로 된 바닥 위에 설치함 .보일러 설치장소를 지나는 전기배선은 매설하거나 배선관을 사용하여 피복 .연통은 불연 재료로 견고하게 고정하고 화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없도록 하고 연통의 연결부에는 청소구를 설치 .연통은 보일러 몸통보다 2m 이상 높게 연장하여 설치하고 연통의 끝은 천장과 벽면, 처마로부터 0.6m 이상 벗어나도록 함 .연통이 관통하는 벽면·지붕 등이 가연물일 경우는 금속외의 불연 재료로 0.1m이상 피복

마. 지자체 점검 및 관리

1) 지자체의 점검 및 관리 사항

- 농촌유학시설의 인명부 작성 및 비치(농촌유학시설 및 시·군 담당부서 보관)
 - 시·군이 기 보유한 자료와 실제 유학시설의 교사 및 학생 현황 일치 여부
- 농촌유학시설이 자가 점검표(부록 Ⅱ)를 갖추고, 점검한 기록
 - 자가 점검표(월 1회 이상) 및 분야별 주간 점검표(매주) 비치 및 기록 여부
- 자가 점검표의 점검 내용과 실제 시설 현황과의 일치 여부
 - 시설이 기재한 각 항목의 점검내용이 실제 시설의 현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체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먹는 물 관리법 등 타 법령·규정에 의해 지자체가 점검·관리하여야 하는 사항
- 기타 지자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점검시기 및 점검 방법

- (점검시기) 시·군은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필수) 점검을 실시하여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지자체 및 농촌유학시설의 여건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 점검(권장)
- (점검방법) 농식품부는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농촌유학 추진계획에 포함),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행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계획 수립(농식품부 보고), 시·군은 시·도의 점검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후 보고
 - 상·하반기 정기점검시 시·도는 시·군과 합동하여 점검(권장)
 - 필요 시 농식품부는 농촌유학시설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현장점검 실시

3) 점검 후 조치

- 시·도는 시·군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후속조치 상황에 대해 농식품부 보고
 - 시·군에 후속조치 사항 통보(시군의 점검결과 보고 후 일주일 이내), 시군의 후속조치 상황 점검 및 농식품부 보고(시군의 점검결과 보고 후 30일 이내)



V.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1. 농촌유학의 제도적 근거 마련

가.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시사점

전술한 바와 같이 농촌유학은 지속적인 확산 경로에 있으며 그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채우고 유지하는 일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 산촌유학의 사례를 보아도 질적 보장과 제도적 뒷받침 없이 부수적 효과에만 초점을 맞춘 채 이루어진 확산은 빠른 속도로 거품이 꺼진다. 더구나 정부(농식품부)의 지원도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잘 갖추었다기보다는 당장의 현실적 필요에 기반을 두어 이루어짐으로써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농촌유학의 육성과 질적 제고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유사사례인 지역아동센터나 대안교육, 공동육아, 청소년 활동인증제 등을 분석해 보아도 그 필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제도적 근거마련에 대한 필요성과 시사점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치 사회 문화적 필요성에 대한 응답

제도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은 우선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 IMF 구제금융 시기 도시빈곤층의 증가와 여성의 빈곤화, 이로 인한 아동 돌봄의 결핍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런 요구에 따라 저소득층 지역의 소규모 공부방들이 확산되면서 급식지원과 인력지원 등이 시작되었고, 이에 공부방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연합하면서 좀 더 본격적인 법제화의 요청이 시작되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 역시 체험교육, 인성교육, 자기주도성, 창의교육의 시대적 강조와 함께 주5일제의 도입과 학교 밖 활동의 증가라는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 더구나 청소년 유해환경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다. 대안교육도 물론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비인간적인 교육현실을 개혁하고, 청소년 자살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민간의 시도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던 사회적 조건이 있었다. 공동육

아에서도 핵가족의 고립성을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한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인한 육아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유학 역시 도시의 왜곡된 교육현실과 도시화로 인한 농촌공동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 비용이나 홍보비용과 같은 기초비용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고 이에 본격적인 법제화의 요청이 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존재한다.

2) 신뢰성의 요구

농촌유학을 비롯해 함께 살펴본 유사사례들이 모두 유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과 교육 서비스라고 볼 때 이런 시설을 찾는 부모들의 가장 근원적인 불안은 신뢰성의 문제이다. 아동보육·교육시설에서 종종 터져 나오는 방치 및 학대, 관리소홀, 비교육적 프로그램 등으로 촉발되는 사건·사고들은 ‘장기 기숙’의 형태로 자녀를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농촌유학에 대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기관들 중에 옥석을 가려 자녀를 맡겨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공적 자금의 투입이나 평가인증제, 인허가제 등을 갖춘 경우 기본적인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일련의 안전사고들로 인해 위기관리 대응체제 구축과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부모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된다.

3)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농촌유학과 그 유사 사례들은 모두 정치 사회 문화적 요구 속에서 민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요청에 대한 응답이라는 기본 속성상 아이들의 돌봄과 교육서비스는 사회적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본 전제로 한다. 이를 염두에 둘 때 사회적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일은 시대적 요청이다. 지역아동센터를 비롯해 부모협동보육시설, 대안교육현장 등도 정부보조금을 받는 폭과 크기가 넓어지고 커지면서 단순한 개인사업의 수준을 뛰어넘어 공적 영역에서 일정 정도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4) 공적 지원의 필요성

공공성과 대중성의 목표는 민간시설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공적 자금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거나 보조하면서 앞서 이야기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공적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도 밖에 위치하고 있던 공동육아가 부모협동보육시설이라는 법제화를 통해 제도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데는 중산층 부모를 넘어 더 많은 계층에 공동육아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제도화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수와이용 아동 수는 각각 5배로 늘었다. 대안교육 역시 인가 대안학교를 기준으로 볼 때 1997년 제도도입의 첫 5개교에서 현재의 60여개교로 10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받은 숫자도 2006년의 79건에서 2013년의 783건으로 거의 10배 가량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농촌유학에 대한 공적 지원이 성립되면 새로운 단계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5) 질적 성장의 필요성

일본의 산촌유학 사례가 보여주듯 선부른 공적지원과 양적 증가는 성장과 쇠락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질적 성장의 동반이다. 따라서 공적 지원 역시 초기의 양적 확대정책을 넘어서 질적 성장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 운영을 통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안정성 제공, 청소년 활동의 안정적 기록 및 유지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이뤄냈다. 공동육아의 경우 부모협동보육시설이 요구하는 공적 제도 기준 외에도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협회/운동단체를 통해 모니터링과 설립/운영에 관한 컨설팅, 평가인증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농촌유학 역시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질적 성장을 담보할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고유성의 인정과 자율성의 보장

농촌유학을 비롯해서 함께 분석된 유사사례들은 민간에서 도전과 실천을 통해 자라난 풀뿌리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획일적인 기준으로는 그 고유성을 보장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개별 특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관료적으로 획일화된 제도적 기준은 자율성을 제약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대안교육의 제도적 정비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상당한 숫자의 대안교육 현장들이 여전히 비/미인가 상태로 존재한다. 이것은 실천가들에게 제도적 정비가 자신들의 실천을 돕기 보다는 제약하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제도정비 과정에서 고유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것에 문제가 있다. 대안교육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만들거나 공동육아의 사례처럼 제도와 고유성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기보다는 기존 학교의 제도적 틀에 맞추다보니 대안교육의 중요한 특성을 보장받을 수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풀뿌리 프로젝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상상력을 실천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 제도화라는 명목아래 고유성과 자율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화의 모색이 필요하다.

7) 전문성의 확보와 교사양성

내용성 담보와 질적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는 전문성이다. 농촌유학에 필요한 전문성은 무엇이고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는 앞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문제는 그 전문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길러지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는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농촌유학의 연수 프로그램이나 지역 혹은 중앙에서 시행되는 농촌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참가하는 것 이상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

대안교육의 경우 기존의 교사자격증 소유자를 대안교육 교사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성과 자율성 문제가 부딪히게 되었고, 이런 협소한 정책에 반발하는 현장들은 제도 밖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고집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 번째 제도 정비는 교사의 자격을 모두 풀어 자율적으로 채용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여전히 전문성의 문제는 남는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교사를 길러낼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비인가 대안교육



진영을 중심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보육교사들을 활용하여 방과 후 공부방을 담당시키려던 초기의 정부 의도는 유아보육의 전문성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의 전문성이 전혀 다른 것임을 강변하는 현장 목소리에 부딪히게 되었다. 결국 독자적인 아동지도법 제정을 통해 아동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즉, 지역아동센터에서 필요한 영역을 나누고 각 영역별로 필요한 기능과 자격증을 기반으로 하여 아동복지사를 채용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지도교사 분야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보육교사 1급, 교원자격증,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중등의 학습지도가 가능한 사람을 뽑는다.

기존의 자격을 유지한 대안교육교사나 외부의 자격을 활용하는 아동복지사와는 달리 공동육아는 탄력적 제도화를 선택했다. 여타의 어린이집이 공통으로 요구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기본으로 하되 협회 격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 제공하는 현장학교(교사교육)를 동시에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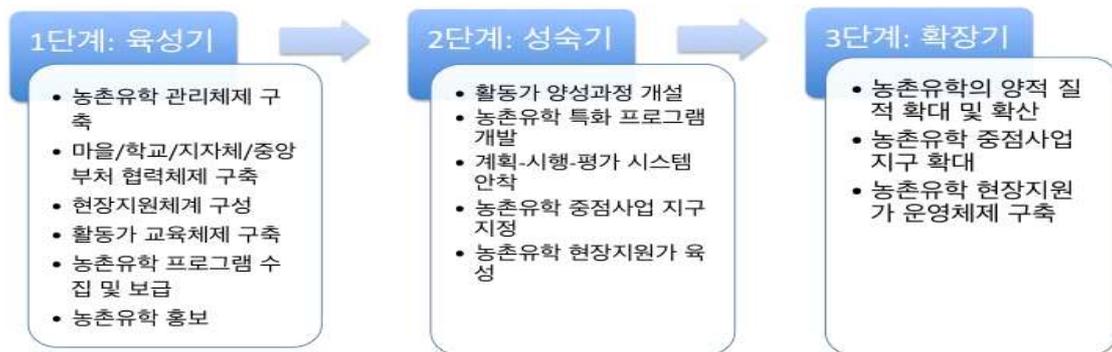
8) 허브기관의 필요성

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의 고유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양적확대와 질적 제고를 이루어내는 제도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이 복잡한 작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와 조망능력 그리고 여러 주체들을 조정해낼 조정능력을 필요로 한다. 유사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공적 제도의 마련과 함께 이를 담당하고 지원할 허브기관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지원단이,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원이 국책 기관 중심으로 지원을 펼치는 한편 공동육아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라는 협회 격 기관이 그 역할을 맡았다. 기관의 위상이 어떠하든 그 실질적인 역할은 운영과 관련된 기본 체제를 구성하고, 실질적 내용을 채움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도모했다. 신규 현장을 비롯하여 필요한 곳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또한 교사교육은 물론 연구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장기적인 요구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허브 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필수적인 요소일 것이라 판단된다.

나.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 과정

1) 장기적 로드맵의 마련

지금까지의 농촌유학 관련 지원 사업들이 그 양성에 목적을 두고 단기적 전략에 따라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의 농촌유학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로드맵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제안한다.



가) 육성기

첫 단계는 현재 확산되고 있는 농촌유학의 체제를 구축하고 내용을 잘 구성하는 단계다. 농촌유학과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고 이에 따라 농촌유학을 진행하는 현장들이 신고하도록 유도한 후 질적 제고를 돕는다. 이를 위해 마을과 지역학교와 실질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기초 및 광역 지자체와 교육청을 통해 지지와 협조를 구하는 방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중앙 단위에서는 허브기관을 설립하여 현장을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고 현장에서 일할 활동가를 교육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교육부처 간의 협력 체제 구성으로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농촌유학의 존재와 가치를 알리고 농촌유학 현장들에 대해 소개하는 홍보 전략을 구성하여 유학생 모집과 농촌유학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한다.



나) 성숙기

성숙기는 육성기를 통해 구성된 내적 역량을 확장하는 시기다. 농촌유학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현장과 연계하여 정기적으로 양성하고 공급하는 기회가 된다. 필요에 따라 가칭 농촌유학생활교사 민간/공적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등등의 기존 자격증들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인력을 길러내는 사업과 동시에 내용을 더 깊고 넓게 채우는 사업이 필요하다. 육성기에서의 교육프로그램 관련 사업이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버려서 다른 현장들에 확산 보급하는 일이 주가 된다면 성숙기에서의 프로그램 개발은 농촌유학 특화 프로그램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내는 개발 연구가 될 것이다. 또한 이렇게 나온 인적자원과 프로그램들이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계획-시행-평가-재기획’의 단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 필요가 있겠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 두 곳의 농촌유학 중점사업지구를 지정하여 모델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장 컨설팅과 활동가 교육을 담당하여 농촌유학의 확산에 나설 농촌유학 현장 지원가(컨설턴트)를 길러 낼 수 있는 체제를 구성하여 확장기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

다) 확장기

확장기는 성숙기를 통해 다져진 발전 체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따라서 각 지자체나 교육당국, 혹은 공사립 학교들과 협약을 맺고 농촌유학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성숙기에 선정된 소수의 농촌유학 중점사업지구를 확산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늘어난 현장들에 대한 지원은 성숙기에 육성된 현장 지원가들을 활용하여 진행하게 된다.

2) (가)농촌유학 중앙지원센터의 설립

이렇듯 유사사례들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촌유학에 필요한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자. 현재 민-관-학에서 운영되었거나 운영되고 있는 정책적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원기관	사업명
(사)농촌유학전국협의회	현장 지원 및 정책 협의
(사)생태산촌	1)산촌유학포럼
	2)마을공동체형 산촌유학 운영시범사업 지원
	3)다문화가족 산촌유학 지원 사업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농촌유학 활성화 워크샵
	2)농촌유학 현장지원사업
	3)마을희망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4)농촌유학 정책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
농어촌공사	1) 2012 현장지원사업 모니터링
	2)운영주체교육
	3)학부모교육
	4)활동가 양성과정
농촌경제연구원	1)현장시범운영 지원
	2)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측정
산림청	산촌유학 지원정책 개발 연구 용역
복음신대 대안교육연구소	농촌유학 연구
	농촌유학 모니터링
	농촌유학 컨설팅

표 74 농촌유학 관련 정책적 지원 현황

이 표에 따르면 농촌유학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의 구성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정적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 현장지원 및 컨설팅, 연구사업, 프로그램개발, 모니터링은 모두 갖춰져 있다. 다만 그 내용성과 구성의 유기성 및 체계, 그리고 협력관계가 부재한 채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앞서 지적한 허브 기관으로서 (가)농촌유학중앙지원센터의 구성과 역할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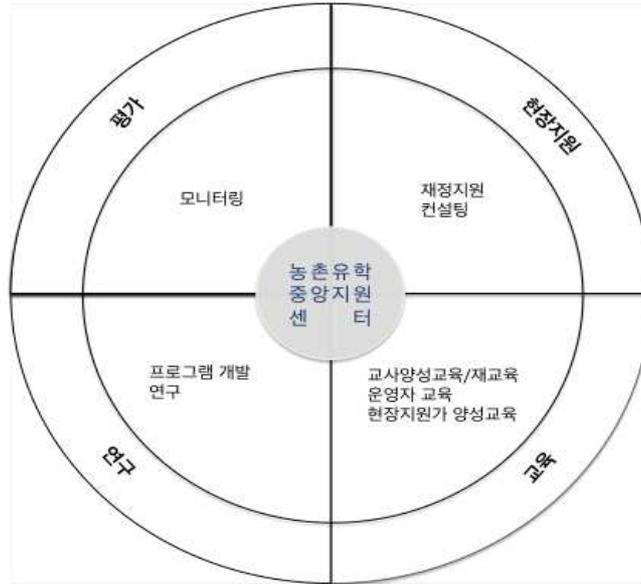


그림 6 (가)농촌유학중앙지원센터의 역할

또한 이를 위해 현재 역할을 담당하는 개별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都)-농(農)-민(民)-관(官)-학(학)의 협력체제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을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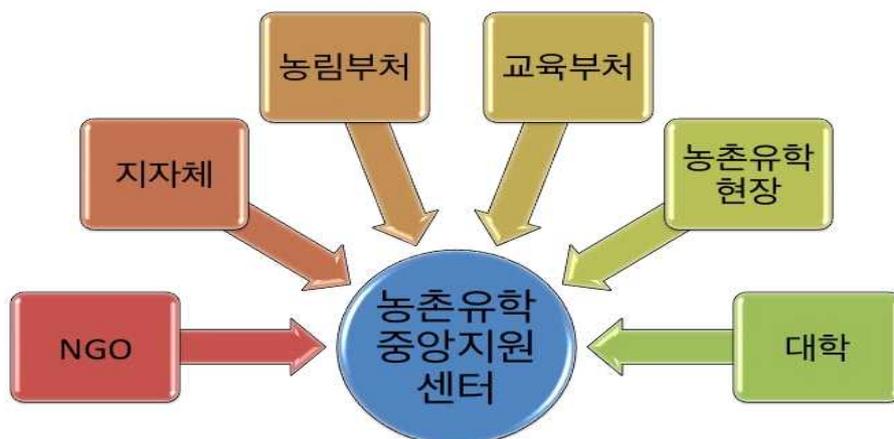


그림 7 농촌유학중앙지원센터의 협력체제

2. 타 사업·정책과의 연계 방안

현재 농촌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다음 표와 같다. 크게 나누면 교육부 사업들과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들로 나뉜다.

법령(해당 조문 제정일)	농어촌 교육 관련 조문 내용	소관 부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1976.01.16.)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의 의무교육 및 근무교사 지원 등 명시	교육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1969.12.04.)	▶농어촌 도서·벽지 근무교원의 가산 점 부여 명시	
교육공무원법 및 동법 시행령 (1977.12.31.)	▶농어촌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원의 특별채용 및 인사 교류 시 혜택 명시	
학교급식법 및 동법 시행령 (2007.01.20.)	▶농어촌 학생 및 도서·벽지 학교의 재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 사항 명시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2010.06.29.)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특례 및 공모교장 임용 가능 규정 제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02.01.26.)	▶농어촌의 교육 등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 및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근거 마련	농림축산 식품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2004.06.06.)	▶농어촌 학교의 교원, 학생, 시설 등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법령 마련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009.11.28.)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노력 필요 명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2011.03.29.)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명시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농촌유학에 있어 지역에서의 협력은 성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다. 그 중에서도 지역학교는 유학생들이 하루의 일상에 절반 정도



를 겪어야 하는 물리적 사회적 공간이다. 지역학교의 구성원인 교장이나 분교장, 그리고 교사들이 농촌유학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농촌유학의 질은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된다. 따라서 관 차원에서 제도적 근거마련과 관련한 1차적 과제는 농식품부와 교육부 사이의 협력관계 구축이 될 것이다. 중앙부처 차원이 어렵다면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 수준에서의 협약서 체결 정도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소한 농촌유학을 받아들이는 학교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농촌유학협력학교를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농촌유학을 공식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농촌유학협력학교에 농촌유학에 대한 이해와 의지가 깊은 공모제 교장이 부임할 수 있도록 지정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농촌의 소규모 학교에 부여되는 혜택들을 농촌유학협력학교와 연계시키는 다양한 조치가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자체 차원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교육감 혹은 지자체장과 협약을 맺어 학업 중단 위기학생이나 돌봄대상 학생들을 일부분 모집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 지역의 사회복지기관들이나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류학습 제도는 지나치게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없지만 협의를 통해 이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교류학습으로 인한 혼란이나 업무증가를 보완할만한 장치들을 확보하고 시기조절을 함으로써 도시 아이들이 농촌유학 맛보기를 부담 없이 제공하자는 것이다. 현재처럼 방학을 이용하여 맛보기 캠프를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농촌유학의 중요한 부분인 학교를 경험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적응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교류학습을 단기로 체험한 후에 장기 유학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3. 농촌유학의 모니터링 체제 구축 및 추진방안

모니터링이란 정책평가에서 프로그램이 처음의 설계대로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당초의 대상 집단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되는가를 평가하는 형성적 평가의 한 기법을 말한다. 즉 프로그램이 적절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설계대로 집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평가이다(이종수, 2009). 지금까지 농촌유학은 정책적으로 잘 구상된 프로젝트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싹튼 풀뿌리 실천이었기 때문에 에너지의 대부분은 이를 안착시키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집행과 성과에 대해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농촌유학 실천에 대한 평가는 오롯이 개별 현장들의 몫으로 맡겨져 있었다.

2011년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유학의 실효성을 양적으로 증명하고자 한 조사기관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모니터링은 신체적 요인, 정서적 요인, 인지적 요인, 행동적 요인의 네 가지 영역을 나누어 변화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농촌유학 시작 시점과 경험 이후를 검사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정서적 요인에서 농촌에 대한 태도, 인지적 요인에서 농촌에 대한 인식, 행동적 요인에서 학교적응과 교사와의 관계, 전반적 생활습관, 스스로하기, 타인 생각하기 정도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으나 나머지 영역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유학생들과 도시 학생들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농촌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환경 감수성과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 농촌인식과 발전가능성, 전반적 생활습관, 스스로하기, 예절 지키기, 타인 생각하기, 식생활습관의 측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을 뿐 큰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다. 일차적으로는 아동의 발달과 변화를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농촌유학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동기의 경험들이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나 변화를 바랄 수도 없고 바라서도 안 된다. 이는 삶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영향력일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이유로는 모니터링 자체가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써 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즉, 모니터링은 단순한 수치 비교만으로는 답을 수 없는 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담으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집행 및 활동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좀 더 효율적



인 집행전략을 수립하거나 정책내용을 수정·변경함으로써 책무성을 높이고자 하는 평가의 과정이다(주경필, 2007).³⁵⁾

물론 모니터링 역시 평가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모니터링은 결과만을 놓고 효과성을 따지는 평가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도구로써 모니터링은 컨설팅의 기능을 함께 담보하는 매우 실용성이 강조된 평가모델이다(주경필, 앞의 글). 따라서 일률적인 잣대로 실행지들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평가방식이 아님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측이나 받아들이는 현장 모두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98년 도입된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평가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요인들이 현장들로 하여금 불만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평가단의 사회복지사업 실천현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지적 일변도의 평가내용들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최흥기, 2009).³⁶⁾ 농촌유학에서도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농촌유학의 발전을 위한 관점 공유 및 전문성 재고가 모니터링 체제 구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유학의 모니터링은 실내외 공간의 구성과 안전,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행정 운영, 학생모집 및 교사채용, 재정운영과 평가, 소통과 연대의 6가지 영역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농촌유학에서 각각 물리적 환경, 내용, 운영, 인적자원, 평가, 협력의 영역에 대한 점검을 의미한다. 점검 방식은 1차적으로는 자가 점검으로 시작한다. 모니터링 기준표를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는 것이다. 기준표가 서술하고 있는 내용을 숙고하면서 1~5점 사이에 항목별로 체크하고 아래의 비고란에 그렇게 판단한 이유나 특별한 사항에 대하여 적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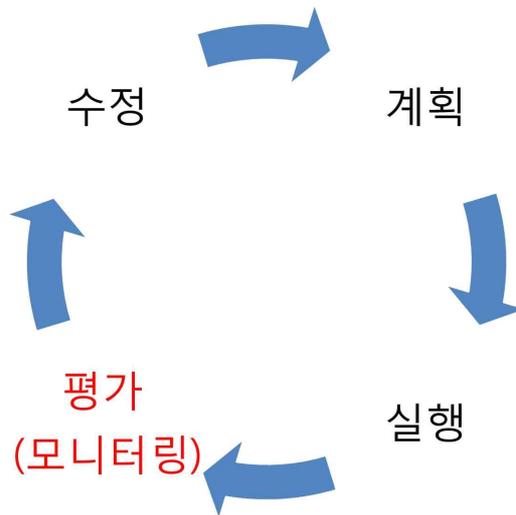
두 번째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점검을 받는다. 외부자의, 그러나 전문가의 시각으로 객관적인 점검과 평가를 받음으로써 놓쳤던 부분이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자가 점검과 외부 전문가의 점검이 나오면 그 둘을 비교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핀다. 특히 비고란에 적힌 세부사항들을 참고하여 보다 입체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1~5점까지의 정량적 평가는 서열화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판단을 위한 수단으로 참고하

35) 주경필. (2007)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준거체제 개발. 고려대학교.

36) 최흥기 (2009)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기 위한 것이니 이 점을 유의하여 점검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태도다. 앞서도 살펴본 대로 모니터링은 과정평가와 형성평가의 성격이 강하기에 이를 통해 책무성을 고취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격년 혹은 3년에 한번 정도의 간격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함으로써 계획-실행-평가-수정의 순환구조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공간과 시설

한국의 농어촌유학은 여전히 그 도입기에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정비가 상당히 필요하다. 시급한 제도 정비들 중 하나는 농어촌유학 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도입이다. 현재 농어촌유학은 어린이들을 돌보고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보육시설이나 교육시설로도, 사설학원으로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는 단순히 등록이나 인허가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리·감독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인허가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들이 갖추어야 할 시설과 운영체계에 대한 체계 역시 기준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조건 아래서 현장에서는 상황과 형편이 닿는 대로 현실적으로 급한 공간과 시설부터 만들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요구가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막연한 짐작으로 운영되거나 손대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중



종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교육시설 및 청소년시설 등에 적용되는 시설기준의 세부사항을 모아 농어촌유학의 현실에 맞게 정리한 후, 농어촌유학 현장들이 그 시설기준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1) 실내 공간의 안전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

1	2	3	4	5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예: 깨진 유리나 거울, 망가진 시설물이나 가구,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미끄러운 바닥 등.)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예: 미흡한 청소상태, 완벽히 고정되어있지 않은 시설물이나 가구, 벗겨진 전선 등).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내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 (예: 크기가 크거나 무거운 물건이 높은 곳에 있지 않다.)
<비고>				

▷유학센터 실내공간의 통풍, 조명, 온도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상태로 유지된다.

1	2	3	4	5
유학센터 실내공간의 통풍, 조명, 온도는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적절치 못하다.		유학센터 실내공간의 통풍, 조명, 온도는 대체로 불편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유학센터 실내공간의 통풍, 조명, 온도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적절한 상태로 유지된다.
<비고>				

--

▷유학센터 실내 생활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유학센터 실내 생활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보관되어 있다.		유학센터 실내 생활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불편을 끼칠 정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		유학센터 실내 생활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비고>				

▷유학센터에는 구급상자가 언제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1	2	3	4	5
구급상자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사용할 수 있는 구급상자가 보관되어 있다.		구급상자는 언제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양호한 상태로 보관되어 있다.
<비고>				

▷유학센터에는 비상대피방법이 게시되어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에는 비상대피방법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		유학센터에는 비상대피방법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		유학센터에는 비상대피방법이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곳에 누구나



		되어있다.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게시되어있다.
<비고>				

▷유학센터에는 화재안전 기본 장비가 구비되어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에는 화재 안전 기본 장비(소화기, 단독경보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 조명, 등)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		유학센터에는 화재 안전 기본 장비(소화기, 단독경보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 조명, 등)가 구비되어 있다.		유학센터에는 화재 안전 기본 장비(소화기, 단독경보화재감지기, 휴대용, 비상 조명 등)가 비상 시 쉽게 찾아 사용할 수 있고, 작동 상태가 양호하다.
<비고>				

▷유학센터에서는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에서는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없다.		유학센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피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다.		유학센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비상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에서는 안전관리 점검 자가 진단표를 실시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에서는 안전관리 점검자가 진단표를 실시하지 않는다.		유학센터는 안전관리 점검 자가 진단표를 실시 한 적이 있다.		안전관리점검 자가 진단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개선되고 있다. (예: 안전관리체계, 전기배선, 가스관, 화재, 위생, 건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등)
<비고>				

2) 실내 시설의 구성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유학생 및 활동가)이 모일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유학생 및 활동가 전체)이 모여 전체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유학생 및 활동가 전체)이 모여 전체집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다 (예: 식당 등).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유학생 및 활동가 전체)이 모여 전체집회를 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간을 유학센터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거리에 따로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다. (예: 숙박실 등)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유학센터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거리에 따로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학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없다.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학습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있다. (예: 숙박실 등)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거나 학습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학습실 공간을 유학센터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거리에 따로 갖추고 있다.
<비고>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잠자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개인공간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기 물건을 정리, 보관하고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기 물건을 정리, 보관하고 잠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자기 물건을 안전하게 정리, 보관하고 언제든지 편안하게 잠자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화장실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의 화장실은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낄만한 규모이다.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만한 규모의 화장실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쾌적한 화장실을 잘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세면욕실을 잘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의 세면욕실은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불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쾌적한 세면



편을 느낄만한 규모이다.		만한 규모의 세면욕실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욕실을 잘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세탁 및 건조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세탁 및 건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 세탁 및 건조시설이 부족하거나 생활공간에 중복되어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 물빠짐이 잘 되지 않거나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유학센터는 생활공간에 중복된 형태로 세탁 및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구성원들은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예: 세면욕실에 세탁기 설치,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이동식 건조 등)		유학센터는 세탁 및 건조 시설을 유학센터 건물 내 혹은 근접한 거리에 독립된 공간으로 따로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활동가(교사)들의 업무와 휴식/숙박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활동가(교사)들을 위한 공간을 전혀 갖추고		유학센터는 생활교사들을 위한 업무 및 휴식공간을 다목적으		유학센터는 활동가(교사)들을 위한 독립된 공간을 유학센터 건물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있지 않다.		로 갖추고 있어 유학생들과 방해로 주고받지 않는 범위에서 맡은 업무를 진행하고 설 수 있다(예: 생활교사 숙박실, 사무실 등).		내 혹은 근접한 거리에 따로 갖추고 있어 유학생들과 방해로 주고받지 않고 맡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식당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이 사용하기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만한 규모의 식당시설을 갖추고 있다.		유학센터는 전체 구성원들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규모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당시설을 유학센터 건물 내 혹은 인접한 거리에 독립된 공간으로 갖추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위생적이고 청결한 조리시설(식자재 보관소, 조리도구 등)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구성		유학센터는 식중독을		유학센터는 독립적인



<p>원들을 위한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당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예: 오염원에 노출되어 보관되는 음식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녹이 슬거나 세척되지 않은 조리도구 등)</p>		<p>예방하기 위한 조리시설을 대체적으로 갖추고 있다.</p>	<p>식당공간과 위생적이고 청결한 조리시설을 갖추어 유지되고 있다. (예: 조리사의 청결유지, 식자재에 따른 보관 및 저장 방법, 조리도구의 청결 상태, 위생적인 조리 및 배식, 환기시설 등)</p>
<p><비고></p>			

▷유학센터는 몸이 불편한 아동이 일과 중 집중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양호실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p>유학센터는 몸이 불편한 아동이 일과 중 집중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지 않다.</p>		<p>유학센터는 몸이 불편한 아동이 일과 중 집중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갖추고 있다. (예: 조용하게 쉴 수 있는 숙박실, 지도자실에 마련된 침대 등)</p>		<p>유학센터는 몸이 불편한 아동이 일과 중 집중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양호실을 유학센터 건물 내 혹은 인접 공간에 독립된 공간으로 잘 갖추고 있다.</p>
<p><비고></p>				

▷유학센터는 안내, 비상사태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송알림 시설을 잘 갖추

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안내, 비상사태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안내, 비상사태 등을 전달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유학센터는 안내, 비상사태 등을 유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전체 공간에 전달할 수 있는 방송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유학생에서 필요한 실내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실내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예: 전체 집회장소 부제, 별도의 세면욕실 부제 등)		유학센터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실내시설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예: 식당에서의 전체집회, 숙박실에서 자치활동, 학습 등이 다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유학센터는 유학생에게 필요한 실내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 (예: 전체 집회장, 강의실, 자치활동실, 학습실, 숙박실, 세면욕실, 화장실, 세탁실, 건조실, 지도자실, 식당, 양호실, 방송알림시설 등).
<비고>				



3) 실외 공간의 안전

▷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외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

1	2	3	4	5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외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다. (예: 위험한 폐기물 방치, 망가진 시설물,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바로 인접한 도로, 정리되지 않은 농기구, 목·공작 용구 등)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외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에 해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 (예: 정리되지 않은 폐기물, 완벽히 고정되어있지 않은 시설물 등)		유학센터 구성원이 사용하는 실외 공간에는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다.
<비교>				

▷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보관되어있다.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불편을 끼칠 정도로 보관되어 있지 않다.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보관되어 있지 않다.
<비교>				

4) 실외 공간의 구성

▷유학센터는 농촌유학생황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농촌유학생황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농촌유학생황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일부 갖추고 있다.		유학센터는 농촌유학생황에 적절한 자연환경을 실내 생활공간에서 인접한 거리에 잘 갖추고 있다 (예: 유학센터에 인접한 산, 들, 숲, 계곡, 냇가, 강, 호수 등)
<비고>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야외집회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 실외공간에는 야외집회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야외집회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유학센터 실외 공간에는 야외집회나 단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실내 생활과 접근이 용이한 거리에 마련되어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텃밭을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농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을 갖추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농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텃밭을 갖추고 있다.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농사개시부터 파종, 제초, 수확, 저장까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텃밭을 실내 생활공간에서 접근이 용이한 거리 안에 잘 갖추고 있다.
<비교>				

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

1)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농촌유학은 공교육 학교와는 다른,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요구받는다. 이는 일반 보습학원이나 도시 학교에서 진행되어 온 방과 후 활동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더구나 도시에서 태어났다 시골생활을 시작하는 유학생들은 1년 사계절이라는 시간을 자연의 품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유학생들에게 농촌유학이 줄 수 있는 가치와 실질적 성장의 계기는 매우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농촌유학은 정규 학교교육과는 다른, 그러면서도 자연과 아동발달을 고루 고려하는 나름의 교육과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행 농촌유학센터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편차가 있다. 사계절, 절기 및 세시풍속에 따른 나름의 교육과정을 유지하는 경우는 대부분이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를 잘 짜인 틀 안에서 가르친다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묻어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에 가깝다.

교육과정이 얼마나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발달을 염두에 두고 균형 있게 구성되었는지도 역시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자연 속에서 뛰어노는 동안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자란다지만, 실질적으로 유학생들이 학교교육과 균형 맞춘 교육, 농어촌유학의 특성을 갖춘 교육과정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듯 균형감을 획득한 교육과정도 준비에서 평가까지 일련의 계획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공학적 지식들이 필요하다. 교육을 구성하기 위해 공학적인 논리적 단계를 구성하는 교육공학을 참고하여 농어촌유학센터의 교육이 단순히 공교육 수업의 보조적, 보습적 가치를 가진 실천으로서 자리 잡기보다는 그 자체가 자연과 생태를 함께 논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을 마련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농어촌유학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경우 새로운 교육유형에 대한 교육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측면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우수 사례의 발굴, 농어촌유학의 특성을 살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커리큘럼의 구성이 필요하다. 개별 현장을 뛰어넘어 전체를 아우르며 분석과 발굴, 개발과 구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가 요청된다.

▷유학센터에서는 자립/신체성장/지적성장/정서성장/자연친화/공동체의 여섯 영역에 균형 잡힌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에서는 여섯 영역의 균형 있는 제공에 대해 고려한 적이 없다.		유학센터에서는 여섯 영역의 균형 있는 제공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유학센터에는 여섯 영역의 균형 있는 제공에 대해 매우 잘 고려하고 있다.
<비교>				

▷유학센터는 건강한 신체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녹여내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건강한 신체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학센터는 건강한 신체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건강한 신체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건강한 지적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녹여내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건강한 지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학센터는 건강한 지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건강한 지적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커리큘럼에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절기 및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 일 년을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잘 갖추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절기 및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 일 년을 경험할		유학센터는 절기 및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 일 년을 경험할 수 있는 커리		유학센터는 절기 및 세시풍속을 기반으로 자연과 함께 일 년을 경험할 수 있는 커리큘럼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지 않다.		컬럼을 계획하여 유학생할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을 계획하여 문서로 기록, 보관, 공유하며 유학생할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습, 기후 등을 고려하여 유학생들이 체험할 농사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농사체험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이 없다.		유학센터는 절기와 세시에 맞는 농사 체험을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풍습, 기후 등을 고려하여 유학생들이 체험할 농사의 품목선정, 농사 개시부터 파종, 제초, 수확, 저장까지 일련의 과정을 계절과 절기에 맞게 계획하여 문서로 기록, 보관, 공유하며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립, 자치의 경험을 커리큘럼에 체계적으로 녹여내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립, 자치의 경험을 커리큘럼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학센터는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립, 자치의 경험을 커리큘럼에 일부 반영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민주적인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자립, 자치의 경험을 커리큘럼에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예: 정기적인 공동체 회의, 전체회의, 방회의, 긴급회의, 정기적인 평가 및 반성의 시간 등)
<비교>				

▷ 유학센터는 구성원들을 위한 식사를 지역에서 나는 제철 식품을 이용하여 영양 균형에 맞게 미리 식단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센터 구성원들을 위한 식사를 미리 작성된 식단 없이 그때그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준비한다.		유학센터는 유학센터 구성원들을 위한 식사를 지역에서 나는 제철식품을 이용하여 영양 균형에 맞게 미리 식단을 작성하여 준비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구성원들을 위한 식사를 지역에서 나는(직접 재배한) 제철식품을 이용하여 영양 균형에 맞게 월-주-일 단위로 미리 식단을 작성하여 기록, 보관, 공유하고 있다.
<비교>				

2) 프로그램 운영의 안정성

준비되어있는 교사를 확보하는 일과 교사를 끊임없이 성장-강화 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은 교사의 질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에 비해 교사를 구하는 방식 역시 대부분의 센터들이 입소문이나 주변의 소개 등을 통해 이뤄진다. 개인적인 인연에 신규 교사 채용을 실시하고 있었다. 농어촌유학 활동가를 길러내는 양성과정인 없는 조건 아래 일견 당연한 측면이 있다.

교사 채용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시급한 문제는 교사의 재충전과 성장 문제이다. 생활교사들은 24시간 유학생들을 돌보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충분한 전문성을 쌓은 상태에서 현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개인적 역량에만 의지해 주어진 상황들을 헤쳐 나가야 한다. 그러므로 생활교사들이 받는 압박감과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 소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유·무형적으로 갖춰진 현장은 소수에 불과했다. 또한 교사가 직무와 관련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강좌 등 교육기회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박봉과 격무라는 열악한 조건 아래 자신이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했고, 개인적 힘을 축적하고 교육의 의미를 모색할 수 있는 휴식과 연찬의 기회는 갖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들이 농어촌유학에 머무르는 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과업을 자신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구성원들과 신규 채용되어 생활하는 활동가의 사이에 인식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유학을 장기적인 측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활동가 양성과정과 인건비에 대한 일부 지원, 기존 활동가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제공이 절실하다. 이런 프로그램 제공과 지원은 개별현장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좀 더 큰 틀에서 조직과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개별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교사들에게 기회와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교육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며, 신규 활동가 양성과정 역시 개별 현장들이 스스로를 교육의 장으로 열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구현해야 가능할 것이다.



▷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는 운영되는 프로그램 지도에 적절한 교육배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1	2	3	4	5
교사의 과반수 이하만이 적절한 교육배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과반수 이상의 교사가 적절한 교육배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의 모든 교사 (90% 이상)가 적절한 교육배경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 활동가들은 학회, 세미나, 워크숍과 같은 방법의 교사교육, 교사 교류, 타 기관탐방, 멘토링 등을 통해 농어촌 유학에 관한 전문성을 높여간다. (기관 내, 외 교육 모두 포함)

1	2	3	4	5
유학센터는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다.		모든 활동가(교사) 혹은 몇 명의 대표 교사만이 1년에 1~4회 정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모든 활동가(교사)가 1년에 2회 이상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
<비고>				

▷ 유학센터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활동가(교사)들에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활동가(교사)들도 본인에게 분담된 업무를 잘 인지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처리한다.		유학센터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활동가(교사)들에게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활동가(교사)들도 본인에게 분담된 업무를 대체로 인지하고 처리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활동가(교사)들에게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분담하고 있으며, 활동가(교사)들도 본인에게 분담된 업무를 잘 인지하고 맡은 일에 대한 계획-실행-평가의 작업을 기록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정기적인 활동가(교사) 전체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협의하고 공유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정기적인 활동가(교사) 회의가 없으며 그때 그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한다.		유학센터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긴급회의) 활동가(교사) 전체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협의하고 공유한다.		유학센터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인(긴급회의) 활동가(교사) 전체회의를 통해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협의하고 공유한다.
<비고>				



--

▷유학센터는 1년 프로그램 운영 단위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활동가(교사)의 이직이나 전직이 없어 안정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을 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1년 프로그램 운영 단위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50%이상의 활동가(교사)의 이직이나 전직이 있다.		유학센터는 1년 프로그램 운영 단위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30%미만의 활동가(교사)의 이직이나 전직으로 대체로 안정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을 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1년 프로그램 운영 단위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활동가(교사)의 이직이나 전직이 없어 안정된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을 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아동 대 생활교사의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아동 대 생활교사의 비율이 1:7 이상이다.		유학센터는 아동 대 생활교사의 비율을 1:7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아동 대 생활교사의 비율을 1:5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유학생활을 위한 일 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연, 월, 주, 일 단위로 잘 계획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 활을 위한 일 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일정 계획이 없다.		유학센터는 유학생 활을 위한 일 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연, 월, 주 단위로 계획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유학생 활을 위한 일 년 단위 프로그램 운영 일정을 연, 월, 주, 일 단위로 잘 계획하여 문서로 기록, 보관, 공유하고 있다 (예: 아동모집, 캠프, 학부모 방문, 김장, 발표회 등)
<비고>				

다. 행정 운영

행정운영은 농어촌유학이 가장 취약한 영역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운영자들이 이전에 행정을 다뤄본 경험 없이 이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체계적인 행정 체제를 정착해 나가는데 애를 먹고 있는 현실이다. 센터운영에 관한 정관이나 약관이 문서로 정리되어 있는 곳도 소수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효율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유학생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매일 이뤄지는 생활과 실행에 대한 기록과 발달사항들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기보다는 학부모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진으로 기록되어 인터넷 카페에 올려지고 있다. 그러다보니 유학생들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인 인상비평에 머물거나 발달과정에 대한 면밀한 기록과 분석이 빠진 채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드러난다. 그렇지 않아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생활교사들에게 기록과 평가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



축하여 행정인력을 지원하거나 혹은 행정과 관련된 역량을 강화해주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교육행정적인 요소가 전문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 유학센터는 연간/월간/주간/일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연간/월간/주간/일간 운영계획서와 상관없이 운영되고 있다.		유학센터는 연간/월간/주간/일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유학센터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운영계획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교>				

▷ 유학센터는 행정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약관이 문서로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다.

1	2	3	4	5
유학 센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약관이 문서로 정리되어있지 않다.		유학 센터는 센터 운영에 관한 정관 및 약관내용이 문서로 정리되어있지는 않으나 통용되는 비공식적인 관례가 있다.		유학센터는 센터운영에 관한 정관 및 약관이 각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 해당 항목마다 공정하게 적용된다. (예: 출석, 환불, 사고처리, (질)병처리, 불만처리 등)
<비교>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유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제정하여 이에 따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않으며 정관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		유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느 정도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유학센터는 튼튼한 운영위원회에 의해 정관에 따라 매우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유학생 관리를 위한 서류들을 잘 작성하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유학생 관리를 위한 서류들을 잘 작성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유학생 관리를 위한 서류들을 어느 정도 작성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유학생 관리를 위한 서류들을 매우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
서류		확인	서류	
입소원서, 전입서류			응급처치 동의서	
학생자기소개서			식단표	
학부모의견서			학생설문지	
유학센터교육과정			학부모설문지	
용돈기록장			회계장부	
상담기록부			생활기록부	
<비고>				



▷유학센터는 연간/월간/주간/일간 교육계획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연간/월간/주간/일간 교육계획안에 대한 구분과 설계 없이 무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학센터는 연간/월간/주간/일간 교육계획안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유학센터는 잘 준비된 연간/월간/주간/일간 교육계획안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대처와 관련한 대응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사고대처와 관련한 대응체제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보험에 가입 되어있고 사고대처와 관련한 체제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		유학센터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대처와 관련한 체제가 매우 잘 갖추어져 있어 사고시 누구나 적용가능하다.
<비고>				

▷유학센터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에 잘 작동할 수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유사시 잘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유학센터는 소방서, 병원, 경찰, 지자체, 학교, 도시부모, 농가 부모 등과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으며, 유사시 어느 정도 작동할 것이다.		유학센터는 비상연락망을 잘 갖추고 있으며, 이를 잘 보이도록 게시하고 있어 유사시 누구나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비고>				

▷유학센터는 아동권리의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2	3	4	5
농촌유학센터는 권리의식 부족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으며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농촌유학센터는 권리의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아동권리에 대한 규정도 갖추고 교육도 실행하고 있다.		농촌유학센터는 높은 권리의식으로 권리에 대한 규정을 잘 갖추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비고>				

학생모집과 홍보는 모든 센터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거리이다. 대부분의 센터들은 현재 계절캠프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유학의 일단을 맛보기 체험한 대상자들 중에 유학생들을 받아들인다. 계절캠프에 대한 홍보는 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카페 회원들을 통한 공지와 안내에 대부분 기대한다. 그 외에는 유학을 경험한 부모님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몇 명씩 충원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 아래 대다수의 센터들이 제대로 된 홍보 전략을 갖지 못한 채 정원을 채우는 데 급급하고 있다. 수용인원이 적은 센터는 개인적 친분 관계망을 동원해 정원을 충원하는 일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손쉬운 일은 아니라고 느끼고 있다.

센터가 외부에 설명회 등의 행사를 기획해도 홍보할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에 참여율이 높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곤 한다. 그 결과 방송을 통해 소개되는 횟수가 많은 센터와 그렇지 않은 센터 간에 지원 학생 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또한 방송을 통해 센터의 실제 모습이 지나치게 미화되거나 오해되는 현상도 부작용처럼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행정적으로는 좀 더 다양한 홍보 전략과 홍보기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의 지자체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네트워크망을 넓혀가는 작업이 개별 센터를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고, 유학생 모집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을 함께 기획하고 도와줄 전문 인력의 지원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역 내에서도 연대와 소통의 끈을 지속적으로 넓혀나감으로써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유학센터는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하여 미리 준비된 계획이 없다. 무작위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모집한다.		유학센터는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하여 미리 준비된 계획을 약간 가지고 있다.		유학센터는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며 잘 준비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매년 일정한 모집 시기 및 절차를 거치며, 학년 및 성별 편성계획도 잘 준비되어 있다.
<비고>				

▷보호자는 유학센터의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2	3	4	5
보호자는 유학센터의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한 정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보호자는 유학센터의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한 정보를 조금 얻을 수 있다.		보호자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유학센터의 아동모집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예: 마을소개, 프로그램 소개,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 일정, 모집 시기 및 절차, 등록비 및 참가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 규정 등)
<비고>				

▷참가아동과 보호자는 입소 전 유학센터의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

1	2	3	4	5
참가아동과 보호자는 입소 전 유학센터의 생활을 경험해볼 수 없다.		참가아동과 보호자는 입소 전 유학센터의 생활을 약간 경험해볼 수 있다.		참가아동과 보호자는 센터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을 통해 입소 전 유학센터의 생활을 충분히 경험해볼 수 있다. (예: 계절캠프, 예비캠프 등)
<비고>				



▷ 유학센터는 미리 마련된 (채용)절차를 거쳐 교사를 채용한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교사채용에 관한 절차가 없으며 필요시 임의적인 방법으로 채용한다.		유학센터는 교사채용에 관한 절차를 대략적으로 가지고 있다.		유학센터는 교사채용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가 있으며 대부분의 교사는 이절차를 거쳐 선발되었다. (예: 서류전형→면접→인턴쉽 등)
<비고>				

▷ 유학센터는 활동가(생활교사 포함)들의 성범죄경력조회를 의무화 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활동가들의 성범죄경력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다.		유학센터는 활동가들의 성범죄경력 신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활동가들의 성범죄경력조사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활동가(생활교사 포함)들의 임금과 휴가를 명시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 활동가들의 임금과 휴가를 명확히 공지하지 않는다.		유학센터 활동가들의 임금과 휴가를 명시한다.		유학센터 활동가들의 임금과 휴가를 명확히 이행하며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비고>				

--

▷ 유학센터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유학센터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유학센터는 연간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해에 이를 활용한다.
<비고>				

라. 재정운영

농촌유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는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더욱 엄정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 유학센터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을 관리한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식이 없으며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을		유학센터는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		유학센터는 투명성 확보에 대한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



따르지 않고 재정 을 관리한다.		정을 관리한다.		을 매우 꼼꼼하게 관리 한다.
<비고>				

마. 평가

평가 체제 역시 농어촌유학이 본격적으로 개발해야할 분야이다. 일반 공교육이 정량적인 체제로 학생들을 평가한다면, 대안교육 현장에서는 정성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을 평가한다. 특성상 농어촌유학이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교육과 달리 생활 차원에서 성장을 바라봐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농어촌유학은 어떤 평가체제를 가져야 할 것인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며, 다양한 연구와 모색의 결과로 해답이 제시되어야 한다.

▷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들은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 운영 개선 및 발전에 적용한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지난 몇 년간(3년 이상) 센터 운영에 관한 평가를 진행한 적 이 없다.		유학센터는 최근 3년 이내에 센터 운영 전 반에 관한 평가를 진 행했으며 그 결과를 실질적인 운영에 적 용해 개선 및 발전시 켰다.		유학센터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진 행했으며 그 결과를 실 질적인 운영에 적용하 여 개선 및 발전 시켰 다.
<비고>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대해 책임자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갖는다.

1	2	3	4	5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는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 책임자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다.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 책임자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공식적인 기회가 일 년에 두 번 (한 학기 한 번) 이상 있다.		유학센터의 활동가(교사)는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운영에 있어 자신이 맡고 있는 분야에 대해 책임자의 평가 및 피드백을 받을 공식적인 기회가 두 달에 한 번(한 학기 두 번) 이상 있다.
<비교>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들은 아동 개개인의 유학생활을 관찰하고 꾸준히 기록한다.

1	2	3	4	5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생활에 대해 기록하지 않는다.		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생활을 관찰하고 형식 없이 기록한다.		활동가(교사)들은 아동 개개인의 생활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며, 일정한 양식으로 정기적으로 기록한다. 기록한 내용은 서로 공유하여 더 나은 발전방향에 대해 상의한다.
<비교>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들은 아동 개개인에 대한 유학생할 관찰기록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고 아이의 성장에 대해 상의한다.

1	2	3	4	5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생활관찰 유학생활 관찰기록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지 않는다.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는 아동 개개인의 유학생할 관찰기록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고, 비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아이의 성장에 대해 상의한다.		유학센터 활동가(교사)들은 아동 개개인의 유학생할 관찰기록 내용을 부모와 공유하고,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아이의 성장에 대해 상의한다. (예: 개인면담, 전자 우편, 전화 등)
<비고>				

바. 소통과 협력

농어촌유학센터는 하나의 개별적 공간으로 독립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지역 안에서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존재하는 한편 유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구성원들과도 관계를 맺는다. 한편으로는 유학생들의 도시부모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내야하는 과제도 갖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센터로 끌어들이어 협조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도시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교육공무원들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런 다면적인 관계망 속에서 농어촌유학센터가 어떻게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과 한계는 동시에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유학센터는 마을주민들에게 농어촌유학과 관련되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을 운영위원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계획 및 행정업무에 대한 내용을 조율하고 협조를 구하는 창구를 정기적이고 공식적으로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수의 농어촌유학센터들은 마을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마을과 밀접한 관계망 속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을과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그 단계에 이르기 위한 신뢰를 얻기까지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현재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시행착오를 다각적인 형태로 겪고 있는 현장들도 있다. 하지만 마을 공동체와 협력적인 관계가 구축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지역 학교와의 관계 역시 매우 중요하다. 상당히 많은 농어촌유학센터들이 학교와의 관계를 순조롭게 풀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교를 설득하고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지역에서 교육지원청-교육청 등을 통해 거꾸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자체와 지역 교육청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면 개별 학교의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행정에는 이런 측면에서 지역 공무원들에게서 받을 수 있는 농촌유학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 역할이 요청된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도시부모와의 연대다. 도시 부모들은 농어촌유학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이 아니라 농촌문제, 교육문제, 공동체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학생의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도시 부모들이 자녀의 유학 지역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스스로의 역할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농어촌유학센터는 도-농-관-학이 만나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 유학센터는 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유학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1	2	3	4	5
마을과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으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을과 업무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과는 농촌유학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로서 업무협약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비교>				



▷ 유학센터는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을 연결하고 활용한다.

1	2	3	4	5
유학센터에는 지역 사회 전문 인력이 전혀 관계 맺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에는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들이 연결되어 활동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전문 인력들을 연결하여 활용하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일부 마련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적,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비고>				

▷ 유학센터는 마을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마을주민에게 프로그램		유학센터는 마을주민에게 프로그램 운영		유학센터는 마을주민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p>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p>		<p>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약간 제공한다.</p>	<p>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예: 프로그램 진행 교사, 생활교사, 센터관리, 행정업무, 학부모와 연계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 등)</p>
<p><비교></p>			

▷ 유학센터는 지역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농촌유학 운영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p>1</p> <p>지역학교와 업무협약을 맺지 않았으며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p>	<p>2</p>	<p>3</p> <p>지역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어느 정도의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p>	<p>4</p>	<p>5</p> <p>지역학교와는 농촌유학을 함께 운영하는 주체로서 업무협약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p>
<p><비교></p>				

▷ 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p>1</p> <p>유학센터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연계</p>	<p>2</p>	<p>3</p> <p>유학센터는 학교 운영위원회 연계하여</p>	<p>4</p>	<p>5</p> <p>유학센터는 학교 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p>
------------------------------------	----------	-------------------------------------	----------	--



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일부 마련하고 있다.		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적,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유학생 부모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마을운영위원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유학생 부모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일부 마련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유학생 부모회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행정운영에 관한 업무를 상의하고 조율할 수 있는 통로를 공식적, 정기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비고>				

▷유학센터는 학부모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	2	3	4	5
유학센터는 학부모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제공하고 있지 않다.		유학센터는 학부모들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제공하고 있다.		유학센터는 부모들에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정기적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제공하고 있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다. (예: 계절별 농사체험, 운동회, 학부모 교육, 학부모와 함께하는 캠프, 김장, 발표회, 개인 혹은 집단상담 등)
<비교>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전국의 농촌유학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 및 문헌연구를 통해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를 밝히고 현황을 분석하며, 농촌유학 실행지들의 운영관리를 개선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정부 차원(농식품부)의 경제적,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촌유학의 활성화 및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농촌유학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6개월 이상 농어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교육적, 지역적 프로그램’으로 정의된다. 지자체 및 단체에 따라 농촌유학을 조금씩 달리 정의하고 있지만 농촌유학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는 거의 동일한 차원과 맥락에서 공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유학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교육원리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립하였다.

1.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이 도시의 가정에서 벗어나 상당한 기간을 지속적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경험하는 교육의 한 유형이다.
2.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이 자연 안에서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3. 농촌유학은 ‘마을공동체’가 어린이 청소년 개개인을 함께 키운다.
4.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놀이와 노작의 가치를 전수한다.
5.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을 교육의 중심에 놓고 생활하며 가르친다.
6. 농촌유학은 어린이 청소년에게 감당할 수 있는 도전을 부여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4년 현재 농촌유학협의회에 등록되거나 등록 준비를 하고 있는 농촌유학 현장은 44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농촌유학 운영에 대한 등록절차나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농촌유학 현장들은 개인적 운영에서부터 사회적 협동조합까지 다양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다. 조직형태가 다양한 배경은 농촌유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이 부

담하는 유학비는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다양하였고 월 유학비 평균 금액은 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생활공간은 100~200㎡이 20개소(5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1,000㎡이상은 4군데였다. 2014년 10월 현재 6개월 이상 장기 유학생이 있는 곳은 32개 현장이었고, 11개 현장은 캠프나 체험학교 위주로 운영되고 있었다. 장기 유학생 숫자는 2012년 293명, 2013년 329명, 2014년 10월 현재 264명으로 집계됐다. 농촌유학현장들의 직원고용 형태의 경우 상근인력은 1명에서 16명, 비상근 인력은 0명에서 6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상근직원 1명당 평균 학생 수는 2.87명이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농촌유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2012년 1억6천만 원에서 2013년 3억5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2014년 3억2천만 원으로 다소 하락하여 연 평균 2억80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이는 수혜 현장 한 곳 당 2천4백만 원을 상회하는 액수이다.

농촌유학은 양적인 팽창 과정에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실행지 간의 교육 환경 격차이가 심해지는 현상도 보였다.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 공공성 제고, 교육 기준의 충족이라는 세 갈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특히 농촌유학을 선택한 아이들에 대한 돌봄이나 교육적 내용을 보강해야 한다. 농촌유학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곤란하다. 개별 시설들의 교육성을 확보가 시급한 이유이다. 농촌유학은 대단히 비형식적인 교육이어서 그것을 실행해내는 교사의 역량에 따라 똑같은 환경에서도 매우 큰 차이를 낼 수밖에 없다. 비형식적 교육일수록 더 치밀하고 잘 조직된 교육계획과 이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교사의 유연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농촌유학을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교육적 측면과 지역적 측면을 고려한 목표설정이다. 교육적 측면에서 농촌유학은 단순히 시설이 있다고 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면 안 된다. 아이들을 수용하면서부터 많은 변수와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자연을 강조한 나머지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이 부족해지면 아이들은 방치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학부모의 불만과 지역에서의 질타를 받게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확한 목표와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촌유학을 운영함에 있어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첫째는 교육성인데 농촌유학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것을 교육성이라 하고 교육성을 실현하기 위해 6가지 내용(자립, 신체성장, 지적성장, 정서성장, 자연친화, 공동체)을 담아 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둘째로 농촌유학은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 농촌유학운영자는 마을과 학교와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며 농촌유학이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작이 된 만큼 농촌유학은 지역에서 그 정체성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이나 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기가 필요하다. 농촌유학에서 농촌유학운영자와 학교 간 협력은 필수적이다. 농촌유학 협력학교란 농촌유학운영자와 학교장이 상호 업무협력을 맺어 그 정신을 상징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다.

셋째로 농촌유학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유학 운영자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 관리체계가 필요하며 농촌유학 운영자와 활동가는 적절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운영구조를 정해야 하며, 그것의 핵심 요소들은 정관을 통해 명시한다.

농촌유학의 목표를 정하고 운영원칙을 수립하였다면 기본운영 원리를 정비한다.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 확인을 목표로 교육성, 공공성, 투명성에 원칙을 두고 운영원리를 세운다. 운영원리는 길잡이역할, 자립의 기회제공, 교육적 교류, 마을공동체에 기여, 인재육성이라는 5가지 원리를 가진다.

첫째, 농촌유학은 도시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

둘째, 농촌의 자연·인문환경 속에서 도시아이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촌유학은 존재한다.

셋째, 농촌유학은 마을, 학교와 협력을 맺어 도시아이들의 신체와 지적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적 자극을 제공한다.

넷째, 농촌유학운영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성을 갖추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한다.

다섯째, 농촌유학은 농촌을 이해하고 도농교류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도모한다.

농촌유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를 확인하고 지속시키는 일을 비전으로 제시한다. 이는 농촌을 살피고 미래의 농촌에 대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유학생들이 잠재적인 귀농·귀촌 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전망하면서, 해당 지역사회의 지역인재(Local Leader)로 육성해 가는 비전이 필요하다.

농촌유학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별 전략이 필요하다. 1단계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다.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학 오는 학생들을 평소 학교나 가정생활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기숙을 함으로써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이들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편견을 해소 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2단계는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를 이해시키는 것이다. 농촌학교와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 농촌유학의 교육적 가치가 간과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3단계는 제도정비이다. 현재의 상황은 농촌유학의 가치에 대해서 관과 민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지원을 체계화할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유학 운영자는 농촌유학의 목표와 운영원리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개인적 결단이나 희생, 자아실현 차원이 아니라 농촌유학에 뜻을 함께 하는 구성원과 네트워크를 갖춘 활동가로서 자기 정립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과 학교의 협력을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는 운영자의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서로 책임을 분담한다는 큰 의미를 담는다.

농촌유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주체들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농촌유학 운영자가 마을과 학교, 그리고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은 농촌유학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상호간 합의된 농촌유학지원조례를 통해 유학생의 전·출입, 교육복지, 통학지원 등 필요한 시스템과 지원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관(定款)은 단체에 대한 목적과 조직, 운영에 대한 자주적이고 근본적인 자치법규를 말하며,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르나, 그 단체의 정체성과 투명성, 공공성을 위해 필요하다. 정관은 단체를 운영하는 데 지침이 되므로 작성할 때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관 작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관 초안을 만들고, 이사회에서 검토를 한 후 설립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학생모집을 위한 방법으로는 홍보물 제작, 온라인 홍보(홈페이지, 카페, 블



로그 운영 방식과 소셜네트워크), 오프라인 홍보(미디어 홍보, 설명회 및 학부모 교육, 맛보기 캠프)가 있다. 홍보를 하기에 앞서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홍보의 목표, 홍보에 사용할 예산책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농촌유학센터 설립을 위해 설립자(운영 주체자)는 해당 농촌유학센터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확정하고 마을, 지역사회, 학교,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설립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농촌유학센터는 돌봄과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써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물리적 환경 구성과 유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유학센터의 자치성, 공공성, 투명성이 보장되기 위해 정관 및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설립을 위해 시설설치기준, 종사자채용기준 등 시설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설립과정에 대한 컨설팅을 받으면 농촌유학센터 간 교류 증진 및 질 향상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농촌유학이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제도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시설, 활동가,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세부 항목별 체크 포인트가 설정된다.

시설기준을 살펴보면 농가형의 경우 농가부모의 생활공간에 유학생용 방을 성별 분리하여 마련하도록 한다. 한 방에는 유학생 3명을 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숙박공간과 학습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신규 설치시설 및 이전 시설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숙박실, 세탁실, 학습실, 야외활동 공간, 집단지도실 및 활동가 숙소를 각각 갖추되 한 공간이 하나 이상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센터형의 경우 유학센터를 전임으로 담당하는 활동가들만을 기준으로 학생과의 비율이 1:6을 넘지 않도록 한다. 활동가 채용에는 ①이력서,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③주민등록등본, ④경력증명서 (경력자에 한 함), ⑤자격증 사본 (자격증 소지자에 한 함), ⑥신체검사서, ⑦성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센터장은 유학센터 업무만을 전임으로 맡는 경우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유학생 모집은 최소한 해당 학기 시작 3개월 전부터 진행하여 지역학교에서 학급을 편성하고 교사수급 등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시 부모들에게 농촌유학센터의 설립취지, 운영목적, 운영철학, 운영주체 등을 소개하며 신뢰감을 형성한다. 유학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유학이 결정되면 학부모님과 전입과 전학에

대한 과정 및 유학관련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나눈다.

학생모집이 결정되면 전입신고 절차를 거친 후 해당 학구의 학교로 전학을 하여야 한다. 전입신고는 유학생 부모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유학생을 동거인으로 전입시킨 후 주민등록등본을 해당 학구의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장의 허가를 거쳐 전학절차가 완료된다.

준비된 활동가를 길러내고 채용하는 것은 농촌유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므로 농촌유학 활동가들의 모집과 교육, 그리고 평가를 엄정하게 시행한다. 활동가를 채용할 때는 추천과 공개모집을 원칙, 인사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활동가를 채용한다. 채용된 활동가는 정기, 비정기 연수를 통해 역량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농촌유학센터는 재무회계 및 후원금 관리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재무회계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정을 관리한다.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에 의하고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 및 부채의 증감 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예산은 정부보조금과 후원금, 법인 전입금, 자체 부담금, 이용료로 구성되며, 농촌유학센터와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투명하게 사용·관리한다. 예산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지출 증빙서류 보관한다.

농촌유학센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방향을 정하고 각 기관별 특성, 지역특성, 아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촌유학센터의 설립목적에 공고히 한다. 농촌유학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일반적인 현황조사(인구분포, 아동 현황, 기초생활수급권자 현황, 사회복지시설 분포 등), 지리적 위치, 주택환경, 생활편의 시설, 생활 안전 부분 등에 대한 특성을 파악한 후에 시설규모, 시설예산, 사업수행능력 등을 고려한 연간 및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농촌유학센터는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여야 한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운영규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농촌유학의 가치가 ‘자연’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본성’이라고 할 때, 지나친 프로그램 위주의 운영은 자칫 농촌유학의 핵심을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프로그램이 없는 농촌유학을 상상할 수는 없다. 농촌유학은 ‘농촌’이라는 지역성과 ‘유학’이라는 물리적 조건, 도시아이’라는 대상 ‘중장기’라는 기간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만나 성장이라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를 교육영역으로 구분해보면 자립, 공동체, 자연친화, 지적성장, 신체성장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다섯 영역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 상호 관련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파악된다.

농촌을 배경으로 한 입지 조건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다섯 가지 요소들(자립, 공동체, 자연친화, 지적성장, 신체성장)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고 있다. 다섯 가지 영역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중첩되는 활동도 가능하고, 모든 영역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다 들어간 활동 역시 가능하다. 이 모든 학습활동의 중심은 아동의 요구와 흥미, 관심과 참여이다. 농촌유학은 농촌공동체의 회복,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과 같은 다양한 목적들이 포개지는 상황 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농촌유학의 중심에는 학생들이 있고 그들의 성장과 계발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 그 핵심적 교육의 가치는 바람직한 교육목적 실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구현으로 담보된다. 유학생들의 성장과 농촌공동체가 상생과 상장(相長)의 길을 찾는 것, 그것이 농촌유학의 존재가치이다.

2. 결론 및 제언

농촌유학은 도시화로 생겨난 교육문제와 농촌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솔루션으로 일본의 산촌유학을 도입하여 시도된 민간차원의 풀뿌리 운동이다. 한국의 농촌유학은 처음 소개된 지 8년 만에 양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질적 성장을 담보하지 않은 양적 증가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농촌유학의 교육적 기능을 위한 준비에 충실하지 않은 채 농촌유학이 가져다줄 부수적 효과에만 관심을 갖고 뛰어드는 것은 반드시 사고와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창기 농촌유학이 실행지들을 개발 또는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전국에 예비실행지 포함 50여 시설이 분포되어 있는 지금 농촌유학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것이 민간의 자율적 풀뿌리 운동으로 싹튼 농촌유학의 씨앗들을 지나치게 획일화하여 그 다양성과 발전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의 초점은 기준을 정하기에 용이한 센터형 농촌유학에 맞춰질 수밖에 없지만, 이 기준을 획일적으로 모든 농촌유학시설들에 맞추기 보다는 큰 틀에서 지향해야하고 현장에 맞게 변용되어야 할 지침(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한다. 특히 개인 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농가형 농촌유학의 경우 대부분의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기준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형의 운영자들이 센터형을 기준으로 세운 가이드라인의 근거에 대해 이해하고 농가형의 현실에 맞춘 노력을 기울 때 농가형 농촌유학 역시 단순한 농가의 가외수입 수단을 넘어 교육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지속가능한 농촌유학을 위해서 교육성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은 농촌유학을 실천하는 주체들의 철저한 학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농촌유학이 도시의 인공적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자연과 호흡하며 자라날 수 있는 좋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단순히 방임을 넘어서는 치밀하고 과학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육방법과 그 교육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현해 낼 인적자원의 구성도, 그 인적자원들이 소진되지 않고 성취감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환경도 구성되어야 한다.

동시에 농촌유학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망 -농가부모, 지역민, 지역학교, 도시부모 등-과 지원적 관계를 맺고 있는 지원망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 등- 과의 협력구조를 잘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협력관계의 구성은 단순히 한 농촌유학시설의 성패를 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농촌유학을 통해 함께 거두고자하는 도농교류, 농촌마을 활성화, 귀농귀촌, 농촌인재양성 등의 2차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는 농촌유학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흐름이 농촌유학의 저변을 확산하기 위한 씨앗뿌리기에 중점을 두어왔



다면 이제부터는 좋은 농촌유학 실행지들의 내용적·운영적·시설적 측면들로 모델링과 제도적 관리를 통해 질적 제고를 이루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유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신고/등록제를 시행하고 운영과 안전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주먹구구식의 운영을 탈피하여 과학적인 내용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농촌유학의 내부와 외부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농촌유학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앞에서 서술한 대로 지금까지의 농촌유학이 씨뿌리기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의 지원은 위에서 지적한 시스템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세 단계의 로드맵을 제안한 바 있다. 1단계 육성기를 통해 농촌유학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농촌유학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원 구조를 마련하는 한편 홍보를 통해 농촌유학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잡힌 틀을 기반으로 2차 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련하는 성숙기다. 활동가 양성과정을 통한 인력공급과 계획-시행-평가(모니터링)-컨설팅의 순환 시스템을 안착하고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이를 현장에 보급할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현장지원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 3단계는 확장기로서 농촌유학 중점사업지구를 확산시키고 2단계에서 양성된 현장지원가들을 통해 실질적 지원과 보급에 나서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촌유학은 질적·양적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지원-평가(모니터링)-교육-연구 지원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서 (가)농촌유학지원센터의 설립이 요구된다. 즉 현장에 대한 재정지원과 컨설팅을 담당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평가하며, 농촌유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촌유학에 대한 연구를 구성하는 한편 교사양성교육·교사재교육·운영자교육·현장지원가양성교육 등 교육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지원을 통해 교육성과 공공성, 그리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농촌유학과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농촌-민간-정부-대학의 협력 체제를 통해 지원기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추후의 연구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구조를 만들어놓은 교육과정이나 교육평가의 틀을 바탕으로 실제 시행지에 대한

모니터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농촌유학의 현주소를 읽고 현장의 실질적 질적 향상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농촌유학 프로그램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농촌유학만의 차별성을 가지는 교육과정 모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한 농촌유학 교육과정 연구가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앞머리에서도 밝힌 바처럼 일본 산촌유학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현재 부풀어 있는 농촌유학에 대한 기대감이 거품 빠지듯 꺼지는 것은 순식간이 될 수 있다. 보다 지속가능하고 내용적으로 풍부한 농촌유학이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경험을 담아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농촌유학의 경험을 소중히 담아 도농교류와 농촌 활성화의 중요한 인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뒷받침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VII. 참고문헌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6). 공동육아어린이집의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를 위한 설명회 자료집. <http://cafe.naver.com/weherennow/1065>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2011). 부모협동어린이집 운영지침서.
-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2000). 산 지식을 익히는 체험학습 길잡이, 수원: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 교육부(1999). “창조적 지식기반국가 건설을 위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 미간행 자료.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개정 다문화학생 예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 권일남 외 (2006).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효과분석 및 인증기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진흥센터·국가청소년위원회.
- 김미숙·양심영 (2007). 위기의 한국아동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128호. 서울: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숙(2010). 지역아동센터의 전개과정을 통해 본 발전방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농촌정보문화센터(2010).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촌정보문화센터(2011). 도시아이 농산어촌 유학프로젝트 개발연구, 국내외 농산어촌유학 실태 및 발전방향 조사.
- 농촌정보문화센터(2011). 국내외 농산어촌유학 실태 및 발전방향 조사.
- 농림수산식품부(201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년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사업 신청단체별 사업계획서
- 농림수산식품부(2013). 2013년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사업 신청단체별 사업계획서.
- 농림축산식품부(2014). 농촌유학 안전관리 매뉴얼.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농림축산식품부(2014). 2014년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신청단체별 사업계획서.
- 도농문화교육연구소(2012). 2012 장수군 농·산촌유학 활동가 양성교육 컨설팅 결과보고서.
- 대리초등학교(2011).대리초등학교 교육백서.
- 박정희 (2007).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에 인식에 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교육과학과 박사과정 논문.
- 박차용 (2011). 청소년활동인증에 관한 인증수련활동 운영일력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석사과정 논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unSc.do?menuId=10&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
- 보건복지가족부 (2007).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2007 운영백서. 서울: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진흥센터.
- 보건복지가족부(2008). 청소년지도사 자격연수 교재. 보건복지가족부·국립평창청소년
수련원.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2014). 지역아동센터 운영 매뉴얼.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4). 2014년 지역아동센터 운영매뉴얼.
-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2007). 산촌유학 연구조사 중간보고서, 산촌유학 기본계획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2007). 산촌유학 기본 계획.
- (사)생태산촌만들기모임(2007). 산촌유학 길라잡이.
- 심정보(2008). 민주화 이후의 공동체 교육, 살림터.
- 여성가족부(2007). 부모협동보육시설 설립지침서.
- 여성가족부 (2012). 청소년활동인증제 매뉴얼. 서울: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진흥센터.
- 양병찬 외(2012). 농어촌마을 활성화를 위한 교육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농림수산
식품부

- 양병찬(2013), ‘농촌마을교육공동체’ 구축과 활성화 방안 국회토론회 자료
- 이광호 (200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도입/시행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
-미국 ACA와 NAA인증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이용교 외 8인(2000). 한국의 아동복지하기. 서울 : 양서원.
- 이종수(2009). 행정학사전. 대영문화사
- 전라북도(2012).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 정유성(2009). 대안교육 프로그램 평가모형 개발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주경필(2007). 대학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을 위한 평가준거체제 개발, 고려대학교.
- 최수연(2008).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관한연구.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창욱 외 (2009).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인프라 활용방안 연구: 학교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09-R04. 서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흥기 (2009). 한국과 일본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하태욱·차상진(2012) 한국농어촌공사 2012농어촌유학지원사업 현장모니터링연구. 대전: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연구소.
- 한국농어촌공사(2009).농어촌유학 사례연구 및 매뉴얼 개발 연구.
- 한국농어촌공사(2010). 2010농어촌유학 시범사업 신청단체별 사업계획서.
- 한국농어촌공사(2011). 농어촌유학 표준 운영매뉴얼 개발.
- 한국농어촌공사(2011). 2011년 농어촌 유학센터 지원사업 모니터링 결과
- 황진구(20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Eisner, E.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NY: Macmillan.

VIII. 부록

1. 각종 서식 예제

가. 농촌유학센터 등록 및 퇴소 관련 서식

1) 입소 원서

〈○○농촌유학센터 입소원서〉

학 생						학생 사진 (자유롭게)
이 름		성별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보호자						
이 름		주민등록번호				
직 업		직장 주소				
현 주소						
연 락 처	자택 ☎					
				e-mail)		
				e-mail)		
가족관계						
이 름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연 락 처	e-mail	
교육사항						
지역	기관	기간				
	어린이집	년 월 ~ 년 월 (개월)				
	유치원	년 월 ~ 년 월 (개월)				
	초등학교	년 월 ~ 년 월 (학년 재학 . 졸업)				
	학원	년 월 ~ 년 월 (개월)				
입소신청						
유학희망기간			지원학년	학년		
본인은 ○○농촌유학센터 입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생 (서명) / 보호자 (서명) ○○농촌유학센터장 귀하						

* 각 항목은 필수사항입니다. 해당사항은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

〈학생 자기 소개서〉

- * 글을 모르는 아이는 부모님이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대신 써 주십시오.
- * 단답형으로 답하지 말고 되도록 서술형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 * 전형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 1) ○○농촌유학센터에 와서 생활해 보고 싶은가요? 왜 그렇죠?
○○농촌유학센터를 지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 2) ○○농촌유학센터에 대해 알고있는대로 적어주세요.
- 3) ○○농촌유학센터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 4)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 해주세요.
- 5) 어른이 되어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 6) 지금까지 지내왔던 학교와 학원생활에 대하여 -좋았는지 나빴는지,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 본인의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 7) 엄마, 아빠, 형제, 자매, 할아버지, 할머니 등 가족과는 어떻게 관계맺고 지내 나요? 싸우거나, 혼나지는 않나요?
- 8) ○○농촌유학센터에 깊이 체험해 보고 싶거나 공부해 보고 싶은 관심분야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보고, 그 이유도 적어주세요.

*고학년에게 질문하는 항목입니다. 저학년은 선택사항이며, 부모님의 도움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 1)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거나 같이 활동 했던 경험, 체험들이 있었나요? 또는 봉사활동이나 남을 도운 경험들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경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있나요?

- 2) 지금까지 스스로 흥미나 재미를 가지고 탐구했던 과목이나 활동(예를 들면 각종 탐구대회 또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했거나, 음악활동, 연극활동, 체육활동, 창작활동, 문화활동 등)이 있었나요? 있는대로 적어봅시다.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된 이유, 탐구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한 내용, 그 경험들을 통해 배우거나 느낀 점을 써주세요.

- 3) 지금까지 내가 만난 선생님이나 어른 중에서 나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거나 존경할만한 분이 계시다면 어떤 분인지 적고, 그 이유를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 4) 나의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자신을 잘 설명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글을 구체적으로 써 봅시다. (나는 다른 이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인가?,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 나는 어떤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가? 내가 관심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등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보면서 써 봅시다)

〈학부모님이 말하는 내 아이 이야기〉

* 학부모님이 직접 작성하는 ‘내 아이 이야기’ 는, 아이에 대해 센터와 학교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교사들에게 들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본 제출 서류는 입소 전형 및 입소 후 학생이해 자료로 활용되며, 비공개 문서로 보관됩니다.

* 전형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각각 작성해 주십시오.

1) 기본사항

아이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아이에 관한 상황은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니 있는 그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아이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아이의 신체적 특징, 기본적 체력, 특이체질 등)

② 아이의 기질, 성격은 어떻습니까?(전반적 성향과 성격의 장 · 단점)

③ 행동발달을 포함한 아이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은 어떻습니까?

(병원의 진단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서술해주세요.)

2) 관계

① 학생과 학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대화의 개방성 정도, 함께 즐기는 놀이 등)

- ② 학생에게 형제, 자매가 있다면 관계는 어떻습니까? (없으면 생략하세요)
- ③ 학생의 친구관계는 어떻습니까? (좋아하는 친구,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 주로 하는 놀이)

3) 가정교육

- ① 학생의 생활습관은 어떻습니까? (수면, 청결, 정리정돈, 언어사용 등)
- ②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기르고 계십니까?
- ③ 학생을 엄하게 꾸짖거나 체벌하실 때가 있다면 어떤 경우입니까?
- ④ 학부모께서 바라는 아이의 미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4) 교육사항

- ① 그동안 다녔던 교육시설에 대한 아이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② 기존의 학교교육방식 및 사교육에 대한 학부모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③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각종 학원, 과외 등등)을 받았다면 이를 통해 얻고자 했던 바는?

④ 학생이 여타 교육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거나 꼭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⑤ 현재 아이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어떤 점입니까?(학습, 정서, 또래관계 등)

〈학부모님이 작성하는 설문지〉

- 1) 왜 ○○농촌유학센터에 보내려 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 2) ○○농촌유학센터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 3) 본 센터에서 아이의 의식주 . 교육 . 건강 . 의료 문제 등을 책임지고 해결해 나감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여 위탁하실 수 있으신가요?
- 4) ○○농촌유학센터의「납입의무규약」에 따라, 센터에 납입할 일체의 비용을 성실히 납부하실 수 있으신가요? 입주금 및 입주예치금 제도를 이해하고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 5) ○○농촌유학센터의 집중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부주의, 과실로 인한 사고 . 사건발생이 발생되었을 경우, 학부모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신가요? 어떤 형태로 원만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6) ○○농촌유학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2) 교류학습 관련 서식

교류 학습 신청서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인적 사항	성 명		학년반	
	주 소		전 화	
교환학습 신청사항	학교명		학교전화	
	학교주소			
	기 간			
교환 학습 희망 사유				
현 지 보호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전 화	
위와 같이 교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 . . 학 생 학부모 인 초등학교장 귀하				

4) 입소 안내문 예제

마을이 아이를 키웁니다

○○농촌유학센터 생활 안내

농가란? 시골부모는?

◆- 농가란?

말 그대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집을 말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말의 의미는 농업을 한다든지, 큰 농사를 짓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 가족의 먹거리를 위해 조그만 텃밭 정도라도 가꾸고 살아가는 가정이면 농가라 할 수 있습니다. 논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고 수확을 하는 농사일을 하며 자연이 주는 은혜를 아는 이들이 사는 가정이라면 농가가 할 수 있습니다.

◆- 시골부모란?

○○마을로 농촌유학을 오는 아이들의 시골(현지)부모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도시에 살고 있는 친부모, 가족을 떠나 시골에서 살아갈 때 부모처럼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를 말합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에서부터 친구 관계나 학교 생활 등 생활 전반에 의지처가 되어주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떨어져있는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유학생 농가 배정

농가	유학생
○○네(ㄱ리)	영호 철수 길동
○○네(ㄱ리)	상호 인수 민호
○○네(ㄴ리)	다희 지민 경은
○○네(ㄴ리)	성호 경연 진수
○○네(ㄷ리)	지연 다연 현수

농촌유학생은 이런 아이들로 자랍니다.

● 스스로 서는 아이들(자립, 자치)이 됩니다.

: 의식주 자립을 배워 나가고 아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 ◇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납니다(겨울-7시 15분).
- ◇ 스스로 이불을 개고 방 청소와 정리 정돈을 배워 나갑니다.
- ◇ 아침엔 산책, 운동, 아침 농사, 가축 돌보기 등을 하며 몸을 움직입니다.
- ◇ 7시 40분에 아침을 먹습니다. 밥상을 받는 마음과 자세를 익힙니다.
- ◇ 아침 식사 후에는 자기 그릇은 자기가 설거지합니다.
- ◇ 먹거리나 간식은 인스턴트를 피하고 직접 키운 채소나 직거래 먹거리를 이용하고, 주말에는 요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집니다.
- ◇ 학교에 가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 ◇ 학교가 마치면 센터로 와서 간식을 먹고 5시까지 농가로 귀가합니다.
- ◇ 농가에서는 저녁을 먹고 씻고, 청소하고, 간식을 먹고, 묵학 시간을 가집니다.
- ◇ 자기 빨래는 스스로 정리하는 습관을 기릅니다.
- ◇ 함께 생활하며 생기는 문제는 자치회의를 통해 스스로 해결합니다.

● 함께할 줄 아는 아이들(협동)이 됩니다

: 아이들이 서로 협동을 통해 일하고 놀고 배우는 가운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소중함을 알게 합니다.

- ◇ 농사를 함께 하며 농사의 가치와 노동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 ◇ 남을 위한 봉사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배웁니다.
- ◇ 함께 놀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 ◇ 혼자 집중해서 배울 때와 함께 협력해서 배워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알고, 상황에 맞게 행동합니다.

농촌유학생 생활 수칙

1. 다른 사람에겐 밝은 표정으로, 큰 소리로 인사합니다.
2.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3.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 스스로 해결이 힘들 때는 이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유학생 전체회의를 통해 풀어갑니다.

4.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고, 때리지 않습니다.
5. 걱정거리,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모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풀어갑니다.
6.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이 지속되면 유학생 전체회의를 통해 방법을 찾습니다.
7.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약속이므로 모두 함께 지킵니다.
8.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을 줬을 때는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9. 사용한 물건을 다 쓰고 나면 꼭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유학생 하루 생활 안내

언제?	무엇을?	어떻게?
7:00 (겨울 7:15)	일어나기	이불개기
7:00~7:20	운동/텃밭/ 동물	체조, 줄넘기, 산책, 텃밭돌보기, 동물 먹이주기 등
7:20~7:40	등교준비	세수, 옷 갈아입기
7:40~8:20	아침식사	밥상 기도하기, 자기 그릇 설거지하기
8:20~	학교생활	학교 마치면 유학센터 바로 오기
2:40~	방과후프로 그램	요일별 방과후 프로그램 하기(학교, 센터 등)
5:00~5:30 (겨울4:30~5:00)	농가로 귀가	
5:30~6:30	저녁식사	저녁 식사 후 양치질하기
6:30~8:00	스스로살림 자유시간	방청소, 빨래 챙기기 자기 역할을 다 한 후에는 자유 시간
8:00~8:40	묵학시간	일기-주3회 이상 독서, 공부, 숙제 등
9:30~	잠자리로~~ ~	

농가 부모 수칙

1. 농촌유학생의 보호자로서 아이들을 잘 살핍니다.
2. 아이들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센터 이모들에게 알리고 의논합니다.
3. 하루 생활 일정표를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4. TV 프로그램은 주말에 1가지 정도만 아이들과 협의하여 시청합니다.
5. 전자기기나 폰, 컴퓨터 등은 농가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가급적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친환경 먹거리를 이용합니다.
7. 의식주 생활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게 하여 자립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8. 아이들이 농가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지만 제 멋대로 하지 않도록 지켜야 할 예의를 알려줍니다.
9. 시골에 산촌유학을 와서 시골살이나 농사일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부입니다. 시골살이를 맛볼 수 있는 일을 다양하게 경험하도록 도와줍니다.
10. 도시부모와 만나는 학부모 만남의 날이나 교육은 꼭 참석하여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고 농가부모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끊임없이 공부해 나갑니다.
11. 농가 안전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아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아이들 개인 짐 정리 확인하세요

- 겹 옷(상의, 하의 각각) 4벌, 점퍼 2벌
- 운동화 2켤레, 장화, 슬리퍼
- 개인 수건 2장
- 양말 6켤레, 속옷 6개, 비옷, 우산, 칫솔(3개)
- 천생리대(중형10개, 대형 4개 정도, 위생팬티 가능함)
- 교과서, 필통, 가방 1개, 실내화(흰색) 2켤레, 일기장
- 그 외 학습에 필요한 도구는 필요 시 집에 갈 때 가져오기로 합니다.
- 머리빗, 로션1개(그 외 바디샴푸나 클린저 등은 가져오지 않습니다)

나. 농촌유학센터 운영관리 서식

1) 성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취업(예정)직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우리 시설 또는 기관의 취업·노무 제공(예정)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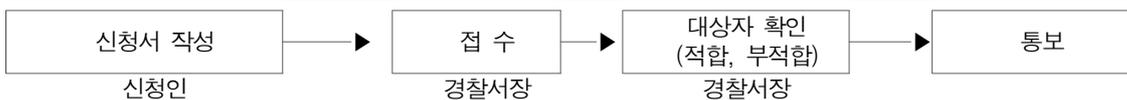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1부	수수 료 없 음
	2.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의 동의서 1부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성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본인은 ○○농촌유학센터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영문의 성명,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2)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갑		
사용자(기관)명 :		
주 소 :		
대 표 자 :		
을		
근로자성명 :		
주 소 :		
생년월일 :	년 월 일(당 세)	
주민등록번호 :		
상기 갑, 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원,	원 원
·	원,	
- 임금지급일 : 매일(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갑 사용자(기관)	(인)
	을 근로자	(인)

3) 종사자 명부

종사자 명부

사진	담당 업무	성명	주민등록 번호	최종 학력	자격증	입사 년월일	퇴사 사유 및 년월일	교육 이수	비고
○○농촌유학센터									

4) 운영위원 명단

운영위원 명단

연번	이름	직분	소 속 및 직 함	연락처	주민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농촌유학센터

5) 업무분장표

20 년 ○○농촌유학센터 업무분장표				
구분	직위	이름	주요업무	관련행정

7) 내부기안 및 발송공문

내부기안 및 발송공문

○○ 유학센터					
수신					
참조					
제목					
1. ○○○○○○					
- 아 래 -					
별 첨 :					
담당자				시설 장	
시행 0 0	14 - 000 (2014. 0. 0)				
주 소	우 : 000-000 ○○도 ○○시 ○○동 ○○번지				
전 화	00 - 000 - 0000	전 송	00-000-0000	이메일	/ 공개

11) 자원봉사 관련 서류

1) 자원봉사 신청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남 / 여
사진	종교		결혼여부	기혼	미혼
	휴대폰 번호		집전화번호		
	특기및자격증		이메일주소		
집주소					
직업 / 직장명					
학력 (재학중일 경우 학교명, 학년, 전공)					
봉사활동 경력	기관명		봉사기간		
	봉사내용				
희망 봉사일시					
<p>[자원봉사자 수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원봉사자의 호칭은 선생님이 부르다(학생 자원봉사자도 해당) 2. 농촌유학센터 아동에게 무분별하고 일방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돈이나 선물을 제공하지 않는다(필요시 종사자와 협의한다). 3.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대해 비판하거나 지시하지 않는다. 4. 농촌유학센터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대한다. 5. 농촌유학센터 아동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행동은 금지한다. 6. 실무자가 요구하는 사항에 협조한다. 7.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유학센터 아동의 비밀은 꼭 지킨다. 8. 활동 후 반드시 활동일지를 작성하고 점검과 평가를 한다. 9. 자원봉사자는 일관된 행동을 취하며 아동, 직원 상호간 예의를 지킨다. 10. 자원봉사자가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는 유학센터 실무자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11. 자원봉사 시간은 정확히 지키며 활동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실무자에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한다. <p>본인 _____은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귀 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것을 동의하며, 위의 수칙을 준수하고, 자원봉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 서명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농촌유학센터 귀하</p>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성 명	
봉 사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시간 분)
준 비 물	
참 여 자 (기관 아동 인원)	
봉사활동 내용	
평 가	
전 달 사 항	
○○농촌유학센터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소 속	
봉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봉사시간	총 시간 분
봉사내용	
평 가	
<p>위 사람의 자원봉사활동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담 당: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농촌유학센터</p>	

12) 식단표

2015년 월 농촌유학센터 식단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21일	일	일	일	일
저녁						
	일	일	일			
저녁						

원산 지표시	쌀 ()산, 쇠고기 ()산, 돼지고기 ()산, 닭고기 ()산 배추김치()산
-------------------	---

13) 업무협약서 예시

업무협약서

○○초등학교와 △△농촌유학센터는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 지역사회를 더욱 풍성하게 할 농촌유학 사업의 핵심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2. 도시에서 ○○초등학교로 입학 및 전학을 희망하는 △△농촌유학센터 유학생들을 받아들여 지역아동과 함께 농촌의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들과의 따뜻한 돌봄 속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초등학교는 정규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학교가 주체가 되는 방과후 교실, 돌봄교실, 주말 및 방학 프로그램 등을 통해 △△농촌유학센터 유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다.
4. △△농촌유학센터는 유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의 학업 및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 협약의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상호간의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의·시행하기로 하고 이 협약서에 서명한다.

20XX년 XX월 XX일

○○초등학교
교장 장학교

△△농촌유학센터
센터장 유학장

14) 예시 정관

0000농촌유학센터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단체는 0000농촌유학센터(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00도 00군 00면 00로 00-0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00지역의 농촌유학을 진행 또는 유치하고자 하는 지역 현장과의 소통 및 현장 지원을 하고, 0000농촌유학센터의 운영과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농촌유학 현장활동가 교육 및 지원협력사업
2. 농촌유학 운영 사업
3. 농촌유학생 공동 모집·홍보 협력사업
4. 농촌유학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연구 사업
5. 그 외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도시보다는 농촌의 삶을 동경하고, 경쟁보다는 더 붙어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며, 본회의 설립목적과 운영방향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일정액의 회비를 내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본회가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본회가 정하는 권리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 인
2. 이사 5 인 이상
3. 감사 2 인 이하

제11조(임원의 선임)

1.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고 해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③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하여 본회의 사업을 전담하게 한다.
-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사무국에 등록된 팩스와 등록된 이메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3분의1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결 제적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회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 명예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 혹은 웹(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카페의 이사회) 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안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다만 정관의 개정은 이사의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8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 산 과 회 계

제29조(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4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2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 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 무 부 서

제38조(사무국)

-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상임이사는 사무국에서 사무총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 사업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해산)

-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등) 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00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00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단체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 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기
이사장			3년
이 사			3년
이 사			3년
감 사			3년

제4조(설립자의 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연명날인한다.

0 0 0 (인)
0 0 0 (인)
0 0 0 (인)

정관 제정 2014년 0월 0일

0000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센터 운영협의회 규약

20 년 월 일 제정

제1장 총칙

(명칭)

제1조 본회는 “○○농촌유학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칭하며 사무국을
------(주소)-----에 둔다.

(목적)

제2조 동 규약은 도시에서 ○○농촌유학센터로 입학 및 전학을 희망하는 아동을 농촌 유학생으로 받아들이고, 지역 아동과 함께 마을의 자연 환경과 지역 주민들과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는 학교 교육 및 사회활동을 통해 인격 형성기에 있는 아동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기르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여 마을공동체 중심의 농어촌 유학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농촌유학센터 설치 및 운영주체)

제3조 농어촌유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해 “○○농촌유학센터 생활관”(이하 센터)를 XX 시 XX군 XX면 XX길 XXX번지에 설치하여 관리, 운영은 ○○법인이 맡는다. (사) ○○농촌유학은 모집, 홍보, 교육 등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맡는다.

제2장 업무

(업무)

제4조 협의회는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① 농촌유학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② 농촌유학센터와 마을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③ 농촌유학센터와 지역 학교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농촌유학센터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조직

제5조 협의회는 다음의 회원으로 조직한다.

- ① 농촌유학센터 대표(직원 등 포함) 및 농촌유학생 부모 대표
- ② ○○초등학교 ○○분교 교직원

- ③ ○○마을 이장, 부녀회장
- ④ ○○면 면장(혹은 담당 공무원)
- ⑤ ○○농협 담당 직원
- ⑥ 기타 협의회회 취지에 찬성하는 자

제4장 임원

(임원)

제6조 협의회에서는 농촌유학센터 대표, 지역(마을)대표, 지역의 학교 교직원 대표 중에서 회장, 부회장 등의 임원을 둔다.

(회장, 부회장)

제7조 회장 및 부회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회장은 업무를 종합 담당하여 협의회를 대표하는 것과 동시에 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이 사고가 나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 역할)

제8조 임원의 업무는 제4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필요에 따라 임원회를 개최해 중요안건 심의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종합 조정을 한다.

(임원 선출 및 임기)

제9조 임원의 선출은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원 임기는 원칙으로 1년으로 한다. 단, 재임은 가능하다.

제6장 총회

(총회)

제10조 협의회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여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무 중에서 다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해 결정한다.

- ① 농촌유학센터 및 협의회회 운영에 관한 것
- ② 농촌유학센터와 지역(마을)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 ③ 농촌유학센터와 지역 학교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협의회 총회는 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3. 협의회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 의사로 결정한다.

부칙

(적용기간)

제1조 이 규약은 2013년 2월 14일에 제정하여 2013년 3월 5일부터 적용한다.

15) 설문조사 예시 - ○○농촌유학센터

○○농촌유학 설문조사(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농촌유학센터입니다.

본 설문은 ○○농촌유학 참여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본 설문결과와 더불어 남겨주신 고견은 ○○농촌유학 보고서 책자 제작 및 향후 진행 될 ○○농촌유학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차별화되고 알찬 ○○농촌유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설문자 인적사항 및 기초조사 】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대는?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3.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은? ex) eh 또는 광역시 - 서울, 충북
 ()

4. 귀하가 농촌유학을 처음 알게 되신 계기는 무엇입니까?

- ① TV, 신문 ② 인터넷 ③ 홍보물, 책자 ④ 지인 ⑤ 기타()

5. 귀하는 어떤 유형으로 농촌유학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 ① 자녀유학 ② 친지유학 ③ 가족유학 ④ 교사 ⑤ 기타()

10. 귀하는 ○○농촌유학 기간(1년)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기타()

11. 귀하는 ○○농촌유학 비용(월 ○○만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기타()

12. 귀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유학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기타()

12-1. 유익하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2-2. 부적절하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유학 환경 및 운영성과]

13. 귀하는 ○○농촌유학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1. 만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

13-2. 불만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14. 귀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진행 중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① 안전사고 ② 유학생 성적저조 ③ 유학생 성격변화 및 주변동화
 ④ 위생 및 환경 ⑤ 기타 ()

15. 귀하는 ○○농촌유학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 ① 생태교육 ② 농촌체험 ③ 정규교육 ④ 취미 * 컴퓨터
⑤ 기타 ()

16. 귀하는 유학생이 농촌유학에 참여하여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격변화 ② 학습능력 향상 ③ 원만한 대인관계 ④ 건강 * 체력 향상
⑤ 기타 ()

【 농촌유학 개선방향 및 의견 】

17. ○○농촌유학센터에서 운영상 개선할 사항 또는 불편하셨던 점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18. 농촌유학에서 꼭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안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19.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① 지역학교 지키기를 위한 마을사업 ②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한 마을사업
③ 유학생을 위한 인성 및 생태교육장 ④ 농촌 건물 * 공간 활용 사업
⑤ 기타()

7. 귀하는 ○○농촌유학이 주는 가장 큰 혜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의 학원 및 공부 스트레스 해방 ② 자녀의 방과 후 방임 해결
(맞벌이) ③ 자녀의 농촌생활 체험*체득 및 이해 ④ 자녀의 성격개조 및
올바른 정서함양 ⑤기타()

8. 귀하가 생각하는 ○○농촌유학의 대표적인 장점과 단점을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① 장점 :

② 단점 :

[농촌유학 만족도]

9. 귀하는 ○○농촌유학의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기타 ()

9-1. 만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러우셨습니까?

()

9-2. 불만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만족스러우셨습니까?

()

10. 귀하는 ○○농촌유학 기간(1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기타 ()

11. 귀하는 ○○농촌유학 비용(월50만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⑥ 기타 ()

12. 귀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이 유학생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유익 ② 유익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⑥ 기타 ()

12-1. 유익하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2-2. 부적절하시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촌유학 환경 및 운영성과]

13. 귀하는 ○○농촌유학 편의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1. 만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만족스럽습니까?
 ()

13-2. 불만족하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

14. 귀하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진행 중 가장 염려되었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① 안전사고 ② 유학생 성격저조 ③ 유학생 성격변화 및 주변동화
 ④ 위생 및 환경 ⑤ 기타 ()

15. 귀하는 ○○농촌유학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

- ① 생태교육 ② 농촌체험 ③ 정규교육 ④ 취미 * 컴퓨터
⑤ 기타 ()

16. 귀하는 유학생이 농촌유학에 참여하여 생긴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격변화 ② 학습능력 향상 ③ 원만한 대인관계 ④ 건강 * 체력 향상
⑤ 기타 ()

[농촌유학 개선방향 및 의견]

17. 귀하의 자녀를 내년도 ○○농촌유학프로그램에 참여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간단한 불참사유 ()

18. ○○농촌유학센터에서 운영상 개선할 사항 또는 불편하셨던 점을 자세히 적어주세요.

19. 농촌유학에서 꼭 운영했으면 하는 프로그램이나 교안이 있다면 자세히 적어주세요 .

20.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설문에 끝까지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 농촌유학센터 운영계획, 교육계획안 및 생활기록부

1)연간운영계획표

00 농촌유학센터 연간 계획표 예시						
월	공통	소 위				
		운영	재정	교육	시설	홍보
3월	00교사 재계약	조편성	고용,산재보험신고 은행유자연장 교사임금협상		시설 변경	
4월			교사급여명세정의	신입활동가 교육시작 (3~4개월 소요예정)		
5월	00교사 재계약		어린이 상해보험갱신	근로자의 날	대청소	대기자 의 날
6월		단오 마당	상반기 정산 및 예산수립급여와 세금 상반기정산	전체조합원교육		
7월			6월 업무 재확인	여름교사대회		
8월	임시총회 재인증 시작	조편성			해충 방역 대청소 모래 교체	
9월		모꼬지		전체직원교육		
10 월				신입활동가교육 (워크숍)		
11 월	재인증 끝	김장	회비 기부금납입증명 신청서 작성	전체직원교육		대기자 면담 설명회

●●● 농촌유학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2월		해보내기 잔치	부가세 신고 급여 세금 하반기 정산 00년도 예산수립 교사 연말정산 및 결산 교사회 임금협상	겨울교사대회		
1월						
2월	정기총회	졸업식	교사연차수당 회기년도결산			
기타	농촌유학 센터 평가 인증제			매월선생님월차	터전 시설 보수	홍보 전단지 제작

2) 연간교육계획표

00 농촌유학센터						
교육목표: 평화로운 어린이집-갈등을 지혜롭게-아이와 아이, 교사와 아이, 교사와 부모						
월	세시와 절기음식	나들이	명상과 몸짓		안전	행사
3	봄맞이 잔치 화전 봄나물 요리 쭈꾸미	자연의 생명력 느끼기 흙놀이, 땅속에 사는 것 겨울을 이겨낸 들플 봄나물 캐기	○나는 누구인가?(3,4,5월) -내마음들 여다보기 -나를 자랑해 보아요 -이럴 때 마음이 아파요	나의 몸에 관심 가지기 복식호흡	농촌유학센터에서의 안전 -총계 -가위,칼 사용할 때 -전기콘서트	해오름식, 봄맞이 잔치, 원내캠프, 어린이총회, 생일잔치
4	청명,한식 삼짇날 봄나물 요리	봄기운 느끼기 나무 새순찾기, 봄나물캐기, 풀싸움, 색깔찾기	-이럴 때 마음이 좋아요 -자랑스런 내 모습 표현하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몸의 여러부분 살펴보기 몸짓놀이 동작배우기	나들이 안전 -먼나들이시 교통안전 -해충과 풀 -위험한 동물 -길을 잃었을때	건강검진 오름 등반 생일잔치 봄소풍
5	석가탄신일, 탑돌이, 연등달기, 여름 맞이 잔치, 증편, 콩 볶아먹기	절 나들이 쭈꾸미 말리기 씨름	-미소영상 <input type="checkbox"/> 거울보며 나를 칭찬해보기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표정짓기 <input type="checkbox"/> 나에게	도인법에 의한 기초 몸짓놀이 동작 배우기 동작 연결하여	성폭력안전 -옷잘입기 -도움청하는 법 -낮선사람에 대처하는법	아버이날행사 어린이날행사 스승의날 행사 생일잔치

			미소 짓기 □내얼굴 (표정) 그리기 □나에게 말을 걸어보아요 □화난 마음 들여다보기	익히기		
6	망종, 하지 감자전, 단오, 씨름, 차마시기	그늘찾기, 비오는 날 나들이	○나와 다른 너(6,7,8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시설안전 -바깥놀이 규칙 -물놀이	가족캠프 생일잔치 어린이 총회 여름맞이 단오잔치
7	유두~유두 제 잡초뽑기, 물놀이 닭죽빙떡 만들기, 수박화채	물놀이 나뭇잎 관찰	칭찬하기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소중하게 느낄 때 -친구 얼굴(표정) 그리기 -아름다운 미소 짓기 대회 -소중한 물건 친구와 나눠보기 -아름다운 가게	연결지어 익히기 호흡에 따라 즐기기	음식물에 대한 안전 -상한음식가 려내기 -좋은음식이란 -너무 찬 음식 많이 안먹기	동극발표 생일잔치 여름방학
8	백중놀이, 칠석-견우 직녀 동극 쳐서 해물탕				교통안전 -교통 표지판 알아보기 -교통에 대한 안전	사랑의 편지 보내기 생일잔치 교사 모꼬지 터전 대청소

9	백로, 추분 가을맞이 잔치 송편 만들기	가을 느끼기 가을의 들꽃	<p>또 다른 나<친구> 와 <관계> *친구란 *친구 불러보기 *친구 그리기 *친구에게 -칭찬하기(칭찬카드 만들기)</p> <p><아름다운 나와 너> <나눔> *우리 모자이크 *우리 일 때 *백지장도 맛들면 낮다 *아름다운 미소짓기 대회</p>	<p>동물모양 을 형상화한 몸짓놀이 15단계</p> <p>곤충, 자연 의 변화 몸짓표현</p>	나들이 안전	가을 들살이 생일잔치 어린이 총회
10	한로, 상강 중양절 국화자, 약밥 만들기	밤 따기, 도토리 줍기, 가을의 들꽃산국 따기			약물 오남용 안전	가을 운동회 (10월14일) 생일잔치 조합원 교육 (10월27일)
11	입동, 소설 겨울맞이 잔치 호박떡 만들기	한라산 등반			소방안전	동문과의 만남 한라산 등반 어린이총회 생일잔치
12	대설, 동지 해넘이 팔죽	겨울 느끼기			재난에 대비하는 안전	송년아리랑 크리스마스 행사 생일잔치
1	소한, 대한 납향, 해맞이 신구간 만두 만들기	썰매타기 눈싸움 겨울의 식물들			어린이집 안전	교사모꼬지 생일잔치
2	입춘, 설, 정월대보름, 오곡밥, 부럼먹기				생활안전	졸업여행 제6회 졸업식 생일잔치

3) 농촌유학생활기록부

농촌유학생활기록부

<p>차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농촌유학 생활기록부 입력사항 동의서 ② 위임장 ③ 2015 농촌유학연간교육과정운영계획 ④ 농촌유학 현장학습 연간 계획표 ⑤ 개인별 생활규범 지도 및 상담 기록부 ⑥ 농촌유학생활기록부 <p style="text-align: center;">(인적사항, 건강기록, 교육내용, 발달지표, 종합의견)</p>
--

학 생 명	
--------------	--

작성기간	
-------------	--

작성자		확인자	
성명	인	성명	인

0 0 0 0 농 촌 유 학 셴 터

[농촌유학생활기록부 예시 ② 위임장]

위 임 장

1. 위임 받는 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주 소			

2. 위임하는 자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 번호			
주 소			

본인은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자녀()의 주민등록상의 민원서류업무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15 년 월 일

위 임 자 (인)

[농촌유학생활기록부 예시 ③ 2015 농촌유학연간교육과정운영계획]

2015 농촌유학연간교육과정운영계획(학교일정포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목 신정	일	일 상일절	수	금	월	수	토	화	목	일	화
2	금	월	월	목	토	화	목	일	수	금	월	수
3	토	화	화	금	일	수	금	월	목	토 개천절	화	목
4	일	수 입학	수	토	월	목	토	화	금	일	수	금
5	월	목	목 대보름	일 식목일	화	금	일	수	토	월	목	토
6	화 소한	금	금 경칩	월	수 입학	토 현충일	월	목	일	화	금	일
7	수	토	토	화	목	일	화 소서	금	월	수	토	월 대설
8	목	일	일	수	금	월	수	토 입학	화 백로	목	일 입동	화
9	금	월	월	목	토	화	목	일	수	금 한글날	월	수
10	토	화	화	금	일	수	금	월	목	토	화	목
11	일	수	수	토	월	목	토	화	금	일	수	금
12	월	목	목	일	화	금	일	수 말복	토	월	목	토
13	화	금	금	월	수	토	월 초복	목	일	화	금	일
14	수	토	토	화	목	일	화	금	월	수	토	월
15	목	일	일	수	금	월	수	토 광복절	화	목	일	화
16	금	월	월	목	토	화	목	일	수	금	월	수
17	토	화	화	금	일	수	금 제헌절	월	목	토	화	목
18	일	수	수	토	월	목	토	화	금	일	수	금
19	월	목 설날	목	일	화	금	일	수	토	월	목	토
20	화 대한	금	금	월	수	토 단오	월	목 칠석	일	화	금	일
21	수	토	토 춘분	화	목	일	화	금	월	수	토	월
22	목	일	일	수	금	월 하지	수	토	화	목	일	화 동지
23	금	월	월	목	토	화	목 대서	일 처서	수 추분	금	월 소설	수
24	토	화	화	금	일	수	금	월	목	토	화	목
25	일	수	수	토	월	목	토	화	금	일	수	금
26	월	목	목	일	화	금	일	수	토	월	목	토
27	화	금	금	월	수	토	월	목	일 추석	화	금	일
28	수	토	토	화	목	일	화	금	월	수	토	월
29	목		일	수	금	월	수	토	화	목	일	화
30	금	월	목	토	화	목	일	수	금	월	수	
31	토	화		일			금	월		토		목

[농촌유학생활기록부 예시 ④ 농촌유학 현장학습 연간 계획표]

2015 농촌유학 현장학습 연간 계획표

영역	월일	주 제	내 용	장 소
자립				
신체 성장				
지적 성장				
절기 세시				
공 동 체				

[농촌유학생생활기록부 예시 ⑤ 개인별 생활규범 지도 및 상담 기록부]

개인별 생활규범 지도 및 상담 기록부

(농촌유학·학교생활 전반)

성 명 :

연 번	월일	내 용	상담 시간	상담 장소	지도 교사	학생 확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농촌유학생활동기록부 예시 ⑥ 농촌유학생활동기록부]

농 촌 유 학 생 활 기 록 부

학 생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사 진		
	생년월일	년 월 일							
	전입주소								
	입소일	년 월 일	전학일	년 월 일					
	퇴소일	년 월 일	전출일	년 월 일					
	소속학교			학년반					
	담임교사			담임연락처					
건 강 기 록 사 항	항목	2015		2016		2017		2018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키(cm)								
	몸무게(kg)								
	치아								
	병원진료기록								
	특이사항 (식사, 습관)								

교육내용(상장, 장학금, 자격증 기재)					
요소	월일	교육내용	잘하는 점	부족한 점	학습태도/개선사항
자립					
신체 성장					
지적 성장					
절기 세시 풍속					
공동 체					

[농촌유학생생활기록부 예시 ⑦ 농촌유학생생활기록부]

00 농촌유학생 생활기록부

	성명		생일	월 일
	주민번호		학부모연락처	
	주소			
	취미 및 특기			
◆ 신체 발달 사항				
월별	키	몸무게	특이사항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행동발달사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발달지표종합 (상·중·하)													
농촌유 학교육 과정	핵심요소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자립												
	신체성장												
	지적성장												
	자연친화												
	공동체												
종합의견													
발달지표분포도													
<p>☞ 발달지표분포도는 유학생의 생활전반을 시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p> <p>☞ 발달지표분포도는 생활교사, 유학생, 학부모가 함께 해당 학생의 각각의 핵심요소에 스티커를 붙여 분포도를 만들면 됩니다.</p>													

[농촌유학생생활기록부 예시 ⑧ 농촌유학생생활기록부]

상 담 기 록 부

0 0 0

일련 번호	상담내용 및 처리사항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 산만하나 한 번 집중하면 몰입하는 성격 - 잘 토라지고 남을 배려 할 줄 모름 - 집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 대한 그리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음 - 조금씩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함 - 다른 아이들에 대해 용모가 단정함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보임 -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데 익숙해짐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이 밝아짐 - 수줍음을 조금씩 타기 시작 사춘기에 접어든 것 같음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중 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남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성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을 보임 - 처음과 다르게 말수가 적어지고 책임감이 생김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유학생에 완전히 적응함 -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4) 개인별 체크리스트 예시

○○농촌유학센터 개인별 체크리스트

자녀이름 :

● 해당되는 칸에 V표시 해주세요.

구 분	농촌 유학 오기 전 내 아이 모습정도 (1-10)	농촌유학 온 이후 내 아이 모습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0	9	8	7	6	5	4	3	2	1		
1. 시간을 잘 지킨다.													
2. 정리정돈을 잘 한다.													
3.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다.													
4. 항상 다른 친구와 도와가며 생활한다.													
5. 올바른(평화로운) 언어사용을 한다.													
6. 상대방을 배려하며 경청한다.													
7. 컴퓨터 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이다.													
8. 항상 청결에 신경 쓴다. (샤워, 손 씻기 등)													
9. 친구들과 자주 다룬다.													
10. 편식을 한다.													
11. 자신이 원하는 걸 말한다. (주체적)													
12. 집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많이 한다.													
13. 많은 것을 부모가 해준다.													
14. 자신감 있는 행동을 보여 준다.													

● 특이사항(샘들이 알아두었으면 하는 특이사항을 적어주세요. 평소 습관이나 생활면 등)

[개인별 결과보고서 예시]

이름	000	성별	여	학년	4학년	<사진>
주소						
기간						
활동 내용	철딱서니 학교 진행 프로그램					결과물
	기타 참여 행사					결과물
철딱서니 학교를 다녀온 소감						
아 이 가 써 주 세 요.	<p>♣ 가장 기억에 남는 점, 좋았던 점, 느낌, 생각 등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p> <p>철딱서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눈이 와서 샘터에서 철딱서니학교로 올라갈 때 눈이 많이 쌓였는데 차길만 눈을 밀어서 철딱서니 올 때가 재미있었다. 비료포대로 눈썰매를 탔었고 서울이면 눈썰매장에 가야만 했는데 철딱서니에서는 그냥 경사 저서 길만 만들면 바로 탈 수 있어서 재미있었다. 개울에 얼음이 얼어서 얼음위에서 걷고 뛰어 다닌 것 또한 기억에 남는다. 그때 시우가 얼음을 다 부셔서 갈길이 없었는데 겨우 찾아냈던 것도 재미있는 기억으로 남는다.</p>					
철딱서니 학교를 다녀온 아이를 본 소감						
부 모 님 께 서 써 주 세 요.	<p>♣ 아이가 달라진 점, 부모님의 느낌, 생각 등을 자유롭게 써 주세요.</p> <p>달라진 점이 있다면 밝은 얼굴. 늘 야근하기 바쁜 엄마였기에 엄마보다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요. 밝은 웃음보다는 어두운 얼굴 늘 무거운 맘을 볼 수 있었는데 농촌유학을 시작한 2주 만에 변화 켈로 큰 변화 일 것입니다.</p> <p>표현할 줄 알고,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모습, 밝은 미소, 재잘거리는 모습.. 그것이 00이의 진짜 모습이지요.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한 학기 동안 000이가 이렇게 변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된 농촌유학이지만 그곳의 사랑, 샘들의 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p> <p>저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양구를 방문할 때 마다 느끼는 어수선함, 정리되지 않은 아이들의 소지품들, 빨래, 청결하지 못한 잠자리들. 물론 집에 있는 엄마의 손길들은 못 되어도 잘 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네요.</p> <p>좋은 환경 속에서 지내는 우리 아이들이지만 너무 놀고 있다는 불안감도 떨칠 수 가 없구요. 매일 아이들이 주어진 과제 정도는 본인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만 체크해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p>					

5) 안전사고 사안보고서

농촌유학 안전사고 사안보고서

농촌유학시설	시설명		전화번호	
	소재지			
학생의 소속	학교명		전화번호	
	소재지			
사 건 명			발생일시	
			보고일시	
관 련 학 생	관련학생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자료 첨부			

■ 사건 개요

- 사건 내용(6하 원칙에 의해 기술)

- 언론보도 내용(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경찰 조사 내용(해당 없으면 기록하지 않음)

※ 보고기준

- 1차 구두보고(사고발생 1시간 이내) : 입원치료 등 중대 인명 피해 사안 발생 시 시·군담당 부서로 보고
- 2차 서면보고(사고발생 5시간 이내) : 구두보고 사고에 대해 <붙임> 서식에 의거

2. 지방자치단체 농촌유학 지원조례 내역

<전라북도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 2012.12.7.] [전라북도조례 제3731호, 2012.12.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유학의 활성화를 통해 전라북도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 중 고 학생들이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
2. “농산어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
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농촌유학 활동가”이라 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라북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
2. 도 교육감 추천 1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협의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 조례>

[시행 2013.7.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065호, 2013.7.17.,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교육과 문화발전을 통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읍면지역 농어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면서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농어촌유학센터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활동가”란 농어촌유학센터에서 유학생의 학교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농어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어촌유학센터 운영)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농어촌유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지원 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유학진흥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환경·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3.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4.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5. 농어촌유학 활동가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11.] [경상북도조례 제3486호, 2013.11.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어촌지역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하 “농촌유학”이라 한다)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전입학하여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어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하 “농촌유학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 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이하 “농촌유학 활동가”라 한다)란 농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어촌의 범위”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유학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촌유학 시설 확충사업
 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 도지사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경상북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촌유학 분야 연구원

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촌유학 활동가
7.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요청한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인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 ①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도지사는 농촌유학센터 등과 협조하여 지역신문, 유선방송, 경상북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촌유학에 관

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2013.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원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4.11.] [강원도조례 제3738호, 2014.4.11.,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통해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마을 활력에 이바지하면서 도시와 농어촌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어촌 유학생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중·고 학생들이 농어촌(농어촌유학시설)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면서 농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촌유학시설"이란 유학생들이 농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농어촌"의 범위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농어촌유학 지원계획의 수립)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

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
 2. 농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
 3.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
 4.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센터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유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어촌유학 육성·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강원도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의원은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업무담당국장이 된다.
-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강원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
 2. 강원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2명
 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
 4. 농어촌유학 분야 전문가
 5. 농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
 6. 농어촌유학활동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협의회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농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회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유학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강원도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제3468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안전 유관기관 정보 및 안전점검표

가. 안전 관리 관련 기관 정보

구분	기관명	주요 내용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 및 교육 콘텐츠 제공	국가재난정보센터	재난·안전 정보 제공 등	사전재해업무 02) 2100-5228 피해신고 02) 2100-5434	http://www.safekorea.go.kr
	한국생활안전연합	아동, 학부모, 교사 안전교육, 신고·상담 안내	02) 3476-0119	http://www.safia.org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안전사고 사례, 예방법 등	02) 400-9275	http://www.childsafe.or.kr
	어린이안전넷 (한국소비자원)	아동 안전 종합정보	02) 3460-3000	http://www.isafe.go.kr
	어린이 안전교육캠페인	아동안전교육 및 자료		http://www.academysafe.com
	어린이교통 안전학교	아동안전교육 및 자료	02) 843-8616~8	http://www.go119.org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및 예방 정보	02) 558-1391	http://www.korea1391.org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처치 정보	국번없이 1339	http://www.1339.or.kr
	대한적십자사	응급처치·보건 교육	02) 3705-3705	http://www.redcross.or.kr
	안전 점검 및 관리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 안전점검	1599-4114
시설물안전진단협회		시설 안전점검	02) 567-1307~8	http://www.assi.or.kr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시설 안전점검	031) 910-4136	http://www.fms.or.kr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시설 점검	02) 2671-9076~8	http://kfsa.or.kr
	119안전신고센터	소방시설 점검	국번없이 119	http://119.go.kr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 안전검사	1544-4500	http://www.kgs.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 안전 검사·점검	1588-7500	http://www.kesco.or.kr
	한국전력공사 시·군·구 보건소	정기 방역	국번없이 123 시·군·구 보건소 전화 및 홈페이지	http://www.kepco.co.kr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상청	기상 예보	02) 2181-0900	http://www.kma.go.kr
	소방방재청	기상속보, 재난대응	(주) 02) 2100-2114 (야) 02) 2100-5599	http://www.nema.go.kr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대처요령	02) 2230-6114	http://www.koroad.or.kr
	실종아동 전문기관	아동실종 예방·관리	02) 777-0182	http://www.missingchild.or.kr
	아동보호 전문기관	아동학대 정보 및 신고 등	02) 558-1391 (아동학대 신고) 1577-1391/ 129	http://www.korea1391.org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성 학대 신고, 상담, 의료 등 종합 지원	1899-3075	-
	생명보험협회	회원사·유관기 관 안내	02) 2262-6600	http://www.klia.or.kr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원사·유관기 관 안내	02) 3702-8629	http://www.knia.or.kr
	한국화재보험협회	회원사·유관기 관 안내	02) 3780-0200	http://www.kfpa.or.kr

나. 안전관리 종합점검 자가 진단표 (월 1회 이상)

<○월 ○일>

(양호○, 개선 필요△, 불량×)

점검항목		점검결과		
		결과	미흡한 점	조치사항
안전관리체계				
1-1	농촌유학 안전사고 관리계획(p.5 참조)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1-2	안전관리 총괄책임자의 책임 아래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유지 하는가?			
1-3	119, 응급병원, 보건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MOU 등 원활하게 연계활동을 하는가?			
1-4	농촌유학센터의 안전관리 총괄담당자는 생활교사를 대상으로 비상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교육 실시 주기 기입)			
1-5	유학생 대상 안전교육을 안전사고 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교육 실시 주기 기입)			
1-6	재난·안전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훈련 실시 주기 기입)			
1-7	시설이용방법, 이용시 유의사항 및 비상시 대피경로·집결지 등을 각 시설별로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고 있는가?			
1-8	프로그램 활동 진행 전 안전사고 예방방법 등 활동동안 지켜야할 유의사항에 대해서 사전교육을 실시하는가?			
1-9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조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상비약품 구비, 심폐소생술 적용, 안전 관련 전문가 확보 및 자격증 취득 등)			

1-1 0	전기, 가스, 소방, 건축물 등 시설·설비의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실시 주기 및 점검항목 기입)			
2.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2-1. 안전사고 대응 일반				
2-1 -1	농촌유학시설은 비상 시 소방차, 구급차 등의 접근이 용이한 진입로를 확보하고 있는가?			
2-1 -2	주요시설 내부는 통행, 피난, 방향전환 등을 하기에 적절한 구조로 되어 있는가?			
2-1 -3	위험시설 및 지역(저수지, 강, 바다 등)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였는가?			
2-1 -4	주요시설의 화재보험, 유학생 상해보험(여행시 여행자보험 포함) 등 보험에 적절하게 가입되어 있는가?			
2-2. 화재 안전 관리				
2-2 -1	주요 시설의 소화기는 접근하기 용이한 장소에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가?			
2-2 -2	소화기는 축압식(압력계가 있는 것)이며, 충전량 상태는 적절(압력계의 녹색부분이 정상)한가?			
2-2 -3	각 실마다 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 등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적절히 설치되었고, 잘 작동되는가?			
2-2 -4	가스누출검진기, 중간밸브 자동차단기 등 가스사고 예방 설비가 설치되어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2-2 -5	월 1회 이상 가스가 새지 않는지 점검액 등으로 점검하는가?			
2-2 -6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월 1회 이상 작동점검을 하는가?			
2-2 -7	손상된 코드선이나 피복이 벗겨진 전선은 없는가?			
2-2 -8	1개의 콘센트에 여러개의 전기, 전열기구를 이용하지는 않는가?			

2-2 -9	주요시설의 피난 유도등·표지, 비상조명등 등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고, 작동되는가?			
2-2 -10	피난계단, 비상구 등 대피로에 대피를 방해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가 되는 구조물은 없는가?			
2-3. 식품·위생 안전 관리				
2-3 -1	조리·급식시설의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의 적절한 설비를 갖추었는가?			
2-3 -2	조리 및 급식시설에는 환기, 급배기 및 냉난방 시설을 갖추었는가?			
2-3 -3	식품 등의 조리·가공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처리 하는가?			
2-3 -4	식품 등의 조리·가공을 하는 자는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위생장갑 및 도구(집게 등)를 사용하여 배식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가?(손으로 배식 금지)			
2-3 -5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조리에 참여하는가?(감기, 피부병, 설사 시 등 참여 불가)			
2-3 -6	조리사가 조리 관련 자격증 및 교육을 이수하였는가?(권장)			
2-3 -7	복장, 식재료 관리, 조리기구 관리 등 식품위생관리사항을 점검일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3 -8	배식시간을 준수(조리 후 1~2시간 이내 배식 권장)하고, 배식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하는가?			
2-3 -9	위생시설(화장실, 샤워실 등)의 위생 상태가 양호한가?			
2-3 -10	화장실 등 위생시설의 내·외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며 점검일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2-4. 질병 및 사고 안전 관리				
2-4 -1	아동 개인의 건강상태 파악 및 관리를 위한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가?(특이질환 등 기록·관리 포함)			
2-4 -2	인근 지역의 의료기관(보건지소, 상급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처와 이동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3. 활동 및 여행프로그램 운영 시 유의사항 관리				
3-1. 프로그램 활동				
3-1 -1	야외활동 시 생활교사 등 성인 보호자가 반드시 동행하는가?			
3-1 -2	프로그램 활동(야외활동, 도구 이용활동 등) 전 아동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유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사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였는가?			
3-1 -3	프로그램 활동에 사용하는 교구 및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보수하는가 ?			
3-1 -4	활동 관련 안전장비 및 구급약품을 구비하고,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 시의 응급대책 계획이 실행 가능한가?			
3-2. 여행 시 관리				
3-2 -1	여행전 사전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가?			
3-2 -2	여행 장소를 사전답사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미리 취하였는가?			
3-2 -3	차량 관련 안전점검 사항을 충분히 점검하였는가?			
3-2 -4	아동을 대상으로 차량 이동 및 여행지에서의 준수사항 등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였는가?			
3-2 -5	여행지의 기관정보, 차량운전자, 인솔책임자, 학부모 연락처 등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였는가?			

3-2 -6	구급함, 멀미봉투 등 준비물을 빠짐없이 준비하고, 요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명단을 확인하였는가?			
4. 시설물 안전 관리				
4-1	농촌유학시설의 내·외부 및 주요 활동시설에 붕괴나 침하의 위험은 없는가?			
4-2	주요시설의 천정, 벽, 바닥의 누수 및 균열은 없는가?			
4-3	주요시설의 바닥 마감제는 미끄럽지 않고 평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			
4-4	배수로 덮개의 설치 상태가 양호한가? (배수로 덮개에 발, 신발 등이 빠질 틈새가 있는지 유무)			
4-5	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는가?			
4-6	출입문의 손가락 보호대, 모서리 안전장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및 장비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가?			
4-7	숙박 및 교육시설 등 아동이용시설에 불에 잘 타는 샌드위치패널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기타 안전점검 관련 기록사항				

다. 농촌유학 안전관리 주간 점검표

1) 시설물 및 소방안전

<20○○년 ○월>

(안전 ○, 요주의 △, 불안전 ×)

일 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건 물	균열상태			
타일 균열상태						
주변 배수상태						
옥상 과하중상태						
가 스	가스차단기 작동상태					
	중간밸브상태					
	경보기작동상태					
	밸브.배관상태					
전 기	흡배기구시설상태					
	누전차단기 작동상태					
	콘센트사용상태					
	전선피복상태					
기 타	소화기작동상태					
	화재경보기 작동상태					
	목욕탕등					
	미끄럼방지상태					
	구급상자비치					
	유해물질 보관상태					
	모서리등 안전조치					
점검자(성명)		서명				
관리자(성명)		서명				
특이 조치사항		* (△), (×)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기재				

2) 식품 및 위생 안전

<2000년 0월>

(안전 ○, 요주의 △, 불안전 ×)

일		1주	2주	3주	4주	5주
내용						
개 인 위 생	위생용품 청결상태 (위생모, 위생복 등)					
	손소독 청결상태					
원 료 및 식 품 취 급	부패변질등 식품상태					
	유통기간 준수상태					
	포장용기 사용상태					
	보관적정상태					
	원료세척상태					
	교차오염방지보관					
조 리 설 비 및 시 설	조리시마스크착용 상태					
	방충 방서등 방지상태					
	조리기구청결상태					
	작업장내 수세 및 소독시설 구비상태					
	바닥배수상태					
기 타	먹는물 수질상태					
	음식물쓰레기관리 상태					
점검자(성명)		서명				
관리자(성명)		서명				
특이 조치사항		* (△), (×)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기재				

3) 활동 및 아동 관리

<20○○년 ○월>

(안전 ○, 요주의 △, 불안전 ×)

일 내용		1주	2주	3주	4주	5주
		활동	상해·여행자 보험			
기상상태						
사고예방교육						
응급조치교육						
활동시설 안전성						
교구안전성						
학생 건강상태						
보호자동행						
체험활동 안전성						
아 동 관 리	아동 활동일지 기록(개인별)					
	아동 건강일지 기록(개인별)					
점검자(성명)		서명				
관리자(성명)		서명				
특이 조치사항		* (△), (×)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기재				